

# 일 정 표

전체 진행 : 김철홍 (학교교육팀장)

## 제1부

14:00~14:30

- ▮ 개회선언
- ▮ 인사말씀
- ▮ 내용보고 : 「헌법」과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내용(학교교육팀)

## 제2부

14:30~16:00

진행 : 이종태

### 【주제1】 「학생의 자유와 참여」 보장에 대한 방안 모색

- ▮ 학생의 자유와 참여 보장에 대한 방안 모색 :  
김대유(학교자치연대 대표, 서문여자중학교 교사)
- ▮ 우리가 아이들의 현재를 바꿔야 한다 :  
허진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일상업고등학교 교사)

### 【휴식시간 - 10분】

15:00~15:10

### 【주제2】 학교 내 차별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

- ▮ 차별과 인권에 대해 가르친 적이 있던가 :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 수업평가 -- 인권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 이재익(의성공업고등학교 교사)

### 【주제3】 학생의 안전·건강 등 복지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 ▮ 학생의 안전·건강 등 복지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  
안미영(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장학사)
- ▮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 :  
장진아(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수원지회 사무국장)

## 제3부

16:00~16:30

- ▮ 종합토론 및 정리
- \*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함께 읽기



# 목 차

■ 「헌법」과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내용(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육팀) ... 3
---

## 【주제1】 「학생의 자유와 참여」 보장에 대한 방안 모색

■ 학생의 자유와 참여 보장에 대한 방안 모색 (김대유 학교자치연대 대표, 서문여자중학교 교사) .....	19
■ 우리가 아이들의 현재를 바꿔야 한다 (허진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일상업고등학교 교사) .....	37

## 【주제2】 학교 내 차별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

■ 차별과 인권에 대해 가르친 적이 있던가(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49
■ 수업평가 - 인권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이재익 의성공업고등학교 교사) ... 54

## 【주제3】 학생의 안전·건강 등 복지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 학생의 안전·건강 등 복지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안미영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장학사) .....	75
■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 (장진아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수원지회 사무국장) .....	85

## 【참고자료1】 호남·제주권역(2008.7.11) 토론회자료

■ '학생 인권 보장' 조항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제안과 "학생의 자유와 참여" 보장 방안(현병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	93
■ 참여의 경험과 지속가능한 발달(김세영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98	
■ 학생의 자율과 참여를 통한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기노환 정암초등학교장) .....	103
■ 학교 현장에서 생각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만들기 (임동현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	109
■ 학교 만들기(전재의 청소년 활동가) .....	118
■ 학생의 안전·건강 등 복지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최명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	122

## 【참고자료2】 대구·경북권역(2008.7.15) 토론회자료

■ 교육의 눈으로 학생인권을 바라보자 (안미향 (사)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	127
■ 학생은 어떻게 차별받는가?(권진영 경북 의성공업고등학교 교사) .....	137

■ 청소년 인권에 대하여 (이재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학교인권국장) .....	150
■ 학생의 안전, 건강 등 복지실현을 위한 과제 (문혜선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상담실장) .....	156
■ 학생의 안전, 건강 등 복지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이수남 영진고등학교 진로상담부장) .....	159
■ 학생의 안전, 건강 등 복지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류문숙 와룡고등학교 교사) .....	169

**【참고자료3】 충청·강원권역(2008.7.17) 토론키료**

■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김석언 옥산중학교 교감) .....	181
■ 「학생의 자유와 참여」 보장에 대한 방안 (지정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중등정책연구국장) .....	198
■ 학교 내 차별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김순중 충남 봉황중학교 교사) .....	204
■ 학교 내 차별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 (조기한 대전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남대전고등학교 교사 ) .....	217
■ 학생의 안전 건강 등 복지권 실현방안 모색(강명숙 배제대학교 교수) .....	227
■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복지 정책 방향 (김영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장) .....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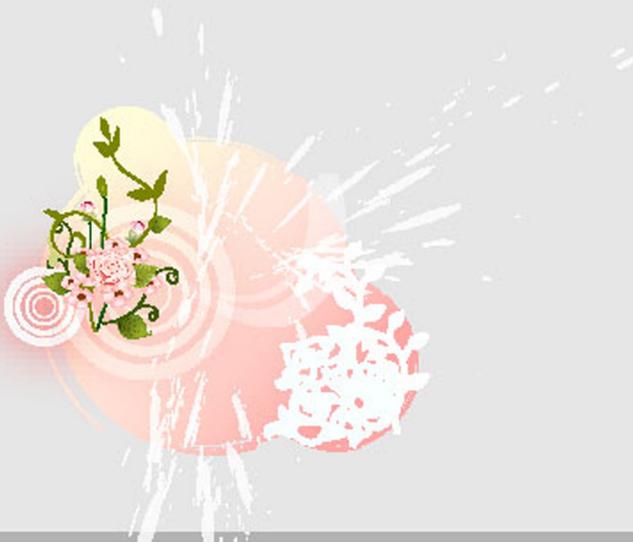
**【참고자료4】 부산·울산·경남권역(2008.7.18) 토론키료**

■ 학생의 자유와 참여-소통-공감, 선택으로 함께 가야 할 소중한 가치 (이필우 합포고 교사) .....	243
■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통한 친인권적 학교 만들기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	249
■ 학생 인권을 위해 바깥의 힘이 필요하다(박덕수 연제고) .....	271
■ 학교 내 차별문제(최성용 울산 청소년인권운동단체 ‘아수나로’) .....	275
■ 학생의 안전, 건강 등 복지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박대우) .....	289
■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를 꿈꾸며 (고영호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장) .....	297

**【부록】**

■ 세계인권선언 .....	303
■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 .....	311
■ 학교(학생)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315

## 「헌법」과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내용





#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육팀

## 1. 인권 친화적 학교와 학생인권

-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학교 삶 안에서 인권의 가치가 생동하는 학교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학교구성원의 일상 생활안에 뿌리를 내리는 학교이고, 그런 결과로 구성원의 삶의 실체가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함
- 이런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개개인이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함. 특히 학교내 권력관계상 약자인 학생의 인권에 대해 민감해야 함. 따라서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인권이 상식화·보편화되는 학교를 말함
- 한국사회에서 학생은 ‘자신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권리주체’로서라기보다는 ‘어리고 미성숙한 존재’, ‘권리의 향유 주체가 아닌 소극적인 수용자’, ‘독자성이 부족한 존재’로 기성세대들에게 이미지화되어 있음.
- 하지만 학생들은 비록 그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한 존재라 할지라도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내재적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자율적인 존재이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지니고 있는 ‘인권의 주체’임
  - 학생의 지위 : 보호의 존재에서 권리 주체로 변화
- 학생인권이란 한마디로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로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임. 따라서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함께 학생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지위나 자격 내에서 갖게 되는 특정적 권리를 동시에 갖음.
- 학생인권이란 보편적 인간존재로서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① 자유권, ② 복지권, 그리고 자유권과 복지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③ 평등권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한편으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인권이 이야기 될 때마다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임
  - 모든 교사들은 학생의 인권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고, 일부 이해될 수 없는 과도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지도방식은 분명히 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는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지켜야 할 약속과 의무는 책임지지 않는 일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교사가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 ‘그래도 학생들의 인권만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학생들을 잘 지도해 볼 수 없을까?’ 고민에 빠짐

- 교원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생을 교육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학생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됨.
  - 그렇다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정당한 노력이 포기되거나 거부(교육포기)되어서도 안 되는 것임
- 학생 인권이 함부로 침해하는 학교에서 교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그만큼 비례하여 교권 역시 보장된다고 하겠음.

## 2.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의 학생인권

-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학교운영규칙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특히,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보장의무 조항이 신설됨(2007년 12월 14일). 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호에서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학생 징계 시 학생의 재심청구권<sup>1)</sup>과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설치 조항<sup>2)</sup>등이 함께 신설됨

---

1) 제18조의 2(재심청구) ① 제18조 제1항에 다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 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 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8조의 3(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으로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89년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학생)의 인권을 독자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으로 18세 이하의 아동의 전반적 인권의 내용을 제시
  - 전문과 총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부(협약 제1조~제4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의, 협약의 일반원칙, 구체적 권리 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 2부(협약 제42조~제45조)에서는 비준 절차를 다루고 있음
-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복지권과 자유권, 평등권을 모두 인정하면서 아동(학생)인권에 관한 4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비차별의 원칙(2조) :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 이는 “아동 자신과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원칙임
  - 아동 최상의 이익(3조)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있어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이 원칙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학교 등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임
  -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6조) :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 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함. “가능한 한 최대 한”이라는 의미에서 “발달”은 질적인 면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모두 의미함
  -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12조) :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음. 이러한 아동의 의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서 정당하게 존중돼야 함. 이 조항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임

### 3.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

#### □ 학생자유권

- 학생이 설사 일반적으로 미숙하고 능력도 없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행동의 분야나 종류에 따라서는 발달상 일정한 성숙도와 능력도 구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학생이 부모의 과도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autonomy)과 독립적인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①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학생을 대할 때 학생의 존엄성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학생의 존엄과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 구체적 내용으로 존엄에 합치되는 규율, 학교 규율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 학생 의견의 존중, 학교 규율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 판단을 돕는 충분한 정보와 토론 시간 제공, 규율의 공지//강제 학습의 금지, 추가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자신의 동의, 교육내용과 관련성이 적은 공연 등 부당한 관람 요구 금지//언어폭력의 금지//학교 밖 교육시설의 적절성설, 시설종사자의 태도//학생의 의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약속의 성실한 이행//학생 표현물 활용시 학생 자신의 동의

### ② 학생 자치와 참여권

- 학생은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학생자치 활동은 교육 주체로서 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모임을 만들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기도 하다. 학생은 또한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적극 보장받아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자치와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 학급단위의 자치활동 활성화, 학교당국과의 면담권 보장, 자치와 참여에 대한 교육, 학생 보호자의 참여 존중//학생대표의 입후보 자격 제한 금지, 대표 선출의 민주성, 학생회의 권한 확보, 학생회 활동에 사전·사후 간섭의 금지, 학생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학생회 활동의 민주성//동아리 설립·가입 허가제의 금지, 동아리의 자유로운 활동,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 ③ 신체의 자유

-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몸의 존엄성과 안전, 자유를 위협받는 경험은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학교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파괴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해치는 가혹하거나 모욕적인 처우, 자유의사에 반한 행위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구체적 내용으로 체벌의 금지, 강제 이발의 금지, 모욕적인 처벌의 금지, 질서유지와 정숙 등을 목적으로 신체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성폭력 금지와 예방,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몸에 접촉하는 경우에도 학생이 그 표현을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봄, 흡연단속을 이유로 강제 검진이나 의료행위 금지//교직원의 사적 심부름 금지, 행사 도우미 배치, 행사

동원 금지, 봉사활동에 대한 감독//기숙사 입소 강요와 부당 규율 금지, 학생 선수의 장기 합숙과 부당 규율 금지

#### ④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당하거나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다.
- 구체적 내용으로 동의에 기초한 서약, 양심에 따른 상징의식 거부, 반성이나 서약의 강요 금지//생각에 따른 차별 금지, 일방적 의사 전달을 위한 소집 금지//종교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활동 참석과 종교교육 강제 금지, 선교 목적의 권한 남용 금지//특정 도서 등에 대한 제한 금지

#### ⑤ 표현의 자유

- 학생은 말이나 글, 예술, 매체, 몸 등 자기가 선택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생활양식을 외부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명시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학생의 표현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통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홀로 또는 여럿이 의사를 표현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복장의 자유, 두발의 자유, 이름표와 학교 배지의 착용 강제 금지, 현행 용모규정의 개정//매체활동의 자유, 매체활동에 대한 지원//주제에 대한 검열 금지, 홍보와 선전 활동 보장, 의견 조직 활동 보장, 표현물의 소지와 게시 보장,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공연 내용의 자율적 결정//학내 집회·시위의 자유, 학외 집회·시위의 자유, 집회·시위의 원천 봉쇄 금지//교외 활동의 자유, 정치활동 금지 규정의 삭제

#### ⑥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 학생은 일기나 통신, 소지품, 사적 공간, 친구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생활의 의미도 다변화되고 있음에 유념하여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해석, 보장해야 한다.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학생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거나 유출되는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일기장 검사의 대안, 편지의 공개 금지, 휴대전화 내용의 열람과 공개 제한//소지품 금지의 제한, 사적 공간에 대한 존중, 사적 공간 검사 시 절차, 소지품 압수의 제한, 사적 공간의 확보//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금지//성적 공개 금지, 보호자에 대한 공개 시 전제, 상담 정보의 비밀 유지//CCTV, 알람장비의 설치 규정, 몰래

촬영·녹음의 금지//자율적인 관계 맺기, 갈등상태의 감정 존중

### ⑦ 정보 접근권

- 학생은 학교당국에 의해 수집된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 수정 등 통제권을 가진다. 학생은 또한 도서,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성장 등을 위해 학생이 다양한 국내외적 정보원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적절하게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가고 싶은 학교도서관, 컴퓨터 이용 보장, 인터넷 접근 보장, 정보 활용 교육//참여를 위한 정보, 학교 당국의 투명성

### □ 학생복지권

- 아동보호적 관점에서 학생이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통제와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학생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봄

### ⑧ 교육에 대한 권리

- 학생은 배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교육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욕구와 사회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고 감당할 만한 수준의 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학생의 사람됨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자연과의 공존 등 인류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필요한 가치를 익힐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 구체적 내용으로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경쟁적 교육풍토의 변화, 교육의 궤도를 벗어난 지도 중단, 외부 위탁교육에 대한 점검//교육과정 수립에 대한 참여, 학교의 운명 결정에 대한 참여,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비정규 교육활동에서의 선택, 다양한 진로 탐색//학급당 학생 수 축소, 안정적인 학습 환경, 학습 지원 물품 제공, 학교운영지원비 원천징수 금지//학습권의 일시적 박탈 최소화, 수업 시간외 조사,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중도 탈락률 감소 조치, 탈학교 선택에 대한 존중//동등한 교육 접근, 경제적 부담의 축소, 입/전학·복학에 대한 개방//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출전횟수와 훈련 제한, 합숙소의 폐지와 집중 관리, 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

## ⑨ 건강권

- 학생은 교육과정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각별히 점검하고 건강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학교 안에서나 학교를 오가는 과정에서나 건강을 해치는 조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는 일, 학생 건강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방침을 정비하고 제반 시설 확충에 힘쓰는 일 등이 포함된다.
- 구체적 내용으로 학교 시설과 물품, 위생 설비, 학교주변 환경//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치유, 상담활동의 강화, 처벌이 아닌 치유//호소에 대한 존중, 최적화된 보건실//학교 급식의 질 확보, 급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학교 매점에 대한 감독//적절한 건강 검진, 사생활의 보장//운동시설, 체력의 등급화 제한, 보건교육의 실시//운동의 강요 금지, 전염병 관련 조치

## ⑩ 안전권

- 학생은 신체의 안전과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학교당국은 안전을 이유로 학생의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등 학생의 다른 권리의 실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학생 관리 소홀 등으로 문책을 받거나 불명예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 문제가 뒤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안전을 위한 설비//학교 밖 교육시설의 안전 점검, 사고에 대한 책임//통학로의 안전 확보, 통학수단 제재의 최소화//안전교육의 실시

## ⑪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학생은 쉬고 놀고 문화를 창조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습만이 우선시되어 쉬,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은 쉬, 놀이, 문화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쉬,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를 권리로서 분명히 인식하고 권리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 특히 학습부담 강화, 사교육 확대 등은 학생의 쉬,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학교당국은 교육당국,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쉬는 시간의 보장, 쉬는 시간의 자율성, 실외 휴게공간의 확보, 실내 휴게공간의 확보//문화 동아리의 지원, 문화 관람의 다양성, 문화 활동에 대한 제한 금지

## ⑫ 적법 절차를 누릴 권리

- 학생은 폭력, 절도, 시험 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조사나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존엄을 지키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의 각종 징계 규정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 국내 법률에 부합해야 하고, 조사와 징계는 공정하고 적법해야 하며 학생이 감당할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당국은 조사와 징계의 전 과정에서 학생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인종, 문화적 배경, 건강과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징계 규정의 정당성, 권리 제한의 최소화, 징계의 남용 금지, 예비 범죄자 대우 금지//징계절차의 성문화, 무죄 추정의 원칙, 차별 없는 징계절차, 모욕적이거나 비인도적 대우 금지, 사려 깊은 조사 절차, 학생의 변론권 보장, 조사·징계 사실의 통보, 재심권의 보장//사건과 징계의 공개 제한, 징계 기록의 보관, 징계기록의 보관 규정 마련//문제해결의 지원, 사건의 은폐·축소 금지

## ⑬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특별한 상황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은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가정에서의 학대, 사법처리, 경제적 착취, 폭력 피해 등을 경험한 학생에게는 특별한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떤 돌봄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당사자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시보호조치를 포함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 교육당국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피학대 학생에 대한 구제조치, 추가 피해의 예방, 시설 생활 학생에 대한 보살핌//수사기관에 대한 요구, 추가 불이익금지, 관련 사실의 공개 제한//노동할 권리 보장, 권리 구제의 지원, 전문계고 현장실습 감독, 노동인권교육의 실시//모든 형태의 폭력 예방, 피해 학생의 대한 지원, 피해 학생의 복귀, 추가 불이익 금지, 제보 학생에 대한 보호, 성폭력 규정 성문화, 폭력예방교육의 실시

## ⑭ 권리를 지킬 권리

- 모든 사람은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보장되고 있는 인권을 충분히 실현되는 질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의무가 있다.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학생 역시 자기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옹호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부당한 학교당국이나 교직원의 결정에 대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학생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절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구제절차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양심의 요청에 따라 처벌·불이익 없이 다른 사람의 권리회복을 도울 권리

## □ 학생 평등권

-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⑮ 차별금지

- 학생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존엄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성, 장애, 인종, 출신지역, 성 정체성, 가족형태, 외모, 경제적 수준, 사회적 신분, 성적, 학년, 나이 등이 다를지라도 수업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합당한 이유 없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는 차별이며 괴롭힘과 불리한 대우 역시 차별이다. 학교당국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 반(反)차별 정신의 보편화, 학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 통합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통해 차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차별 근절 조치//성적, 성별, 학년 또는 나이, 빈곤 학생, 가족형태, 가출학생에 따른(대한) 차별금지//여성에 대해 교육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여성의 몸과 특성을 고려한 시설 제공, 여성인권교육의 실시, 비혼 임신 여성을 위한 지원, 여성 대표성의 강화, 생리 공결의 보장, 성 폭력 등 성 관련 경험에 대한 남성교사 관여 주의//장애인의 교육 접근권의 보장, 편의시설의 제공, 교육지원, 교육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통합을 위한 교육, 교사를 위한 지원//이주민 학생의 교육 접근권의 보장, 교육지원, 교육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통합을 위한 교육,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존중, 신상정보의 보호//성소수자 학생의 교육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아웃팅의 금지, 성적 정체성의 탐색 지원

## 4. 학생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상

### ○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을 바라보는 학교

- 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속에서 학생은 학교 생활 전반에서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 따라서 학교는 학생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고 결정에 참여하고 변화에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권한과 권리행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 ○ 참여와 결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

-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생의 견해에 대하여는 학생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의견을 밝힌다는 것은 의견을 표현할 진정한 기회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 이를 위해서는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에 대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명목적인 참여, 장식적인 참여, 조작된 참여는 진정한 참여일 수 없다. 학교는 학생에게 능동적인 참여, 의사 결정,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사랑해야 한다. 어떤 학생도 어떤 이유로든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차이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학교는 다양성을 교육의 주춧돌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고 학생이 부당하게 구별되거나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혹은 잠재하는 차별을 확인하고 이에 맞서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뒤따라야 한다.

#### ○ 학생이 감당할 만한 교육을 하는 학생 중심적 학교

- 학교 교육은 학생이 감당할 만한 교육이어야 한다.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교육은 교육의 궤도를 이탈한 것이다.
- 교육은 학생 친화적이고 학생 중심으로 짜여야 한다. 학생 친화적인 학교는 배움과 학습자에 초점을 둔 학교문화, 교수방법 및 교과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로서의 학생의 성장 능력을 인정하고 장려하고 지지한다.

#### ○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을 배우는 학교

- 학생은 학교 교육을 통해 자유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삶에 대한 준비는 질서 유지나 통제의 강박에서 나오는 강압적 지도를 통해서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인권에 대한 상호존중, 이해와 평화,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야말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학생은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삶의 기술을 학교생활에서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 ○ 학생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 학교는 학생의 삶에서 중요한 인격적, 사회적 환경이다. 학교는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의 총체적 삶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학생이 학교 체제 속에 들어오기 전의 상황과 교실을 떠난 후에 '가정, 지역 사회, 일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유념하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 ○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이 있는 학교

- 학생의 삶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은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기초해야 한다. 건강, 안전, 성장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고 행동의 선택을 결정할 기회를 제공받고 인격을 존중받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예를 들어 학생의 어떤 권리, 가령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의 프라이버시 등 여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 학생 인권 보장은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었을 때 실현될 수 없다. 학생 인권은 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학교를 요구한다. 학교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비롯한 학교 밖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학교 밖 자원을 적극 끌어들이 수 있어야 한다.
- 학교가 연대의 공간으로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학교 안팎의 행위자들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 교육의 물적 토대를 비롯해 교육환경을 고려치 않고 학생에 대한 인권존중을 교사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교사는 인권에 기반한 학교시스템을 갖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자로 어떤 능동적인 개혁도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 교사의 연대 없이 학생 인권은 보장될 수 없다. 교사의 연대는 그들의 책임에 대한 강조뿐 아니라 충분한 권한과 역량의 확보를 통해서야 가능하다. 모든 단계의 교육체계에서 교사는 존중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 권리구제에 대한 보장

- 학생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울 뿐 아니라,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그 호소가 경청되는 경험을 갖기 힘들다.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에 접근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없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 침해가 예방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 그러므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학교 안팎의 구제 절차를 알고 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내 권리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의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붙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가이드 개발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안)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가이드 개발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안)

### □ 추진배경

-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 등의 학생인권보장 의무조항(2007. 12. 14.)이 신설
-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자율화 정책에 따른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사회 현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청소년층 확산 등 학생 인권을 둘러싼 제반 여건 변화
-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적 상황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갈등을 줄여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의 필요성 증대

### □ 추진경과

- 2007. 12.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개발(2007년 연구용역)
- 2008. 3.10~20 지침서에 대한 전문가조사 실시
  - 대상 : 학계, 학교, 단체, 기관 등 학교인권교육 전문가 및 활동가(12명)
- 2008. 3.26 제3기 인권교육 연구학교 간담회 개최
  - 학교내 구체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지침서 개발을 위해 연구학교 대상으로 시범운영함
- 2008. 4.18.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 참석대상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시·도교육청(서울, 충남, 전북, 경남), 교원·학부모단체(전교조, 교총, 참학), 인권교육 단체 및 전문가 등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활용가이드의 작성방향 및 구성형태, 쟁점사항 논의
- 2008. 4.30. 학생인권조항 신설기념 「학생인권 내용과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주최방식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토론자 : 16명(관련부처, 교육관리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어린이·청소년단체 등)
  - 참석인원 : 학교 내부 구성원 및 인권·교육·청소년 관련 기관·단체(50여개) 등 80여명
- 2008. 6.18.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 구성틀(총론부분에 교육 3주체와 구조적, 제도적 학교환경 등을 기술하고, 세부 내용은 학생인권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교사가 가진 고민과 대안, 우수사례 등을 함께 담으며 구체절차는 별도 장을 두어 기술) 논의
  -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관련 협의체 참석 교육청과 개략적 내용 협의

## □ 향후 계획

- 2008. 7.11/15/17/18/23.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방안 모색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 16개 시·도 교육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5개 권역에서 개최
- 2008. 8. 협의체 및 지역 순회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가이드 초안 작성 및 보완 내용에 대해 전문가 원고 의뢰
- 2008. 9.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를 통해 초안 검토
- 2008.10.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가이드(초안)에 대한 공청회 및 인권교육 연구학교 시범운영 모니터링 실시
- 2008.11. 활용워크숍을 통해 가이드(초안)에 대한 학교 현장 활용가능성 검토
- 2008.12. 학교 현장에 보급·적용할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가칭)」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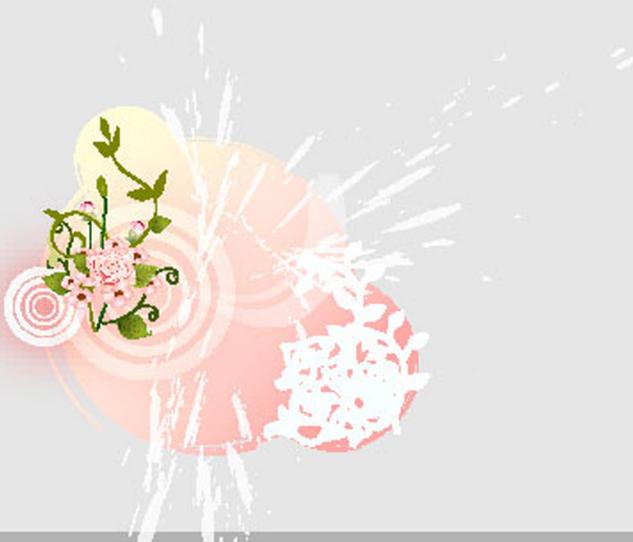
## **【주제1】 「학생의 자유와 참여」 보장에 대한 방안 모색**

### **Ⅰ 학생의 자유와 참여 보장에 대한 방안 모색**

김대유(서문여중 교사, 학교자치연대 대표)

### **Ⅱ 우리가 아이들의 현재를 바꿔야 한다**

허진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일상업고등학교 교사)





# 학생의 자유와 참여 보장에 대한 방안 모색

김대유(서문여중 교사, 학교자치연대 대표)

## 1. 학생의 자유와 참여에 대한 사회적 흐름

### 1) 학생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 등의 학생인권보장 의무조항(2007. 12)이 신설되고,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자율화 정책(2008. 4)에 따른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사회 현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청소년층 확산 등 학생인권을 둘러싼 제반 여건의 변화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적 상황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갈등을 줄여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1991년 한국이 유엔의 어린이 청소년권리조약에 가입한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온 인권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2) 학생의 자유와 인권 찾기 운동

학생의 자유와 참여에 대한 사회적 여건의 조성은 학교 밖에서 먼저 제기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은 총학생회 연합을 발족하여 학생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학생운동을 펼치면서 1990년대를 온통 달구었으며(우리교육, 1999), 학생들은 스스로 두발규제 등 신체인권을 강조하며 광화문 거리에서 촛불집회를 하였다. 그 여파로 사회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 3) 학생의 참여권에 대한 제도적 접근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학교자치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홍사단 등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학생회 법제화를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학교자치연대가 주관하고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홍사단, 학교자치연대가 공동주최한 대통령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노무현후보는 학생회 법제화를 비롯한 학교자치의 제도화를 공약하였다. NGO들이 학생인권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게 한 이 사건은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국가의 주요 과제로 부각시키고 체계화시킨 최초의 사례였다. 이 전까지 학생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보장은 국가가 소극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어린이 현장 제정 등)이었고, 교육계가 아닌 외곽에서 청소년 관련 기구들이 청소년현장과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청소년 인권 운동을 전개해 온 양상이었다.

그런 면에서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에서는 청소년 위원들이

두발규제와 체벌을 비롯한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제도권 참여의 보장을 강력하게 촉구하여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고(청소년특별회의, 2003), 학교민주화를 위한 교장공모제, 심신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교과 개설, 학교운영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학생회 법제화를 정책화 할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이후에도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수용하며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자세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회 활동을 장려하고 두발규제를 완화하며, 체벌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학생인권과 관련한 학칙의 개정 등 학생의 자유와 참여권 보장에 대한 긍정적인 지침을 학교현장에 시달렸고(교육부, 2003), 2004년에는 학생의 인권을 훼손하는 체벌 등에 있어서는 교사의 징계 양형을 감면할 수 없도록 하는 징계양형규정의 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물론 그 여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2007)과 UN아동권리협약옴부즈 활동(보건복지가족부, 2007~2008)을 구성하는 등 국가 아동청소년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

한편 이러한 흐름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이주호국회의원, 2005), 학생회 법제화(구논희국회의원, 2005)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발의 되었고, 학생인권법안이 제출되었다(최순영국회의원, 2006). 참여정부 기간에 벌어졌던 NGO, 정부, 국회의 변화 흐름은 1990년대 학생운동이 만들어 온 결실이었으며, 대선공약에 청소년의 자유와 참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NGO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컸다고 할 수 있다. 아래 본문의 주요 내용은 2007년 필자(김대유)가 책임연구를 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학생징계절차의 확립과 청소년 참여방안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참고로 전개하였다. 참고자료로 제시한 설문조사 역시 동조사의 사례를 인용하였다.

## 2. 학생의 자유와 참여에 대한 문제제기

### 1) UN아동권리협약과 열악한 학생의 참여권

1991년에 한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위원회에 두 차례나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2008년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관으로 UN아동권리협약 옴부즈 센터를 설치하여 2008년까지 UN에 제출할 차기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양희 유엔아동권리위원, 배기수 아주대 소아과 교수, 김대유 학교자치연대 대표 등 아동권리, 교육, 법조, 의료 등 사회 각 분야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아동권리에 관심이 높은 전문가 16명의 옴부즈퍼슨(Ombuds Persons)과 9명의 옴부즈키드(Ombuds Kids)를 각각 위촉했다. 이들은 오는 2008년 12월 유엔아동권리협약 보고서 제출시까지 국내 아동정책에 대한 모

니터링과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침해사례 조사 및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유엔이 2003년 1월에 한국에 권고한 협약 제29조 교육에 관한 사항과 무관하지 않다. 유엔의 권고사항 중 교육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유엔이 한국에 권고한 내용

<p>첫째, 학생의 표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부 지침과 학교교칙을 개정할 것.                  둘째,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할 것.                  셋째, 교사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넷째,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 할 권리를 보장할 것.                  다섯째, 아동 잠재성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감소시키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제고할 것 등이다.</p>
--

UN의 교육에 대한 엄중한 시정권고는 여전히 열악한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권실태를 나타내는 국제적 준거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동기와 책임이 학교교육정책에 있음을 명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이 학교교육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참여권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는 가운데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청소년의 참여권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관심을 갖고, 그 결정과정(process)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권의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가 없이는 학생인권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인권이든 인권의 주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권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는 학칙의 제정, 학생징계, 학생의견의 표명, 학생자치활동 등은 학교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학교 단위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없다면, 학생인권의 실현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 2) 학교현장의 청소년 참여권 현실

학교의 학생징계 범위는 사소한 용의복장을 위반하면 적용할 수 있는 별점제부터 시작하여 흡연이나 불량이성교제, 폭력에 적용하는 선도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절차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현재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도규정의 역사와 배경을 모르면 징계절차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스스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 인간이 성장하였을 때에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

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한국사회에 난무하는 각종 폭력은 결국 성장과정에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로 나와서 저지르는 것의 결과라 할 수 있다(하승수변호사, 2005). 교사의 학생체벌 방법은 그런 면에서 심도있게 고찰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에게 학교교육과정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것은 교육기본법이 교육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어릴 때부터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훈련한 사람들은 성장하였을 때에도 훌륭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학교현장은 매우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교사들은 생활지도에서 갈수록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과정에서는 상담(counselling)은 가르치지만, 학생지도를 위해 실제로 필요한 임상적인 생활지도(guidance)를 배울 기회는 거의 없다. 학생지도에 임상경험이 없는 교수진 구성과 비현실적인 교육과정 때문이다(교육혁신위원회, 2006). 현직 교사들은 승진경쟁과 입시교육으로 아이들의 감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펼치기 어렵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미 공교육의 정체성을 부인하며 학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국면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은 낡았고,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학교문화는 아이들이 변화에 대한 목마름을 외면하고 있는지 오래다. 그 가운데 청소년들은 어느새 '수평적 학교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 3) 학교의 담장을 뛰어넘는 청소년의 자유와 참여권

그들의 감성주파수는 어느새 학교의 담장을 뛰어넘고 있다. 앞장에서 지적했듯이 아이들은 두발 자유화를 외치며 광화문 촛불시위를 했고(2002), 청소년특별회의에서는 아이들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학생회 법제화를 촉구 했으며(2003), 비록 폐기 되어버렸지만 국회에서는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반영하고자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열린우리당구논회, 한나라당 이주호의원, 2005)이 입법 발의된 바 있다. 이러한 저간의 변화의 조짐은 학교의 내부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학생 징계 절차는 학생 선도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선도규정은 그 기본 내용을 학칙에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 선도규정을 학칙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하기도 하여 혼선을 빚고 있다. 최근 다시 학생 두발규제에 관하여 단발령을 실시하는 학교들의 행위에 대해 청소년들이 크게 반발하여 집단행동이 재발되려 하고 있는 등 사회문제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도규정 등에 의한 학생징계가 공정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 학생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 3. 학교현장의 실태

#### 1) 학교현장의 자유와 참여권?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통제하고 허용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국제적으로는 국제 조약이 있지만 학교에서는 생활규정(선도규정)이 있다. 전국의 중·고교 선도규정에 비민주적·비현실적인 조항이 많다. 선도부원에게 전교생의 생활동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거나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에 퇴학 규정이 버젓이 남아 있고, ‘불온 문서’ ‘백지동맹’ 등 군사독재 시절의 용어도 온존한다. 이들 학칙은 상당수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 사문화된 상태이지만 어처구니 없는 학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곳도 많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부터 일선학교 자체적으로 민주적인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시행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장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 사례① 비현실적인 학칙의 기준 온존

충남 보령의 D여고는 주변에게 전교생의 생활동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 K예술고 등 전국의 중·고교는 수업료 체납시 출석을 정지시키거나 퇴학시킬 수 있다는 학칙을 갖고 있다. 의무교육대상인 중학교의 경우 사실상의 퇴학인 ‘징계를 통한 유예’나 ‘선도 처분’ 등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서울 B여중 등 상당수 중학교에서 퇴학처분 규정이 엄존한다. 초·중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에도 없는 ‘정치에 관여하거나 집단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등은 처벌한다는 내용을 학칙에 포함시켜 법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

대부분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가입하는 학생자치회 운영규정에 ‘정치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정치 현실을 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이다. 서울 진명여고의 경우 ‘정치관여 행위’나 ‘임의로 서클을 만드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 모두 9개항의 징계 규정을 학칙에 두고 특별교육 이수나 퇴학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수업료나 입학금을 체납한 학생들을 출석정지나 퇴학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도 상당수였고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공납금이라는 어정쩡한 표현으로 명시해 납부를 강제하고 있기도 하다.

#### 사례② 시대에 뒤떨어지는 학칙 규정

현실성 없는 구시대적 학칙의 예를 보자. 공무원 조직이나 민간기업에서 이미 수 년 전 사라진 ‘보증인 제도’ 역시 중·고교에 버젓이 남아 있다. 인천 Y정보고 등

대부분 고교는 학칙에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인천 K중학교 등 일부 중학교에도 이 규정이 남아 있다.

서울 S중학교는 '징계를 받고 3개월이 경과한 후 충분히 반성하였음이 확인되면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의 사면 심의를 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고 해 학칙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면 용어를 사용했다. 서울 S여고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온문서를 은닉·탐독·제작·게시·유포하거나 백지동맹을 주장한 자를 퇴학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학교가 사용 중인 '근신' '정학'이란 용어도 과거 군사정권 때나 사용되던 징계 용어다.

### 사례③ 위험 판결도 무시하는 선도규정

국가인권위에서 위험이란 의견을 내놓은 두발규제 규정도 학교현장에서는 버젓이 남아 있다. 서울 D중학교는 남학생은 앞머리 5cm 이내의 스포츠형 머리를, 여학생은 귀밑 3cm까지의 단정한 단발형 머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학교는 두발규정 외에 가방, 양말, 실내화, 액세서리 등까지 지나치게 규제해 실효성이 없는데다 비민주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 JM여고는 유치원생들조차 익숙한 채팅을 하거나 관련 모임을 주선한 학생을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 사례④ 좋은 사례

이와 달리 일부는 민주적으로 선도규정을 개정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강원, 제주도 등의 경우 학교생활규정을 상당수 민주적으로 개정했다. 충남교육청 아무개 생활지도담당 장학사는 “지난해 학생생활규정을 조사·분석해 60~70개 정도의 개선사항 리스트를 만들어 일선학교에 전달했다”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중심이 돼 학생 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미술고등학교에서는 학칙제개정시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제도화 하고 있으며, 면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생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칙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 이재익 전교조 경북지부 학생생활부장은 “학생 징계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토록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학칙과 교칙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감이나 교장 등 일부 교직원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학칙 제정이나 개정 때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민주 전북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도 “시대가 바뀌고 제도가 변했음에도 교칙과 규정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제반 학칙을 손질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2) 자유와 참여를 봉쇄하는 선도규정

청소년들은 예나 지금이나 학교에서 영문을 모른 채 부당한 생활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을 통제하는 가장 큰 수단은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는 선도규정이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용의복장 등을 규정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필자가 2007년 조사한 서울시내 10개 중·고등학교의 선도규정 내용 중에서 표본적인 것만 살펴보도록 하자.

- “양말은 흰색 면양말을 착용하되 복숭아 뼈 위로 올라오는 것은 금지한다.(B여중)”
- “가방은 적색 등 원색 칼라는 금지한다. 소지한 모든 가방 종류는 B4 용지 이상의 크기여야 한다. 금지한 가방을 소지한 경우 압수한다.(A여자고등학교)”
- “두발은 단정해야 하며 귀밑 3센티미터 이상 기르는 것은 금지한다. 일체의 염색과 펴머도 금지한다.(D고등학교)”
- “목걸이와 귀걸이 등 장식품은 금지한다.(C고등학교)”
- “외출은 병원진료의 사유에 해당될 때만 허용한다.(A중학교)”
- “학생이 외부단체에 발제, 토론 및 참가할 때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J고등학교)”
- “동아리 활동의 접수는 학교에서 CA로 개설한 특별활동반에게만 허용한다.(H,M,B고교)”

심지어 학생들에게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요즘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학생들이 각종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막상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받아 줄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학교사회에서 학생들의 발언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 중 학생들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제약하는 것은 역시 학교규정 즉 선도규정이다.

“학생은 교외에서 학교장이 인정하지(?) 않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J고)

J고는 징계기준이 담겨있는 학생생활규정 제64조에 ‘학생은 교외에서 학교장이 인정하지 않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6일 이내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현재 학교 밖에는 많은 학생자치 단체들이 있다.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기 위해선 일일이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S정산고의 학생회칙 규정 제5조를 보면 ‘본 회의 회원은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L고에서도 ‘학생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학생회의 참여를 막고 있다. 따라서 축제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동아리 지원이 어

떻게 마련되는지 학생들이 관여할 수 없다. 이보다 더한 것도 많다. 1970년대나 1980년대의 군사정권기를 연상시키는 규정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정확한 내용 없이 불온·불손·불량·선동·주동 등의 추상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무엇이 불온한지, 불손한지에 대해서나 무엇이 학생들을 선동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학교규정에서 학생들의 사상마저 검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

#### “학생 신분(?)을 벗어나 불손한 언동”(Y고)

Y고에는 불온 문서 은닉·탐독·제작·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학생 신분을 벗어나 불손한 언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수업을 거부 또는 선동한 학생에게 징계를 하는 조항이 있다. O고에는 반국가적 언동을 한 학생,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 행위를 한 학생, 각종 통신 등을 부과한 투서 등의 행위로 교사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학생을 징계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문제는 이 조항들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막고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K고의 한 학생회장은 학생회연합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교장에게 물었지만 교장이 허락을 하지 않아 가입을 하지 못했다. 한 학교의 동아리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동아리실 보장, 동아리지원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외부행사에 나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정치활동은 ‘학생 선도 규정’에 의거,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로 분류돼 퇴학처분의 사유가 되고 있다. 2005년 미션스쿨의 종교자유, 예배선택권을 주장했던 강익석(20)군은 당시 학교 방송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것으로 이유로 퇴학처분을 당했다. 강 군은 “당시 했던 행동이 학칙에 위반되고, 퇴학의 사유가 된다고 인식하지 못했으나, 학교 측은 학칙을 근거로 해서 퇴학을 시켰다고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대표가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

서울 K고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 전까지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학생회 회의를 소집하는 것조차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 하다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학교 측에서 막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학교 안에서는 ‘학칙’과 ‘선도규정’이라는 잣대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말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는 권리는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학생자치 및 학생인권자료집,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2005).

### 3) 교사의 뺄셈방식 학생지도

교사의 역할 역시 한정적이다. 무엇을 새롭게 하자는 ‘덧셈’방식 생활지도보다는 하지말자는 ‘뺄셈’방식 생활지도에 매몰되어 있다. 두발과 복장을 이리저리하게 자율적으로 해보자는 생각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한다. 자율을 제시하면 의식화시키는 교사로 오인 받거나 문제교사로 낙인찍히기 쉽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교육활동이 자리매김하게 된다. 법령이나 학칙에 근거한 통제보다는 상당히 교사 개인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짙다. 이는 일제시대부터 내려 온 관행이 군사정권 시절로 이어지고 그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때로 사소한 탓에 걸린다. 주변의 동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점점 의기소침해진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기 십상이다.

교원단체는 단체교섭과 대정부 투쟁에 몰두해 있고, 의식이 있는 교사들조차 학생생활지도 영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한 것은 교육대학, 사범대학에서 예비교사들은 상담(counselling)은 배우되 생활지도(guidance)는 배운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현직교사들은 승진경쟁과 입시교육으로 얼룩진 학교에서 아이들이 감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펼치기가 어렵다. 교사들은 갈수록 의기소침해지고 정당한 의욕을 잃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승진경쟁’에 몰두하여 참다운 교육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미 공교육의 정체성을 부인하며, 학교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김대유, 가끔 아이들은 억울하다. 2004).

日帝

### 4) 선도규정은 일제의 잔재

사실 오늘날의 학칙은 일제시대의 학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제 때의 학생 포상, 징계, 가산점 제도 등 규칙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 자체가 오늘날처럼 학교장과 간부교사에게 위임된 형태이므로 포상의 경우 소수의 성적 우수자나 지역 유지라 불리는 일제의 부역자 자제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적용되었다. 일제 강점기의 학생규율을 고찰하는 것은 이러한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원인을 밝히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성세대가 경험한 학생규율은 대체로 1960년대, 1970년대의 학교 규율이다. 기성세대의 대다수가 비슷한 학생규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험이 기성세대의 학생규율에 대한 상식이자 통념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학생다운 모습과 행위가 있으며, 학생들이 학생다운 모습과 행위를 지킬 수 있도록 교사는 적절한 단속과 검사를 해야하며, 위반 시에는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학생다운 모습과 행위의 근간이 되는 학생규율이 어느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 이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규율

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여겨진다. 즉 일제강점기의 학생규율의 실제와 그 특징에 대한 고찰은 과거의 사실을 재구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학생규율을 성찰하는 데에도 일조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박철휘, 서울대 강사. 일제 강점기 중등학교의 학생 규율, 2003). 정리하자면 이렇다.

- 현재의 학생생활지도와 선도규정은 일제의 학교규칙에 근거한 것이다.
- 식민지 교육의 관습이 아직 학교문화를 움아매고 있다.
- 학생의 징계, 포상 등 생활교육은 학교장과 교사들의 임의적인 조치가 우선한다.
- 수직적인 내용의 규칙은 성적 우수자와 기득권 학부모의 자제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 예나 지금이나 학교규칙은 내면화(內面化), 즉 통제와 지시의 이행을 위한 도구이다.
- 일방향 학교규칙을 쌍방향, 혹은 다방향의 참여 구도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 일제시대의 규칙은 군사제도의 일환이었다.

#### 4. 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학생의 자유와 참여문제

日帝

##### 1) 일제와 미군정이 남긴 교육과정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학제를 포함하여 그 형식은 미군정시대의 정책을 답습하였고, 편수 방식과 내용은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정책을 수용하였다(김대유, 2002). 예를 들어 오늘날 공통적인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의 경우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를 분석해보면 다른 교과와 경우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학생자치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활동(동아리 활동)을 예로 드는 것은 교과의 경우 그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활동 교육과정에는 학생회 활동, 인성교육, 범교과 학습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이해는 학칙 및 선도규정의 대상인 학생들의 참여에 관한 정책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현재의 8차교육과정기에 다루어진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 2) 학생의 참여권 보장 못하는 교육과정

「제1차교육과정기」에는 특별활동을 세부영역으로 규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집회, 학생회 활동 등 학교민주주의 실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으며, 시간 배정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어느 교육과정 시기보다 훨씬 많은 70~105시간(주당 2~3시간)을 배치하고 있다. 6.25전쟁 이후에 사회재건을 위한 개인의 창발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고심의 흔적이 학교교육과정에도 배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아리 활

동 시간량이 제7차교육과정 시기보다 많고, 그 의미도 집회, 민주적 조직화, 직업 준비 및 후생 등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제1차교육과정기의 동아리 활동은 흥미롭게도 학교 동아리 활동의 여건 마련이 반드시 물질적 풍요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인드의 문제도 중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제2차교육과정기」에는 세부영역에 ‘학생집회’를 넣어 학생의 자율적 활동을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 계층이 많지 않던 1960년대에 고등학생 계층이 당시의 사회 인재 배출의 요람이었고, 근대화 운동을 통해 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한 동량으로 육성하기 위해 활발한 자율적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적 욕구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제3차교육과정기」는 1~2차가 공동체적 창의성을 구현하고자 했던 시도와는 달리 동아리 활동을 학교내의 교육과정, 개인적 창의성 신장에 그 목표를 두고 있고, 오늘날 실시하고 있는 기본틀을 생산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의 시대성, 즉 사회의 안정을 지향하는 군사문화적 요소가 배경에 깔려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4차교육과정기」에는 교육과정 수립의 방법이 간편해진 시기였다. 부령으로 정해지던 교육과정이 교육부장관의 결재만 떨어지면 시행할 수 있는 ‘고시’(告示)로 변경되었고, 특별활동역시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추어가기 시작했다. 동아리 활동의 내용 역시 공동체적 의식과 민주적 생활태도, 소질계발과 창의성 신장, 취미와 여가 활용, 협동봉사 정신 등으로 설정되었다. 점차 학습발달단계에 따른 교육과정 수립의 원칙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제5차교육과정기」에는 제4차에서 소폭으로 보완·개정하는 선에서 그쳤으며, 진로선택 능력 신장, 봉사관리 활동 등 생활주기(life cycle)에 따른 요소가 추가되었다. 당시의 소극적인 사회상을 반영한 듯 동아리 활동은 될 수 있는 한 학교의 담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6차교육과정기」에는 최초로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과 학교의 욕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즉 분권적 방식을 채택하려고 노력을 기울인 시기였다. 동아리 활동의 목표 역시 한결 유연해진 측면이 있다. 학교생활의 적응, 개성과 소질의 계발, 자주성과 책임감,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 등 학교생활과 밀접한 주제가 동아리 활동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제7차교육과정기」에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예시적 기준임을 전제하고 최대한 단위학교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동아리 활동 편성에 있어서도 학교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특별활동의 5개영역은 집단, 장소, 시기, 안내기관 등 주변 요소를 청소년 개인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그 시대적 흐름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활동의 범주를 뛰어넘어 사회성, 민주성, 공동체성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고,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제7차이후의교육과정기」에서는 폭주하는 범교과 수업의 필요와 교과신설의 요구, 역사과목의 독립, 과학수업시수 증가, 체육수업시수 증가 등 이해관계의 반영을 수용하기 위해 교육부가 최대한 방어심리를 발동, 재량활동을 시도 교육감의 지정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바꾸고 실질 재량수업시수를 축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동아리활동(특별활동) 교육과정의 변천**

<p><b>* 제1차교육과정(1954.4.20.공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 학년당 70~105시간 총시간수로 배정</li> <li>○ 영역: 세부영역 구별 없이 학생활동으로 규정</li> </ul>
<p><b>* 제2차교육과정(1963.12.15.공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 학년당 전체 학습량의 8%(주당 2.5시간) 총량기준으로 배정</li> <li>○ 영역: 홀름(HR), 클럽(CA), 학생회, 학생집회(예술, 음악, 연극 등 자율성 강조)</li> </ul>
<p><b>* 제3차교육과정(1973.8.31.공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 연간 70시간, 주당 2시간 연간시수와 주당시수를 명시</li> <li>○ 영역: 학급활동, 학생회, 클럽활동, 학교행사</li> </ul>
<p><b>* 제4차교육과정(1981.12.31.공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 연간 69시간 주당 2시간 이상</li> <li>○ 영역: 학생회, 클럽활동, 학교행사</li> </ul>
<p><b>* 제5차교육과정(1987.3.31.공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 연간 68시간, 주당 2시간 이상</li> <li>○ 영역: 학급활동, 클럽활동, 전교 학생회 활동, 학교행사</li> </ul>
<p><b>* 제6차교육과정(1992.6.30.공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 연간 34시간~68시간(1~5차에 비해 실질시간 감소)</li> <li>○ 영역: 학급활동, 클럽활동, 학교활동</li> </ul>
<p><b>* 제7차교육과정(1997.12.30.공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 연간 68시간, 주당2시간(영역별로 통합운영 가능, 실질 시수 감축 효과)</li> <li>○ 영역: 자치활동, 계발활동, 적응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창의 및 교과재량활동</li> </ul>
<p><b>* 제8차교육과정(2007년 2월 총론 확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 연간 68시간, 주당2시간(영역별로 통합운영 가능, 실질 시수 감축 효과)</li> <li>○ 영역: 자치활동, 계발활동, 적응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학교장이 CA와 HR통합권 / 창의재량</li> </ul>

활동을 교과재량활동으로 흡수하여 통합할 수 있도록 학교장자에게 권한 부여, 그 결과 보  
건교육, 성교육, 학교폭력 교육 등 기존 교과외 영역의 교육이 이루어질 전망이 불투명함

※ 자료재구성: 교육인적자원부. 2007.

### 3) 학생의 자유와 참여는 인권보장으로부터

학생은 교육적 인권을 누려야 한다. 교육적 인권이란 학생의 성격, 재능, 양심을 발전시키고 이용할 수 있으며, 정신적 욕구 및 기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학생은 사랑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natural right)”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반영한 해석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존중, 학생의 교육적 인권 즉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교육기본법제12조①항)는 법 조항과 교사의 교육적 인권인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교육기본법제12조②항의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교육기본법 제9조③항) 이는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조약 제29조에 바탕을 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개념적 관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고 조정하는 교통신호와 같이 ‘규칙의 체계’(rule structure) 속에서 이루어진다. 선도규정의 개정과정을 중시하는 것도 이와 같다. 규칙이 인권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할 때는 ‘거부의 권리’가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 37조②항과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①항의 정신은 학생생활 규정의 제정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유엔아동권리조약 제37조를 기억해야 한다.

## 5. 맺는 말

학교는 교육의 장이다. 학생징계절차의 민주화와 투명성 보장은 무엇보다 올바른 교육과 교육제도의 수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의 반영, 인권교육 강화, 학생참여의 제도화마련이 시급하며 교원의 의식전환 문제도 요구되고 있다. 인권교육의 목표 또한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그 어느 누구도 외부로부터 침해받지 아니하며 특히 국가는 침해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하여 다함께 정의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있다'는 원칙에 부응해야 한다. 이는 세계가 유엔을 통해 약속한 것이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한국도 지켜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교의 학칙과 선도규정의 실태는 부끄러운 면이 많다. 이 구조에서 교사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학생은 소외되고 학부모는 방관할 수 밖에 없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유리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칙 및 학생징계규정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다. 그 저변에는 아직도 학생을 미성숙한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등 학교 위신을 높이는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인권보장을 경시하는 측면도 있다. 의식의 문제도 만만치 않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의식의 전환을 포함하여 과감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적어도 학교에서는 유엔 아동청소년권리협약(UN Conventi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바탕으로 학생교육, 학생자치가 실현되어야 하며 학생의 참여권과 인권교육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와 단위학교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어린이헌장, 청소년헌장을 동판으로 만들어 학교 중앙현관 등에 걸어놓고 게시하거나, 유엔 아동청소년권리협약 등을 관련교과에서 깊이 있게 가르쳐야 한다. 정부도 만화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이 학교생활의 주체로서 인정받고 학교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 인권은 시혜적 측면이 아닌 권리적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 참고자료(김대유,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중고교생의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인식 조사”

〈요약〉

이번 조사에서는 학칙과 선도규정에 대한 인지도 및 제·개정 절차, 두발과 체벌 등 학생 생활주기(Life Cycle)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학교에서 지시하는 규제사항으로 두발 자르고 오기가 80.2%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최근 3년간 두발 잘려본 경험 11.2%, 두발지적 경험 56.3% 등), 여전히 교사의 학생 체벌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체벌경험 59.5%), 응답자의 21.0%가 이성교제를 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응답하는 등 아직 학교가 전근대적인 생활지도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중고생 4명 중 3명 정도는 바뀌어야 할 학칙/학생생활규정으로 ‘두발 규정’(74.1%)을 꼽고 있으며, 체벌하기(32.8%), 용의복장 규정(29.8%)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생활에 불만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고생의 55%정도는 학칙이나 생활규정을 직접 읽어보지 못했고, 중고생의 16.8%는 학교에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 개정시 학생들의 의견 청취는 27.9%정도로 취약하여 민주적인 학칙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고생의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 □

-중고생 16.8% 학칙/학생생활규정 모름, 74.1% 두발규정은 심각한 인권침해..

■ 조사기관과 조사방법

이 조사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칙과 학생 생활규정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보다 바람직한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자치연대와 (사)보건교육포럼이 2007.10.15~10.22(8일간)에 걸쳐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1,2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95% 신뢰수준에  $\pm 2.77$ ,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베스트사이트에 분석을 의뢰한 것임

- ☞ **중고생의 16.8% 학교에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이 있다는 사실 모르고 있어**
  - **학교에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이 16.8%로 조사됨**
    - 전국 중·고등학생 1,248명에게 학교에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3.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모른다는 응답이 16.8%로 나타났다. 모른다는 응답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모른다는 중학생이 17.8%로 고등학생(15.9%)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 4명 중 1명 정도인 24.5%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여학생의 9.2%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 **중고생의 44%정도가 학칙이나 생활규정에 대한 유인물, 설명을 듣지 못했다.**
    - 응답 학생들의 55.6%가 학칙이나 생활규정에 대한 유인물을 접하거나 선생님께서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학칙/학생생활규정 인지여부와 유사하게 여학생들(64.4%)이 학칙/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유인물을 접하거나 설명을 들은 경험이 남학생(46.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고생의 55%정도는 학칙이나 생활규정을 직접 읽어보지 못해**
    - 응답자의 44% 정도만이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을 직접 읽어봤다고 응답했으며, 이렇게 직접 읽어본 경험은 남학생(33.3%)보다 여학생(55.0%)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학생(41.1%)보다 고등학생(47.2%)이, 특히 여고생(62.0%)층에서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을 읽어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고생의 55%는 학칙이나 생활규정을 직접 읽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 ☞ **최근 3년간 두발 잘려본 경험 11.2%, 두발지적 경험 56.3%, 체벌 59.5%**
  - **학교에서 지시하는 규제사항으로 두발자르고 오기가 80.2%로 가장 많아**
    - 학교에서 지시하는 규제사항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0.2%가 '두발자르고 오기'라고 응답했으며, '체벌'은 59.5%로 조사되었다. 가장 응답이 높은 '두발자르고 오기'라는 응답은 고등학교(76.4%)보다 중학교(83.9%)에서, 여학생(72.7%)보다는 남학생(87.6%)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체벌'은 여학생(57.1%)보다는 남학생(61.9%)층에서, 고등학교(53.9%)보다는 중학교(65.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남고생의 22.9% 최근 3년간 선생님에게 머리카락을 잘려본 경험있다.**
    - 최근 3년간 선생님에게 머리카락을 잘려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1.2%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남학생(16.0%)이 여학생(6.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고생의 22.9%가 선생님에게 머리카락을 잘려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남학생 4명 중 3명 정도가 두발에 대해 지적받은 적 있다

- 최근 3년간 선생님에게 머리를 자르고 오라고 지시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6.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편, 남학생의 경우 74.0%, 특히, 남고생의 84.0%가 머리를 자르고 오라고 지적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두발을 잘려본 학생의 89.2% 비교육적이라고 생각

- 두발을 잘려본 경험이 있거나 지적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83.5%가 이러한 두발관련 처벌이 비교육적이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두발을 잘려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89.2%가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응답하였다.

☞ 학생생활규정 지도선생님 중 학생부장 선생님이 가장 무서워

○ 중고생의 70% 정도가 학생생활규정 지도선생님 중 학생부장 선생님을 가장 무서워해

- 그 다음으로는 담임선생님(18.6%), 선도부 선배(학생)(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부장 선생님이라는 응답은 여학생이 74.3%로, 남학생(66.7%)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인권침해로 바뀌어야 할 학칙/학생생활규정으로 '두발 규정'이 가장 높아

○ 중고생 4명 중 3명 정도는 바뀌어야 할 학칙/학생생활규정으로 '두발 규정'이라고 생각

- 학생들의 인권침해로 바뀌어야 할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명 중 3명 정도인 74.1%가 '두발 규정'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체벌하기(32.8%), 용의복장 규정(29.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발 규정'에 대한 응답은 고등학교(71.9%)보다는 중학교(76.2%)에서 여학생층(68.3%)보다는 남학생층(79.8%)에서 특히, 남고생층(82.8%)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용의복장 규정'은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남학생층(21.6%)보다는 여학생층(37.9%), 특히 여고생(41.3%)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 개정시 학생들의 의견 청취 27.9% 정도**

-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 개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3명 중 1명 정도인 33.5%가 '어떻게 개정했는지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가운데 응답자의 37.7%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회장(반장)을 불러 물어보았다', '학급회의, 대의원회를 거쳐 잘 반영했다', '설문조사, 공청회를 공개적으로 잘 반영했다' 등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했다는 응답은 27.9%로 나타났다.

○ **학생회장은 대부분 전교생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

- 학생회장의 선출방식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3.2%가 전교생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고 응답했다.

○ **응답자의 21.0%가 이성교제 적발시 처벌받는다고 응답**

- 이성교제 적발시 처벌받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1.0%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여학생(19.6%)보다는 남학생(22.4%)이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학생(14.5%)보다는 고등학생층(27.4%)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07.11.2

■ **참고문헌**

박철휘, 일제 강점기 중등학교의 학생 규율. 2003.  
정희철, 헌법 .도서출판 한울. 2002  
조석훈, 학생징계의 특성 분석.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6  
한승희, 학생의 권리에 관한 연구, 2002  
교육개혁위원회 참고자료 97-1, 학생체벌,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  
조석훈, 고등학생의 의사표현 행위와 그 제한, 교육법학연구 제 5호, 1993  
김대유, 『교육은 살아있다』. 말과 창조사. 2004  
김대유, 『학교폭력 우리 아이 지키기』. 노벨과개미사. 2006  
우옥영. 보건교육정책의 비교연구. 한국교육연구지. 한국교육연구소. 2007  
박재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교육관계법령의 충돌 및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법연구 제11호, 1999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2003  
신현직, 교육법 기본정신 구현의 주요과제- 대한교육법학회 1999년 학술대회자료집  
Hoefling, Wolfram(1988), Oeffentliches Schulwesen und Paedagogische Autonomie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토론회

## 우리가 아이들의 현재를 바꿔야 한다

2008.7.  
삼일상업고등학교 교사  
허진만 (butter92@chol.com)

### 참 좋은 말들...

•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

## 더 좋은 말들...

###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학생인권 보장)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학생인권의 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2.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 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 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3.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학생의 소지품, 가방, 필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5. 가정환경, 성격,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적채성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다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학습부진학생을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6.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인권교육 등)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이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말들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보다  
실제 **잘 지킬 수 있는** 불문법이 오히려 낫다.  
법에 합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기보다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법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

**지금, 학교 현장에는 법보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교사가 더 절실하다**

## 너무 당연하게 지켜지지 않는 일들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신호 위반이 자연스럽다.

우리는 흔히

‘기사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나름대로 합리화해버린다.

사회적으로, 상황 논리에 따라

위법을 용인하는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사회는 **‘준법투쟁’**이라는 웃지 못할 조어를 만들어 냈다.

## 지키면 오히려 불편하다?



‘버스는 인도에 50cm 이내로  
다가서서 정차해야 한다.’

‘지하철 역 정차 시간은  
1분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킬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왜? 지키면 느려지니까.

속도의 시대. 지킬 것 다 지키고는 따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에 관대하다.

교사들이 **수업과 잔무를 잘 처리하려면** 학생 인권은 뒷전이다.

경기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가 그 **‘뒷전’**의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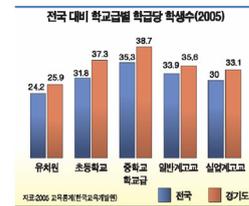
## 경기도의 문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시·도별 인구이동 집계 결과, 경기도가 **순전입 인구 197만7천527명**으로 전국 시·도 중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7년 12월 9일 통계청 발표 자료)

그러나 경기도의 학교는 인구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경기도의 답 “어쩔 수 없이”

- \* 한 사람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이끌고 진도를 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 **체벌**
- \* 한정된 교사들이 다수의 학생을 생활지도 하려면 일반인과 구분되어야 식별하기 편하므로 어쩔 수 없이 → **두발 규제**
- \* 학교의 질적 지표가 되는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등을 잘 보아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 국영수 중심의 **강제 보충 수업, 강제 야간학습**
- \* 법적으로 보장된 학급회의는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 **자율학습**

경기도의 학교들이 ‘어쩔 수 없이’를 반복하는 것은 학생을 위한 자세가 부족해서이기 때문인가? 분명 그건 아닐 것이다. 다음 내용에 동의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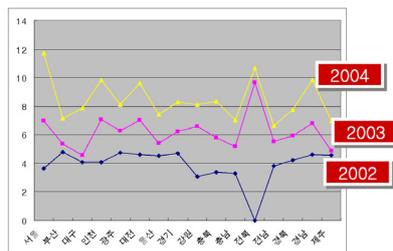
## 학교는 이래야 한다

1. 학창시절은 인생의 대기실이 아니다. 학생은 권리의 주체다.
2. 학교는 참여와 결정을 훈련하는 장이어야 한다.
3. 학교는 차이를 존중 하고 차별에 맞서야 한다.
4. 교육은 학생에게 육체·정신·경제·문화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학생은 자기 견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야 한다.
6. 학교는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보는 공간 이어야 한다.
7. 학교는 학생의 건강권을 실현해야 한다.
8. 학교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9. 학생 인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사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10. 인권 침해 신고나 이의제기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

수 년을 되풀이해 온 말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학교 현장은 개선되지 않는가?

## 어떤 사람이 교사가 되는가? 이것부터 짚어나가자.



<해마다 높아지는 임용고시 경쟁률>

자본력 있고 선택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의대/법대에 비해 교직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그러나 교사가 되는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추구하는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교직에 대한 사명감이 없는 교사를 양산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러나, 과연 안정을 찾아 교직에 나선 교사가  
학교의 인권 시계를 뒤로 돌리는 원인인가?

## 교사의 자질이 문제인가?



교사의 인권 감수성이 부족해선가?  
교사 개인을 재교육하고 연수하면 되는 건가?

아니다.

체벌의 경우 전교조 조합원 여부를 떠나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 개인의 의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의식 개혁으로 변화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학교의 구조'이다.  
누가 교사가 되든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온  
학교 현장의 작동 방식의 문제이다.

## 경기도의 교사가 되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나?

도내 여교사들 고등학교 근무 기피 중학교로...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해 1년 73.3% 감소, 가세화

2008년 1월 1일 기준 | 경기도교육청 | [info@kedi.go.kr](mailto:info@kedi.go.kr)

경기 도내 여교사들이 귀중한 업무 부담과 일선 교육 현장 속에서 동료 아줌마, 고등학교 근무를 기피, 중·고등학교를 기피한 '교사 생 불균형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현상 감소시키기 위해 고교생들이 남·여 교사로부터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은 물론, 남녀 교사간 인사 불균형, 남교사의 업무 과중 등 내부 보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 자각이다.

5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중등 교사는 모두 4만 2천 5백 36명(중학교 2만 5천 2백 44명, 고등학교 2만 4천 922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교사가 전체의 62.68%인 2만 6천 5백 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여성교사'의 중학교가 더욱 두드러지게, 여성 교사가 73.3%(1만 7천 162명)인 반면 남성 교사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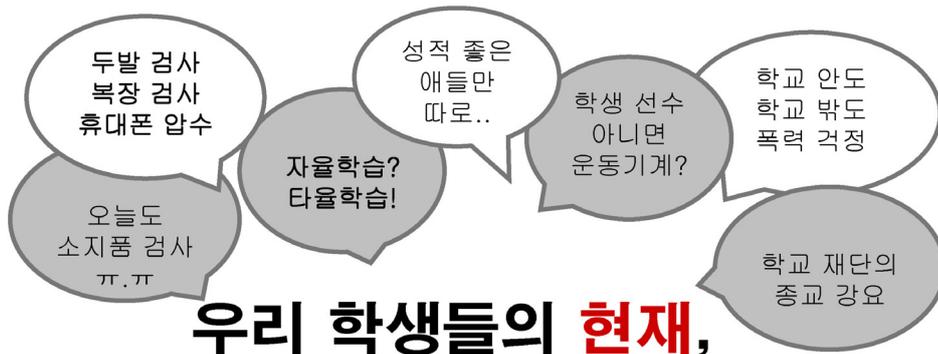
반면 고등학교는 남성 교사가 47.3%(1만 7천 788명)에 달해 상대적으로 여성 교사와 인비율에 균형을 맞추고 있다. 특히 중학교는 여성 교사 비율은 지난 2005년 71.45%에서 2008년에는 71.87%, 2009년 72.55%, 2010년 72.85%, 2011년 73.3%로 비록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행정, 학생상담, 생활지도, 야자감독  
... **쉼 새 없는 업무**
- 전통적인 교사 선후배 관계 몰락  
: 멘토링과 모델링의 파괴
- 교직 생활 전반의 **피로도 증가**  
- 고교 근무 회피,  
중학교 선호 현상 심화 (경인일보 기사)

형식적인 교무회의 : 민주적인 조직 생활을 경험할 수 없다.  
상담 등 기본적 사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자기 성찰의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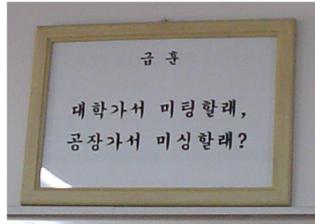
## 교사의 현재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자

- 교사와 학생 **모두를 지치게 하는 강제 학습, 조기 등교 중단**  
09:00~17:00 근무와 학습으로 교사와 학생의 건강권 확보
- 교사 대상 인권 교육의 현실화, **관리자 인권 교육을 먼저 실시**
- 학부모 참여 공간의 확대(**학부모 제안방** 등 개설)
- 체벌 안 하기 선언**, 체벌 대안 지도방식 사례 보급



**우리 학생들의 현재,  
어른들이 바꿔줘야 한다**

## 어른들이 학생들의 현재를 바꿔줘야 한다 1



학교는 20, 30년 전 이야기를 반복한다. 대학가고 싶다면 **인권은 포기하라**는 얘기. 참 깨기 어려운 논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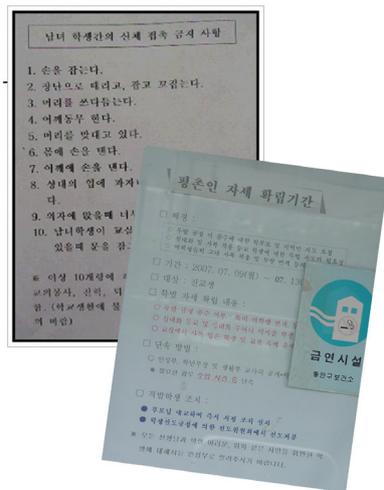
**“3년만 참으면 in서울 한다”**



학생의 선택은?

- 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저항
- ② 불만이 많지만 3년만 참고 졸업한 후 잘 살기로 맘 먹기

## 어른들이 학생들의 현재를 바꿔줘야 한다 2



- 모자는 어떤 형태이든 쓰고 등교할 수 없다.
- 허용되지 않는 머리** : 전체적으로 총을 낸 머리, 묶지 않고 길게 푼 머리, 올린 머리, 꼬불쳐서 묶은 머리
- 남학생 **금지 머리모양** : 앞가르마 타기
- 발, 앞총머리 **금지**
- 파마, 핑크 머리나 혐오감을 주는 머리(삭발, 버섯머리 등)는 **안 된다**.
- 남학생의 두발은 스포츠 및 하이칼라형으로 하되, 측두부 및 후두부 하단이 **귀를 덮거나 목 부위를 덮어서는 안 되며** 단정해야 한다. 여학생의 머리는 긴 경우 반드시 후두부 하단에 묶어야 하며 묶은 곳에서 **20센티를 넘어서는 안 되고...**
- 머리굽이 보일 정도로 짧게 자르지 **않는다**.
- 뿔머리와 옆머리는 이발 기계로 깎은 상태로 모자 착용 시 모자 밖으로 두발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 (예: 장교머리)
- 어른스타일의 머리**, 쪽진 듯 위로 묶은 머리, 커다란 핀으로 틀어 올린 머리, 옆머리가 뿔머리보다 긴 A라인의 단발 머리나 커트 머리,

## 어른들이 학생들의 현재를 바꿔줘야 한다 3

### 학생 대표의 출마조건 (복수 처리)

조 건		학교 수
(1) 품행 단정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등	138
(2) 성적 우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행동발달 상황이 우수한 학생	90
(3) 교사 추천	출마 시에는 교사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 경우	63
(4) 유급	유급사실을 제한 조건으로 두는 경우	73
(5) 징계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 학생대표 출마에 제한을 하는 경우	79
	*징계단계를 두어 (예: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마 제한) 학생대표 출마 제한하는 경우	80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중 일부 인용  
 \* 각각의 분석 총수는 학생회 회칙 189개 학교, 용의복장 규정 209개 학교, 선도규정 105개 학교이다.

### 참고자료 : 인권운동사랑방의 학칙 분석 결론

- .금지 및 처벌을 강조한 규정에서 학생이 누려야 할 인권을 정의하고 보장하는 규정으로 방향전환이 되어 한다. 즉, '하지 말아야 할 것' 일색인 규칙에서 벗어나 '...를 할 수 있다', '...을 보장받는다'는 규정이 되어 한다.
- .불필요한 학생회 대표의 출마 조건을 대폭 삭제해야 한다.
- .징계에 대한 '사면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 .학생지도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학생회로 이관해야 한다. 학교 당국의 승인 또는 재가를 필요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로 바뀌어야 한다.
- .학생회 조직에서 특정 종교의 활동을 강제하는 종교부를 폐지해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운영위의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개정되어야 한다.
- . '학생회 회칙의 효력 정지'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 .용의 복장 규정의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
- .용의 복장 규정에서 학생의 참여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 규정을 두어야 한다. 학생의 사생활, 기호와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속옷관련 규정은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 .징계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선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는다'는 규정을 분명하게 두어야 한다. 직접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갖는 것과 사전 진술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 .징계 시 학교 당국이 사전에 '징계 사유 통지'를 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심의 중에 당사자가 예상치 못했던 징계 사유가 별도로 추가되는는 안 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 .학생과 학부모에 징계에 대한 '재심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체벌 규정을 삭제하거나 현실성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 .학교마다 수십 개에 이르는 퇴학 사유는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퇴학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 .사상, 양심,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은 전면 삭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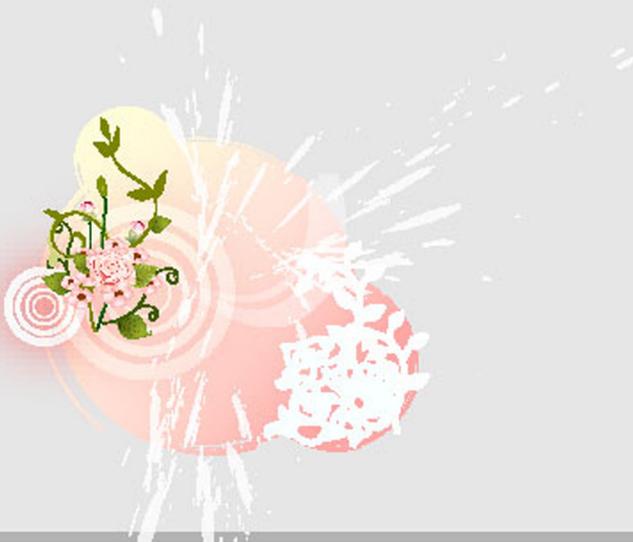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인권운동사랑방 보고서(2001) 중

교사가 나서서  
학교를 바꾸고  
사회를 바꿔야  
학생도 교사도 행복해진다.  
존재가 의식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

감사합니다

## 【주제2】 학교 내 차별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

- Ⅰ 차별과 인권에 대해 가르친 적이 있던가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Ⅰ 수업평가 -- 인권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이재익(의성공업고등학교 교사)





## 차별과 인권에 대해 가르친 적이 있던가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몇 년 전 청소년인권향상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청소년들은 체벌이나 여타의 반인권적 환경보다 차별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성적이나 가정환경 등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처지와 조건으로 인한 차별은 아동기에 치명적인 상처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학교는 이러한 차별의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직면한 적이 있는가. 어느 누구도 차별받아서 안된다는 인권의 보편적 원칙, 비차별의 원칙에 대해 교육의 주체들이 고민한 적이 있는가. 우열반 편성이 학생들의 감수성에 끼치는 영향, 가난의 문제가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 피부색이 다르고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정글과 같은 학교에 대해 학생들이 길들여지는 것을 두려워해 본적이 있는가.

그토록 많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구조에 의해, 교사에 의해, 또래 친구들에 의해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이것을 중요한 문제라고 주목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 무얼 말할 수 있을까.

### 비차별 원칙의 박제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약속한 아동인권에 관한 4개의 일반원칙 중 비차별의 원칙(2조)은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 이는 “아동 자신과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학교에서 이러한 원칙은 교육된 바조차 없는 박제된 원칙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신설된 학생인권보장 의무조항이 어떠한 구실을 할 수 있을지, 반가운 마음에 앞서 우려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가 있다할지라도 이것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구조와 사람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법은 세련된 옷을 입은 허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어떻게 학교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교육주체들은 고민해야 한다. 아동, 청소년들 대다수는 여전히 학교를 통과해 어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청소년기를 통과할지라도 이미 차별은 고착화되었다. 서울대 신입생 중 강남학군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차별은 학교에서의 차별로, 학교에서의 차별은 사회적 차별의 재생산으로 순환하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정부가 나서서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15학교자율화조치는 기존의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교육을 다양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미 일선 중고등학교는 자율이라는 명목 하에 새벽7시 등교, 새벽 1시 하교를 실시하고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방안은 우열반 편성과 사교육비 증대를 통해 성적에 따른 서열화, 능력에 따른 사회적 서열화를 고착시킬 것이다.

학교 내의 차별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을지 안타까울 뿐이다. 사실 학교 내의 차별문제는 사회적 차별문제와 떨어져있지 않다. 능력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상, 명문대를 꼭 가야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은 배제되고 소외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 이상, 학교 내 차별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무력감을 심어주는 일이지 않을까. 인권이란 것은 원래 문헌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무력감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차별의 부당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곧, 학교 내의 서열화된 질서에 의해 억압당한 개인들에게 정당하지 못한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극복할 능력을 강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경쟁사회의 문제점과 사회적 양극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부당한 것임을 인식할 때 문제해결 과제를 내부에서 제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자체를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어설픈 문제제기’ ‘버릇없고 위험한 행위’라고 치부하는 사회분위기가 이를 가능하게 할지는 미지수이다. 촛불시위 참여를 주도한 학생을 알아 내기위해 학생들 문자를 수만 개 검열하는 경찰과 검찰이 있고 수업 중인 학생을 불러내 경찰에게 넘겨주는 교사와 학교가 있는 한, 도대체 이러한 인식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말이다.

## 작고 느린 접근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앞선 제안대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해야하고 이를 바꾸기 위한 전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요원한 결론을 기대하면서 학교는 언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기대를 하지 못할 것인가.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책제목이 말하는 대로 언제까지 인권이 교문 앞에서 서성거리게 할 것인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를 교육주체들에서 찾아본다면, 작고 느리지만 접근법들은 있지 않겠는가. 이를테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15가지 권리항목』을 적용하기 위한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논의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권리항목들은 인권의 보편적 원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당연한 권리들이다. 그리고 우리사회와 학교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저버리고 있는지 조목조목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항목과 문제제기는 학교현장에서는 아직 도달하기 어려운 레디컬한 문제제기로 비춰질 것이다. 이를 테면, “성적 우수자에게만 도서관 이용을 개방하는 경우”가 성적에 의한 차별이라고 말할 때 이를 쉽게 받아들일 교육 관료는 없다. 앞서 말한 대로 이미 학교는 경쟁을 위한 전초기지이며, 사자를 기르기 위한 사육사들은 냉정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여러 유형을 한번 들여다 보자.

**☑ 학년 또는 나이에 따른 차별**

- 학생 의견을 수렴할 때 상급학년의 의견만 반영하는 경우
- 급식 순서를 정할 때 늘 고학년 먼저 먹도록 하는 경우

**☑ 빈곤학생에 대한 차별**

- 빈곤가정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혼내거나 체벌하는 경우
- 빈곤가정의 학생이나 보호자를 무능력하거나 게으른 사람 혹은 문제 있는 집 단으로 매도하거나 묘사하는 경우.
- 급식 지원 대상임을 공개하는 경우
- 수학여행, 수련회 등에서 가정의 경제 형편에 따라 장소나 교통편을 달리 정하는 경우

**☑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 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을 예비 문제아처럼 취급하거나 동정하는 경우
  - 교과서나 교사의 교육 내용, 학교의 행사 내용 등에서 특정 가족형태만을 예시로 제시하는 경우
- 예) 어버이날에 ‘엄마아빠 발 씻어드리기’와 같은 숙제를 내주는 경우

**☑ 소수 정체성에 대한 차별 : 여성**

- 여학생에게 치마 교복만 허용하거나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역할 수행을 강요

하는 등 여남 차별적인 교육이나 지도를 행하는 경우

- 남학생이나 남교사가 폭력적인 성격형이나 성매수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는 경우
- 화장실에 생리대 판매기가 미설치되어 있거나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
- 남학생과 함께 사용하는 보건실에 생리대 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여학생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 개수가 남학생 화장실에 설치된 대소변기 개수에 비해 적은 경우
- 보건실에 남학생과 여학생 이용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소수 정체성에 대한 차별 : 장애**

- 장애학생을 홀로 특수학습 반에 방치하는 경우
- 저시력 장애 등 경증 장애, 사회성 장애 등을 겪는 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필요한 교육적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나 따돌림, 위협 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 장애를 빚댄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소수 정체성에 대한 차별 : 이주민학생-인종적 소수자, 복출신 이주민**

- '공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어떤 민족은 게으르다'는 식의 고정관념을 갖고 대함으로써 이주민 학생의 자존감과 학습 동기를 낮추는 경우
- 교과서나 교사의 발언이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를 강조함으로써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는 경우
- 특정 대륙이나 국가는 미화하고, 다른 대륙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잘못된 편견을 유포하는 경우
- 타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교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 개인의 문제행동을 특정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로 일반화하여 비난하는 경우
- 학생이나 보호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체류자격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주변인에게 유출함으로써 보호자가 강제 출국되어 가족이 헤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신 국가나 지역을 함부로 공개, 노출시키는 경우

**☑ 소수 정체성에 대한 차별 : 성소수자**

- 성소수자를 희화화하거나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언어, 이성애만을 정상이고 도

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유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예) “동성애자는 변태다”, 호모, 동성연애자 등

○ 성소수자라는 낙인을 부여하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성정체성을 폭로하는 경우

○ 특정 외모나 몸놀림, 생활양식 등을 규제하고 낙인을 부여하는 경우

예) 짧은 커트머리는 레즈비언이다, 여자끼리 손잡고 다니면 레즈비언이다, 목소리가 저런 걸 보니 호모자식이다

여기서 언급한 경우들이 사회와 학교 전체를 바꿔야만 해결되는 것이라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주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 그리고 작지만 느리게 여기서 언급된 경우를 각 학교의 인권문화조성을 위한 수칙들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주체들간의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단계들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제기되어야 한다.

특히 차별유형은 다른 유형의, 이를 테면 ‘학생자치권과 참여권’등과 같은 항목처럼 길고 오래된 도전을 받지 않고서도 즉각 이뤄질 수 있는 해결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으로부터 학교인권문화조성을 위한 단계가 수립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 인권교육과 인권문화

글을 쓰는 내내, 무엇을 대안으로 내세울 것인가...고민을 거듭했다. 쓸 만한 제안을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힘겨웠다. 사실은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문화를 성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선언 외에 무엇하나 내놓을 것이 없다. 특히 학교내의 구성원이 아닌 까닭에 학교에 대한 제안의 취지와 다른 오역과 도전이 거셀 것이라는 염려도 앞섰다. 개인적으로 학부모로 만난 학교는 생각보다 완고하고 변하기 힘든 철옹성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제안은 어려웠다. 그러나 올해는 세계인이 약속한 ‘세계인권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한 살아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촛불을 목격한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학교를 믿을 수는 없지만, 학교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차별은 분명한 폭력이다. 이를 내재화하고 고정화시켜서 성숙되는 또 다른 시민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별을 멈추는 것은 당면한 엄중한 과제이다. 학교 구성원들의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모든 과제, 단계적으로, 인권교육과 인권문화 조성을 통해 풀자는 이야기, 고답적이지만. 그것을 제안하면서 마친다.

# 수업평가 -- 인권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이재익(의성공업고등학교 교사)

경상북도 교육청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의 주된 방향은 '자율, 인권, 책임'입니다. 공문을 검토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여러 자료를 찾아 공부하고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인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몰랐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많이 침해하고 살아왔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교사로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든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 제 수업을 인권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1. 수업절차

### 1.1 수업중

수업중이 올리면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학생들보다 먼저 교실로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학생끼리 다투는 것을 말리거나, 다른 교사와 급한 업무협의를 하거나, 급한 공문처리 등을 하기 위해서 잠시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꼭 교실에서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늦어서 미안합니다. --한 일로 늦었습니다.'고 사과하고 시작합니다. 늦게 들어오는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체육시간, 음악시간, 미술시간 등은 교과 특성상 정리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생이 늦는 경우는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특정 학생이 늦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특정학생을 비난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2~3분정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기다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수업마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1.2 I want to take a rest.

교실에 들어가서 칠판을 보고 그 날의 쉬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저는 1학기때부터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몸이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공부를 못할 것 같으면 칠판에 'I want to take a rest.' 라고 쓰고 쉬도록 했습니다. 보통 한 수업시간

에 2~4명 정도가 쉽니다. 1학기때는 눈치를 보느라고 그랬는지 별로 쉬지 않더니, 2학기에 오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반이 생깁니다. 2학년은 거의 쉬는 학생이 없습니다. 3학년 수업에서 방학마치고 첫주, 둘째주에 쉬는 학생이 너무 많아지고 항상 쉬는 학생만 쉬는 문제가 생겨서, 곤란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쉬는 학생들 명단을 수업일기 제일 밑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많이 쉬는 학생들에게는 쉬어서 다음 시간 수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는지 물어보고, 만약 쉬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부모님께 알려줬다고 하고 실제로 2-3명의 학생들 집에 전화해서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쉬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똑같고 오히려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매우 아픈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의사는 되기 싫다고 이야기하고, 보호자가 너희들의 힘든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질겁을 합니다. 절대로 부모님께 알리면 안된다고 펄쩍 뛩니다. 부모님이 아시면 야단을 맞거나, 체벌을 당하기만 하고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전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어 진답니다. 요즘 학생들은 부모님과 기성세대에 대해 거리감을 넘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후로도 휴식제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무더기로 쉬는 경우나 한 두 학생이 맡아놓고 쉬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 1.3 수업시작과 수업일기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서도 수업은 바로 시작되지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거나, 멍하니 앉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공부할 준비가 되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책을 펴고 공부할 준비를 합니다.

수업시간마다 반 학생중 한명은 수업일기를 기록하는데, 진도 나가기 전에 그 수업일기를 읽어줍니다. 진도확인도 자연스럽게 되고, 수업중에 교사가 확인하지 못한 분위기도 파악할 수 있고 건의사항도 간혹 나오고,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습니다. 수업일기는 돌아가면서 씁니다. 수업일기 분량은 한줄에서 무한대입니다. 날짜와 기록자를 쓰고 자유롭게 기록합니다. 수업일기 마지막 줄에는 그 시간에 휴식했던 학생들 이름을 기록합니다.

### 1.4 자기주도적 학습

#### 읽기

다음으로 지난 시간 수업 확인을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한 것에 대해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그날 새로 배울 부분을 학생들에게 따라 읽게 합니다. 학생들은 따라 읽으면서 읽기 연습을 하는데, 읽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손을 들어 표시를 합니다. 세 번정도 까지 기회를 주고 계속 모르면 표시해 두고 집에 가서 스스로 공부해 오게 합니다.

### 수업목표 정해서 평가하기

읽은 다음에는 자기 수준에 맞게 수업목표를 정해서 책에 쓰도록 합니다. 교사가 제시하는 수업목표를 참고로 해서 '한 단어 외우기'부터 '본문 외우기'까지 각자의 수준에 맞게 수업목표를 씁니다. 그 수업목표는 수업마치기 전에 스스로 평가해서 ○△X표시를 합니다. △X표시를 한 때는 그 이유를 꼭 적도록 합니다. 1학기때는 어느 정도 잘 하는 것 같더니, 요즘은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왜 평가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교사가 제안한 대로 하지 않아서 내 말이 무시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 질문거리 찾기

수업목표를 적을 때는 좀 전에 따라 읽었던 부분을 눈으로 한번 보면서 모르는 단어나 문장에 네모박스를 하게 합니다. 시작 전에 교사에게 질문할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학생은 '--쪽 --줄에 --단어[문장] 읽기[뜻]을 가르쳐 주세요(물론 영어로 합니다)'하고 질문합니다.

### 짐작하기

질문대답이 끝나면 모둠원 네명이 함께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짐작하기 활동은 돌아가면서 영어문장을 읽고 그 뜻을 짐작해서(찍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 배울 부분을 짐작하기로 끝까지 해봅니다. 하면서, 많이 어려운 부분은 다시 한번 박스를 칩니다. 제한시간을 두는데 짐작하기는 보통 3분정도 시간을 주고 끝나면 타이머가 음악을 연주합니다. 학생들은 새로 박스친 부분을 교사에게 다시 묻거나, 의견을 발표합니다.

### 토론하기

토론하기 시간에는 영어문장의 문법이나, 숙어, 화자, 시점, 글이나 이야기의 때, 장소, 교과서의 오류 등을 모둠원끼리 토론합니다. 보통 3분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이 시간에 토론하다가 다른 이야기로 빠지거나, 아예 웃고 떠드는 학생도 있습니다.

다. 이런 학생을 훈계하기도 하다가, 열심히 하는 학생을 기록해서 발표점수를 주는 방법을 더욱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나 자식들은 교사나 부모가 주목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나면 토론결과를 발표하게 하거나, 다시 질문대답 시간을 갖습니다.

### 반복하기

한 명의 학생이 한 문장을 읽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 학생은 앞 학생의 말을 반복하고, 새로 한 문장을 읽고 해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합니다. 요즘 학생들의 특성중 하나는 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하더라도 얼버무리는 것입니다. 특히, 바로 옆 사람에게도 잘 들리지 않게 웅얼거리거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특별한 해결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하지 않고 인상만 쓰거나,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이럴때 다른 학생이나 교사는 외칩니다. '안들리거든?! I can't hear you. Please, speak up!'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아지는 학생도 간혹 생깁니다. 또 친구가 발표할 때 전혀 듣지않고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거나, 심지어 방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어주고 존중하는 것이 잘 안됩니다. 이런 학생들과 깊이 이야기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교사, 친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잘 안들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친구가 말할 때, 잘 보고 잘 듣습니다. When your friend is talking, look at him and listen carefully.'합니다. 올해 수업에서만도 수백번 반복했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하다가 한명을 지명해서 방금 내가 뭐라고 했는지 말해보라고 하면, 제 말을 오해해서 제 뜻과는 다르게 말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말해줍니다. 선물은 주면 당연히 받는데, 말은 하면 왜 당연히 듣지 않고 버리는지 모르겠다고요.

### 검사하기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에 적극적인 학생 두명을 불러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교사 앞에서 읽고 해석하게 합니다. 중간 중간에 글쓴이의 의도와, 문법사항, 발음 등을 지도하구요. 두명이 번갈아 가며 읽고 해석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물어봅니다. 목표가 무엇이고, 내가 물었던 부분은 자신의 목표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모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 그러면 학생들은 다시 공부해 오겠다고 하던지, 목표에 들어가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하던지, 아니면 목표에는 들어가는데 생각을 못했으니 이번만 교사에게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두명을 검사해서 통과하면 통과증을 줍니다. '니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니? Aren't you proud of yourself?'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명이 검사받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예비로 검사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통과된 두 명이 각각 두

명씩 검사해줍니다. 다시 통과된 학생이 다른 학생을 검사합니다. 빠르면 15분, 늦으면 20분 정도면 모든 학생이 통과합니다. 모든 학생이 통과하면 박수를 치고 마무리합니다.

마치면서 학생들은 처음에 썼던 수업목표 옆에 평가를 합니다. 수업목표를 엉터리없이 적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학생인데, 목표를 읽기만 써둔 것을 봤습니다.

교사: '목표가 읽기니?'

학생: '예.'

교사: '목표를 달성했니?'

학생: (당연히) '예.'

교사: '그러면, 목표를 달성해서 기쁘니?'

학생: '...'

교사: '목표를 달성해서 니 자신이 자랑스럽니?'

학생: '아뇨.'

교사: '음. 너무 쉬운 목표였니?'

학생: '예.'

교사: '오늘은 목표를 왜 쉽게 썼을까?'

학생: '오늘 좀 피곤해서요.'

교사: '아, 피곤해서 좀 편하게 하고 싶었구나.'

학생: '예. 다음부터는 좀더 자랑스러울 만한 목표를 세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발표를 많이 하지 않은 학생을 중심으로 그 날 수업에서 새롭게 배운 것을 말해보게 합니다. 새롭게 배운 것이 없다고 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럴때는 그 날 수업에서 느낀 것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느낀 것도 없다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니...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너무나 많이 억누르고 괴성과 짜증, 자학까지 가는 학생을 보면서, 참 심각한 상태인데 부모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인권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

### 하루 10시간 이상인 강제적 학습노동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2003년 경제협력개발기구 40개국 학생들의 공부시간을

조사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정규수업시간 세계 2위, 보충수업시간은 압도적인 1위, 사교육 3위 등 모두 합치면 전세계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수업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없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동기면에서는 거의 꼴지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고,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을 하루 10시간 이상씩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 그래도 밝게 웃을 수 있는 학생이 더 많은 것이 대견할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을 그만 몰아붙이라고 가정통신문을 보내거나, 학교에서라도 충분히 쉬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교육이란 이름으로 인권보다 더 근원적인 학생들의 건강권,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 거대학교

20학급 이상, 500~1000여명의 학생, 30~50여명의 교직원이 모여 있는 학교는 모두 거대학교입니다.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많이 넓은 편이지만 그래도 500여명의 고등학생에겐 너무 좁습니다. 많은 사람을 한 곳에 모으면 사고가 나는 법입니다. 더구나, 자발적인 동기가 적고 의무적으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어서 끌려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500여명이 모였습니다. 교실이 부족해서 교사휴게실도 없고, 학생회회의실이나 학생 휴게실도 건물내에 없습니다. 동아리방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소강당을 만들어 활용하고 싶지만 공간이 없습니다.

40여명의 교직원 여러분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학교상황은 교직원 40여명이 학생 500여명을 교육은 커녕 관리와 통제하기에도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은 힘으로 수업시간에 잘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자괴감만 들 뿐입니다.

교육환경으로 보자면 시골학교가 예산도 풍족하고, 자연환경도 좋을 뿐 아니라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적습니다. 너도나도 시골학교로 위장 전입시켜서 보내야 할 텐데 그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들께서 1,000명이 모인 학교에 학생을 보내서 너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을 보고 자극받아서 그 학생을 이겨서,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우리나라는 학교와 교육계에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돈은 주지 않습니다.

거대학교의 문제가 가장 반 인권적이고 폭력적입니다.

## 숙제

대한민국 학생들은 숙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교공부만 한다면 일정량의 숙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학교와 학원, 과외, 교육방송 시청 등으로 너무나 바쁜 아이들에게 숙제는 무겁고 짜증나는 짐입니다. 몇 년 전까지 숙제를 냈지만, 제 수업시간에 다른 시간 숙제를 하고 다른 시간에 영어 숙제를 하거나 학원숙제, 학습지 숙제를 수업시간에 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숙제 때문에 정규 수업시간이 운영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의무적인 숙제를 하느라고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듣지 않는 때가 많답니다. 학교 수업에선 학원숙제하고, 학원수업에선 학교숙제 합니다. 자신이 자유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보니, 숙제도 대강대강입니다.

올해 초에 제가 가르치는 반 학생들에게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숙제는 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숙제를 내지 않는 이유가 너희가 숙제를 할 필요가 없다거나, 보충학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내봤자 글씨연습도 안되게 성의없이 해와서, 서로 기분만 나빠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그날 배운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스스로 해와서 보여주면 발표점수를 줘서 인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1학기에는 한반에 일주일에 한두명 정도 자발적으로 숙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숙제에 대해 조언을 좀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숙제에 대해서는 발표점수를 안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먹었을 수도 있고, 빠져서 일수도 있지만, 요즘은 숙제해 오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업시간중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방해한 학생에게는 숙제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 대책을 써오게 하고 있습니다.

## 주인의식이 없는 학생들

따라서, 요즘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칼이 없으면 종이를 자르지도 못합니다. 연필도 못 깎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교사들이 시킨 것만 해오도록 강요당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은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은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전체로 보면 비열합니다. 공동체 의식도 없습니다. 때로는, 무관심으로 잔인한 학교폭력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인의식 없는 노예와 같은, 자유가 없는 학생들에게 아무리 '너희가 학교의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가져라. 휴지를 주어라. 기물을 소중하게 써라.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라'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책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라고 해야합니다. 그를 위해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주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고독

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교사의 과중한 업무

이런 시끌벅적하고 열악한 학교상황에서, 주인의식이 없는 학생들 30명을 교사는 매일 4시간씩 가르쳐야 합니다. 누군가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려움과 강제, 폭언, 체벌을 참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사도 인간입니다.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 교사나 학생들이나 참으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전력질주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인간답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교권을 많이 침해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결과적인 거짓말입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이 상황의 피해자들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교사의 주당수업시수와 거대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강제학습노동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교사의 교권은 이럴 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권리는 약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강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교사의 교육할 권리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입시지옥과 열악한 교육환경, 학벌주의 사회에 대해서 행사해야 합니다.

### 3. 인권적인 수업을 위하여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권적인 수업과 생활지도, 삶을 위해서 아래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을 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스스로를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하나. 나는 학생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학생을 신체적·정신적 이유나 성적, 가정환경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학생들에게 존중받기를 바라며, 학생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유로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기를 바라며, 그를 위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참고1]

## 학교를 지배하는 관행, 관료주의 벗어나기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다. 학교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이 지배하는 장소가 아니다. 대한민국 학교는 관료(주의)가 지배한다. 교장은 교사가 아니다.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는 순간 그는 교육자에서 관료로 변신한다. 아니 승진하기 전부터 교육을 배반하고 행정과 성과, 상명하복이라는 관료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다. 그렇게 승진한 교감, 교장이 또 다른 본격적 관료인 행정실장과 연합해서 지배하는 곳이 학교이다.

‘전체 학급이 일제히 시간을 맞춰서 청소하는데 왜 이 반만 종례하나?’ 4년전에 교감이 우리반 문을 벌컥 열고 한 말이다. 아이들과 함께 자치종례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우리반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지 드러내준 폭거였다. 그러나, 나와 우리반 아이들은 극복해 냈다. 그 사건이후 우리반 학급회의 주제는 ‘교감샘의 간섭에 어떻게 대응할까?’였다. 우리반애들은 너무나도 창의적으로 해결했다. 종례를 하지 않고 다른 반이 일제 청소할 때 집에 가버리는 것으로..... .

‘40년 교직생활하면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행사를 왜 하나?’ 3년전에 학생부장이 되어서 처음으로 학생의 날에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하고 기념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교장이 불려서 한 말이다. 기가 막혀서... 당장 알고 지내던 선생님들께 전화를 해서 거의 모든 학교가 크게, 혹은 작게 행사하는 것을 알아내서 교장에게 들이댔다. 아무 말 못하는 교장. 그래서 학교급식실에서 시루떡을 해서 전교생 1000명에게 돌렸다. 양은 작았지만... 최고의 맛이였다.

학교현장에서 관료주의를 극복하려면 1.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2. 다양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관료주의만으로는 황당한 학교를 설명할 수 없다. 내가 학생부장을 하기 전부터 학교에는 체벌금지규정이 있었다. 직원회의시간에 체벌금지가 우리학교 생활지도 원칙이라고 발표하고 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학생부장이 선생님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반응을 들었다. 있는 규정을 설명해 준 것 뿐인데..... . 바로 관례였다. 학교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항상 강력한 힘을 갖는 주장이 바로 ‘예년에 어떻게 했는가’이다. 나는 규정을 정확하게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교사들이 편하게 애들 때리는 상황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어떤 때는 법과 규정, 절차이고 어떤 때는 관례이다. 그 둘을 써먹는 기준은 교장, 교감, 교사들이

얼마나 편할 수 있는가였다. 때로 충돌하기도 하지만... 법과 규정, 절차, 관례는 항상 교장, 교감, 행정실, 혹은 교사들의 편이었으며 학생들에게 유리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관료주의와 관례속에서 교사의 권리는 너무나 하잘 것 없다. 의사는 필요하면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콩팥 한쪽을 떼낼 수 있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이 일주일에 하루는 집에서 일을 거들거나 알바를 하면서 가정학습을 하도록 허용할 권한이 전혀 없다. 그런 권한은 교감, 교장도 없다. 아이들을 데리고 학급소풍을 방학중에 가려고 해도 관료제는 방해한다.

이런 관료주의를 극복하려면 자유로운 인간들이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해야한다. 당연한 것을 다시 곱씹어 봐야 한다. 전교조가 그 역할을 한다면서 나섰다. 별떡교사는 그 과정에서 얻은 명예로운 이름이다. 그러나 교사들을 교장, 교감 눈치 덜보고 편하게 만들고는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전교조도 관료화되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서명을 잘 해준다. 특히, 전교조 교사들은. 그러나 한 달 전쯤 부터 하고 있는 서명 하나는 영 지지부진이다. 다른 서명들은 제목만 보고 그냥 해 주는데, 학생인권법안 서명은 그렇게나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제기한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을 조건을 만들어줘야 서명하겠단다.

전교조가 합법화 이후에 가장 강력한 투쟁수단인 연가투쟁의 이슈들은 모두 교사들을 조금이라도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이었다. 7차교육과정, 네이스, 성과급, 교원평가 등등. 우리가 넘어서려고 했던 학교, 교육청, 교육부의 집단이기주의, 관료주의에 전교조는 오염된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었다고?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웃는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입시경쟁, 학벌주의, 강제야자, 0교시, 억압적인 학교구조에 협력하면서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된다. 최소한 위의 것들을 걸고 연가투쟁하면서 네이스, 성과급, 교원평가반대를 했으면 몰라도. 학생들을 입시경쟁으로 몰아붙이는데 협조하면서 교사들중 누가 더 입시경쟁을 잘 시키는지 경쟁시키는 것에는 죽어라고 반대하는 것은 낮간지러운 야비한 짓이다.

나를 포함한 전교조, 학교현장을 지배하는 근본원리인 관료주의, 관례를 어떻게 극복해야하나? 모르겠다. 여기서 전교조가, 교사들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모르기 때문에 체쳐두면 끝내 소멸의 길로 간다.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부터 공부해야 한다. 교사끼리 토론해야 한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학교현장에 있는 관료제 이야기 하다가 너무 많이 나가버렸다. 다시 돌아가 보면 학교현장의 관료제 극복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다. 학교문제는 학교 안에서만 고민하면 절대 풀리지 않는다. 너무나 더러운 화장실, 어두운 복도, 낙후된 시설, 경직된 관리자 등. 지역사회에 낱알이 공개해버려라. 디카로 찍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시내 한가운데서 전시회 한번 해버려라. 난리가 난다. 실제로 하지 않아도 된다. 디카로 찍어서 교장, 교감, 행정실장 모아놓고 보여주면서 시정되지 않으면 공개전시한다고 말하면 된다.

외부행사에 학생동원을 참 많이 한다. 시민체육대회에 학생동원을 한다고 하길래, 부장회의에서 '교장선생님,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물건하고 노예밖에 없습니다. 저는 학생부장으로서는 직책을 걸고 동원 못 하겠습니다.'고 했다. 분위기 싸늘해져서 동원 안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다가, 부장중에 몇 명이 그렇게 하면 일이 안된다고 해서 다시 체육대회에 동원은 아니고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참여는 무산되어 버렸다. 교사들은 교장에게 협조한다고 생각했고, 교장선생님은 민주적으로 진행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로 섭섭해져 버렸다. 서로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고 '협조'와 '민주'로 포장했기 때문이다. 관료주의는 허위와 가식을 벗고 진심을 드러낼 때 붉은 녹듯 스러질 것이다. 전교조의 관료주의도, 서로의 본 마음이 만나 부비면서 내는 온기에 사그러지기를 바란다.

[참고2]

체벌, 담배보다 끊기 쉽습니다. 교사와 부모의 체벌은 학교폭력의 거름입니다. 전교조가 학생인권을 필수조건으로 모든 사업을 할때만 한 걸음 나갈 수 있습니다.

3.19일 \*\*학교 전체 직원회의때 학생부장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거의 밑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전날 밤에 준비해서 발언했습니다. 그 뒤에 오래 알고 지내던 선배 여선생님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이것도 체벌이라?)

학생 두발 및 생활지도 관련하여 학생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두발지도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학생에게 강요를 하지 마시고 학교규정을 안내와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체벌을 하시거나 반성문을 강요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계속 지도가 안 되면 부모에게 안내 및 권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학교 체벌관련 규정을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체벌규정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 제가 개인적으로 목격한 것만 7건, 들어서 알게 된 경우는 더욱 많습니다. 이것은 체벌금지라는 생활지도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물론 체벌하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체벌을 하겠습니까? 또한 아직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벌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어쩔 수 없구나'하는 절망감에 체벌을 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즉, 교사에게 여유가 없으면 체벌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지난 8월 이후로 단 한번도 학생들에게 매를 대지 않았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체벌을 안 하니가 제가 정말로 편하고 여유 있어졌다는 것을 여러 선생님께 알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 수업에서나 생활지도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과 관계가 좋아져서 잘 통하게 되고, 학생들이 제 말을 더욱 잘 들어줍니다.

체벌이 없는 생활지도 문화를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체벌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장 교감선생님이 체벌규정에 어긋나게 체벌을 하면 그 무슨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또한 담임교사는 상당히 난처해 질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이미 오래전 부터 체벌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도교육청 생활지도 기본지침도 자율, 인권, 책임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실제 학생생활지도와 수업에서 체벌을 근절하여 학생들은 교사를 무서워하지 않고 존경하는 학교, 교사들은 여유를 갖고 참스승이 되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침부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직접 혹은 쪽지로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3]

교사가 하는 모든 교육활동은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수업이나 생활지도 등 모든 교육활동은 학생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의 교육과 부모의 양육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돕는 것이 지나쳐서 구속이나 강제, 억압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실내화를 신도록 안내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공을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은 등하교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들이 연구한, 학생들을 잘 돕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 생활지도 행위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학생들을 돕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도움을 거절하고 꽤 씩하게도 반복적으로 도움을 거절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때 교사의 도움을 거절한 학생을 때리거나, 미워하거나, 지도활동이 통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사자신이 우울해 지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교육이 실패한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때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교육의 전문가인 여러 선생님들의 진정한 교육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실내화를 신도록 지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실내 청결을 위한 것이라고 알아듣도록 말해주고 알아듣지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학생은 실내화 문제 말고 다른 심각한 문제, 즉 마음과 몸이 너무 지쳤거나 소극적인 반항을 하고 있다는 등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활동이나 부모면담이나 전문가 소개 등의 추가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도와줄때 실패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학생들 스스로가 도와달라고 할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안전한 방법은 도와줄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잘 도와줄까?', '왜 내 도움이 통하지 않을까? 언제 학생을 도와줄까?' 이런 점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4]

‘부적응’은 이제 하나의 훌륭한,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2007년 05월 16일 10시 46분 05초

‘부적응’은 이제 하나의 훌륭한,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체제에 저항하고 적응하려 하지 않는 능력.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백혈구와 같은 일을 하는 ‘부적응’자들을 말살하려는 현 대한민국 체제와 학교는 자살로 가고 있지 않은지?

전교조는 그것을 알면서도(실지로 아는지도 의심스럽지만) ‘부적응’ 학생과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자연스런 질서인 사회를 정상화하는데 앞장서지 못하고, 오히려 모이면 ‘부적응’ 학생들 욕이나 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적응’과 ‘저항’을 곤란해 하는 전교조는 희망이 없습니다. ‘부적응’하고 ‘저항’하는 학생, 학부모와 연대하여 ‘적응’하고 ‘순응’하는 학생, 학부모를 ‘의식화’시켜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학교, 사람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원칙아래, 교원평가반대나 성과급폐지나 농어촌교육살리기가 어떻게 자리매김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대회에 참석하는 것도 정말 고민입니다. 가서 여러 선생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계속 답답하고 희망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공부의 본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묻지 않고 가만히 있는 학생에게) 여러분에게 공부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공부의 본질은 여러분이 모르는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싶은 하나를 정해서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누군가가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끝없는 바닷가 모래사장의 모래 한 알 정도 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지식에 비교해 봤을 때 그 과학자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시킬 수 없습니다. 공부는 원래부터 자발적인 자유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억지로 공부를 해왔다면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혹시 억지로 한 공부 덕에 지식이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좋아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쌓은 지식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은, 나는 분명히 지불해 왔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속인 대가로 억울함, 분노, 의기소침, 무기력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억지로 쌓은 지식은 대부분 자신과 친구들, 사회와 세계를 더욱 빨리 나쁘게 만드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지식의 양 뿐만 아니라 지식의 질과 지식을 얻는 과정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고6]

## 우리반 학생이 맞았을 때 교장, 교감, 행정실, 전 교사에게 보낸 메시지내용

놀랍고 떨리는 마음으로 쪽지를 전 직원여러분께 감히 드립니다.

오늘 무슨 수업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반 학생 한명이 선생님께 맞았습니다.

“플스윙으로 머리를 많이 맞았어요.” “몇 대 맞았는 지도 몰라요” “선생님이 너무 화가 많이 나서서 못 말렸어요.” 합니다.

제가 일부러 무슨 시간 어느 선생님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게 되면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심정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폭력으로 다스려야 하는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감이 듭니다. 화도 납니다.

\*\*\*\*에 발령을 받고 속으로는 ‘\*\*이니까 아이들이 많이 거칠고 생활지도도 힘들거야. 애들이 선생님께 대들어서 맞는 경우도 있겠지’하고 생각했지만, 막상 제가 반을 맡아서 아이들과 만나보니, 너무나 맥이 없고 일부 나대는 아이들은 교사를 화나게 하려는 의도보다는 좀 튀어보려는 몸부림을 하고 있어서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벌은 공고든 특성화고든 인문고든 대한민국 모든 학교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학생들 한번 말해서는 일이 안 되지요. 하지만,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는 것이 교사 아니겠습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 학생들이 불손하게, 혹은 버릇없게, 말도 안 되게 대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게

이야기해 주시고 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학생들에 대한 체벌은 학대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사는 이러한 학대행위를 보면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온지 며칠 만에 이런 일로 쪽지를 보내어 전 직원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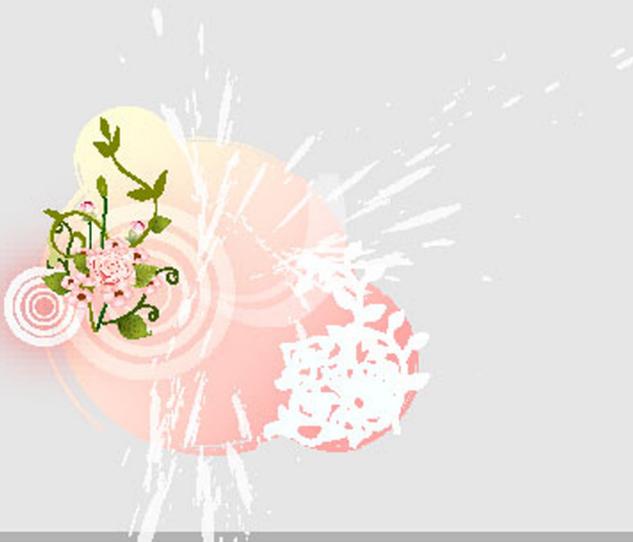
### **【주제3】 학생의 안전·건강 등 복지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 **Ⅰ 학생의 안전·건강 등 복지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안미영(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장학사)

#### **Ⅰ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

장진아(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수원지회 사무국장)





# 학생의 안전·건강 등 복지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안미영(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장학사)

## 1. 시작하며

불과 수년전만 해도 교사들은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들이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특히 저급한 냉난방 시설, 과밀학급 등 열악한 학교 시설과 환경에 대한 자조 섞인 푸념이기도 했다. 그동안 학교는 학생들을 수용하는데만 급급했지 교육활동의 효율성이나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등 복지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극히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몇 년간 냉난방 시설의 현대화, 학급당 인원수의 감소, 책걸상 교체, 학교 도서관 현대화, 화장실 청소 용역, 학교 급식실 리모델링 등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학교 환경 및 시설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단위학교별로 개선하고 지원받아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학생인권보장의무 조항(제18조 4호)이 신설됨에 따라, 학생들을 미성숙한 돌봄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교육정책이 추진되어 인권친화적인 학교 환경 및 문화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sup>3)</sup>

인권친화적인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과의 일상적인 학교 삶 안에서 인권의가치가 생동하는 학교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학교구성원의 일상생활 안에 뿌리를 내리는 학교이고, 그런 결과로 구성원의 삶의 실체가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이런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개개인이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학교내 권력 관계상 약자인 학생의 인권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인권이 상식화·보편화되는 학교를 말한다. 학생 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존재로서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① 자유권, ②복지권, 그리고 자유권과 복지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③ 평등권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세 가지의 권리가 모두 충족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나 본 주제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등 복지권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육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내용’

## 2. 학생 복지권의 이해

### □ 학생 복지권

아동보호의 관점에서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통제와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학생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본다.

#### 1) 교육권

학생은 배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교육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욕구와 사회변화의 흐름에 부합하고 감당할만한 수준의 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학생의 사람됨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자연과의 공존 등 인류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필요한 가치를 익힐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경쟁적 교육풍토의 변화, 교육의 궤도를 벗어난 지도 중단, 외부 위탁교육에 대한 점검
- 교육과정 수립에 대한 참여, 학교의 운명 결정에 대한 참여,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
-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비정규 교육활동에서의 선택, 다양한 진로 탐색
- 학급당 학생 수 축소, 안정적인 학습 환경, 학습 지원 물품 제공, 학교운영지원비 원천징수 금지
- 학습권의 일시적 박탈 최소화, 수업 시간외 조사,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중도 탈락률 감소 조치, 탈학교 선택에 대한 존중
- 동등한 교육 접근, 경제적 부담의 축소, 입/전학·복학에 대한 개방
-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출전횟수와 훈련 제한, 합숙소의 폐지와 집중 관리, 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

#### 2) 건강권

학생은 교육과정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각별히 점검하고 건강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학교 안에서나 학교를 오가는 과정에서나 건강을 해치는 조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는 일, 학생 건강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방침을 정비하고 제반 시설 확충에 힘쓰는 일 등이 포함된다.

- 학교 시설과 물품, 위생설비, 학교 주변 환경
-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치유, 상담 활동의 강화, 처벌이 아닌 치유
- 호소에 대한 존중, 최적화된 보건실
- 학교급식의 질 확보, 급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학교 매점에 대한 감독
- 적절한 건강 검진 사생활의 보장
- 운동시설, 체력의 등급화 제한, 보건 교육의 실시
- 운동의 강요 금지, 전염병 관련 조치

### 3) 안전권

학생은 신체의 안전과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학교 당국은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 학교당국은 안전을 이유로 학생의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등 학생의 다른 권리의 실현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학생관리 소홀 등으로 문책을 받거나 불명예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 문제가 뒤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안전을 위한 설비
- 학교밖 교육 시설의 안전 점검, 사고에 대한 책임
- 통학로의 안전 확보, 통학 수단 제재의 최소화
- 안전 교육의 실시

### 4)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학생은 쉬고 놀고 문화를 창조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습만이 우선시 되어 쉼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학생은 쉬, 놀이, 문화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쉬,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를 권리로서 분명히 인식하고 권리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 특히 학습부담 강화, 사교육 확대 등은 학생의 쉬,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학교 당국은 교육당국,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 시간의 보장, 쉬는 시간의 자율성, 실외 휴게공간의 확보, 실내 휴게공간의 확보
- 문화 동아리의 지원, 문화 관람의 다양성, 문화활동에 대한 제한 금지

## 3. 학생 복지권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

### 1) 학급당 인원수 감축과 소규모 학교 체제로의 전환

- 과거에 비해 학급당 인원수(인천광역시의 경우 2008년 현재 학급당 기준 인원

수 34명)가 대폭 감소되었으나 학급당 20명 내외의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른 교원수 과원 문제를 교사 임용 감축으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방안으로 해결해 나가는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같은 면적의 교실에서 70여명을 수용(?)하던 과거에 비하면 교실 공간이 한결 여유가 있으나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하고 답답한 공간일 것이다. 학생수가 적을수록 학습활동 효과는 물론 개별적인 교사와의 상호작용이나 소통의 기회도 많고 학생 상호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 2) 통학로 안전 확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 의식부터

- 주택가에 위치한 학교들은 담장 옆에 주차해 놓은 차량들 때문에 오가는 차량들 사이를 곡예하듯 지나다녀야 하는 등하교길 통학로가 늘 아슬아슬하다. 때론 교육활동 중인데도 교내로 진입해서 주차를 하거나 교문 앞에까지 주차를 서슴지 않는 주민들의 의식 속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과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배려는 실종되어 있는 것이 학교에 대한 시민 의식의 현주소이다. 최소한 학교 담장 옆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구간만이라도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하는 일을 법제화하는 것이 통학로 안전 확보의 급선무일 것이다.

## 3) 급식실의 환경 개선과 위생 시스템 강화

- 음식을 맛있고 만족스럽게 먹는 것이 인성교육의 첫걸음이라는 말이 있다. 쾌적한 환경에서 맛있게, 여유있게 식사를 즐기는 것에서부터 인권이 출발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할 것이다. 하지만 학교 급식의 현장은 어떠한가. 1000여명의 학생이 식사를 하는 대도시 학교의 점심 시간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줄지어 서서 배식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소란 속에서 서둘러 식사를 마쳐야 하는 학생들에게 여유란 없다. 학교 규모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교 건물 한 칸에 조립식 건물로 지은 급식실이 대부분이라 내부 환경이나 시설이 부실하다. 밝고 쾌적한 환경과 시설에서 여유있게 식사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 급식실을 개설하는데 급급했다면 앞으로는 급식실의 환경, 시설이나 급식의 질을 관리하여 학생들 스스로 존중받고 있다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학생들의 대화 공간, 휴게실 마련

- 학생들의 대화의 공간이 화장실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학교의 현실이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때문이다.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학교 경영자의 의지가 있어도 기본적인 학교 시설에 여유 공간이 없다. 복도의 여유 공간, 학교 건물 밖의 공간 등을 이용해 쇼파나 벤치 등을 설치하여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체육복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남녀 휴게실을 마련한다.

#### 5) 체육관, 다목적 강당 설치

- 체육관이 없는 학교. 날씨에 따라 체육수업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신설학교는 체육수업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을 설치하고 있으나 시설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기존의 학교는 체육관 시설이 요원하기만 하다. 지자체와 연계하여 평생교육 시설의 일환으로 학교에 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을 설치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6) 상담교사, 복지사, 사서교사의 정규직 배치

- 성장기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나 소외 계층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상담교사, 복지사, 사서교사가 정규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 7) 교실내 옷걸이, 효용성 있는 사물함 설치

- 겨울철 외투를 걸어둘 옷걸이가 없다보니 걸상 뒤에 걸어두거나, 바닥에 뒹굴어 옷이 더러워지는 등 관리가 어렵다. 좁은 교실 공간이나마 잘 활용하여 옷걸이를 설치하고 사물함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책가방 부피를 줄이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8) 냉온수 정수기 설치 및 화장실 온수기 설치

- 화장실 세면대에 온수가 나오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설비 공사에 대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신설교는 설계부터 냉온수를 나오게 하도록 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기존학교에는 온수기 설치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9) 학교경영자, 교육청 시설관리 공무원, 교사에 대한 연수

- 학교 교육 관련자를 대상으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학생 인권 내용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교사 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이수해야할 과목으로 법제화한다.

#### 10)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확대

- 학교내 안전사고시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보상해 주지 않는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규정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학생 상호간의 상처나, 학부모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학교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 시 가해자 유무와 상관없이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4. 마치며

인권친화적인 학교 환경과 시설을 통한 학생들의 복지권 향상은 학교구성원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에 의한 합의와 교육정책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학교 건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학생의 인권을 배려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가 건축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신성불가침의 우선 순위로 배려하는 사회 구성원의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경영자나 교육청 시설관리 공무원, 교사 양성과정이나 직무연수 등을 통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내용 연수를 정례화하여 학교구성원 모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감수성을 갖추고 학교를 설립, 경영하고 학생들을 교육한다면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 정착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 자료

- 강명숙(배재대학교 교수) '학생의 안전 건강 등 복지권 실현방안 모색'에서 발췌

### 1. 교육권 침해 사례1

- 교육목표를 벗어난 활동
  - 예체능 교육 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 0교시, 강제 야간학습, 과도한 자격증 시험 준비 등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는 경우
  - 경시대회, 일제고사 등으로 경쟁을 과열시키고 기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사소한 잘못에도 벌점을 자주 주거나 벌점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 2. 교육권 침해 사례2

- 부적절한 학습 환경
  - 학급당 학생수 축소 :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높아 개별적인 관심과 수준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안정적인 학습환경 : 학교 건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학생들이 열악한 임시 공간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경우
  - 기숙사 및 합숙소의 열악한 시설 상태나 생활 실태

### 3. 건강권 침해 사례1

- 학교환경
  - 학교시설과 물품
    - : 신체 치수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
    - : 시력을 저해하는 조도의 조명기구를 방치하거나 환풍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환경 검사와 정비가 불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 위생설비
    - : 화장실 위생 상태가 불결하거나 비누나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생리대 판매기가 미 설치 및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 교실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 : 기숙사 등 학생들이 다수 생활하는 공간의 위생 관리가 불철저하거나 너무 많은 수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
  - 학교주변환경
    - : 학교 주변의 공사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거나 분진과 소음으로 학습과 건강을 침해하는 경우

#### 4. 건강권 침해 사례2

- 좋은 먹거리에 대한 보장 미흡
  - 급식 지원 아동에 대한 공개나 낙인, 차별적인 시선 등으로 급식 지원 신청을 꺼리게 만드는 경우
  - 학교 외에 다른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
  -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 급식 식단을 짤 때 학생의 의견 및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 급식비 미납 학생을 공개하거나 공개적으로 독촉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영양 담당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영양을 고려한 식단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 급식 식단만 공개되고 원산지나 식재료, 식재료의 질 등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
  - 위탁 운영 시, 급식업체 선정 과정이나 운영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 급식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전문 인력이나 장비 부족으로 위탁급식업체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
  - 학교 매점에서 안전성이 검증 안 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급식 순서를 정할 때 늘 고학년 먼저 먹도록 하는 경우
  - 식사시간의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는 경우
- 정신 건강에 대한 배려 부족
- 몸이 아픈 학생에 대한 배려 부족

#### 5. 건강권 침해 사례3

- 부적절한 건강 검진
  - 신체검사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나 학년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거나 문진 위주로 이루어지는 등 학생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부적절한 검사 장비로 건강 검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 체육관 등 공개적인 장소나 옆보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신체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 건강 검진 시 파악되는 정보가 함부로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경우
- 건강 촉진 활동의 부족
  - 체육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 비가 올 때 대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

- 학생의 체형과 특성에 맞는 운동 기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장애학생, 여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나 체육 교육이 부재한 경우
- 강제 격리 조치
  - 체력 단련, 비만 치료 등을 명분으로 강제로 운동을 시키는 경우
  - 비만 특별 관리반을 두고 특정 학생을 포함시켜 낙인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우
  - 전염병 환자 발생시, 별다른 대책 없이 학생을 격리시키는 방식으로만 처리하는 경우

## 6. 안전권 침해 유형1

- 학내 안전 사고 예방책 미비
- 학교 밖 교육시설 이용 시 안전시설 미확인 및 학생에게 책임 전가
- 안전교육 미흡
- 등하굣길 통학로 미확보 및 안전 대책 미비
  - 물리적 접근 어려운 경우
  - 통학로 안전 기준 미확보
- 적절한 통학수단 미확보

## 7. 쉼 권리 침해 사례

- 쉬는 시간의 보장
  -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등교시간을 함부로 당기거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경우
- 쉬는 시간의 자율성
  -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향유하는 놀이의 유형이나 놀이 공간에 대해 부당한 통제를 가하는 경우
  - 쉬는 시간에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음악재생기를 통제하거나 빼앗는 경우
- 실내외 쉼 공간의 확보
  - 학교 운동장이나 교정에서 편히 쉬거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교 운동장을 학생 선수의 훈련 장소로만 전용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학생의 놀이 공간을 빼앗는 경우
  - 편히 쉴 수 있는 실내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8. 놀 권리 침해 사례

- 문화 활동을 하는 동아리의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문화 동아리의 활동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 동아리 활동 공간 및 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동아리실 열쇠를 교사가 갖고 있는 경우
- 소음 방지 설비를 갖추지는 않고 동아리가 연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경우
- 학교나 학급 차원에서 문화공연 관람을 결정할 때 학생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 값비싼 공연을 의무적으로 보게끔 하여 학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 학생이 가진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유형의 문화만 관람하는 경우
- 극장, 유원지 등 학생의 교외 놀이 활동에 대해서도 출입 금지 등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
- 운동부가 아닌 일반 학생은 체육관 사용 금지하는 경우

##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

장진아(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수원지회 사무국장)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떠올리는 순간 답답함이 먼저 밀려온다. 학교 내 학생 인권의 벽은 해를 거듭 할수록 점점 더 높아만 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요즘 학교에는 살아있는 학생들이 없는 학교가 많은 것 같다. 일제고사, 사설모의고사, 학교성취도 평가 등 학생 성적을 학생 간, 학교 간, 지역 간 서열화하여 공개하면서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학생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복장, 두발 등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학교 분위기는 여전하고 0교시를 비롯한 방과 후 학교와 야간강제자율학습으로 학생들은 심야까지 삶의 주체성을 저당 잡히고 교실 좁은 공간에서 소중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

학생들을 옥죄는 성적 지상주의와 입시 경쟁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비롯되어 학생들의 교육 평등권은 상실되고 3% 성적 상위권 아이들만을 위한 특목고와 명문대 진학이 학교 교육의 전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전인교육을 위한 배움이나 학생의 인권은 점점 더 황폐화되고 있다. 피폐해진 학교 풍토는 학생들의 폭력을 조장하고 있고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인 교사 체벌이 증가하고 벌점제와 흡연 3번으로 퇴학을 강제하는 것이 당연한 학교생활규칙이 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 역시 심각하다. 질 좋고 안전한 학교급식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논란, GMO 농산물 수입, 위탁급식 추진 법 개정 등으로 한낱 꿈으로 간직해야 할 형국이 되었다. 이렇듯 학생 인권 침해가 다반사인 교육현실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학생인권 조항이 신설되어 교육관계자들이 함께 머리 맞대고 한줄기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니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 어른들이 학생의 인권이란 창으로 우리 교육 현실, 학교의 모습을 제대로 볼 기회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것이 교육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되어 아이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길 간절히 희망한다.

### 학교 내에서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2년 전 부터 학교운동장에 인조 잔디 조성이 붐이다. 정부가 운동장 개선 사업을 통하여 아이들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

고 있다. 그런데 인조잔디를 밟고 뛰어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날씨가 덥거나 비오는 날에는 고무 타는 듯한 냄새가 많이 나서 머리가 아플 정도라고 한다. 인조잔디의 불쾌한 냄새와 고무 칩의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 중독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실제 전수조사 결과 43개 학교에서 안전기준치 미달로 99% 전원 교체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학생 비만 등으로 운동이 더욱 절실해지는 요즘 학교운동장이 좁아지고 있어서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가 안 되는 학교가 많고 운동장이 없어지는 학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무엇보다도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 심야 학원 등으로 잠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본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0교시로 일찍 집을 나선 후 심야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면 새벽 두시가 넘는다. 잠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교 수업시간엔 자고 자율학습시간엔 학원 숙제를, 심야 학원에선 선행학습을 한다. 수면부족으로 인한 학습 의욕 상실은 수업태도와 직결되어 수업 자세 불량이라는 죄목으로 교사 체벌까지 벌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또한 0교시,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이 적지 않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과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고 일부 학교에서는 0교시에 학교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어서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0교시와 강제적인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으로 대표되는 4.15 학교 자율화 조치는 예전에 비합법적이어서 학교마다 암암리에 시행하던 입시 경쟁 교육을 양성화하였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이미 교육의 철학이나 목적도 없이 학생들을 옥죄고 있다는 의미로 '미친 교육'이라고 일컫고 있다. 미친교육을 바로 잡아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다.

또 우리 학생들의 건강은 안전한 먹을거리에서 보장받아야 한다.

0교시로 인하여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심야학원에서 부실한 저녁을 때우는 것은 불량햄버거나 컵라면 등이다. 학교 매점이나 학원주변의 편의점등에서 판매하는 불량햄버거나 가공식품들은 저가로 대량 판매하면서 아이들 입맛을 이미 길들여 놓았다. 점심과 저녁식사는 위탁급식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포장 도시락으로 성장기의 영양공급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연장이고 식재료의 질은 기초적인 건강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안전하다는 의미나 기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학교에서 학교급식이나 매점에서의 안전관리 책무성은 식중독만 발생하지 않으면

학교관계자들은 모두 안전하다고 한다. 한마디로 당장 식중독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학교급식이나 매점의 불량식품들은 모두 안전한 식품으로 둔갑한다. 식재료의 유해성 논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 위험쇠고기, GMO 유전자 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식재료 사용여부에 대하여 교육당국이나 학교 관계자들의 진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어느 학교에서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논란되자 그때부터 식단에서 쇠고기는 완전히 사라졌고 두 달 동안 쇠고기 사용을 안했다면 그 이유와 쇠고기 대체 식단을 공개하고 달라진 식단을 보여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사라질 때까지 쇠고기 사용 안한다는 일방적인 공지만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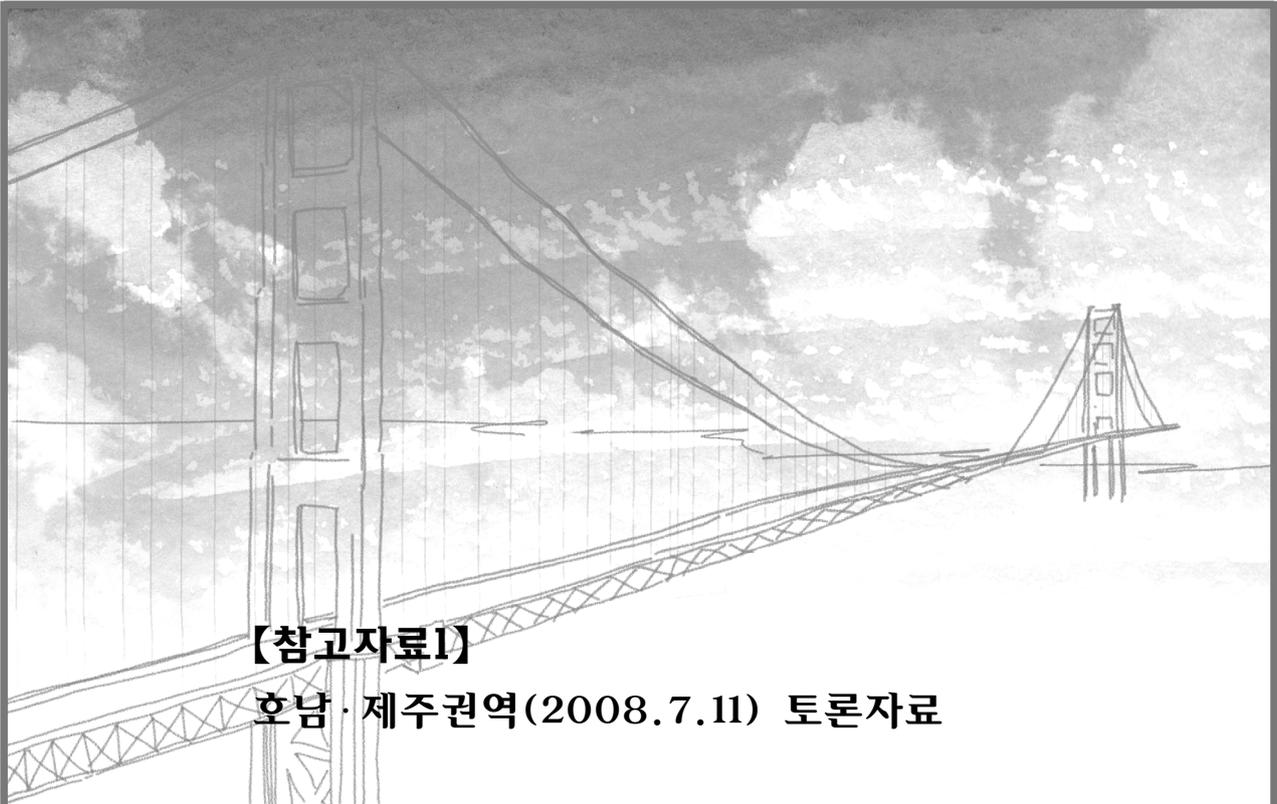
학교 급식도 학생들의 알 권리를 바탕으로 신뢰가 형성된다. 가끔씩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이 위탁급식인지 직영급식인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 평가 설문은 요식행위에 그쳐 학교 급식에 대한 불만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라는 게 학생들의 의견이다. 납품업체와 학교 급식 관계자 실명제를 공개하고 식단과 영양 구성, 식재료의 원산지등을 학교 게시판에 공개하여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학생들과 소통하여야 한다.

학부모상담실에는 학교폭력건과 학교시설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피해 민원이 끊임없다.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상업무를 공적인 사회보험 수준으로 전환하고, 기금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 안전공제회는 공적인 사회보험 수준을 언급하기엔 미흡하다. 학교의 모든 교육적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공제회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학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공제회 보상 절차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모르고 자부담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문턱 높은 행정편의주의와 사고 은폐, 축소, 책임회피나 책임전가로 인한 도덕성과 책무성 결여, 그리고 보상 범위의 한계로 인하여 건강의 완전 회복을 위한 보상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후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도 만만치 않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폭력 가해자라는 예견 하에 두 교사가 여러차례의 생활지도가 있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까지 개최하였으나 학교측은 가해자라고 확실하게 규명을 못한 채 그냥 마무리를 하면서도 과정상 발생했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학교 측의 후속차원의 교육적 행위가 없었던 사례도 있다. 안전사고로 인한 2차 인권침해를 줄이고 학생의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 관내라도 안전사고 처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 학생들이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인권이란 의미가 각 교육주체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자주 느낀다. 헌법이나 교육과 관련한 법 등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교육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시행과정에서 해석에 따른 각 주체의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있거나 관계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2차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각 주체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이 미약하고 특히나 당사자인 학생 자신이 정작 자신의 권리를 모르거나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사실과 교육 주체 중에서 최대 약자인 학생에게 권리를 우선 부여하고 의무를 바라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다.

따라서 학생회 법제화나 학생 자치권 보장 등으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교육과정에 편입하여 학생의 권리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과정부터 자신의 권리를 알게 하여야 하며 자라는 과정에 따라 교육해야 한다. 교사는 교원양성과정에서 필수화해야 하며 이후 교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일정기간 마다 연수를 통하여 재교육해야한다. 그리고 어느 사회든 복지정책이 선진화되려면 예산지원은 절대적이다. 특히 학생의 건강과 안전권은 어느 정도 재정지원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교육주체들이 모여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교육주체의 인권이해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면서 점차 학교 변화를 시도한다면 적어도 우리 학생들에게 그나마 부끄럽지 않을 수 있기에 이 자리를 희망으로 본다.



**【참고자료1】**

호남·제주권역(2008.7.11) 토론자료

**【참고자료2】**

대구·경북권역(2008.7.15) 토론자료

**【참고자료3】**

충청·강원권역(2008.7.17) 토론자료

**【참고자료4】**

부산·울산·경남권역(2008.7.18) 토론자료



## 【참고자료1】

### 호남·제주권역(2008.7.11) 토론자료

- Ⅰ ‘학생 인권 보장’ 조항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제안과  
“학생의 자유와 참여” 보장 방안  
현병순(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 Ⅰ 참여의 경험과 지속가능한 발달  
김세영(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Ⅰ 학생의 자율과 참여를 통한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기노확(정암초등학교장)
- Ⅰ 학교 현장에서 생각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만들기  
임동헌(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 Ⅰ 학교 만들기  
전재의(청소년 활동가)
- Ⅰ 학생의 안전·건강 등 복지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최명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 ‘학생 인권 보장’ 조항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제안과 “학생의 자유와 참여” 보장 방안

현병순(전교조광주지부 수석부지부장)

## 1. ‘학생 인권 보장’ 법 조항의 신설을 반기며

학교 환경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간 교육 관련 단체, 학생인권 관련 단체와 몇몇 국회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학생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7년 12월 14일 [초중등교육법]에 제18조 4항으로 「학생의 인권 보장」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신설 조항은 이미 올해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만 합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와 시민 의식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의식이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도 그간 별 문제 제기 없이 행해져오던 각종 간섭과 규제에 대하여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심심찮게 봅니다. 가장 보수성이 강하게 남아있다고 하는 학교에서 더 이상 관행 데로 ‘유지’할 수만은 없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더러 구성원간의 조정을 통해 진전을 이루는 모습도 보입니다.

신설된 법조항은 이러한 학교 내에서의 살랑거리는 움직임에 급진전을 이루게 할 수 있는 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도 이런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특하면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는 교육청은 이 사항에 대해 어떤 홍보나 안내문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교육청의 직무유기입니다. 이 조항이 발효된 올 3월 1일 이후 최근에도 광주지역에서는 이 조항에 위배되는 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홍보 학생 동원 계획, 전국의 인터넷과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던 송원여상 사건들이 그것입니다.

이제 학교를 변화시킬 법적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교육관련 기관을 비롯한 관련 정부기관 및 그간 이 내용의 법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제 관련 단체 및 개인들, 학교의 구성원들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이 조항의 사회적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학교가 인권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말이지요.

## 2. 학생의 자유와 참여 보장 방안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4개의 일반원칙 -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상의 원칙, 아동의 생명과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15가지 권리 항목」에서 항목 별로 열거된 위반 유형들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학교 상황을 견주어 볼 때 우리 사회의 학교 상황이 얼마나 ‘인권’과 ‘통’하지 않는지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학생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저도 얼마나 많이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여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학생인권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지 얼굴이 붉어짐을 느꼈습니다. 또 학교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깨닫고 변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교육에 대한 제반 권리, 학생 자치와 참여, 신체의 자유, 사상과 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 정보의 보호, 건강권,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 등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과제들은 줄줄이 낮이 익은 민주적 제반 권리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곳이 바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 현장입니다.

교사나 학부모들, 교육관료들의 세대는 마치 병영과도 같은 학교문화에서 오로지 ‘교과 공부-진학-성공’이라는 단선적인 목표아래 다른 모든 욕구를 잠재우며 교사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으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사고’가 ‘경험’을 뛰어넘기란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학교와 교육의 문제로 가면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구와 자유로운 상상력이 아이들을 망칠까봐, 학교의 분위기를 흐려 놓을까봐 노심초사합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는 학력과 학벌 위주로 줄을 세우고, 사회양극화의 심화가 곧바로 교육양극화로 되물림되는 현실에서 학교 민주화 - 학교 구성원의 인권 존중에 기반한 자치, 민주적 운영 구조와 체계-로 눈을 돌리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칫 학교의 순위를 낮추는 원인 제공자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교 간, 개인 간 경쟁을 한층 부채질하면서 학교는 ‘경쟁 지상주의’로 더욱 강고히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은 더욱 많은 시간을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 동아리 뿐만 아니라 자생적인 교사 동아리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동료 학생들, 동료교사들 간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학생의 자유와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 보다 근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교육의 의미” “학교의 존재 의미”의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감성적 측면의 증

진과 아동기와 일생이라는 시기의 측면에서 지적, 사회적 그리고 실질적 가치 간에 적절한 균형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에 대하여 전체적인 접근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의 축적, 경쟁의 촉진 및 아동에 대한 과도한 업무의 부담에 초점을 맞춘 교육의 형태는 아동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대학 입시를 위해 주어진 지식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고, ‘학교’는 자신의 점수와 등수를 확인하며 교육기관 졸업을 인증해주는 곳으로 전락한 듯 합니다. 유치·초등·중학·고등학교 졸업장은 마치 한문 급수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자신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곳으로 더 이상 인식하지 않습니다. 성적에서 뒤쳐진 학생들은 학교나 선생님이 자기 질문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학교가 입시와 경쟁에 매이게 되면서 학교와 학원은 그 성격을 구분하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삶에서 벗어나버렸습니다. 행복도 꿈도 잠시 미루어 놓도록 강요됩니다.

삶을 교육 속으로 가져 와야 합니다. 학교에는 오로지 교과 학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급생활, 교과 시간의 모둠활동, 수행평가, 동아리 활동, 취미생활, 축제, 학생회 활동,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연대 활동 등 학교 안팎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장려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은 활동의 주체가 되어 과정들을 경험하며 성장해 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결정으로 이끌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로서는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학생들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체계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광주지역 각급 학교의 학생회는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학교는 미약하나마 학부모를 학교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이 되어 학교의 제반 활동에 의견을 제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학생회도 제대로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배제되어 있어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더구나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명목상으로라도 존재하던 학급 자치시간조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아리 활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할 시간이 없고, 공간이나 물질적 지원 등이 없다면 광주지역 학교의 경우 춤이나 밴드 동아리가 몇 개 학교에 있을 뿐 거의 없습니다. 이것들은 학생 문화의 빈곤, 축제 내용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 활동이 보장되고 학교 운영의 한 주체로서 교사와 학부모들과 한 자리에 앉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과 책임성 등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장려되고 여건이 조성된다면 아동·청소년들의 문화가 훨씬 풍요로워지고, 삶이 행복해지며, 학교가 한층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복장, 두발 등을 담은 학생 생활 규정 및 교칙 등을 「학생의 인권보장」 조항에 맞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물론 학교 관리자와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민주적인 의견 조율과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학생은 이래야 해” 하고 학생의 이미지가 경험으로 굳어져 온 어른 세대, 그리고 통제와 지시 위주로 대하던 습성이 단시일 내에 변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더 많이 변화가 요청되는 곳은 당연히 어른들과 학교 당국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명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학생의 표현에 대한 검열이나 통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신발의 색깔과 양말 색깔, 교복 안에 입는 폴라색이 흰색과 검정, 회색을 벗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이 말하듯이 성적을 떨어뜨릴까요? 과연 무엇을 위해 필요로 했던 규제인지 역사적 맥락을 따져보고 지금까지 학생생활들을 규제해 왔던 많은 내용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주체들간 활발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적인 절차 이후 과도기적인 상황을 결달 마음의 태세도 준비되어야 하겠구요.

### 3. 「학생의 인권 보장」 조항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경로 제안

마지막으로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방법을 제안해 볼까 합니다.

교사 및 학교가 평가의 대상으로 거론되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학교는 울타리 안에 비교적 안전하게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교육이지만 가장 진보적으로 변하지 않는 분야도 교육입니다.

사회가 교육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와 학생의 건강권을 연관시키며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인권, 건강권, 교육과정 선택권, 자치와 참여권,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제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관심을 쏟고 연대의 노력을 기울여주었으면 합니다.

중앙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정부기관, 교원단체, 인권단체들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여기서는 광주지역에 대해서 제안해보겠습니다.

「학생의 인권 보장」의 첫 번째 경로로 광주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 관련 정부 기관, 청소년 및 시민사회단체, 그 밖의 이해 당사자나 관심을 가진 단체'들이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 협약을 맺고 이를 함께 실천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협약을 맺은 제 기관 및 개인들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데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과정을 점검해 나간다면 진전이 있으리라 봅니다. 지역사회에서 맺어지는 사회협약이 학교 단위로도 점차 넓혀져 나간다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지속성을 띄기 위하여 중앙차원에서처럼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학생 권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06년 어찌면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보장을 담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시의회에 상정하기도 전에 좌초되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당시 「광주광역시 학생 권리에 관한 조례(가칭)」는 “학생의 권리에 관한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및 학교 등과 교직원 등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인권 보장과 신장”에 그 목적을 두고 ‘교육 받을 권리’(제1장), ‘자치에 관한 권리’(제2장), ‘문화 및 복지에 관한 권리’(제3장),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제5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제6장),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제7장), ‘학생 인권 보호 기구 설치 및 인권 교육·연수’(제8장) 등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칙으로 ‘학교의 장은 사설교육기관이나 수련원 등에 학생을 위탁하여 교육할 시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학교는 이 조례안에 맞추어 제 규정을 2006년 8월말까지 제·개정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주광역시 학생권리 조례(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4항을 설명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15가지 권리항목’의 내용을 거의 포함하고 있습니다. 15가지 권리 항목에 비추어 2006년도의 조례(안)을 검토, 수정·보완하여 조례(안)를 만들고 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처럼 광주지역의 구체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 협약 체결 및 사회 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을 해 나간다면 학생 인권 신장과 학교의 변화가 진전되어질 것입니다.

# 참여의 경험과 지속가능한 발달

김세영(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참여를 조성하는 분위기가 없는 사회 즉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법도, 서로 다른 점에 대해 타협하는 법도, 건설적인 대화도 이끄는 법도, 자기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해 책임지는 방법도 모르는 사회는 중장기적으로 치르게 될 대가를 고려하여 반드시 참여의 기술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 2003년 유니세프 세계아동현황보고서

## 1. 참여와 소통이 꽃피어야 할 시절

공교롭게도 몇 달째 이어지는 촛불집회가 참여와 소통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 보기 드물게 전 세대를 아울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제공하는 자원활동이 100일을 넘기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마치 새로운 국민 여가활동의 발견처럼 여겨진다. 이런 '긍정성'은 원하는 일이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것과는 별개다. 물론 건강할 수 있는 권리는 중요한 사안이고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쉽사리 기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들은 즐거운 학습을 한 기억만은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들과 관련된 문제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표현하였으며 앞으로도 다가오기 마련인 공동의 어려움을 함께, 즐겁게, 지혜롭게 넘어가는 데 귀중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일은 청소년들의 자기표현과 참여였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어른들에만 허락된 일은 아니다. 일찌감치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알리고 소통을 모색하며 연대의 장에 활발하게 모습을 드러낸 일은 훌쩍 자란 우리들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이런 소통과 모색의 광장에 섰던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귀여운 아이들에게는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아무 문제없는 환경을 물려주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아마도 아이들은 부모가 없을 때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저항을 해야 할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찌감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소통과 참여를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닐까?

## 2.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

발달심리학자들에 의하면 10대 중후반정도가 되면 신체적, 인지적으로 성인과 다

르지 않은 성장을 보인다. 오히려 신체발육과 성적 발달은 포함한 성장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속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973년부터 1993년까지 20년간 평균신장의 증가 정도는 남아의 경우 14세에서 10.87cm, 여아의 경우 11세에서 무려 12.24cm에 달하였다. 사춘기 신체발육의 가속화는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 영양, 심리적 보살핌 등에서 더 좋은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인지적 발달은 10대 초반에 형식적 조작사고가 가능해진다. 이 시기 사고의 첫 번째 특징은 실재론적인 아동기 사고의 한계에서 벗어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가설설정능력이 시작되면 가능성이 전면에서 표출되어 먼저 가능한 사태에 대한 이론을 설정하고 가능한 것으로부터 경험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사고가 진전하게 된다. 가능성에 대한 가설 설정 능력은 물리적 사태에 대한 과학적 사고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정치, 종교, 철학 등 전 영역에 걸친 이상주의(Idealism)으로 확장된다. 두 번째는 여러 명제간의 논리적 추론을 다루는 명제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명제적 사고란 'A인 동시에 B', 'A이지만 B는 아님', 'A도 아니고 B도 아님'과 같은 세 개의 명제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해 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추상적이며 융통성 있는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아동과 청소년에게 '눈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는데 신체 어느 부위든 둘 수 있다고 가정하고 어디에 둘 수 있는지 그려보라'고 하면 아동은 실재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원래 있는 눈 사이에 그려넣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머리 꼭대기 끝에 그려넣거나 손바닥에 그려넣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들은 주어진 가설적인 명제에 대해 보다 추상적이고, 융통성 있는 창의적 반응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3. 아동의 발달과 교육

1859년에 태어나 1952년 사망한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듀이는 철학, 심리학, 교육학은 인간의 본질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 듀이는 당시 발달학자들이 '천성(Nature)'를 강조한 반면에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근본적으로 듀이가 생각한 발달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발달의 궁극적 목적은 근본적으로 사회 문화적 관습과 가치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깨달을 때 성장하고 사회는 발전한다는 것이다. 지적성장을 위해 듀이는 비판정신의 발달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으며 학교 자체는 살아있는 사회 제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삶의 전형적인 조건들을 학교에 옮겨 놓지 않으면 아동이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에는 아동의 사회적 참여를 촉구하는 사회적 목표가 있고 아동에게는 사회적으로 건전한 목표를 추구하려는 생득적 경향성이 있으므로 교

육자가 할 일은 아동의 생득적 경향성이 사회적 목표를 향해 체계적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4. 갓출 수 있는 만큼은 갖춰진 제도

여러 세대에 걸친 학자들의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은 신체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자신들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주장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어른들도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제도 중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회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아직까지도 형식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봉사활동 제도의 시작은 그랬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기르게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봉사활동의 중요한 가치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 옹호와 연대'는 현실 참여에 대한 그럴듯한 명분이 되고도 남는다. 아동과 청소년도 권리 옹호의 대상이므로 봉사활동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과 관련된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을 위해서 작은 시도라도 할 수 있는 정당성은 갖추어져 있다. (과거 광주시내의 모중학교에서 안전한 통학로, 체벌 등의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교과목과 연결지어 활동하였던 것은 이미 사회참여의 고전이 되었다.) 그러나 어떤 명분도 시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버리는 '초현실'적인 현실에 부응하여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청소년들의 현실 참여는 대체로 문서상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나 규칙을 만드느라 애쓸 필요도 없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내용만 제대로 운영한다면 청소년들의 권리 옹호는 절반은 보장되는 셈이다.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도전으로 채워져야 한다.

#### 5.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청소년들의 지속가능한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교육이다. 지난 6월 26일에 있었던 제 2차 유네스코 아시아청소년한마당의 개회식에서 라오스 참여발전훈련센터(Participatory Development Training Center) 소장 쏘뱃 쏘폰(Sombath Somphone)은 기조강연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교육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그가 제안한 개발 모델은 '경제, 환경, 문화, 정신적 건강'의 네 분야가 조화롭게 인간의 사회와 삶을 지탱하는 것이었다. 이 조화로운 모델의 기초에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은 스스로 개발과정에 참여하고 부모와 조부모도 교육과정의 일부로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따라서 누구도 현재의

삶에서 유예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는 라오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그들이 변화의 촉진자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자리 잡도록 하였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시각과 능력에 합당한 역할을 찾아내고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라오스에는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조금씩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양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연간 기획되고 진행되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이 라오스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 여가활동, 봉사활동 등은 단지 ‘참가’만 할 뿐 ‘참여’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 단기간 내에 실적과 정답만을 교육의 결과로서 요구하기 때문에 천천히 과정을 따라가며 변화를 이루고 즐길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을 요청할 때에도 그 활동이 필요한 사회적 맥락을 보여주기보다 봉사자들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완수해 내기를 바라는 적이 더 많다. 참가자들의 문제의식과 제안으로 프로그램이 늘 변해가는 유기체로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것일까?

요새는 가정과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 단체에서도 청소년들을 과잉보호한다. 그래서 청소년 단체와 기관에서는 발달특성, 시대적 요구, 교육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뭔가를 성찰하고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대신 이미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 참가자가 해야 할 고민과 성찰까지 마친 ‘완결된’ 프로그램을 내놓기가 쉽다. 그동안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획한 나에게서 큰 의미가 있었던 것도 같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무엇을 느끼긴 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청소년들과 오랫동안 부대끼며 상호작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며 결국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프로그램은 참 낯설어 보일 것도 같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청소년의 표현과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며 자신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건강한 참여가 가능한 ‘열린 프로그램’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 6. 청소년과 함께 현재를...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성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자리는 참 민망하다. 이미 잘 차려진 밥상이 있는데 숟가락을 주지 않고서 맛있게 먹으라며...

요약하자면 청소년들의 참여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도화된 특별활동 즉 자치활동, 봉사활동과 같이 참여를 연습하는 시간을 ‘법대로’ 지키면 된다.

아울러 이미 결론까지 다 짜여진 활동에 맹목적인 참가만 요구하지 말고 문제의식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자신들의 삶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참여를 배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송명자(1998). 발달심리학 서울 : 학지사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2003). 청소년운동, 혁신을 위한 도전. 서울:도서출판 청협
- 이민희, 정태연 역(2005). 발달심리학 거장들의 핵심이론 연구(Ross D. Parke A Century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서울:학지사
- Sombath Somphone(2008). Interdependencies between Edu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제 2차 유네스코 아시아청소년포럼 기조강연

# 학생의 자율과 참여를 통한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기노확(광주정암초등학교장)

## 1. 들어가며

민주사회가 발달하고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증가하면서 과거에 비해 인권영역과 내용이 확대되었고, 인권적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갈등 또한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이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인권적인 문제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학생의 인권보호에 관해서는 헌법과 교육관계법, 국제조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물론이고 학생의 인권 존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서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학생의 의무 규정도 추가하여 교원의 교권과 균형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작금의 인권의 대상은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학교내 인권을 논할 때에 학생을 위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교화와 훈육의 대상인 약자**’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총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권의 개념과 인격적 상대성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학교에서 보다는 각종 매체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인권교육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권이란 무엇이며,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학습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또한 인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확대되어 왔고 현재의 인권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 2. 학교의 인권친화적 환경조성 방안

### 가. 자율과 참여 중심의 인권에 대한 학생교육 강화

인간의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자유권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이다. 자유권은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지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능동적으로 찾아서 누려야한다. 자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사고와 삶의 방식 그리고 문화의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민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공정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권을 행사할 때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교육가족 모두가 깊이있게 이해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책임이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를 말하는데 때로는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는 자유를 행사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곤 하며 특히 어린 학생들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다.

인권은 소극적인 의미의 개인적 권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권의 적극적인 목적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전제로 깔려 있으며 자신의 권리만을 가르치는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 선언도 30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요한 핵심은 타인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인권 전반에 대한 교육활동도 강화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아직까지도 학생인권 침해 요소에 대해 교육 구성원간 인식 차이가 큰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 대한 고려없이 법적 측면만 강조하게 될 경우 학교현장에는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은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의에 의하여 소속 집단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기준안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인권확보 방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의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자문과 제도적 시스템에 의해서 추진함으로써, 협의라는 미명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이 아닌 진정한 **자율적 규칙**으로 만들어져야 인권침해의 요소가 절대 감소하고 나아가 인권친화적 환경이 조성되리라 전망합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 정도가 다르고, 남학생과 여학생, 실업고와 인문고, 도시와 농·산·어촌의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법에 의해 획

일적으로 제어하는 것보다는 자율적 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이며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학교 인권교육은 어느 특정 과목에 국한되어 지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속에 녹아 있는 인권적 요소를 발견하고 경험함으로써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앞으로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다양한 교과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범교과적, 통합교과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학교에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자치활동을 통한 인권교육 및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 자유와 책임을 포함한 학급(학교) 규칙을 학생 학부모 교원이 협의해 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권의식이 강화되고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에서 의도적으로 지도시간을 확보하여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실제적인 경험과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여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바람직할 것이다.(체험학습, 역할극, 모의재판 등)

#### **나. 학생인권에 대한 교사교육 강화**

인권에 관하여 아직까지도 교육구성원들 간의 좁혀지지 않은 인식차가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차별문제에 관해서도 교사는 충분히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합당한 처벌을 주었다고 생각하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왜 벌을 받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을 받았다고 여김으로써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도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현재 교사들 중 대다수는 인권친화적 환경이 아닌 여건에서 인권에 대한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학창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에서, 또는 교사가 된 이후의 재교육 과정에서도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하겠다는 소명의식도 강하고 교과교육에 대한 지도 기술도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육이 국가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중론이 이를 보증한다고 봅니다. 허지만 우리나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학생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의 내용이 무엇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교사들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인식

과 테크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평소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행하기도, 학생인권을 보호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교대나 사범대 교과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별도의 이수 과목으로서 인권교육보다는 유사한 과목, 예를 들면 교직 윤리나 교사론 등에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다. 학교운영의 합리성과 민주성 강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한 학칙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되면 학생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부분(체벌, 두발, 복장 등)에 대해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교원들의 지도방식이 개선되고 학생들도 정해진 기준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학교의 인권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학생회 법제화 등을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하나, 단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회를 오히려 상위 법령에서 학교 자치 강화라는 명분에 근거하여 획일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단위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아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학교의 교육목표, 노력중점, 추진절차나 방법 등 본질적 교육활동 과정에서는 물론 서무, 회계, 업무추진, 시설관리, 복무 등 학교운영의 제반 영역에 걸쳐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절차나 과정이 조성되어야 이러한 풍토가 교직원 구성원들에 체질화 되고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환경이 조성되리라 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학교장의 사명감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며 ‘**교육 철학은 사랑으로, 운영은 민주적 합리적으로**’라는 학교장의 경영철학이 확고하다면 효과가 더욱 클 것입니다.

### **3. 학생인권과 교사의 권리**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은 교사 수에 비해 학급당 학생들의 수가 많을 뿐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의 성품과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요구

를 받아들여 학습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황에 알맞은 창의적인 교수방법이 요구되므로 교사가 갖는 자유(수업권)는 외압이나 간섭 등에 의하여 과도하게 규제되어서는 안 되며 생산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독자적 책임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의 자유는 교사 자신의 인격발현을 위하여 교사를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 교사에게 맡겨진 학생을 가능하면 최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자유란 인간의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적 자유가 아니라, 교육 및 수업의 본질과 교사직무의 특성에 비추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으로부터 파생하는 하나의 구체화된 헌법적 요청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가끔씩 극단적 이기주의와 편견 때문에 빚어지는 학생인권과 교원인권이 상충되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집단이기주의 비슷한 주장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권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듯하다. 다만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할 1차적인 수호자가 교원들인데 이들의 교육권 내지는 인권도 동시에 보호되어야 학생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교원들의 인권도 확실히 보호되었으면 합니다.

#### 4. 마치며

인권은 학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가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하며 내가 인권을 누릴 때, 나와 동일한 인간인 다른 사람의 인권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은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생각해야하는 사회규범 내지는 시민의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즉, 타인과의 다양한 갈등상황이나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인권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파악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것도 민주시민으로서 반드시 견비해야 할 인권친화적 행동양식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결국 학교 현장의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은 이미 그래 왔듯이 교원들의 책임이 크며 이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천해 오신 것처럼 모름지기 스승의 길을 생

각하면서 소명의식으로 사랑의 교육을 실천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민단체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현장의 교육성과 지향의 특수성과 집단생활로 인한 개인적 행동제한 등을 이해하시면서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의 주체로서 함께 참여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학교 현장에서 생각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만들기

임동현(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6년 전부터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면서 교사로서의 또 다른 역할이 나에게 주어졌다. 어쩌면 평생을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라는 이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교사로서의 큰 행복과 보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인권교육’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여기에서 ‘청소년인권’이라는 말에 왜 ‘교육’이라는 단어가 따라가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간단히 밝히고 싶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학문적 연구나 탐구에는 걸맞지 않다.

학문적 연구나 탐구는 학자나 교수님, 연구원분들이 몫이고 교사는 학문적 연구나 탐구의 결과를 학생들에게 잘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한다.

청소년인권문제도 교사의 역할은 인권문제에 대한 학문적 고찰보다는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환으로 올해 학생자치문화부장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게 되었다.

학생부장은 교육계에서는 3D업종으로 분류될 정도로 기피하는 직책이지만 호랑이굴에 들어가지 않고서 호랑이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올해 교무회의 첫 시간 선생님들에게 학생부장으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나의 성향을 익히 알고 계시던 선생님들조차도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역력했다.

학생부장은 학생들의 ‘공공의 적’으로서 그 명성을 널리 떨치는 자리인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라니 앞서가도 한참을 앞서간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 후 학교에서 학생 인권을 이야기 하면 동료 선생님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많이 듣는다.

- 학생인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진다.
- 학생들은 미성숙한 인격체이므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었을 때 학생들이 인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을까?
- 학교의 질서가 무너진다. 시기상조이다.
-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이 될 것이다.
- 학생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때 권리는 주어진다.

- 학교는 학원이 아니다.
- 부모가 아이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체벌을 하는 것은 자녀를 포기하거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교사가 학생에게 호통을 치거나 체벌을 하는 것은 그만큼 학생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 법대로 하자는 것이냐? 지금 이 상황에서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고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인 사제간의 무형의 자산이 있다. 법대로 하면 소중한 전통적인 사제간의 무형의 자산이 모두 사라진다. 결국 우리 교육을 망치는 것이다.
- 학교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한 수준의 학생인권이 존중되고 있다.
-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하면 학교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니다.
- 버릇없이 선생님에게 불손하게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나?

그러면 도대체 왜 선생님들은 학생인권에 대하여 반감이나 거부감을 갖는 것일까? 어쩌면 선생님들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선생님들이 성장기에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성장을 해서일까? 또는 우리 현대사의 어두운 기억에 혹시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 또는 학생들이 너무 막무가내이기 때문일까?

아무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참 어색하고 어려운 여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선 현재 학교의 인권침해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많은 보고서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 있는 관계로 학교 내에서 인권침해적인 요소에 대한 언급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부끄러운 의견을 밝혀본다.

### **첫째, 학생인권문제에 대하여 대립적인 관계 설정은 곤란하다.**

올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 학생의 인권보장 규정」이 신설되면서 실제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학생생활규정 표준안 등)을 하달하지 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유추컨대 단위학교의 반발을 의식한 현실적인 대처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형식적인 공문으로 갈음할 수 밖에 없는 교육청의 입장이 상당히 아쉽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 예로 체벌문제 관련하여 학생부장회의에 참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교육청 입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체벌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

도 교사가 정당화 될 수 없다. 차별이 없이 학생들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있다. 각 급 학교 학생부장 선생님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교육청에서 면피용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차별 금지 공문을 하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 하지만 교육청 학생생활규정에 차별관련 규정을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존치해 놓았다.

이는 본질적인 면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보다는 사회적 의식과 학교 현실사이에 괴리감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많다. 사실 저 또한 학생을 지도하다보면 차별에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학생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니 무조건 차별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라고 당위성을 강요하는 것은 현장의 교사들의 거부감을 키울 뿐이다. 단위 학교의 교사들을 법적인 강제성으로 압박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때 인권친화적인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인권관련 교사연수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둘째,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만들기'의 구체적인 학생생활교육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실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만들기'에 뜻이 있는 교사들이 자꾸 회의를 갖는 부분 중 하나가 구체적인 학생생활교육 모델이 제시되지 않아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교사 자신도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 교육환경, 가정환경, 사회 환경에서 성장하여 학생의 인권을 어떻게 존중해 줘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마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나눌 줄 모르고 어색해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었을 때 '자신의 성장기에 느꼈던 교육적 효과가 과연 발생할까?'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존재하는 것 같다. 어쩌면 일상의 폭력에 익숙해져서 그 빠른 반응을 기대하는지도 모르겠다. 인권친화적인 교육을 실시했을 때 폭력을 행사했을 때 보다 빠른 반응이 나오기란 약간은 무리인 면이 있기에 그러한 것 같다. 이러한 과거의 학습효과나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교육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여 구체적인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작년 인권교육 연구시범학교 발표회에 참석하여 각 급 학교의 연구시범학교 결과를 보았다. 처음 나의 반응은 인권교육 시범학교의 연구 결과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오히려 많이 발견하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웠으나 그만큼 뿌리 깊이 박혀있는 학교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을 개선해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

한 반증이 되었다. 구체적인 성공사례들을 전파하고 공유하여 모델링을 한다면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셋째,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도 단위 학교에서 학교의 문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학교장이다. 학교장이 인권 친화적 의식을 지니고 있다면 단위학교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만들기'의 반은 성공한 셈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예를 들면 학교장에게 등굣길 교문지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등굣길 교문지도 폐지를 건의했을 때 학교장이 적극 찬성을 해주어서 교문 지도를 폐지하고 대신 캠페인활동으로 대체했다. 그 과정에서 교문지도폐지에 반대하는 선생님들도 상당수가 있었으나 학교장과 담담부장의 결정이 난 상황인지라 교문지도 폐지의 정당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설득하기가 수월했다. 물론 학교장이 학교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장이 인권 친화적 의식을 지니고 있다면 학교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절약하여 다른 학교구성원을 설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의 학교장은 인권이 존중되는 '학생생활교육'보다는 과거 '학생생활지도'에 더 익숙하고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장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학교에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발생하였을 때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인권친화적인 학교에 긍정적인 인센티브(EX. 인권 친화적 학교 명패 등)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넷째, 중앙정부차원의 교육청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향상이나 입시에 관련하여서는 창조적인 대안들을 많이 생성하고 단위 학교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많은 유인책과 묘책을 개발·보급하였다. 심지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 내어 현장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생활이나 청소년인권에 대해서는 창조적인 대안보다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모든 교육의 중심이 입시에 치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학생의 인권보장'이라는 것이 단지 구호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학생의 인권보장'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서의 이 땅의 주인으로 키우는 훌륭한 교육적 목표라기 보다는 법적을 문제가 되지 않고 별 탈 없이 그냥 들어주는 조금은 귀찮은 통제라고 여겨질 가능성 크다. 인권을 침해하면 사실 실정법상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기자가 몰려들고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이 기사거리가 되는 것이 싫고 조금은 귀찮아서 그냥 문서상으로라도 면피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단위 학교에 책임을 추궁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 편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교육청의 예산배정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학생인권보장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 개발이 절실하다. 학생생활규정의 표준안을 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학생생활규정이 문제가 되면 모든 책임은 단위 학교에 부과된다. 이는 공정하지 못하다. 단위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조차 학생생활규정의 표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몸소 이해할 것이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수치화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교육청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청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청이 실적평가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미천한 교직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익혀버린 제 자신을 원망할 뿐이다.

#### **다섯째, 교사와 학생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였다. 지난 5년간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인권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군림할 때는 미성년자로 대하면서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한다. 인권교육 후 학생들의 달라진 점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정수기에 컵이 없어서 입으로 받아먹는 자신들에게 컵으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는 큰 변화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건의사항을 하면 묵살되어 버리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던 아이들이 다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한다. 그 과정에서 처음 해보는 것이라 방법이 세련되지 못하여 교사와 갈등이 발생한다. 물론 학생만 세련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교사도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가 어색하고 마치 교권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은 상호간 무한 신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여정이 길고 힘들 것 같기에 가장 가까운 교사와 학생이 신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인권 친화적이지 않던 선생님이 갑자기 인권 친화적으로 대하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인권 친화적인 척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고 선생님들도 과거와는 다르게 인권 친화적으로 행동하기가 참 어색하고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학교차원에서, 담임교사 차원에서, 학생부의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을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시혜하듯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에서 함께 만들어 가자고 설득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모두의 학교공동체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 학생들의

마음이 열리고 행동이 변화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본인이 존중받고 배려받는 것을 느낄 때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대한 행동의 변화가 시작된다.**

**여섯째,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과거 압축 성장 시대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요구였다.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상에 대한 저항은 사치정도로 여겨지는 시대가 있었다.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특히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학교의 경우 사회적 흐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압축 성장 시대의 교육은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현재의 학교는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에서 다양하고 상호의존적인 교육이 요구되고 그 중심에 인권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해야하고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과정부터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마치 우리가 체육이나 보건 교과를 통해서 육체적인 건강을 배워간다면 인권교육을 통하여 정신적인 건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자존감을 높이는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인권교육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문화적 성숙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일곱째, 학생생활규정의 재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학생들의 생활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해 관리 및 통제를 받는다. 선도위원회, 교내생활, 출결, 교외생활, 현장실습, 정보통신, 학생회, 학생생활지도, 포상, 징계, 체벌관련 규정, 개정방법 등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이 인권 친화적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협조가 가장 절실하다. 교사, 학생, 학부모, 교장, 교감 등 학교의 구성원이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학생생활규정만 인권 친화적으로 바꾸더라도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드는 일의 반은 이루어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6개 시·도교육청에 학생생활규정의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개정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개정 권고를 얼마나 성실하게 시행했는지에 대

한 점검이 절실히 필요하다.

### **여덟째, 교사에 대한 학생생활교육 권한의 강화가 절실하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학생들이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교사에게 불손하게 대하거나 욕설, 위협 등을 하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다.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교사에 폭언을 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고 협박이나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간혹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발생한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터라 학생 인권문제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소수의 학생이나 학부모 때문에 학교 전체를 비인권적인 학교 문화로 지속을 한다면 다수의 학생들의 피해라고 생각한다. 학교 전체의 문화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로 만들어 가되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강력한 학생생활교육이 필요하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기자를 동원하여 위협을 하거나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이나 폭행을 동반한 위협은 교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우리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다. 이러한 일 때문에 교사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만들기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에 **교사들이 자신의 교권을 지킬 수 있는 방어 차원의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

실은 이러한 문제는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교권이 존중되는 해결책으로 본다.

### **아홉째, 인내심**

교사들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 **시시결령한 이야기 I -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해?**

학교는 재미있는 곳이다. 어떠한 창조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학교의 사정에 맞추어 적용시킬 방안을 고민하기보다는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해?'라며 다른 학교의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 다른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면 잘 시도하려 하지 않는다. 변화를 싫어하는지 두려워하는지 아무튼 변화는 힘들다.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은 '교육은 실험의 대상이 될수 없는 거야!'라며 매우 준엄하게 교육학을 설파하지만 학교에는 연구시범학교가 있어서 이미 '임상실험'을 하고 있으며 연구시범학교에 참여하는 선생님에게는 승진점수도 부여된다. 사실 교육이 실험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다. 인류의 공공의 가치인 '인권'문제도 실험의 소재라고 생각하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한다.

## 시시결령한 이야기Ⅱ - 인권에 젖어 사는 우리 임선생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술을 제일 잘 마신다. 거의 술로는 저 본적이 별로 없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아한다. 어쩌면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술을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직장의 분위기 메이커라고 내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대충 그렇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권교육을 한다고 하니 마치 생전 당해보지 못한 '왕따'취급 당한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반에서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 대들어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있다. 주위의 반응이 대충 이렇다. '아니 담임선생님이 인권 교육하는데 반 애들은 왜 이래? 인권에 젖어 사는 우리 임선생! 애들이 왜 이래?'

답답하다.

## 시시결령한 이야기Ⅲ - 체벌에 대한 유혹

전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다보니 학생들의 생활교육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힘들다. 작년 학교에서 징계받은 학생이 전교생 대비 35%이며 1학년 250명 중 80명이 중도탈락을 하였다. 범법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이나 소년원 입원 학생이 약 40명 정도가 된다. 우리반의 경우 27명 중 작년 결석, 지각, 조퇴, 결과(무단)가 40회 이상된 학생이 15명이다. 지각한 학생에 대한 제재의 방법으로 종례 후 학교에 남겨두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종례 후 도망가는 학생이 태반이다. 때리고 싶다. 상담을 해도 부모님을 내교시켜도 다시 지각하고 결석한다. 12시에 학교에 어슬렁 어슬렁 와서 점심먹고 짹짹 도망가 버린다. 때리고 싶다. 기다린다. 하지만 난 인권교사라서..... 썩.

## 시시결령한 이야기Ⅳ - 학생생활규정에서 체벌규정 뺄까요? 말까요?

학생생활규정을 재개정을 한다. 학급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지를 받아 학생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학부모의 의견을 받고 싶지만 학부모는 학교에 오지 않는다. 실은 학교에 내교하시는 학부모님이 몇 분 계셔서 의견을 받아보니 70년대 학생생활규정이 나온다. 선생님들은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실은 잡무에 바빠서 보내드린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은 거의 보지 않으신다. 학생부에서 학생회의 결과를 반영해서 개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자꾸 걸리는 것이 있다. 체벌규정이다. 학교장과 함께 고민한다. 교육청에도 문의한다. 그러나 원론적이며 애매모호한 답변뿐이다. 동료 선생님들에게 체벌은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으니 폐지하자고 하자 저항이 거세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아이들은 체벌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다수가 아니다. 아이들도 폭력에 익숙해져 있는지 체벌을 해야 애들이 정신을 차리고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지? 체벌 규정 뺄까요? 말까요?

## 제 언

학교구성원의 인권감수성이 향상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15가지 권리항목은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실천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과정 중 꼭 짚어보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제언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만들기' 교사 연수 강화 유인책 개발
2. 구체적인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교육 모델 제시
3. 학교장의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적용
4.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청 지원책 마련
5.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마련
6.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만들기 선언
7. 교사와 학생의 신뢰 회복
8.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9. 교권을 지킬 수 있는 학생생활교육 권한 강화
10. 인내합시다.

# 학교만들기

## 전재의(청소년 활동가)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인권 친화적인 학교 만들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 학교의 변화를 꾀한 운동은 예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학교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어떤 면에선 예전보다 더 은밀하고 치밀하게 숨어들어 학생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성적과 나이,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받고 상처받는 학생들에게 우리는 인권 친화적이고 인류애적인 인간상을 기대할 순 없다.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낳으면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입시와 대학, 경쟁에서 치이지만 학교는 이런 아이를 감싸거나 보호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전쟁’에서 더 힘 있게 싸우고 상대를 짓밟아 이기기를 부추기며 이를 이유로 폭력과 차별을 정당화한다.

학교 내의 차별이 갖고 있는 특징은 학교에선 그 차별을 정당화하고 내면화하기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생각하기 전에 따르기만을 강요하며 이것이 생활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대게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은 차별과 폭력을 내면화 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것에 자연스러워 지고 무감각 해진다. 차별과 폭력에 무너지고 둔탁해짐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힘의 결과요 표현이다.

이렇게 학교가 가르치는 차별들 중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다름에서 비롯된 차별이 있다. 성별, 인종, 장애의 유무 등이 이에 속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가장 쉽게 차별할 수 있으며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

성별과 관련해서는 번호를 정할 때 남녀로 구분지어 정한다던가(예를 들자면 남자는 1(21)번부터 시작, 여자는 51(1)번부터 시작과 같은 식)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남자는 여자보다 더 세게 때린 다던가, 체육부장은 여학생은 할 수 없다거나, 학급 게시판 정리는 순전 여학생들 몫 이라던가, 짐을 옮기는 일은 모두 남학생들의 일이라던가 등이 있다. 또한 여학생들이 교복 바지를 못 입게 하는 학교도 있으며 여학생들에게만 혼전순결을 강요하는 교사 또한 존재한다. 이 모든 것들은 남자와 여자의 성역할을 구분함은 물론 이를 당연시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다. 남학생은 힘이 세고 체력이 강하니 교과서 배부, 교내 물품 및 시설 정리 등을 도맡아 해야 하고 여학생은 게시판 환경정리나 급식 당번을 당연 도맡아 해야 하며 학교 행사의 도우미를 해야 한다라는 식의 구분이 대체적이다.

인종과 관련해서는 피부가 검은 아이에게 ‘깜씨’ ‘깜둥이’ ‘흑인’ 등으로 놀린 다던가 한국은 단일민족임을 주장하며 혈통과 국민이 일치하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것 등이 있다. 우리는 한 ‘민족’임을 강조 하는 교육은 어떤 학생에겐 상처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이들에겐 인종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게 한다.

교내에 오르내리는 길에 계단뿐 이라던가(혹은 너무 많다던가)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시설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다. 또한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 때나 실수를 했을 때 흔히들 '장애인' 이라고 놀리는 것 또한 장애인을 희화화 하고 장애인의 특징을 꼬아 놀리는 것으로 장애가 흔히 '비웃음의 대상' '비정상' '나쁜 것' 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다름'에서 비롯된 차별과 폭력 말고도 여러 종류의 차별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종교,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이다.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 한다던가, 종교의식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행위는 '미션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 쉽다. 또한 교사가 수업 중 선교행위를 한다던 가 종교 편파적 발언을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 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최근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촛불집회에 참가 했다는 이유로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체벌을 가하고 인격 모독과 언어폭력 그리고 수치심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교사가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런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조차도 교사의 권위와 위계에 짓눌려 목살되어야 하고 이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현재 학교의 모습에서 더 이상 자유로움이나 활발함과 같은 교류를 찾아볼 수는 없다. 그저 일방적이고 침묵하고 순종하는 태도만을 기를 뿐이다.

또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교가) 제창 등과 같이 강요받는(사실상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강요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것이 대부분)의식을 거부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며 수업 시간 차렷, 경례를 거부한 학생에 대해서도 매끄럽지 않다. 여러 신념과 사상이 다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목살당할 수 있고 또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전체의 흐름을 깨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에겐 최선(善)인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있는데 어떤 학교 반장이 차렷, 경례가 일제 군국주의의 유산이라며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같은 반 아이들의 반응에 우리는 주목할 만하다. '나댄다.' '오바한다.'같이 사상의 다름을 유별 난것, 전체의 흐름을 깨는 것 등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들은 그저 옳다고 배운 것을 실천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들만을 질타할 순 없다.

이 말고도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차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이, 학년에 대한 차별이다. 학교에서의 편의와 좋은 것(better)은 고학년 특히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들의 차지이다. 중앙 현관을 학생들은 사용 금지 혹은 3학년 학생만 이용이 가능하다 던지 급식 먹는 순서가 항상 고학년이 먼저라는 사실은 학생들 사이의 수직적 위계질서를 조장한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교내에서 학년을 구분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명찰'과 '체육복'이다. 명찰의 색이나 체육

복의 색으로 구분되는 학년은 차별과 위계질서를 조장하고 통제와 구분을 쉽게 해주홍글씨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이들에게 나이가 적거나 후배, 아래 학년인 것은 죄이다.) 또한 많은 학교에서(특히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앞둔 학년을 굉장히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학년을 차별하고 심지어 억압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다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다른 학년 학생들에게 3학년 복도나 교실 출입이 완전히 금지되는 경우도 있고, 3학년 전용 복도나 시설이 존재하기도 한다. 자율학습 시간에 3학년 교실에만 냉방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들 반이나 복도 앞을 지날 때 소리를 내거나 방해 행위를 하게 되면 가차 없이 처벌받거나 그 자리에서 맞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오히려 더 놀랍다. 자신들이 받는 억압과 차별을 나중에 자신도 3학년이 되어 저런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위안 받고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사실 때문에 학생들이 오히려 이러한 차별을 감내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신의 권리 하나 보장받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놀랍지 않은 일이다.

위의 내용들의 공통점이 다 '다름'에 기반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와 더 강하게 연관 되는 문제일 수 있다. 바로 '성적'에 대한 차별이다.

성별이나 인종같이 겉으로 들어 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성적 취향같이 개인의 '선택권 없음' '당연함'과는 다르다. 성적은 학생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별의 이유가 순전 자신의 탓이고 그러기에 더욱 더 당연한 것이라 느낀다는데 문제가 있다. 차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은 학생을 더욱 비참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한다.

입시와 남들과의 경쟁이 존재함으로써 사라지지 않는 성적에 대한 차별은 우리 사회의 어느 차별 못지않게 위협하다. 공부를 잘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못해서 받는 '차별'이 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혜택은 반대로 그보다 덜 하는 학생에 대한 차별이다. 공부를 잘하기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고, 공부를 잘하기에 여러 체벌과 평가와 별점에서 제외되거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똑같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잠을 자면 '어젯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구나'라며 측은하게 여기는 반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잠을 자면 '공부도 못하면서 잠까지 잔다'며 편잔을 주고 심지어 체벌까지 한다. 한국 사회에서, 성 차별 하지 말라, 나이, 성(性)적 취향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인종과 출신, 가족 환경을 보고 차별하지 말라는 목소리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사라질 수 있다는데 '희망'이 있다. 결코 이것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적에 대한 차별은 개인의 변화와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써 사라지기엔 우리 사회에서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혜택이 너무나 많다. 담임 교사에게 성적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았다 해서 그 아이가 차별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 치이고 상처받는다.

모든 것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一)만을 추구해 왔다. 한 가지 가정의 모습, 한 가지 종류의 사랑, 한 가지 피부색 등과 같이 '하나'가 주는 그 깔끔한 이미지에 오래 동안 심취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추구하기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나 이기적인 이유로 우리에게겐 면죄부가 주어졌었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이해 할 수 없으니' '이것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와 같이 우리들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살인을 저질러왔다. 때로는 방관하고 때로는 직·간접적으로 차별하며 '다른 것'을 밀어내왔다.

같은 학교 동성애자 친구를 따돌리고 상처를 준 학생들과 장애인 친구를 놀리는 동영상 찍은 학생들만을 질타할게 아니다. 그들은 예의도 없고 존중할 줄도 모르는 몰상식한 집단이 아니라 그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다. 길러진 도덕성과 폭력의 무더짐에 의문을 갖지 않았던 것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기엔 우리 사회가 너무나 무책임하고 지금까지 상처받아왔던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 인권 친화적인 학교, 차별 없는 학교와 같은 구호가 언제까지 이상으로만 존재 할 것인가. 우리 모두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우리를 둘러싼 틀을 깨고 이제는 이들을 꺼안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 학생의 안전·건강 등 복지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최명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배경래 저서 중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책 내용에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많은 공감을 한다. 「헌법」이나 「국제인권조약」에 표현된 ‘모든 국민’이나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보통사람들’에 있다는 기본권이 학생에게는 예외가 된다.

대학서열화로 기인 된 수능점수에 의한 한 줄 세우기 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배한다. 교육의 목표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나 민주시민의 양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동떨어진 시험 잘 치는 기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고 있다.

## 1. 0교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이란 명분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새벽잠을 설치며 7시 30분에 시작하는 0교시, 상위권 학생들로 편성된 특별반, 특수반, 심화반은 수면확보가 되지 않는 밤 11시 40분 까지 야간자율학습 등이 그중의 하나이다. 이 모두가 선택권이 무시되어 자율학습이 아닌 강제학습과 타율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루 15시간이라는 장시간 동안 학교에서 타율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차라리 아동학대에 가깝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면 0교시든지 야간자율학습이든지 폐지되어야 하지만 최소한으로 자율적인 선택이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희망원이라는 보충학습신청서에 의해서 보충학습의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만, 보충학습이 아닌 교과서 진도를 나감으로써 어쩔 수 없이 신청해야하기도 하고, 종류만 나누었을 뿐 모든 학생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강제된 형식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방학기간 중에는 보충학습으로 인해 실제 방학은 토요일·일요일 제외하면 단 이틀 동안이다.

이는 아동권리협약 제 31조의 1항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되지 않는다.

## 2. 학교급식

하루에 한 끼 이상은 학교에서 급식으로 식사를 하는 학생들에게 급식은 매우 중요한 건강권 중의 하나이다. 학생들은 먹기만 할 뿐 식재료 등에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다.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해 광주 급식운동본부에서는 식재료의 우리 농산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3무 운동으로 광우병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건강에 해로운 GMO와 식품첨가제 없는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9억 6천 4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년째 동결상태에 있다. 이는 1인당 한 끼에 200원씩 38개교의 31,300명으로 전체 학생의 12.2%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급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친환경 급식의 실태도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친환경급식을 통한 안전한 학교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수익자부담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 중 식품비는 70~75%를 불과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와 인건비등으로 지출되고 있는 바, 수익자부담 전액을 식품비로 사용하여 급식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복도 양쪽 끝 계단에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커피자판기를 설치한 학교도 있다. 설령, 스쿨존을 설치해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학교 밖을 벗어나면 그만이다.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저급한 먹을거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먹을거리 등급제 실시 등 보다 체계적인 안전한 먹을거리 정책이 절실하다.

### 3. 학교안전사고

학교 안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한다.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상담실에도 해년 5~10%는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이 들어온다. 대부분은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 한 큰 사고들이 접수된다.

실례로 치아가 부러졌거나, 체육시간 중 부딪혀서 눈에 피가 난다거나, 세면대에서 유리컵을 들고 친구하고 장난하다가 유리컵이 깨지면서 손목인대가 나가는 등 대형사고위주의 상담이 많다. 사고 당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사고 후 한참 만에 상담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학교현장에의 안전사고는 훨씬 많을 것이다.

내담자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피보험자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어 교장의 권한에 속하고 있고, 학부모들에게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상대가 있는 경우 학교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라도 안전사고발생 상대 학부모들끼리 서로 알아서 해결하기를 종용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보험자를 학부모로 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 할 수 있는 형태의 사회보험제도 형식으로 가야하고, 학교 안에 전담자를 두어 충분히 홍보해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의 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가해,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적용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안전을 명분으로 학생들의 활동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학교시설을 사용하며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의 범위를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은 물론 하교 후 학교 내 안전사고와 실습이나 현장체험과 훈련기간 등 학교 밖 활동을 포함하고 등·하굣길 안전사고도 학교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 4. 체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상담실에 상담한 내용 중 매년 30~50%는 학교교사의 체벌에 대한 내용이다. 교육기본법 제12조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 사실상 체벌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학교장의 권한으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도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고 일반 교사들도 아무런 규제 없이 합법적으로 체벌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습관적인 체벌이 이루어져 학생들은 무방비상태로 교사로부터 폭력에 길들여지고 있다.

상담내용 중에는 시험 봐서 틀린 개수대로 때리기, 잘못된 학생들끼리 서로 뺨때리기, 선생님 말씀에 비웃었다며 지나가는 학생들 머리채를 잡는 등 체벌은 위기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체벌이 있는 한 학교문화로써 학교폭력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의 범주에 교사의 체벌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교사 스스로 체벌을 하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학생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벌이어서는 안 된다.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그 학생을 대등한 인격체가 아닌 일방적인 훈계의 대상인 미숙한 인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학생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체벌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헌법』이나 『국제인권조약』에 표현된 '모든 국민'이나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보통사람들'의 의미에 인격체로서의 인간으로 포함되어, 학교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학생의 안전과 건강 등 복지권 실현으로 학교가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로 거듭 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며 교문 안에 학생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참고자료2】

### 대구·경북권역(2008.7.15) 토론자료

- ▣ 교육의 눈으로 학생인권을 바라보자  
안미향((사)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 ▣ 학생은 어떻게 차별받는가?  
권진영(경북 의성공업고등학교 교사)
- ▣ 청소년 인권에 대하여  
이재익(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학교인권국장)
- ▣ 학생의 안전, 건강 등 복지실현을 위한 과제  
문혜선((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상담실장)
- ▣ 학생의 안전, 건강 등 복지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이수남(영진고등학교 진로상담부장)
- ▣ 학생의 안전, 건강 등 복지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류문숙(와룡고등학교 교사)





## 교육의 눈으로 학생인권을 바라보자

안미향((사)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대구)

유엔아동권리협약 2조에서,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서는 안 된다. 이는 “아동 자신과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라고 비차별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차별 중의 하나가 성적이나 외모 등으로 인해 교사에게 받는 차별이다. 학생들은 교사의 무원칙하고 자기중심적인 편애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상처를 받게 된다.

### (사례 1)

학교에는 많은 수의 학생이 존재한다.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도 크게 선생님에게 인기 있는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눌 수 있다.

과연 선생님에게 인기 있는 학생이 마냥 좋은 것일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그 학생은 많은 것을 얻고 또 잃는다. 어느 학교 한 학급의 실장은 학교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8개월 동안 담임선생님에게 크나큰 사랑을 받았으나 그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랑에 비례하여 주위의 친구들을 잃게 되었다. 물론 선생님이 나서서 그 학생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떼어 놓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떠나는 것에 선생님의 지나친 사랑이 한몫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학기 초부터 시작된 선생님의 편애로 인하여 그 학급 학생들은 무조건적으로 실장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나보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실장과 나머지 학생들이 조금 다투었는데 그 사실을 안 담임 선생님이 한 학생을 위해서 나머지 31명에게 한 말이다.

“너희는 개새끼만도 못한 놈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한 행동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한 반에서 한 학생을 따돌릴 수가 있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시에 학부모님들 불러놓고 생활기록부에 적어버려서 대학 가는 걸 힘들게 할 수도 있다.”(기 여고 1학년 김○○)

## (사례 2)

수업이 시작되면 45분 동안 선생님이 예뻐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이렇게 두 부류의 아이들로 나뉘어진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일어나 학교에 가서 일곱 시간 이상을 지내다 오는 건 전교생이 다 똑같다. 그런데 공부를 잘 하고 선생님이 편애하는 아이들은 잠을 자도 '피곤해서 자는구나'하고 묵인해 준다. 그러나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잠을 자면 때리거나 분필을 던져 정통으로 맞추면서 명중률을 은근히 과시하는 따위로 인권 침해에 가까운 모욕을 준다. 집에서는 다 똑같은 귀한 자식이지만 학교에 오면 아이들 사이에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다.

또한 선생님이 포기한 아이들이 있는데 개들은 그 수업시간에 반드시 자야 한다.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은 공부를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깨어 있으면 수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라도 옆드려 있어야 한다. 혹시 자지 않고 있는 시간이 있다면 선생님이 빨리 자라고 독촉을 하기도 한다. 간혹 과격한 선생님들에게 '내 시간에 네 얼굴 보이면 가만 안 둔다.'하는 어처구니없는 경고를 당하기도 한다. 결국 사회에 나가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 배우고 닦으려고 다니는 학교에서 인권을 철저히 무시당하는 셈이다. (수원 대평고 3학년 박○○)

이처럼 현재 학교 내 차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성적 문제이며 우리의 학교 교육이 입시위주의 성적과 점수 경쟁 체제인 한 차별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는 교사의 개별 자질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즉 교직의 엄중성으로 인해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교육의 문제이다.

### ■ 교육적 관계 : 교사와 학생

앓을 매개로 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맺음이 교육이다. 입시위주의 교육, 성적 지상주의 교육을 해서야 지금의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학생인권의 문제를 개별 교사의 자질문제로 문제를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교사가 교육을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교육적 관계는 앓을 매개로 교사와 학생 간에 탐구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즉, 수업은 앓을 매개로 학생과 학생이, 교사와 학생이 교류하는 것을 통해 탐구하고 발견하고 성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업시간에 모둠을 지어 조별로 토의, 토론하고 발표하는 사례들을 보면 아이들끼리도 앓을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을 매개로 하지 않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교사는 삶을 매개로 아이들의 삶을 만나고 아이들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교육활동이란 삶을 얻도록 아이들과 교사가 활동을 구성하는 것, 아이들의 내적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여 탐구하고 발견하여 성장이 가능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한다.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자의 역할은 오직 학생의 반응이 바람직한 지적, 정서적 성향의 형성으로 확실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반응을 자극하고 그 행동 방향을 지시하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고 Dewey는 말하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교과 또는 교육과정 내용은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과를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 교사는 교과를 그야말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주로 학생의 태도와 반응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학생의 반응이 교과와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교사의 임무다.

교사는 교과 그 자체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교과가 현재 학생의 필요나 능력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교사가 단순히 교과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의 경험을 전문가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해 주는 일이다. 그리하여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교과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독특한 필요와 능력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sup>4)</sup>

지금의 교사들은 삶을 매개로, 삶 읽기를 매개로 아이들과 관계하지 않는다. 교사는 교과가 학생의 필요나 능력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입시나 성적을 올리는데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독특한 필요와 능력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물리적 여건들을 핑계 삼아 알려고 하는 노력 또한 하지 않고 있다. 듀이의 표현대로라면 결국 현재 교사들은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 교사가 규율권력이 되어 있다.

학칙이 교사들의 권력이 되고 있다. 학칙은 교육적 관계의 여건인데, 그런데 학칙이 교육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학칙에는 필수적인 것도 있고, 필요에 의한 것도 있다.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개인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속에서는 절대 들어 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두발, 용의 복장등과 같이 필요에 의한 것은 학생들과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이라도 규정이 있고 규율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 사회나 조직의 규정에 의해 두발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두발은 개인적,

4) 존 듀이, 이홍우 역(1996),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pp.290-291

심리적 요구로 두발을 제한하는 자체가 인권문제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권력에 의해 강제될 때 두발 문제는 인권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인권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강압과 강제, 폭력에 있다. 학교에 규칙을 정해놓은 것은 모든 아이들이 그 규칙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고 대다수의 학생이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학생들을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율이 작동될 때 이것은 권력이 되고 폭력이 되는 것이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교육적 관계로 만나야 한다. 교육적 관계라는 것은 앎을 매개로 탐구하고 발견하고 성장하는 관계를 말한다. 교사들이 교육의 목적을 고민하고 삶 읽기를 매개로 아이들과 만나고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기능할 때 규율은 서로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고 규범이며 문화가 된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에서는 교사가 입시를 위해 내용적으로는 문제풀이, 진도 나가기 수업을 하고 형식적으로는 교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학칙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발규제 뿐만 아니라 체벌, 용의복장 규제의 공통점은 학생을 신체적으로 통제시킨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몸을 통제함으로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까지 통제한다는 것이다. 높은 지위, 힘을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군가-억압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약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피억압자-에게 신체적 통제를 가해 '나는 너의 몸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주입시키고 정신까지 무장해제 시킨다는 것이다.<sup>5)</sup>

이런 권력이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의 규칙이 학생들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근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아이들의 한결같은 불만은 규칙이나 규정의 적용에 일관성이 없이 규율하는 주체, 교사의 성향이나 기질, 기분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의 규칙이 교육과는 아무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 많다는 것이다. 양말, 신발, 명찰 관련 학교 생활규칙들을 살펴보면, 원색을 모두 금지 시키고, 흰색·검정·밤색·곤색 등의 무채색만 착용을 허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교육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 누구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두발이나 체벌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길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학교나 교사의 논리에 아이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

---

5) 유윤종(2006), "청소년 인권운동 교문을 두드리다 - 2006년을 맞이하는 청소년 인권운동", 『청소년, '미래'를 넘어 '현재'로』, 서울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p.138

는다. 또한,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한다. 6)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교사들은 매를 든다. 그 대다수 교사들의 순수한 마음이야 조금도 의심하지 않지만, 맞으면서, 그런 식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며, 그렇게 열어 가야 할 미래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7)

학교 규율이나 규정은 일정 정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규율이나 규정이 목적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그 무엇이 되어 있다. 학교의 규율이나 통제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여기가 과연 법이 있는 곳인가, 교육이 있는 곳인가, 이성이 있는 곳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오늘은 강당에 전교생을 모았습니다. 두발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교칙보다 분명히 짧은데, 선생님은 제 오른쪽 옆머리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선생님이 보기에는 길어 보인다고 합니다. 도대체 머리를 자르는 기준은 무엇 일까요? 강당 한쪽 편에는 남학생들이 머리가 밀려나가고 처참하게 맞고 있습니다. 뺨 정도는 예삿일이죠.(ㄷ 고 2학년 김 ○○)

우리는 머리가 길면 사람 취급을 안 한다. 개라고 쓰다듬는다. ‘우리 집 개 잘 컸네, 머리 깎아야지’ 라고 한다. 강당에서 조회하면 ‘너희는 다 동물이다. 동물이니까 사람 말을 들어야 한다. 다 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 한다. 우리를 동물취급하면서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다.

특히, 지각할 때 머리가 길면 오리걸음 시키고, 삼이나 낫을 들고 땅을 파게 한다. 아무 이유가 없다. 봤다가 돌 빼고 다시 덮게 한다. 심한 경우 여름 땀벌레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아이들이 수업에 안 들어온다. 지각하고, 머리가 긴 애들은 운동장에서 모두 땅을 파고 있다. (ㄷ 고 2학년 박 ○○)

이런 권위주의는 학생을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단계에 있는 아직 덜 발달한 미성숙한 존재, 뭘 모르는 어린아이 정도로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앎을 매개로 한 교육적 관계와는 전혀 별개의 태도이며 미성숙함은 가능성이 지 규제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듀이는 교육을 아이들의 성장8)과 발달의 문제로 바라보았고 성장의 으뜸가는 조

6)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 p56

7)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2003),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우리교육, p30

건은 미성숙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달되지 않은 면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서, '미성숙'이라는 말에서 '미'자는 단순히 없다든가 결핍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훨씬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능력'이라든가 '잠재력'이라는 말은,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중요시해야 한다. 능력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힘'을 뜻하며, 잠재력도 유능한 상태, 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그런데, 미성숙이라는 것은 성장의 가능성을 뜻한다고 말할 때, 미성숙이라는 말은 나중에 나타날 힘이 현재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재 어떤 힘이 있다는 것 - 즉, '발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흔히 미성숙을 단순히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성장을 성숙과 미성숙 사이의 틈을 메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동기를 비교적으로만 생각할 뿐,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진 내재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아동기를 결핍된 상태로 생각하는 것은 성인기를 고정된 표준으로 정해 놓고 그것에 비추어 아동기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때에는 당연히 아이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장차 어른이 되어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것에 주의가 기울여지게 마련이다.<sup>9)</sup>

근대 교육은 '미성숙'과 '성숙'을 명확히 구분 짓는다. 미성숙한 존재를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이 곧 교육이기에 만남의 과정은 통제와 강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 패러다임 내에서 교사는 성숙한 존재이기에 학생에 대한 판단을 자의로 내릴 수 있으며, 미성숙한 존재인 학생은 교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존재가 된다.

여기서 비극이 짙다.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르고, 소지품을 뺏고,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가 모두 미성숙을 성숙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로 정당화된다. 상처와 수치심은 애정의 흔적이 되고, 폭력은 교육으로 위장된다.

'미성숙'과 '성숙'의 구분, 그 이분법은 권력의 위계에 다름 아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교사들과 어린이·청소년의 생각·판단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은 '미성숙'을 이유로 곧 '틀림'이라 규정된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문제가 단순히 두발자유, 체벌금지, 강제보충·야자금지라는 조항의 실천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위계화를 뒤엎는 것,

8) 존 듀이, 이홍우 역(1996),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p.69

아이들의 활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사회는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장래를 결정한다. 한 시기의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그 당시의 사회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양상은 주로 그 이전의 아이들의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지도되었는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와 같이, 행위가 그 다음의 결과로 축적되어 나가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한다.

9) 위의 책, p.70

곧 ‘인간’임을 인정하는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10)</sup>

현재 우리 교육 속에서는 교육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를 구조와 문화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으며 대다수의 교사들이 여기에 순응, 안주한다.

교육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모아놓고 사람이 모여 있으면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규율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교육이 무엇인지, 아이들을 왜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규율하는 사람과 규제 당하는 사람의 형식만 남게 된다. 이렇게 될 때 학교는 권력의 모습을 띄게 되고 그것은 곧 권위주의로 나타난다.

질서와 규율에 앞서 교육의 기회를 고르게 주자는 것, 무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학교는 모여 있는 사람을 규제하고 강제하는데 더 힘을 쏟고 있다.

교권은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오는 권위이다. 권위는 아이들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 앎을 매개로 진실로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고 발견하고 성장할 때 학생들로부터 교사는 신뢰받고 존경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권위는 이러한 배움과 소통과 반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선생님이라는 자리는 현재 교육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쉽게 할 수 있으며, 그럴 권력도 지닌 위치이다. 그렇기에 선생님들은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직접 저항에 나서는 등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sup>11)</sup>

##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달렸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교사는 교육목적에 따라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끄는 사람이다. 교사는 입시위주, 서열 위주의 자유 시장 논리가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학생들이 자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교사가 자신의 교육관,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교실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에 참여할 때 교육은 일어난다.

교육자로서의 교사는 “왜” 가르치는지를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교과와 교수목표뿐 아니라 궁극적 교육목적의 의식하고 그 우산 아래에서 담당과목의 가르침

10) 김 사 (2006),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의 본래 의미를 찾아가기”, 『청소년, ‘미래’를 넘어 ‘현재’로』, 서울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p.197

11) 유운종(2006), “학생을 운동 주체로 인정해 주길”, 『청소년, ‘미래’를 넘어 ‘현재’로』, 서울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p130

에 임하는 사람, 요컨대 교과를 가르치기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러내어야 할 양질의 교사는 단순히 교사라기보다 교육자이어야 함을, 그렇지만 이론적 이해로 끝나지 않고 실천적 번역력이 또 남다른 교사임을, 그리고 그저 가르치기만 하는 교사가 아니라 그것을 동시에 연구하는 교사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교사는 한마디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마추어 교사가 아닌 전문가로서의 교사라 할 수 있다.<sup>12)</sup>

실천의 장에서, 인습에 젖어 있지 않은 사람이면, 뚫어야 할 것과 풀어야 할 것을 가려 정연하게 대처하는 방법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의 실천은 그의 이론(사상)에 따르고 있을 것이고 그만큼 합리적이다. 규정에 따르기보다 합리에 따르는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적 불안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 지적 불안이 그의 행위에 대한 성찰·반성을 불러낸다. 이것이야말로 가르치는 자의 자연적 철학이 아닐까? 교육적인 것은, 인지적 불안과 반성의 교육적 합리에 의해 추구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교사가 먼저 있고 교육이 나중에 있다’, 혹은 ‘교사를 통한 교육’, 혹은 ‘교육학이 되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같은 명제를 설정했다.<sup>13)</sup> 이렇게 자신의 교육활동을 구성하는 교사는 반성력을 바탕으로 한다.

결국 땅콩 선생은 수업을 바꾸려는 노력, 교육과정을 재해석하려는 노력과 함께 학교의 비인권적 질서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인권교육은 어쩌면 어린 학생들에게 더 큰 절망감과 무력감만을 안겨 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사의 삶 자체가 학생들에게 가르침이어야 한다.”는 말은 정말 가슴 뜨끔한 진실이었던 것이다.<sup>14)</sup>

우리의 교육적 전통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사의 권위를 높이 내세우고 또 그만큼 교사에게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많았다. 교사는 전통적으로 과거의 유산을 전수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권위와 존경을 받아왔다.

하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은 이런 교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협하는 교사상을 만들어 왔다. 이제 더 이상 특별한 권위와 존경을 받는 교사가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교사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고, 학생이나 학부모들 또한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

교사의 삶은 지적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적 불안이 오히려 교사의 침묵을 낳고 교사의 무기력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침묵과 무기력이 일상사가 되

12) 조용기(2005), 『교육의 쓸모』, 교육과학사, p.259

13) 김민남·손중현(2006), 『한국교육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p.76

14)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2003),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우리교육, pp.28-29

어 있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교직을 지키는 안전판으로 삼기도 한다. 이런 교직문화를 활용하여 관료세력은 규칙, 규정, 지침을 정하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공'교육이라고 상징조작하며, 지적 불안을 안고 있는 교사상보다는 규정에 잘 따르는 합법주의자 교사상을 선전한다.

교사도 이 관료세력에 잘 호응하여,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교육권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교실을 자신들만의 밀실로 만들어서 안주한다. 지적 불안을 두려워하면서 피해 가고 다시 지적 불안(다시 말해 전문성, 교육권)을 들먹이며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밀실)을 만드는 이중성이, 오늘 우리교육론을 밀으로부터 파손시키고 있다. 15)

학생들에게 있어서 지금 교사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교사, 교육자가 아니라 상급 학교로의 진학을 도와주는, 학생들보다 지식을 조금 더 가진, 직업과 권력을 가진 자로서의 교사가 존재한다.

'선생님'은 만능 변신로봇입니다. '가르친다'는 이름 아래 그 '선생님'이란 녹음기는 재생됩니다. 어떨 때는 무기를 들고 와서, (때때로 그들의 신체로 직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구타합니다. 그 무기는 '사랑의 매'로 둔갑해서 말이죠.16)

선생이란 학생을 통해 돈 벌어 먹고 학생 패고 그래도 처벌되지 않고 촛지 맘껏 거둬서 재산 늘리고 온갖 권위주의로 학교에선 중세시대 왕이 되고, 갖은 심부름, 노역을 시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설을 많이 하고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만들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노예처럼 부려먹는 존재.

-천리안 게시판 중에서17)

학생인권의 문제를 얘기하면 학생들은 학교와 교사의 무원칙하고 비교육적인 행위를 맹렬히 비난하고 교사들은 인권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비교육적인 환경, 그리고 일부 교사들의 자질문제로 문제를 돌리곤 한다.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서로 만나야 하는 학생과 교사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라는 대립구도로 만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학교교육이다.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학생인권 문제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불신과 반목, 대립을 조장하고 있을 만큼 첨예한 문제가 되어있다. 이것은 우리의 교육문제가 심각한 지

15) 김민남, 손종현(2006), 『한국교육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p.77

16) 배경내(2003),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p18

17) 위의 책, pp.18-19

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를 매개물로 하여 아이들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있어 교사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학생은 교사의 눈으로 세계를 본다. 교사가 스스로에게 열려있는 만큼, 세계에 대해 열려 있는 만큼 학생들은 열릴 수밖에 없다.

학생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언론을 비롯하여 학부모 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별 교사의 자질 문제로 문제를 돌린다. 그러나 학생인권의 문제는 개별 교사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교직의 문제, 학교교육 속에서 교육 담당자로서 아이들과 앓을 교류하는 합리적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 문제이다.

학교는 단순히 죽은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 아니다. 학생은 학교를 통해 살아있는, 생동하는, 실천 속에서 숨 쉬는 지식을 전수받아야 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해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고 익혀야 한다. 지식이 살아있기 위해선, 생동하기 위해선, 실천 속에 숨쉬기 위해선 지식은 소통되어야 하고, 비판받아야 하며, 또 잘못된 것에 저항해야 하고, 올바른 것을 찾아 나서야 한다.

학생과 교사는 지식에 숨어있는 과정들에 주목해야 하고, 그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이 경험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불가능하다. 교수와 학습은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온전해 질 수 있다.<sup>18)</sup>

---

18) 이문석(2004), “입시위주 교육과 학생인권”, 『2004 청소년인권을 말한다.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17대 국회와 함께 만들자』,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p.71

# 학생은 어떻게 차별받는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보장과 현실)

권진영(경북 의성공업고등학교)

## 1. 들어가면서 - 인간과 학생

한국 사회에서 인권 앞에는 ‘인간’과 ‘학생’ 두 부류가 존재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나 학생은 ‘학생 아닌 인간’과 구별되어 별도로 존재한다. 즉 인권의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명백한 평등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인권의 공백지대 ‘학교’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자처할 명분도 없고, 문명사회를 이야기할 자격도 없다.

학생은 인간과 구별되는가?

사실은 학생인권을 따로 논할 필요가 없다. 천부인권사상은 물론이고 헌법 규정에 명시한 기본권 규정들은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고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률에 근거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권을 제한(헌법 제37조 ②항)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학생 인권이 전면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근거도 없이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아마 이러한 학생인권의 수난은 특별권력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낡은 이론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즉 국·공립 학교와 학생간의 관계를 국가가 이들 학생들을 포괄적으로 지배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강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칙의 제정과 학생 징계 등의 행위를 특별권력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 구성과 인식으로 지금까지는 학교의 재량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인권침해가 표면적으로 합법의 논리를 갖추며 유지되어 왔다.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때에도 법률 상 근거 있어야

그러나 오늘 날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며 이러한 관계에서도 법치주의가 물러서서 안 되고 더군다나 기본권의 제한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학교와 학생간의 관계를 특별권력관계로 보는 시각 자체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 2. 평등권 침해의 다양한 모습들

학생의 평등권 침해 문제를 거론하면서 학교 내에서의 차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의 일부분만을 다룰 수밖에 없다. 사회 구조와 학교 제도 등이 전체 학생들에게 가하는 차별을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평등권 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인권의 모든 국면에서 침해가능하기 때문이다.

### 거시적 차별과 미시적 차별

학생 인권에서 평등권 침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다. 사회 구조와 교육제도로 인해 받는 차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학교 내 여러 규정들과 관행에 의한 차별이나 교사에 의한 차별 등이 있겠다. 전자를 편의상 거시적 차별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미시적 차별이라 말할 수 있겠다. 구별의 실익은 크지 않으나 전자는 사회구조의 변화나 제도 개선을 통해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고, 후자는 학교 구성원의 인식 변화와 교육주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인권 증진을 이룰 수 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구분에 따라 서술하기로 한다.

### 가. 거시적 차별

#### (1) 입시 제도

입시제도 혁파 없이 학생인권 개선 없다. 입시가 인권에 개입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 보인다. 입시 제도 자체의 모순으로 평등권이 침해받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명문대학 입시가 지상 목표인 학교와 학생들에게 인권은 언제나 유보되어야 하는 장식물로 전락한 것이다.

## 사교육에 좌우되는 대학 입학 전형

사교육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현행 입시제도는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교육이 전면 허용되고 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의 수혜 정도가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 현실 속에 입시 제도는 이러한 사교육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 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능력'은 학생 개인의 일신전속적인 능력(예컨대 지능지수나 노력의 정도)을 의미하므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개인의 성취도에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를 근거로 입학 여부가 결정해서는 안된다. 비전속적인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가 차이가 난다면 헌법 제31조 1항의 침해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개인의 일신전속적 능력을 평가해야 하고 부모의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력을 걸러내야 한다. 물론 학생의 학업 성취에서 일신전속적 능력에 의한 부분과 비전속적 부분(사교육에 의한 성적 향상)을 가려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교육의 영향력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특히 지금의 입시제도처럼 내신이 거의 무력화된 상태에서는 사교육의 영향력이 극대화됨은 명백한 사실이다. 서울의 일부 대학은 내신의 실질 반영률을 3%로 낮춰 무력화 시켜놓고 수능과 논술로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대학을 평준화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학생생활기록부와 내신 성적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명문 대학만 가면 인권은 유보되어도 좋다?

학생 인권의 개선이 더딘 가장 큰 주범은 과도한 입시경쟁이다. 실제 2006년 전 교조 경북지부의 인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실업계 고등학교나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의 인권 침해가 심각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두발불량을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학교 39%, 실업계 고등학교 48.6%였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58.5%(표1)로 나타났다.

〈표1〉 두발 불량으로 삭발당한 경험

학교에서 두발불량을 이유로 머리카락을 잘린 적이 있다.		합계		있다	없다
		%	사례수	%	%
학교별	중학교	100.0	164	17.1	82.9
	실업계고	100.0	109	10.1	89.9
	인문계고	100.0	361	29.9	70.1

또 복장불량으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중학교 33.5%, 실업계 고등학교 40.4%인 반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54.5%(표2)나 되었다.

〈표2〉 복장 불량으로 체벌 당한 경험

학교에서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합계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③+④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사례수	%	%	%	%	%	%
학교별	중학교	100.0	164	10.4	23.2	33.5	66.5	29.3	37.2
	실업계고	100.0	109	7.3	33.0	40.4	59.6	40.4	19.3
	인문계고	100.0	358	16.2	38.3	54.5	45.5	32.7	12.8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가 하는 질문에서 역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29.2%로 가장 낮은 수준(중학교 41.6%, 실업계 고 44.4%)을 보여준다. 정작 인문계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많이 하지만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 형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학교 역시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표3〉 학생들의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된다.		합계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③+④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사례수	%	%	%	%	%	%
학교별	중학교	100.0	161	4.3	37.3	41.6	58.4	34.8	23.6
	실업계고	100.0	108	4.6	39.8	44.4	55.6	35.2	20.4
	인문계고	100.0	359	1.7	27.6	29.2	70.8	44.3	26.5

이러한 조사결과는 대학 입시라는 당면 목표 앞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훨씬 더 심각한 인권 침해 공간으로 전락해있음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급별, 실업계·인문계고 간에 인권 보호 수준에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과중한 학습 시간과 강제 학습

거의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기 등교, 강제적인 보충 수업 그리고 야간 강제(자율)학습은 모두 우리 사회 전체가 학생들에게 집단적으로 가하는 인권침해이다.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는 건강권,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학생들에게만' 유보시키는 위헌적 학습 환경이 강제되고 있다. 따라서 동등한 기본권 주체인 학생에게는 평등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의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일반인과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 (2)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 경영에의 참여 제한

흔히 우리는 교육 3주체를 학생, 학부모, 교사로 상정하고 있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교육기본법에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학생은 운영위원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는 상위법 위반이며 동시에 학생에 대한 차별이다. 연령이 어려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른들 생각이며, 백번 양보해도 참관과 의견 표명 기회 정도는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교육부 지침도 참관은 인정하나 그마저도 학교장 승인 하에 참관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생은 학교장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참관을 허용해야 할 것이고 중고등학생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 <교육기본법>

제5조 ②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일부 학교 학칙>

학교장이 시행하는 학교행정에 간여 할 수 없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행정에 학생은 간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사에서 분석대상 19개교 중에서 7개교 학칙에서 규정). 교육기본법 제5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교육주체이자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학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보아야 한다.

## 나. 미시적 차별

### (1) 학생임원 입후보 자격의 제한

<p>〈학생회장 입후보 자격〉 · 성적이 50% 이내 · 유급 사실이 없는 자 ·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p>
---

학생회장 선거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학생회칙이나 선거규정이 아직 학교에 존재하고 있다. 위에서 예시로 제시한 자격은 모두 학생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합리적 사유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유급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질병이나 가사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 유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또 성적을 기준으로 한 입후보 자격 제한도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단순히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입후보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 (2) 학생회 임원 선거권의 제한

<p>(학생회장 선거일) 학생회장 선거는 수능일에 실시한다.</p>
---------------------------------------

전교조 경북지부의 같은 조사에 따르면,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시험 치는 날을 선거일로 못 박아 놓고 있다. 고3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회 선거 역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일부(특별활동 이수시간에 포함)이고 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적인 의미나 효과 또한 적지 않으므로 수업결손을 막겠다는 취지는 설득력이 없다. 또 3학년 학생들의 선거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학생자치권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으며,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볼 수 밖에 없다.

### (3) 두발 규정 자율화?

2000년, 2005년 학생들의 두발자유화운동 이후 교육부나 교육청은 두발 규정(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대체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는 듯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

나 이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학생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 얼핏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명될 수 없는 것도 문제거니와 인권 보장의 수준이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 문제는 자율의 영역이 아니다.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인권을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교육부는 학생들의 반발을 이렇게 무마시켜버렸다.

뿐만 아니라 서두에서 언급한대로 법률의 근거 없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2항에도 위배된다. 유독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학칙으로만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명백하다.

#### (4) 수업료 미납으로 출석 정지 규정 (또는 퇴학)

2006년 경기도 의회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업료 미납 학생에게 출석 정지 하도록 한 조례안이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하자 문제 조항이 삭제되어 제정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조례에는 없지만 아직 학교 학칙에는 그 규정이 남아있는 학교가 많다. 물론 그대로 시행하는 학교는 거의 없겠지만 그 가능성은 아직 살아 있는 것이다.

(체납자 조치) 학교장은 수업료를 체납한 자에게 출석을 정지하거나 퇴학을 명할수 있다.

2006년 전교조 경북지부의 같은 조사에 따르면 분석대상 11개 고등학교 모두 출석정지 규정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교는 퇴학도 가능하다. 이 규정은 헌법 제31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기본법 제3조와 제4조를 위반하고 있다. 즉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공교육에의 접근 기회를 박탈하는 평등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5) 누구에는 장학금, 누구에는 학비감면

장학금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 장학금 수혜 학생

의 선정과정에서의 차별이고 또 장학금, 학비감면 등의 용어에서 나타나는 차별이다.

학교에는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장학금이 있는데 이 장학금은 주로 성적 우수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수혜 학생을 선정함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에 때문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성적 우수자에게 집중된다면 성적이 나쁜 학생들에게는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장학금은 사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될 때 장학금 그 본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 심지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학비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있는데 이 때 선발 기준에도 성적이 추가로 요구된다.

〈○○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학금 지급 계획〉

- 추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 중
  - 품행이 바르고
  - 입학 또는 이전학기 과목별 석차 평균이 100분의 40이내에 해당 하는 자
- 선정기준 : 추천학생이 선발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1. 성적 순에 의하여 선발
  2. 성적이 같을 경우, 1인당 소득이 적은 순으로 선정

중복 지급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어 성적우수자 중 적임자가 없으면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돌아가는데 주로 교사에게 ‘순종적인’ 학생에게 돌아가기 쉽다. 이 역시 은연 중 교사의 편견 위에 타고난 성격에 따른 차별 대우가 아닐 수 없다.

또 용어 사용에 있어 주로 성적우수자나 공적이 있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돈은 주로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급되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나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돈은 ‘학비 감면’이란 용어가 사용된다. 이러한 용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와 교육청이 매년 학급 학교에 보내는 ‘학비감면 지침’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부과하여야 할 수업료 등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부과하니 ‘감면’이란 용어는 틀린 말은 아니나 그 성격은 결국 장학금이다.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의 돈이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저소득층에게 학비감면이란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다. 똑 같이 경제적 혜택을 입으면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긍정적 만족감을 얻을 것이나, 학비 감면을 받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기분은 공동체 구성으로서 이웃과 사회에 감사하거나 연대의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 (6) 우열반 편성

195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흑인 백인 분리하여 교육하는 공립학교에 대해 평등권 침해란 판결을 내렸다. 흑인차별이 제도화된 미국사회는 그 동안 '분리하더라도 동등'한 교육 시설을 제공하면 차별이 아니라고 맞서왔으나 이에 대해 '브라운판결'은 '분리된 교육시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는 논리로 인종차별정책을 뒤집었다. 피부색으로 분리하는 그 자체가 차별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성적은 19C 신분과 다름없어

일부 고등학교에서 공공연하게 '특별반' 등의 명칭으로 사실상 우열반을 시행하고 있다. 성적으로 차별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다.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가르치겠다고 하지만 공교육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성적에 따라 분리시키고 교육내용까지 다르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모든 학생들의 수준은 다를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을 다름 속에서 서로에게 배우고 자극받는다. 협력학습은 구성원의 다름을 전제로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가르치고 같은 내용의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것 역시 차별이다.

높은 수준의 학습내용에 접근하고 싶어 하는 특별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 때문에 다수의 보통반 학생들의 인권이 어떻게 유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성찰 없이 입시 성과에 집착하는 천박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반을 운영하는 강원도 일부 고등학교에 내린 시정권고 역시 같은 취지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성적은 19세기 신분이나 피부색에 다름없다.

## (7) 교사의 언행에 의한 차별

- “대학은 꼭 가야한다”, “대학 못가면 인간대접 못받는다”, “고등학교도 안나오면 인간취급을 못받는다” : 학력에 따른 차별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다수 사람들에게 대한 비하와 차별적 발언이다.
-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 생기고... 어떻게 살래?” : 성적과 외모에 대한 편견을 심화하는 차별적 발언
- “커서 공장에 갈래”, “평생 농사나 짓고 살아라” : 노동자나 농민에 대한 편견과 멸시가 담겨 있는 차별적 발언이다.
- 예쁜 아이, 공부 잘 하는 아이에게 친절한 교사

위의 예시 외에도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3. 학생 인권 개선 방안

평등권은 모든 인권 보장의 방법과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평등권을 따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보다 인권 전반에 대한 증진 방안이 중요하다. 공부 잘한다고 한 대 맞고 못한다고 두 대 맞는 문제를 차별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보다 신체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체벌 자체를 금지해야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지도를 통한 개선이다. 그러나 관료적 시스템 내에서는 인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즉 인권 침해 당사자 교사나 교육관료의 자율 노력에 의한 시도는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의 참여와 의지 없이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학생들의 인식은 약간 다르다. 입시 교육 개선이나 교사나 기성세대의 태도 변화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아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표4〉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

청소년의 권리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합계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 개선	어리다고 청소년을 무시하는 어른들의 생각 변화	청소년 권리에 대해 교육 담당할 수 있는 기구	청소년 및 청소년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자치활동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확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	기타
	%	사례수							
전체	100.0	593	24.3	32.2	5.9	5.6	12.6	19.1	0.3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을 수 없다.”

이 법안은 천부인권의 보장을 위해 사용될 성격의 것은 아니나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잠시 차용해본다. 수 십년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학생 두발 규제가 2000년, 2005년 두차례 학생들의 조직적 저항을 크게 개선되었다. 결국 피해자인 학생들 스스로가 인권에 대한 의식을 학습하고 고양시켜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저항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본다. 동시에 교사와 교육당국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위에 한계를 지낼 수 밖에 없지만 차별적 대우를 개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 가. 입시 교육 해소

입시 위주의 교육이 학생 인권에 얼마나 위협적인 환경인지 앞서 살펴보았다. '과정'으로서의 교육이 아닌 '목적'에 경도된 교육이 지배하는 학교 현장에서 인권은 언제든 유보될 수밖에 없는 사치품으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인권 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근본적 대안은 입시 위주의 교육을 몰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학생부와 내신성적 중심의 입시전형에서부터 대학평준화까지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 나. 「표준 학칙」 등 제정 배포

학교 현장에서 직접 적용되는 학칙과 세부 하위 규정(학생생활규정, 학생회 운영 규정, 학생임원 선출규정 등)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규정을 검토하여 전면 개정해야 하는데 학교 현장에는 인권마인드를 갖춘 교사가 사실 별로 없다. 또 학칙 등을 검토하고 분석해야 할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나 교육시민단체 등에서 학생들과의 협의를 거쳐 인권 침해 조항을 가려내고 인권 보호 조항과 장치를 내장한 「표준학칙」, 「표준학생생활규정」, 「표준 학생임원 선출규정」 등을 제정, 학교로 보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각 학교에서는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학칙 등 내부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 다. 학생인권파수꾼(인권옴부즈맨)제도 도입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옴부즈맨제도(데팡쇠르 데 장팡)의 도입도 검토해봄직 하다. 별도의 기구를 만들지 말고, 현재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청소년위원회를 되살려 이 기구에 학생인권 감시기능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감시와 보호를 맡기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 데팡쇠르 데 장팡(Defenseur Des Enfants)

프랑스에서 2000년 3월에 설립된 이 기구는 민간단체지만 정부 지원 아래 불우 어린이·청소년을 위탁·보호하고 학교폭력·체벌·불평등 대우 등을 감시·감독한다. 위원회 구성에는 청소년 참여가 의무화돼 있음.

## 라. 인권 교육 강화

초임발령 받아 오는 젊은 선생님들은 대부분 열정적이고 학생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지도한다. 그러나 그런 열정과 노력을 반감시키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반인권적 선배 교사 따라하기이다. 아무런 비판적 인식 없이 선배교사의 반인권적 행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젊은 교사들이 의외로 많다. 모든 학생들의 수행평가 채점 결과를 교실 게시판에 붙여둔다든지 심지어 매를 드는 경우도 자주 본다. 그러한 행위가 어느 정도의 고민 끝에 나온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교사 양성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교육대나 사범대학 교육과정에 필수교양과목으로 '학생 인권' 또는 '인권 교육' 등을 이수토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현직 교사들을 상대로 한 인권 교육도 의무화해야 한다.

피해자 위치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인권 교육도 교육과정 속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인권 침해 상황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교사의 권위에 굴복하고 마는 학생들에게 인권 감수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인권 의식에 충만한 학생들에게 교사는 함부로 학생인권을 짓밟지 못하는 법이다.

## 마. 학생인권 보장에 앞장서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현재 학교 구조 아래에서는 인권 마인드를 갖춘 교사는 학교생활이 더 힘들다. 몽둥이를 들지 않는 교사의 수업은 소란스럽기 마련이고, 학생의 인권을 챙기다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 수행평가 성적을 확인시킬 때도 게시판에 붙이지않고 일일이 보여주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다. 바쁠 땐 그냥 붙여놓고 확인하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혼자 노력해도 알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 관리자들은 학생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는 교사를 능력있는 교사로 평가하길 좋아한다. 학급 운영이 느슨하고 자습시간이 소란스러운 학급의 담임은 자칫 무능력한 교사로 비춰지기 쉽다. 그러니 늘 고민이 많다. 이런 교사를 살려야 한다.

인권지킴이 교사에게 보상을 하고 권장해야 한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현행 근평 외에 별도의 교원평가가 만약 시행된다면 평가 항목에 학생 인권 관련 항목을 넣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 바. 학생부를 폐지하고 학생인권복지부로 개편

학교 내에서 학생부는 인권 침해의 본산이 되고 있다. 학생부 교사는 공포의 대상이다. 이런 학생부 대신 학생인권과 학생 자치를 지원하고 학생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로 전환이 요구된다. 일단 명칭부터 바꿔놓고 보자. '학생인권부' 또는 '학생복지부' '학생인권복지부'라 고칠 것을 제안한다. 일단 부서 명칭만 바뀌도 그 이름이 부끄러워 인권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 「헌법이론과 헌법」, 허영, 박영사, 1995
- 「헌법학 원론」, 권영성, 법문사, 1992
- <한겨레>, 2006년 7월11일치
- 「경북학생인권백서」, 전교조 경북지부, 2006
-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인권운동사랑방, 2001
- 「인권하루소식 제2800호」, 인권운동사랑방, 2005

## 청소년 인권에 대하여

이재익(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학교인권국장)

---학생을, 자녀를, 청소년들을 인간으로 대접해야 우리 자신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애가 말을 안 들어먹어서 미치겠다(죽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이나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애가 말을 듣지 않아서 미치거나 죽은 부모나 교사는 한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부모나 교사들이 말을 죽어라고 듣지 않는 학생들 욕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실제로 미치고 자살을 합니다. 자살은 청소년 사망 원인 중 교통사고에 이어 2위입니다. 지난 5년간 20세 미만 청소년 자살은 전체 자살자(2005년 자살자 수는 1만 4,011명) 중에서 13.2%나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살충동을 느낀 경우를 조사해 보니 성적문제를 제외하면, 부모님과의 불화가 1위였습니다.

상당공부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죽어라고 듣지 않는다는 불평은, 나도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외면해 왔던, 그래서 미치고 자살해 왔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보시겠습니까?

### 교육운동에서 학생인권운동이 중요한 이유

대한민국 교육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가 아니라 한나라당 모 의원이 2003년 경제협력개발기구 40개국 학생들의 공부시간을 조사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정규수업시간 세계 2위, 보충수업시간은 압도적인 1위, 사교육 3위 등 모두 합치면 전 세계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동안 수업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학습노동에 청소년들은 몸과 마음이 뻘뻘 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입시지옥의 탓이지요. 더구나 요즘은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내신등급제, 논술, 수능이 아이들을 포위해서 쥐어짜고 있습니다. 내신등급제는 교사와 학교의 요구, 논술은 대학과 논술학원들의 요구, 수능은 교육부의 요구지요. 학생들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바라는 '정상'에서 이탈해서 '부적응 학생'이 되거나 스스로 '반항아'나 '학습부진아'가 되어 전문계(실업계) 고교를 선택하지 않는 한에는.....

자발적 동기가 아니라 남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한 곳에 많이 모이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제가 필수라서 근대 학교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감옥입니다. 거대 학교 자체가 반 인권적인 요소입니다. 과밀학급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거대학교에 대한 문제의식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비판받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학생들 전체의 이름과 특징을 모를 수밖에 없는 지금의 학교는 모두 거대학교입니다. 이런 거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과 별 관계없을 공부를 강제로 하고, 일과시간 후에도 숙제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받습니다.

교육환경은 어떤가요? 학생들이 다니는 공간 중에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화장실), 가장 춥고, 가장 더워서 짜증나는 곳이 학교입니다. 오죽하면 겨울엔 시베리아, 여름엔 찜질방이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또한 1시간 안에 1000여명의 학생이 400석밖에 되지 않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밀어내기 급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치지 않고 정상인 학생이 그래도 많다는 것에 우리 교사와 학부모는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1년 365일 생활합니다. 어른들이 같은 환경에 있다면, 1주일도 못 참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들을 닦달하고 있습니다. 욕설과 체벌을 자신의 권리--양육권, 교권으로 생각하면서, 규율이란 이름으로 학생의 신체를 난도질하면서..... . 이건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가장 힘이 없고, 자신을 주체로 생각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 교육부와 기득권세력이 학부모와 교사를 속여서, 앞잡이 삼아 벌이는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학부모와 교사, 교육부가 서로 싸우는 듯이 보이면서 학생을 쥐어짜고 있는 야합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학교와 대한민국 교육을 정상으로 만드는 활동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학생인권입니다. 우리 전교조가 처음 모여서 외쳤던,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저려오는 '참교육'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참교육의 전제는 인권이 되어야 합니다.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은 학생인권의 잣대로 새로워 져야 합니다.

## **교권은 학생인권으로 보장됩니다**

왜 참교육의 전제는 학생인권이 될 수 밖에 없을까요?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교사는 그 학생들과 진심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항상 지쳐 있고, 찌들어서 아무 것도 하기 싫은 학생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봉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웃기고도 잔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진도 나가시죠'라는 말은 '닥쳐라. 바빠 죽겠는데 헛소리 그만하고 입시지옥에 당신이 말

은 역할이나 잘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점수 줘요?'라는 말에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오히려 교사가 화를 벌컥 내는 상황을 저도 겪었고, 다른 동료교사들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제 수업시간에 자유로 쉬게 합니다. 몇 명의 학생이 너무 자주 쉬어서, '계속 아프다면 건강이 걱정되고, 계속 쉬어도 공부할 마음이 들지 않고 쉬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으니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면 학생들은 펄쩍 뛰면서 결사 반대합니다. 차라리 앞으로 쉬지 않을 테니까 절대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또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가능성이 있는 일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사에 대해서도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도 학생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서로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학생들이 부모와 교사, 기성세대의 말을 어떻게 하면 믿을까요? 지금까지 부모는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나 대리물로 취급해 왔습니다. 교사는 훈련과 통제로 번호 잘 찍는 공부기계, 물건, 교육상품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취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인간으로 대해야 합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교육은 성립합니다.

학생들끼리 어른들의 야비하고 무자비한 조폭문화, 군대문화를 흉내내는 것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을 하는 학생에게도 인권을 보장해야 할까요? 저는 예전 학교에서 학생부장직을 3년동안 했습니다. 올해는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학교에서 학생부장을 할 때입니다. 첫째는 학교폭력을 하거나,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때렸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는 체벌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 학생들과 생기있게 연결되고 싶은데, 폭언과 체벌은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체벌은 쉽고 빠르며 속시원한 대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잔인해지고 강도가 세져야 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인권을 보장하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격을 존중하면서 상담해야 합니다. 자유를 주고 나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신에 학교폭력을 하는 학생들은 제가 수업하는 교실에 계속 함께 데리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폭력은 철저히 체험학습입니다. 아무리 폭력적인 영화를 많이 보고, 폭력적인 욕설을 하더라도 실제 폭력을 행사하기는 힘듭니다. 학교폭력을 하는 학생들은 부모님들에게, 교사들에게, 선배들에게 많이 맞아 왔던 학생들입니다. 부모와 교사의 체벌이 학교폭력의 주범중 하나인 셈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자신들의 교실에서 동료 학생들에게까지 인권을 침해당하는 학생들은 자존감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자신을 가치없는 존재라고 느끼도록 우리는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키워온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친구를, 부모를, 교사의 교육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흔히, 학교폭력은 널리 알려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자기가 당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을 보면 꼭 신고하라고 합니다. 뒤집어 생각해 봤습니다. 동료교사가 체벌과 폭언을 하고, 학생들의 머리를 자르는 것을 본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압수해서 몇 주를 돌려주지 않고 만화책을 압수해서 찢어버리는 것을 보고도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운데, 어떻게 학생들 앞에 당당히 서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휴연에 학교폭력을 하는 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도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를 때리고 담배 피잖아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애들 불러서 때리고 담배피우는 것 뿐이에요.’ 이 학생을 교육하려면 전체 학생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지요.

학교를 옮기고 나서도 위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메신저로 교내에 알리고, 관리자와 이야기하고, 해당 선생님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사가 포함된 교직사회에서 학생인권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을 실천한다는 것은 왕따를 당하는 지름길입니다. 실제로 ‘저 사람 선생맞나? 이상한 사람아냐?’는 말도 동료교사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저는 교육현장에 학생인권을 주장하고 실천하는 ‘왕따’들이 많아져야 학부모와 학생에게 떳떳해져서 스스로 주장하지 않아도 교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교조가 걸어온 길

전교조는 처음 만들어 질 때부터 학생들이 겪고 있는 입시지옥을 없애고, 감옥같은 학교를 즐거운 학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안없이 반대만 하는 조직으로 낙인찍혔습니다.

결성 당시의 구호가 생각납니다. ‘아이들이 죽어간다 입시교육 철폐하라’ 이 구호 아래, ‘참교육’이란 이름으로 1989년 전국에서 1,500여명의 교사들이 파면, 해임되었습니다. 그 후 해직 기간동안 학교 밖에서 참교육을 위해 노력하던 교사들은 결국 원상회복이 되지 못한 가운데 94년 3월 ‘학교현장으로 돌아가 교육개혁과 전교조 합법화를 앞당기기 위해’ 복직을 하게 됩니다. 이후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되었고, 2000년대 초반 전교조는 조합원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교육계에서 가장 힘있는 단체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교육에 관한 의제를 전교조가 주도했다면, 이후 네이스부터 교원평가와 성과급 등을 내세운 정부와 교육부, 기득권세력이 교육에 관한 의제를 주도하고 전교조는 반대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물론 전교조의 역사는 위의 몇 줄로 정리해서는 안 되지만, 위 내용은 제 개인적으

로 일반 학부모나 국민들이 전교조를 보는 시각을 추측한 것일 뿐입니다.

요즘 일반 국민들과 학생들은 '전교조는 참교육에서 출발했지만, 나름의 역할을 했고 이제는 교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정책에 대안없이 반대만 하는 조직이 되었다. 너희 전교조는 열심히 했고 잘해왔다. 이제 교사대우도 좋아졌고 학교도 많이 민주화되었으니 너희 역할은 다 했다. 이제 가만 있어라.(아님 해체하던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교육부와 기득권세력은 전교조 결성 당시의 보수관료 + 학교장 : 교사 + 학부모 + 학생의 대립선을 보수관료 + 학교장 + 교사 : 학부모 + 학생으로 변경시키는데 성공하였다는 말입니다. 보수 관료들의 승리입니다. 전교조는 네이스트투쟁부터 교원평가반대, 성과급반대 투쟁에서 죽을 힘을 다해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결과적인 실패를 한 것입니다.

## 제 2의 참교육운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시 참교육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교육에 관한 대안을 나름대로 다 갖고 있으며, 단지 교육부와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다. 우리 힘이 세지고 조직강화를 해서, 조합원과 국민들을 설득하면 된다.'는 생각을 혹시 우리 전교조 집행부나 활동가들은 갖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대안을 나름대로 다 갖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 본부의 학생인권법안 교육선전 자료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정말로 마음을 내어서 자신의 학교와 자기 수업에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더구나, 학생들의 상황은 전교조 결성 초기보다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학교만 놓고 보면 물론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CCTV로 감시하는 학원과 개인과외, 교육방송, 학부모교육정보 열람서비스 등으로 더 꼼짝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결과물인 학생들의 상황이 더욱 나빠졌는데도, 교사에 대한 학교단위의 통제가 조금 약해졌다고 전교조가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근대 의무공교육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을 성과급과 교원평가로 교묘히 유도하는 교육부의 의도에 마냥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의무공교육 체제 자체에 대한 대안을 학생인권의 잣대로 내놓아야 합니다.

학생인권에 바탕을 둔 입시교육 철폐, 학벌폐지, 학생 건강권보장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학벌폐지, 입시교육 철폐, 강제보충수업과 강제 아침자율학습폐지, 교실 냉난방, 즐거운 급식, 학생상담과 수업준비를 위한 잡무거부를 걸고 서명운동과 각종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나 말이 많은 연가투쟁을 해야 합니다. 학생인권의 이름으로 전교조 조합원인 '나'를 포함한 학교현장을 개혁해야 합니다.

보수적인 조중동이 왜곡하고 있는 여론이 시키는 대로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조합원인 '나' 자신이 참교육이라는 깃발 아래 당당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전교조의 정체성을 새롭게 찾아야 합니다. 참교육을 하는 전교조 말입니다.

## 개인적인, 위험한 상상들

아래 상상들은 전교조의 공식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상상입니다.

먼저, 학생과 청소년이 충분히 놀 수 있게 합시다. 주 50~60시간인 학습노동시간을 법으로 하루 6시간, 주 30시간으로 줄여야 합니다. 어른들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제 이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하루 2시간은 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30시간 공부제도가 가능하려면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절대 학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학원을 낮 시간에만 하면 됩니다. 대신에 학교를 포기하고 학원을 보낼 학부모는, 학원을 선택할 학생은 검정고시를 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학생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한 여름 무더위에 교무실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춥다고 모포 두르는 교사들이 있는데, 교실은 찜질방이라서 교무실에서 나와 교실에 들어가면 안경에 김이 서릴 지경입니다. 정말 '이건 아니잖아'입니다. 학교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각 특별실에 있는 에어컨과 난로를 모두 떼어서 교실부터 설치해야 합니다. 50여명의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사휴게실도 필요하지만, 1,000여명의 학생들이 사용할 학생휴게실은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면, 학생은 기성세대 말대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는 꼭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교칙이나 학사일정일 비롯해서 소풍장소 결정 등에 학교운영위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학생에게 욕을 하지 말고, 때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실정법 위반이기도 하고, 이미 상식이 되어 가는 중입니다.

다른 어떤 투쟁보다도, 무의미한 감옥같은 학교를 청소년 인권에 바탕을 둔 참교육을 하는 학교로 바꾸는 작지만 크고, 어렵지만 꼭 해야 할 투쟁에 교사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여기에 학교와 교육, 가정과 우리마을,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학생의 안전, 건강 등 복지실현을 위한 과제

문혜선((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상담실장)

### 가. 들어가며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학교의 관리자들은 ‘학생’이라고 말한다.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

교육 관계자들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라고 말한다.

정작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모르겠다’라고 답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이 주인공이라는 확신을 심어준 학교는 존재하는가?’라고 묻고 싶다.

“학교는 아이들 가르치는데 신경을 쓰겠으니, 학부모들은 교사들 사기진작에나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세요!”

“공부 못하고 인간성 좋은 것은 바보다”

“인성, 인권이 됩니까? 입시에 성공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생각하면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인간성도 좋아요?”

단위 학교학부모회, 운영위원회, 급식위원회 활동을 하며 학교관리자들에게 들었던 훈화의 내용에서 일부나마 교육관계자들의 ‘학생인권 척도’를 짐작해본다.

아침 6시면 일어나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가 안쓰러워 학교급식에 관심을 가졌던 어떤 학부모는 “아이들 밥은 집에서 잘 먹이세요. 우리는 공부시키는데 신경 쓰기도 바빠요!”라는 학교장의 질책에 황당하다며 상담실을 찾아왔다.

아이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할 학교에서 아이들을 공부만 하는 기계 취급 하는듯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 권리주장을 한다는 것은 꿈꾸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 증대’를 위한 학생인권보장 의무조항(2007. 12. 14)이 신설됨을 계기로 학생의 인권증진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럽다. 이에 교육관계자들이 학교 내의 학생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떤 부분에서 노력이 좀 더 필요한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나. 학생의 안전한 먹거리 현실

대구시에서 친환경 급식재료의 학교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급식재료 차액을 지원하는 '친환경급식시범학교'를 실시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미미하다.

“친환경, 유기농 말뿐이지 믿을 수 없어요?” “제출 서류가 복잡하고, 지원금에 대한 별도 회계보고와 감사도 받아야하고 귀찮기만 해서 우리학교는 안합니다” 라며 신청을 꺼리는 관계자들의 항변에 할 말이 없다. 시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을 지원하며 학생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받아들여야할 행정적 관리주체가 그런 제도가 있다는 공문조차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 몇 년 전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학교장에게 관리책임을 물으면 급식을 집행할 수 없다!, 바쁜 학교장이 매일 먹는 급식에 어떻게 일일이 식재료와 위생을 점검할 수 있느냐?”던 어느 교장의 항의성 발언은 지금 생각해도 답답하다. “식품유해 첨가물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에도 “교과서에 없는 내용은 어떤 것도 교육시킬 수 없다”며 거절하는 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다.

급식실 종사자 예산 절감을 이유로 '수저 개인휴대'를 강제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급식 후 '수저'를 제대로 씻지 않고 보관하며 재차 사용하는 실태를 알면서도 방지책은 외면하고 있다. 학생들의 식사 특성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여 반영하지 않는 급식 행정이 식중독 사고로 연결될 필연성을 내재시키고 있는 것이다. “급식 같은 것 관심 같지 말고, 모의고사 많이 보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된다.”하며, 식중독 사고가 난다고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했던 어떤 부장교사의 불멘소리가 기억에 남는다. 굳이 '보건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사회적 통념상으로 보장받아야 할 '안전한 먹거리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일부 '학교관리자'의 인식과 행동들이 학생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가로막는 굳건한 장벽이라고 생각한다.

## 다, 학교내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현실

'푸른숲가꾸기 시범학교'에 다니는 학부모가 상담을 해온 적이 있다. “잔디 보호를 위해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운동장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 “등교 후 '수업 시간 전 운동장 가장자리에서 축구를 하다 발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친구가 다쳤는데 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 해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내용이었다.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설비를 하고, 학교시설을 즐겁게 활용해야할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고, 안전권을 학교가 보장하지 않은 데서 벌어

진 사고라는 판단이 들었지만, 초등 학부모의 서툰 대응방식으로 ‘안전공제회’를 통한 문제해결은 어려웠다. 교실 배식방식 급식을 실시하면서 유리판 위에 커다란 밥통을 올려놓고 배분을 하던 중 유리에 금이 갔는데 당시 밥을 배식하던 학생에게 유리값을 물게 하던 학교의 처리방식에 미루어 짐작해보면, 학생들의 안전권이 들 어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대구시내 일부 고등학교는 입학도 하기 전에 학생들 을 학교로 불러들여 ‘예비 심화반’을 운영하느라고 야단법석을 부리지만 정작 학생 으로서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안전에 관한 교육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사고가 나 면 일시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일회성 집단교육으로 사건을 무마 하려는데만 집중 하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화된 교육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 전 대구지역에 ‘학교 내 성폭행’ 사건으로 전국을 들썩이게 하는 사건이 표 면화 되었을 때, 학교의 대처방식과 학교 내 성교육 현황은 지역의 학부모들과 전 문가들을 경악시켰다. 제대로 된 현황과약을 통한 대책을 외면하고 오히려 축소, 무마하려다가 가해·피해학생의 숫자만 확대시켰다. 뒤늦게나마 대구교육청이 ‘성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장·보건교사·학교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는 소식에 학부모로서 기대를 가져보지만 체계적인 ‘교육’부 재에 여전히 불안하다.

## 라, 학생의 안전,건강을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

“사후약방문은 이제 그만하자!”

“서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계적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을 마련할 시점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에 대한 ‘인권’을 지켜 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발생 가능 한 사실에 대한 항목별 매뉴얼보급을 통한 교육주체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서둘러야 만 한다.

‘학생’을 중심에 세우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먹거리를 보장하고, 안전 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법규’에 충실한 학사 운영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노력해보자. 학생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함께 하는 교육의 한 주체로 인식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규정에 맞는 행정적 서류를 갖 추는 ‘행정학교’가 아닌 교육 주체 간 ‘다자간 통행’을 하는 학교를 소망한다. 서로 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함께 고민해서 만든 ‘인권 매뉴얼’의 학교현장화는 교육의 희 망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우리사회의 희망이다. 이들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며 그것이 교육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끝〉

# 학생의 안전, 건강 등 복지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이수남(영진고등학교 진로상담부장)

## I. 서론

세상이 밝아지고, 민주화가 크게 진전됨으로써 인권신장도 거기에 발맞춰 현저하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을 여러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교육 분야이며, 일선 학교에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볼 때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육현장에서의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크리라 생각된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안전권과 건강권은 인권의 자유와 버금가는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의 안전을 위협받으면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

특히 심리학자인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5단계를 보면 생리·기본적인 욕구 다음으로 안전에 관한 욕구를 강조하고 있다. 사람은 안전을 확보한 다음이라야 다른 상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안전에 관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또, 건강을 침해받는다는 것은 신체적인 손상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것 또한 본능적으로 보호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욕구를 바라고 있는데, 청소년들이라고해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청소년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안전권과 건강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II. 안전권과 건강권에 대하여

### 1. 안전권

세계 인권선언 제3조에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라고 적고 있다. 이처럼 포괄적인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호 받아야 될 우리 청소년들은 거기에 준하는 보호를 거의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학교는 신성지역으로 인정은 받고 있지만 교육의 질적, 양적인 면에서 언제든 안전권을 해칠수 있는 분위기와 상황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과 관련한 학내안전사고와 그 법적 기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안전권 확보 목적

체계적인 학교 안전 교육으로 안전의식의 조기 체질화·생활화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교직원의 안전한 교육 활동 유지하며, 학교 내·외의 인적 자원을 정비하며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 2) 법적 근거

가.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9조③(아동의 건강 및 안전)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화재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 (교육 <개정 2007.3.27>) ③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의 교육실시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의한다.

## 3) 안전권 유형별 침해 사례

### ■ 유형 1. 학교 내 안전사고

#### 【학교 내 안전권 침해 구체적 사례】

- 학교 건물에 벽이나 천정이 금이 나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
- 공놀이 경우 학교 바깥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씨름장에 모래 등 충격 흡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과학 실험을 할 때 지도 교사나 보조교사 없이 학생들끼리만 실험할 경우

## ■ 유형 2. 위험한 학교 밖 교육시설

### 【학교 내 안전권 침해 구체적 사례】

- 수련시설 등 학교 밖 교육활동시설을 선택할 때 화재나 추락사 예방 등 안전을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 현장실습이나 훈련 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학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 ■ 유형 3. 위험한 등하교길

### 【학교 내 안전권 침해 구체적 사례】

- 통학로에 인도나 횡단보도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통학로에 위험한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대체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등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통학수단을 타당한 이유 없이 일괄 규제하는 경우

## ■ 유형 4. 안전교육 미흡

### 【학교 내 안전권 침해 구체적 사례】

- 화재나 사고 시 응급 처치 방법 등 긴급 대응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안전사고 발생 등 사고가 난 이후에야 전체 학생을 모아놓고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이나 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산업체 현장실습을 내보내는 경우

## 4) 교육현장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대책

### 가. 학교 안전교육의 체계적 실시

학과위주의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다보니 안전 교육은 거의 형식적이다.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에 관한 큰 이슈가 있어 교육청으로부터 학생들에게 안전지도를 하라는 전달이 있을 경우나, 방학 전에 유인물을 만들어 배부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훈화를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교사들은 관련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한 진정한 마음을 담은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안전

교육은 설명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본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유관기관 견학 및 체험장 활용, 평소에 어떤 재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구 찾기 운동 등 실제 상황 대처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

#### **나. 교통안전 교육의 내실화**

교통안전 교육은 역시 현장지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통사고 연령대를 보면 노인층을 제외하면 초등학생들이 많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은 물론 고등학생들까지 현장 체험중심의 교통안전 교육은 절실하다. 요즘 체험 코스로 교통안전 학교를 방문하여 실제 상황처럼 익히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다.

곧 중·고등학교에서는 자전거 및 오토바이 사고가 매우 빈발하고 있다.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주기적인 교통안전 교육 실시 및 운행 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 **다. 등·하교 시 현장 지도 강화**

현재 아침 등교 시에 경찰관들이나 택시기사, 녹색 어머니 교통 지도단에서 학생들의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현장지도를 잘 하고 있다. 그러나 하교 시에는 그런 지도를 잘 볼 수 없다. 하교 시에 청소년 교통사고가 더욱 빈발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교시에도 유관 기관끼리 협조해서 현장 교통지도를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교문 진·출입로 인도·차도 분리 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다발 횡단보도 및 학생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에서는 관할 경찰서의 협조 요청 집중 지도도 받는다.

#### **5) 학생 안전사고의 사례**

작년의 일로 기억된다. 대구의 모 공업고등학교에서 실험 실습의 연속수업 중 쉬는 시간에 화학용기가 폭발하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그날 교사가 잘 지도하고 있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순식간에 일어난 안전사고였기 때문에 잠시 학생들의 안전권에 대한 문제로 불거진 적이 있다.

## 2. 건강권

아동권리협약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말도 있듯이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먹는 것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야한다는 말도 있다. 더구나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들에게도 건강권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국의 감시 감독도 많아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개선되어야할 점은 많다. 청소년과 관련한 건강권과 관련한 그 법적 기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건강권 확보 목적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좋은 습관을 길러 줌으로써 장차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법적 근거

#### 가.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 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나. 『학교급식법』

제10조 (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

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3) 건강권 유형별 침해 사례

#### ■ 유형 1. 학교환경

##### 【학교 내 건강권 침해 구체적 사례】

- 신체 치수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조도의 조명기구를 방치하는 경우
- 환풍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환경 검사와 정비가 불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 화장실 위생 상태가 불결하거나 비누나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교실 커튼 등 큰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기구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교실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 학교 주변의 공사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거나 분진과 소음으로 학습과 건강을 침해하는 경우
- 기숙사 등 학생들이 다수 생활하는 공간의 위생 관리가 불철저하거나 너무 많은 수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
-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 유형 2. 정신 건강에 대한 배려 부족

##### 【학교 내 건강권 침해 구체적 사례】

- 스트레스, 불안 등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는 는 교육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상담 전담 교사가 없는 경우
- 학생이 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처벌 중심으로 접근하거나 학생의 정신력 부족 탓으로만 돌리는 경우

#### ■ 유형 3. 몸이 아픈 학생에 대한 배려 부족

##### 【학교 내 건강권 침해 구체적 사례】

- 몸이 아파 조퇴를 하거나 병원에 다녀오려 해도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불허되는 경우

- 침상 등 보건실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보건실이 높은 층에 있거나 햇볕이 잘 들지 않는 후미진 곳에 위치한 경우
- 보건교사가 아니라 담임교사의 입실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보건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보건교사가 없어 응급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건교사의 개인차에 따라 응급처지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
- 방학 중 보충수업이 진행되는데도 보건실은 운영되지 않는 경우
- 기숙사나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따로 응급약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 보건실 문을 잠그고 교사가 자주 자리를 비워 보건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 유형 4. 좋은 먹거리에 대한 보장 미흡

##### 【학교 내 건강권 침해 구체적 사례】

- 급식 지원 아동에 대한 공개나 낙인, 차별적인 시선 등으로 급식 지원 신청을 꺼리게 만드는 경우
- 학교 외에 다른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
-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 급식 식단을 짤 때 학생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 급식비 미납 학생을 공개하거나 공개적으로 독촉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영양 담당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영양을 고려한 식단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 급식 식단만 공개되고 원산지나 식재료, 식재료의 질 등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
- 위탁 운영 시, 급식업체 선정 과정이나 운영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 급식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전문 인력이나 장비 부족으로 위탁급식업체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
- 학교 매점에서 안전성이 검증 안 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 유형 5. 부적절한 건강 검진

##### 【학교 내 건강권 침해 구체적 사례】

- 신체검사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나 학년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거나 문진 위

주로 이루어지는 등 학생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부적절한 검사 장비로 건강 검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 체육관 등 공개적인 장소나 엿보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신체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 건강 검진 시 파악되는 정보가 함부로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경우

## ■ 유형 6. 건강 촉진 활동의 부족

### 【학교 내 건강권 침해 구체적 사례】

- 체육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 비가 올 때 대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
- 학생의 체형과 특성에 맞는 운동 기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장애학생, 여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나 체육 교육이 부재한 경우
- 체력검사 결과를 점수화하거나 무리한 등급화를 시도하는 경우
- 성 보건, 불법 낙태의 위험성 등을 포함하여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 유형 7. 강제 격리 조치

### 【학교 내 건강권 침해 구체적 사례】

- 체력 단련, 비만 치료 등을 명분으로 학생을 일찍 등교시키거나 방과 후에 남겨서 따로 과도한 운동을 시키는 등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운동을 시키는 경우
- 비만 특별 관리반을 두고 특정 학생을 포함시켜 낙인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우
- 전염병 환자 발생시, 별 다른 대책 없이 학생을 격리시키는 방식으로만 처리하는 경우

## 4) 교육현장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책

### 가. 학교 건강교육의 체계적 실시

보건·위생 및 약물에 대해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건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나. 건강 교육의 내실화

아동 및 청소년의 부상과 질병 구조가 불의의 사고와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변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입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종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공부와 씨름하는 사이에 정신은 피폐해지고 몸은 만성피로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학교 사회의 모습이다. 말로는 “우리 청소년들은 내일의 일꾼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하고, 건강을 잘 돌봐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아직 내실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의 보건계획의 연간계획 수립에 의해서 지속적인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각종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을 우선시 하여 보건교사도, 영양교사도 학생들에게 건강과 영양에 대해서 강의나 시청각 교재를 통해서 지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 제3항)

## 다. 학생 건강증진 추진 내용

- (1) 보건교사는 담임 또는 교과담당 교사가 학생의 건강유지 증진에 필요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재와 자료 제공 등 협조한다.
- (2) 학교장은 필요시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하여금 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학교보건, 위생교육에 충실한다.
- (3)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관련교과 등을 통한 보건교육이 주당 3시간 이상(보건교사 기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보건교육을 통한 학생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한다.
- (4) 학교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997년에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교육감, 교육장과 학교장의 위생 및 안전점검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은 관할 학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학교장은 매 급식시마다 위생 및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학교내 위탁급식소에 대하여는 교육청의 점검 이외에 교육청, 시, 군, 구청,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합동 점검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 5) 학생 건강권 관련 사고의 사례

가. 어느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춘계 체육대회에서 자기 반이 우승을 하자 그렇게 된 것에 크게 기여하게 된 학급실장을 행가래치다가 서로 민다 바닥에 내동댕이친 일이 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다른 선생님이 놀라서

달려가 “괜찮느냐?”라고 물었을 때, 학생은 허리 쪽이 많이 아팠지만 부끄럽기도 해서 “괜찮다”고 하며, 일어섰다. 그 말에 교사는 그 학생을 예사로 생각하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는데, 그 애는 그날 하교 후 너무나 허리가 아파 부모와 병원에 가서 3 달가량을 허리치료 때문에 학교생활에 큰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 비록 애들 끼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교사는 즉각적인 병원 이송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오랫동안 학생을 고생시키게 되었다.

나. 몇 년 전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오염된 물을 사용하여 학교급식을 준비한 것이 식중독을 불러일으킨 경우가 있다. 또 돼지고기를 잘 못 삶아 학생들에게 먹인 것이 단체 배탈을 초래한 적이 있었다. 이는 사전에 해당학교 교사나 관계자들이 사전에 미리 식수를 점검 자주 하거나, 규정대로 음식관리를 잘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지도 모른다.

### Ⅲ. 마무리

비록 어린 학생들이지만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잘 해주고, 못 해주는지는 잘 알고 있다.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학생이기 때문에 자기주장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교사 등 성인들은 먼저 청소년들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즉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가 바로 인권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

그들을 한 소중한 인간 개체로서 여기고 그들의 마음에 “이건 잘못된 일이야.”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성장기에 있으므로 활동성이 어른들 보다 많기 때문에 안전에 노출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리고 어른들이 애들을 예사로이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우선 시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올 것이고, 또 배려하는 행동이 그대로 나와서 그들의 인권을 해치는 일은 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들에 대한 안전권과 건강권은 더 잘 보호되리라 믿는다.

# 학생의 안전, 건강 등 복지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류문숙(와룡고등학교 교사)

## I.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며

사람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이고,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타인에게 침해 받으면 안 되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학생도 인권의 문제에서는 약자로 볼 수밖에 없다.

학교 현장이나 사회적 인식, 혹은 부모의 의식 속에서 학생은 어리고 불완전한 존재로, 권리의 주체이기보다는 교육 혹은 통제,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입시에서의 성공이 강조되는 경쟁적인 교육 풍토 속에서 학교 문화는 학생의 인권이 숨 쉴 틈을 구조적으로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 부문의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인권감수성을 고양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친인권적 문화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아동 시기부터 인권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학교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존엄한 존재이며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나와 함께 다른 모든 인간이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는 인권의식을 공동체 구성원들의 연대와 참여와 실천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인권의 측면에서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친인권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다.

여기서는 인권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학생들의 복지권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과 대책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한다. 학교에서의 친인권적 문화 조성은 참여와 실천을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 II. 학생의 복지권에 대하여

### 1. 법적·이론적 근거

#### 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인권에 관한 4개의 일반 원칙을 규정

- 1) 비차별의 원칙(2조) : 아동 자신과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어떠한 아동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 2) 아동 최상의 이익(3조)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있어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3)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6조) :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가능한 한 최대 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가능한 한 최대 한”이라는 의미에서 “발달”은 질적인 면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모두 의미함.
- 4)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12조) :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아동의 의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서 정당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 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의 열쇠 말 10가지

- 1) 권리의 주체로서의 학생
- 2) 참여와 결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
- 3)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 4) 아동친화적인 학교
- 5)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을 배우는 학교
- 6) 아동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학교는 아동의 학습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학교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의 총체적 삶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동이 학교 체제 속에 들어오기 전의 상황과 교실을 떠난 후에 ‘가정, 지역사회, 일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유념하는 것이다.

#### 7)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이 있는 학교

아동의 각 권리는 전체 맥락과 떨어져 있거나 분리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강화·보완·통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의 어떤 권리, 가령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아동의 프라이버시 등 여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8)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 9)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교육의 물적 토대를 비롯해 교육환경을 고려치 않고 학생에 대한 인권존중을 교사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교사는 인권에 기반한 학교시스템을 갖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자로 어떤 능동적인 개혁도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모든 단계의 교육체계에서 교사는 존중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 10) 권리구제가 보장되는 학교

### 다.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15가지 권리 항목

#### 1) 학생의 존엄성과 의사 존중

#### 2) 차별 금지

#### 3) 교육에 대한 권리

#### 4) 학생 자치와 참여권

#### 5) 신체의 자유

#### 6)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7) 표현의 자유

#### 8) 사생활과 개인 정보의 보호

#### 9) 정보 접근권

#### 10) 건강권

- 학교 시설과 물품, 위생 설비, 학교 주변 환경
-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치유, 상담활동의 강화, 처벌이 아닌 치유
- 호소에 대한 존중, 최적화된 보건실
- 학교 급식의 질 확보, 급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학교 매점에 대한 감독
- 적절한 건강 검진, 사생활의 보장
- 운동 시설, 체력의 등급화 제한, 보건 교육 실시
- 운동의 강요 금지, 전염병 관련 조치

#### 11) 안전권

- 안전을 위한 설비

- 학교 밖 교육시설의 안전 점검, 사고에 대한 책임
  - 통학로의 안전 확보, 통학 수단 제재의 최소화
  - 안전 교육 실시
- 12)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쉬는 시간의 보장, 쉬는 시간의 자율성, 실내외 휴게 공간 확보
  - 문화 동아리의 지원, 문화 관람의 다양성, 문화 활동에 대한 제한 금지
- 13)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
- 14)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15) 권리를 지킬 권리

## 2. 복지권의 침해 사례<sup>19)</sup>

- 가. 건강권
- 나. 안전권

### 다.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1) 근거

아동권리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학교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의 총체적 삶을 염두에 한다.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가능한 한, 최대 한” 보장해야 한다고 할 때 ‘발달’이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모두 의미한다면 복지권의 측면에서 신체적, 심리적 안전이나 건강과 더불어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도 간과할 수 없다.

---

19) 건강권과 안전권에 대한 내용은 영진고등학교 이수남선생님의 원고 참조

## 2) 유형별 침해 사례

### ■ 유형 1. 쉬는 시간에 대한 부당한 통제

#### 【학교 내 인권 침해 구체적 사례】

-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등교시간을 함부로 당기거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경우
-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향유하는 놀이의 유형이나 놀이 공간에 대해 부당한 통제를 가하는 경우
- 내용에 관계없이 만화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독이나 소지를 금지하거나 빼앗는 경우
- 쉬는 시간에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음악 재생기를 통제하거나 빼앗는 경우
- 학교 운동장이나 교정에서 편히 쉬거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교 운동장을 학생 선수의 훈련 장소로만 전용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학생의 놀이 공간을 빼앗는 경우
- 편히 쉴 수 있는 실내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유형 2. 문화 활동에 대한 규제

#### 【학교 내 인권 침해 구체적 사례】

- 문화 활동을 하는 동아리의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문화 동아리의 활동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 소음 방지 설비를 갖추지는 않고 동아리가 연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경우
- 학교나 학급 차원에서 문화공연 관람을 결정할 때 학생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 값비싼 공연을 의무적으로 보게끔 하여 학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 학생이 가진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유형의 문화만 관람하는 경우
- 극장, 유원지 등 학생의 교외 놀이 활동에 대해서도 출입 금지 등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

### 3)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한 대책

#### 가) 쉬는 시간의 보장

쉬는 시간을 함부로 줄이거나 없애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의 재량이나 학교 교육 과정 적용 과정에서 쉬는 시간이 축소되는 일은 없는지, 점심 시간에 학습이 강요되지 않는지, 쉬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는 않은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 나. 쉬는 시간의 자율성

쉬는 시간에 어떠한 놀이를 할지, 어떤 문화를 즐길지는 학생의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합당한 사유 없이 학생이 하는 놀이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일이 없는지, 내용에 관계없이 만화책이라는 이유로 소지나 독서를 금지하지는 않는지, 휴대전화나 음악 재생기 사용을 제지하는 일은 없는지를 살펴 학생의 놀이·문화가 함부로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 다. 실외 휴게 공간의 확보

학교 운동장이나 교정은 학생이 편히 쉬거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당국은 학생이 앉아 쉴 만한 의자나 나무그늘은 충분한지, 놀이 시설은 다양하고 안전하게 구비되어 있는지,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특정 집단에게만 독점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학생을 위한 운동장이 주차 공간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라. 실내 휴게 공간의 확보

학교당국은 학생을 위한 편안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희공간의 개조나 교실 내 틈새 공간 활용 등도 가능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마. 문화 동아리의 지원

학교당국은 문화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한지 살펴보고 지원해야 한다.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 학생답지 못하다는 고정관념으로 문화 활동을 통제하여 동아리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 밖 모임을 통한 문화 활동도 권장되어야 한다.

## 바. 문화 관람의 다양성

교육활동의 연장으로 학교나 학급 차원에서 문화공연을 관람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을 미리 물어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 학생이 가진 인종적·문화적 다양성과 비용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누구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사. 문화 활동에 대한 제한 금지

방과 후나 방학 중 학생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극장, 놀이공원, 유원지, 번화가 등 특정 장소의 출입을 아예 금지하는 일은 학생의 놀이·문화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재검토되어야 한다.

## Ⅲ. 복지권 이행을 위한 조건

### 1. 국가 혹은 정부가 할 일

‘교육 정책 수립 시 인권의 문제를 염두에 둘 것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복지권이 실현되려면,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획일적인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는 교육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과 이익을 최우선 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복지권을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쾌적한 학교 시설, 환경을 조성

‘학급당 인원 수를 줄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 받을 권리를 제공

‘인권 보호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

‘모든 항목이 복지권 이행을 위한 조건이 되겠지만, 인권의 다른 영역과는 달리 학교 내에서의 복지권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과 자원 확보가 중요한 문제가 될만하다.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실현할 만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

‘학생 복지권 실현을 위해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

###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할 일

‘단위 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인권(복지권) 지침 제시

‘학생의 인권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그 결과를 활용할 방안 모색

‘교사 대상 연수 기회 확대

‘정부나 교육청, 각급 행정 기관에 대해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학생 인권 수준에 대한 정기적 점검

### 3. 교과부 및 교육청에서 할 일

- '지역이나 학교급 별, 학교 간 복지권 실현을 위한 공정한 예산 지원 및 자원의 확보
- '행사, 공문 발송, 정책 수립 및 결정 시 학생 인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 '법률 보완, 세부 지침 등을 통한 책무 이행
- '장학지도, 학교 평가 등에서 결과물을 통한 평가를 지양하고, 계획 수립 및 실행 단계에서 인권친화적 학교 요소 평가 항목 신설

### 4. 학교와 교사의 적극적인 의지

- '학생 인권의 옹호자로서 학생의 건강권, 안전권, 문화권 등 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는 마인드 갖기
- '학생 복지권의 중요성 인식하기
- '예산 편성 시 복지 관련 예산을 편성
- '기존 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꾸거나 다양하게 활용할 방법을 모색, 부족한 경우 교육청 등에 적극적으로 예산 요청하기
- '교사의 교육 주체로서의 확고한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 '연수나 실천을 통한 교사의 인권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 5. 학부모의 역할

- '교육 주체의 한 축임을 명백히 인식할 것
- '친인권적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 요구하고 자문하고 감시할 권리와 의무
- '개인적, 이기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 모든 학생의 복지권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6. 학생들의 권리 찾기

- '선택과 책임에 대한 교육의 부재로 나의 권리와 남의 권리 존중 의식이 결여-인권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
- '개인의 안전권과 건강권, 문화권 실현을 위한 제안
- '학생회, 학급회 등의 절차를 통한 연대

#### IV. 학생의 인권과 인권친화적 학교를 꿈꾸며

인권친화적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위한 학교’<sup>20)</sup>이어야 하며,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학생을 진정한 학교의 주인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과가 다소 미흡하거나, 가는 길이 더디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20년 전에 비하면, 10년 전에 비하면 학생의 인권은 상당 부분 신장되었고 학교 분위기도 많이 인권친화적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 다시 10년 뒤에는 학교가 완전히 인권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해 이런 논의가 더 이상 필요없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인권은 어느 한 단체나 사람의 힘으로 신장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 주체로서 한 축을 이루는 모든 사람과 단체가 모두 인식과 더불어 실천으로 옮길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오늘의 논의들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신장하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이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여, 10년 뒤에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공간으로 변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침이 되었으면 한다. 물론 아울러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권을 체득하고, 나와 남이 모두 평등하고 고귀한 존재임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으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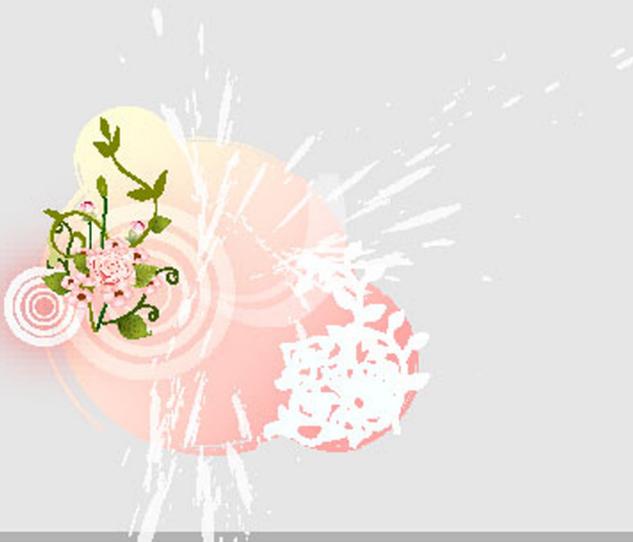
20) 이수광, 이우고등학교 교감



### **【참고자료3】**

## **충청·강원권역(2008.7.17) 토론자료**

- Ⅰ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김석언(옥산중학교 교감)
- Ⅰ 「**학생의 자유와 참여**」 보장에 대한 방안  
지정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중등정책연구국장)
- Ⅰ **학교 내 차별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  
김순중(충남 봉황중학교 교사)
- Ⅰ **학교 내 차별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  
조기한(대전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남대전고등학교 교사)
- Ⅰ **학생의 안전 건강 등 복지권 실현방안 모색**  
강명숙(배제대학교 교수)
- 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복지 정책 방향**  
김영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장)





#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 학생의 자유와 참여 보장에 대한 방안 모색 -

김석언(충청북도교육청 옥산중학교 교감)

## □ 학생 인권 논의를 되돌아보며...

### ■ 교복, 두발 두발자유화 논란

- '82.1.2. 교복 및 두발 자유화 발표: 동년 3월부터 두발 자유화, 교복은 '83. 3. 1 부터 시행
- '85.10.16. 교복 착용 여부를 학교별로 결정(사실상 교복 부활)
- '99.10.28. 학생교복 관련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 '00.05. '노컷(No cut)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일부 학생들의 '두발제한 반대운동
- '00.10. 교육부 두발 제한 폐지 발표 : 두발 자율화  
⇒ '학생을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 '05.05~ 두발 자유화 운동 재개

### ■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방안

제1차 교육개혁 방안('95.5.31), 제2차 교육개혁 방안('96.2.9), 제3차 교육개혁 방안('96.8.20)

#### 제4차 교육개혁방안('97.6.2)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개혁

...공교육 기관으로서 학교는 미래 사회의 구성원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및 품성을 함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의 학교 교육은 교육 체제와 행정, 그리고 교육 내용과 방법 면에서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요소를 다소간 내포하여 왔다. 학교의 조직, 행정 구조와 풍토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배우고 익히는 데에 적합하지 못하였다. 또한, 학교의 정규 교과에서도 자유, 평등, 인간 존엄성과 사생활 존중 등의 민주적 규범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 소홀해 왔다.

따라서, 교육 개혁을 통하여 먼저 도덕과 사회 관련 교과목에서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 대화와 타협 등 자유 민주 사회의 핵심적 가치와 규범을 강화, 보완하고자 한다...

가.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강화

- 민주 시민 교육 관련 교육 내용의 보완 및 강화
  -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의식 내용을 강화한다.

-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와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한 내용을 강화한다.
  - 체험을 통해서 민주적 행위 규칙을 습관화하도록 한다.
    - 대화와 타협의 생활 문화 · 독선과 폭력 문화의 배제
  -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내용의 보완 : 생략
  - 세계 시민 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 내용 보완
    - 성(性), 인종 및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 나. 민주 시민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지원 : 생략
- 다. 민주 생활 규범의 정착을 위한 학교 문화의 개혁
- 학칙이 준수되는 학교 문화 구축
    - 학생의 권리와 의무가 존중되는 학교 풍토가 정착되도록 한다.
      - 유·초·중·고등 학교에서 학교별 특성과 실정을 감안하여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학칙을 제정한다.
      - 학칙에 학생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명료하고 현실성 있게 규정한다.
      - 학교 운영이 학칙에 따라 명실 상부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생의 자율 활동 영역과 범위의 확대 및 지원
    - 초·중등 학교에서 학생 자치 활동의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회의 권한과 책임, 활동 범위를 명료하게 규정하고, 학생회의 결정을 학교와 교사가 존중하도록 한다.
      - 소풍, 수학 여행, 현장 학습 등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급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 학급 회의와 클럽 활동을 활성화한다.
      - 각종 학생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학교 내 의사 소통 체제의 민주화
    -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 소통 체제를 민주화한다.
      - 학교 내 각종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 능력의 배양
        - 회의 운영 능력의 배양
      - 학교운영위원회 및 각종 회의체의 위원 선출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관리자와 학교운영위원회 간의 원활한 상호 협력을 위한 절차와 관행을 확립한다.
      - 학교 내 각종 행사 및 단체 활동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간의 의사 소통 매체의 활용을 활성화한다.
- 예) 학교 신문, 학교 방송 등
- 학교별로 특성화된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권장
    - 학교별로 아래와 같은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안하여 운영토록 권장한다.

※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 만한 사례

- ① 교내 학생법원 : 학교 내에서 학생 간에 생긴 갈등 문제를 적법한 절차(duel process)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 ② 학생 고충 처리 제도 : (Ombudsman)학생들 중 약한 입장에 놓이기 쉬운 학생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충을 접수하고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제3자(교원,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등)가 관여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
- ③ 모의 자치 활동 프로그램 : 학생들의 민주적인 자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사회의 운용 체제 전반에 대한 시각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예 : 모의 국회)

○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학생 지도 방법의 정착

체벌은 21세기를 살아가게 될 신세대의 감각에 맞는 효과적인 생활 지도 수단이 아니며,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생의 정신적 상처를 유발시키고 폭력을 재생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학생 생활 지도 방식을 정착시킨다.

-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이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서의 학생 체벌을 금지한다.
- 학교 내 또는 동아리 내에서 상급생의 하급생에 대한 체벌 관행을 금지한다.

※ 체벌의 정의

교사(상급생)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학생(하급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함.

- 체벌 금지에 따라 교사가 학생 지도에서 겪게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벌'이 아닌 '벌(罰)'은 학교나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다양한 생활 지도 방법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 체벌 금지의 기본 정신을 교육 관련법에 반영토록 하고, 구체적인 관련 사항은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학교에서 공용어 사용의 일상화

학교 구성원 상호 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 순화된 언어 생활의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공용어 사용을 일상화한다.

- 학교 공식 활동이나 집회 및 수업에서 공용어 사용을 일상화한다.
- 학교 내에서 욕과 폭언 사용을 일절 금지한다.

※ 공용어의 정의

- ① 나이와 신분을 뛰어 넘어 누구에게나 똑같이 두루 쓰이는 격식이 있는 말
- ② 예사 높임말에 해당되는 언어 표현 형태로서 '합니다', '하세요', '해요'라는 표현으로 끝나는 말. 공용어는 아주 높임말에 해당되는 존대어와는 구분되는 말임.

③ 공용어가 사용되는 전형적인 사례

-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거나 뉴스 방송을 할 때 쓰는 말
- 공공 집회에서 연사가 쓰는 말(예 : 대중 집회에서의 연설)
- 크고 작은 공공 집회에서 의논하고 토론할 때 쓰는 말
- 상대를 잘 알지 못할 때, 전화상으로 보통 쓰게 되는 말

○ 폭력 없는 학교 사회의 구축

학생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폭력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한다.

- '폭력 피해 인식 교육'을 유·초·중·고·대학별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시행한다.

※ 폭력 피해 인식 교육의 정의

폭력 피해 인식 교육(Violence Awareness Program)이란 폭력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폐해 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폭력의 위험성과 악영향 등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초·중·고·대학생들은 신체, 정신, 언어, 그리고 성폭력 등의 각종 폭력의 범죄성과 비인간성, 비윤리성, 그리고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폐해와 고통 등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을 배양하게 될 것임.

- 범정부적 차원에서 학교 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청소년 폭력 예방 및 방지법'(가칭)을 제정하고, 이 법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폭력 피해자 구제 및 보호
- 교내 폭력 방지를 위한 기구와 조직
- 관련 부처 간의 협조 체제
- 학생 보호를 위한 봉사와 조직에 관한 규정과 민간 단체 활동의 지원
- 폭력 학생의 교육적 치유를 위한 복귀 프로그램의 운영

-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자구적 노력을 지원한다.

-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도 전반(轉班), 전학(轉學), 그리고 단기간의 재가 교육(Home Schooling)이 가능하도록 함.

※ 재가 교육 (Home Schooling)

학부모나 학생이 요청하고 학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해당 학생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 하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학교가 폭력 가해 학생의 선도 또는 피해 학생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들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전문가 위탁 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 전문가 위탁 교육 제도(Referral System)

폭력 가해 학생 또는 폭력 피해 학생 중 전문적인 선도나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 학생을 관련 전문가나 단체 또는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여 교육이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이하 생략)

<p><b>참여정부</b></p>
<p>■ 2003년부터 교육부 생활지도 방향 :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p>
<p>■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신설 경위</p>
<p>2006년 3월 13일 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sup>21)</sup>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소위 ‘학생인권법’으로 불리웠던 이 법률안은 국회 내 보다는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국회 밖에서의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p> <p>이밖에도 학생 인권 관련 다수의 법안<sup>22)</sup>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다섯 건의 법률안이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를 모두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봉주의원, 구본회의원, 이계경의원, 이주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안은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p> <p>○ 대안으로 채택된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을 유예하는 사유로 발육부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질병 외에 발육상태를 취학면제 또는 유예사유에 추가</li> <li>▶ 학교 징계처분 중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li> <li>▶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그리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li> <li>▶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li> </ul>
<p>■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비전과 전략』<sup>23)</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에서 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와 책임 강화</li> <li>○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자율적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보장</li> <li>- 학교기능 다원화 등 미래 학교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장의 지도성, 중재자로서의 역할 강화</li> <li>-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 시민단체 등 민간 영역의 학교운영과정에서의 참여와 감사권 강화</li> <li>- 중장기 학교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예산 편성·운영 등의 재량 확대</li> </ul> </li> <li>□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선택적 확대·강화</li> <li>○ 지역과 학교 실정에 따라 자문, 심의, 의결기구로 제도화</li> </ul>

-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과정 개선을 통한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 확보, 일정 시간 이상 연수 강화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점진적 확대
- 공립의 경우, 학부모 경비부담 등 주요영역에 대해서는 의결기능 부여, 기타 학생인권 및 복지 등은 심의사항으로 추가
-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교육이 요구됨
- 개인의 인권과 가치관을 중시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톨레랑스<sup>24)</sup> 교육, 개인과 집단의 갈등 조정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필요
- 개인의 학습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별화 교육과 함께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체 교육을 조화롭게 실시할 필요
-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조성
- 친인권적 학교문화의 조성
  - 인권 친화적으로 학교규정 개정
  - 유치중등 교육과정에서 인권관련내용을 강화
  - 체벌보다 대화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 학교의 인권상황을 학교평가 시 반영
- 가정·지역사회와 연계 활동을 통해 인권문화 확산
  - 인권도시 지정 및 지원으로 타지역사회의 인권문화 확산 촉진
  -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권문화제 행사의 개최

## 학생 인권! 왜 논란만 거듭하는가?

- 권리와 의무 : 교사 ⇔ 학생 ⇔ 학생의 보호자

손등과 손바닥이 하나의 손을 이루는 것처럼 권리의 실현과 의무의 이행도 마찬가지로 관계이다. 학생의 권리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실현된다.

21) 주요 내용 : 총학생회 및 학년별·학급별 학생회 구성 운영, 학생 징계 시 소명 및 재심청구 기회 부여, 체벌 금지, 학생인권 침해 행위 금지, 인권보장,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조사 실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위원 참가 등

22) 2005년 10월 25일 정봉주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2월 22일 고 구본회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13일 최순영의원이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4월 28일 이계경의원이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21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3) 2007.10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24) 톨레랑스(tolerance) : 남이 나와 가치관이나 사상, 행동 등이 차이가 있어도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아는 정신을 의미

학생 인권, 학생 권리의 문제와 함께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학생의 의무는 무엇인가? 또한 학생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무 이행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점이다.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는 '학교 내 인권'(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권) 논의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 부모 : 너는 하는 일이 왜 이 모양이냐?  
 - 자녀 : 도대체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요?  
 - 부모 : 네가 행실을 똑바로 하면 왜 안 해 주겠니!

○ 무지, 몰이해

기어 다니기 시작한 아이가 아파트 창가를 향하여 기어간다. 위험을 인지한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통제한다. 행동이 통제된 아이가 순응(복종)하는 경우 또는 저항하는 경우 아이는 창문 밖이 낭떠러지임을 모른다.  
 부모는 '아이가 창문 밖이 낭떠러지임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또한, 창문 넘어 밖으로 내딛으려는 행동이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모른 척한다).

행동이 통제된 아이가 순응하든 저항하든 그 아이의 개인적 판단(성향)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행동을 선택하였든 불신의 감정마저 없게 할 수는 없다. 물론 학생이 성숙(발달)함에 따라 서로에 대한 무지의 간극은 줄어들 것이다. 무지의 간극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도 갈등은 상존한다. 현실에 적응하고 안주할 것을 주문하는 어른들의 걱정과 모순된 현실을 깨고 새로운 삶을 꿈꾸는 젊음의 기운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다.

○ 특별권력관계 논란

**[특별권력관계]**  
 공법(公法)에서의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괄적으로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고 다른 쪽이 이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관계. 국가 및 공공 단체와 공무원, 국립대학과 학생과의 관계 따위이다. ↔ 일반 권력관계

○ 법률유보원칙<sup>25)</sup>의 배제, 기본권의 제한, 사법심사의 배제(단, 권력주체의 행위가 내부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반권력관계상의 국민의 지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학생의 퇴학처분 등)는 사법심사의 대상)

○ 규제와 통제는 꼭 필요한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통제의 적정 한계는?

♣ **일반적 법률유보** : 헌법 제 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 즉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한가?

수단의 적합성 -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인가?

침해의 최소성 - 그 제한이 필요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한정되어야 한다  
(가능한 완화된 방법).

법익의 균형성 - 그 제한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 규정의 문제인가? 실천의 문제인가?

학내에서의 각종 사안은 소위 교육적 지도라는 명분 하에 명문화된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교사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임의적으로 지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육적’이라는 말은 가치관에 따라 너무 상이한 견해와 입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각종 제 규칙(규정)이 섬세한 면까지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간 생활의 모든 경우를 문자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각급 학교 제 규정의 제·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의 문제이다.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든 그렇지 않은 사항이든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간 신뢰 회복, 인권 감수성·인권적 사고·가치관의 공감대 확대가 필요하다.

○ 학생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격체인가? 보호와 배려의 대상인가?

이러한 질문은 적절한 비유가 아닐수도 있겠지만 마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의문과 마찬가지로, 행복이 당연히 성적순이 아니지만 행복이 성적순인 것이 학생들의 현실이다. 학생은 당연히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인격체이다. 그러나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자기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어느 수준까지 보호를 명분으로 통제할 것인가?

---

25)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

- 양보와 희생, 배려와 감동
- 자율과 책임
- 대화와 타협
- 학생인권! 교사만의 책임인가?

학생인권 문제가 교사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학생 자신과, 그 보호자, 사회, 국가 모두 각자의 몫이 있다. 그러나 누가 첫 단추를 끼울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직면해서 학생 인권의 문제는 교사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실용치임에 틀림 없다.

- 배려인가? 쟁취인가?

♣ Rudolf von Jhering 『권리를 위한 투쟁』
▶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 내가 '권리를 위한 투쟁'을 모든 종류의 분쟁에 있어서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 대한 공격이 동시에 인권의 경시를 포함하는 때에 한해서만 요구한다.

- 자유를 위한 투쟁, 자유로부터의 도피(“...으로의 자유” ◦ “...로부터의 자유”)

♣ Erich Fromm, 『Escape from Freedom』
▶ 동서고금에 자유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에서 억압에 대항하여 싸웠던 사람들이 승리를 얻고 새로운 특권을 지켜야 하게 되면 자유의 적들과 한편이 되었다... 인간의 경험으로서의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에의 욕구는 인간의 본성에 원래부터 있는 어떤 것인가? 자유를 바라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떤 종류의 문화 속에서 살든 상관 없이 동일한 경험인가? 아니면 특정 사회가 도달한 개인주의의 정도에 따라 다른 어떤 것인가? 자유는 단지 외부 압력이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도 되는가? 만일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게 만드는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은 무엇인가? 자유는 인간이 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 인간이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 애쓰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유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목표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협인 것은 무엇 때문인가? ▶ 우리는 우리가 어떤 외부의 권위에도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는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의 개체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외부의 권위로부터의 자유는 내부의 심리적 상황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속된다.

♣ 용어

**[기본권(기본적 인권)]**

-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고유의 권리.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자유권·참정권·사회권·평등권 같은 것이 있다.

**[자유권]**

-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는 권리.
- 참다운 의미에서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으나, 개인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서 위법적으로 침해되는 경우, 그 위법적인 침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극적 권리이나 역시 권리임에는 틀림없다.
- 자유권이 국가보다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나 또는 실정법(實定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나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 자유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무제한의 초국가적인 개인의 자유이지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상대적 자연권설과 소극적이기는 하나 국가의 위법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권리설이 있다.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
  - 정신활동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배상, 학문·예술의 자유와 저작권 등의 보호,
  -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자백의 증거 능력, 주거의 보장,
  - 경제적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과 그 제한, 소비자 보호 등

**[참여권]**

-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 □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생각과 노력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15가지 권리항목과 관련한 인권가이드를 보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천여 개의 학교, 800만에 달하는 학생, 35만여 교원의 세계에서 한 두 건 있을까 말까하는 이야기는 인권 차원에서의 논의보다는 범죄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인권가이드에 적시된 내용이 모두 현실로 실현된다면 그것 또한 상상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상향으로서 꿈꾸고 지향하여야 할 목표는 될 수 있더라도 현실 그 자체가 된 적은 없었다.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한 모든 세대 저마다의 숙제가 있었고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15가지 권리항목 중 자유권, 참여권과 관련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거론되기를 기대한다.

### ①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학교규율, 강요된 교육활동, 언어폭력 등
<p>&lt;쟁점&gt; 기본권 제한(적정성, 임의성, 강제성), 공개·투명성(의견 수렴 절차, 소수의견 존중, 공개 등)</p>
<p>&lt;생각해 볼 문제&gt;</p> <p>① 규율 제·개정 절차 이행</p> <p>⇒ 바쁜 학사 일정을 이유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논란 야기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어려움 학생, 교사 모두 성숙된 경험이 부족</p> <p>☞ 인내와 경험의 축적이 필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형식적인 절차 이행이나, 불투명, 비공개 의 경우 사안 발생</p> <p>② 소수 의견 처리</p> <p>⇒ 다수결의 원칙 하에 소수 의견을 묵살</p> <p>☞ 소수의견이 수용될 수 없는 또는 유보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를 표명해야 규율 에 대한 권위가 세워지고 규율에 복종 가능</p> <p>※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듯이, 특정 소수 가 다수에 대하여 일방통행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음. '혹 아니면 백', '모 아니면 도' 식의 사고 지양.</p> <p>③ 학생의 성숙도<sup>26)</sup>에 따른 정당한 비중 부여</p> <p>⇒ 학교급, 학년별, 지역별, 사회경제적 환경,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에 대한 신뢰 필요, 특히 자치 능력에 대한 신뢰, 지속적인 교육, 인내가 중요.</li> <li>④ 규제의 과도한 정도에 대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나침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없음</li> <li>☞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 필요</li> </ul> </li> <li>⑤ 획일성, 강제성 : 0교시, 자율학습, 보충수업 → 교육적 지도인가? 강제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독자성, 공동체 내에서의 상대성</li> <li>☞ 홈스쿨링, 대안학교 : 전체 학생의 0.1%정도</li> <li>공교육 : 대화와 타협, 자율과 책임의 풍토 조성</li> </ul> </li> </ul>
---

### 3] 교육에 대한 권리

<b>교육목표를 벗어난 활동, 학생을 배제한 교육결정, 교육선택권, 학습환경, 학습권 박탈 등</b>
<p>&lt;쟁점&gt; 교육과정 편법 운영(재량·특별활동, 특정교과), 관행·형식적 운영(수학여행, 야영, 체험활동 등), 교육 정책(활동)에의 학생 참여 한계</p>
<p>&lt;생각해 볼 문제&gt;</p> <p>① 교육정책 결정에의 학생 참여</p> <p>[예] 고입전형제도 : 내신 성적만으로 고교 배정, 내신+경쟁시험 성적으로 고교 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신성적 1%~50%<sup>27)</sup>인 학생의 경우 내신 성적만의 고입 전형 찬성</li> <li>- 내신성적 50%~70% 이하인 학생의 경우 경쟁시험 도입 찬성</li> <li>- 내신성적 70%~100% 인 학생의 경우 무관심</li> </ul> <p>⇒ 이런 경우 여론 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이 교육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p> <p>75년이후 고교 평준화제도하에서 내신성적 강화과 경쟁시험 약화의 분위기가 주류</p> <p>경쟁은 인권침해인가? 필요악인가?</p> <p>☞ 경쟁시험을 없애고 내신성적만의 입학전형제도가 내세운 명분은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와 입시지옥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과도한 입시경쟁은 다소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학교밖 경쟁체제에서 학교내 경쟁체제로 바뀌었을 뿐 경쟁은 없어지지 않았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여부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측면이 있음.</p> <p>② 학교 밖 교육 여건(시설)의 열악</p> <p>⇒ 수학여행, 야영활동, 체험활동의 다양화는 긍정적 변화이나, 아직도 관행적 때우기식 행사 치르기 관행 잔존</p> <p>☞ 학교 밖 교육 여건(시설)의 확충, 재정비 필요</p> <p>학교 밖 사교육기관의 수익성보다 공공성</p> <p>고급문화<sup>28)</sup> 체험의 장 확충</p>

26) [붙임2] 참조

### ③ 학생 자치와 참여권

<b>자치 참여 기반,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 동아리 활동 등</b>
<p>&lt;쟁점&gt;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여건, 학생 자치회의 위상,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보장</p>
<p>&lt;생각해 볼 문제&gt;</p> <p>① 학생 자치 활동 예산 확보</p> <p>⇒ 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는 지역간, 학교간 여건의 차이가 매우 크고, 도시의 과밀 학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한계(공간, 예산)</p> <p>☞ 대규모 학교의 분할 정책 필요 :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와 논의 필요</p> <p>신설학교의 경우 고무적인 변화</p> <p>자치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경우 자치활동 예산의 적정 규모 : 우수사례 공유</li> <li>-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생회처럼 학생회비를 별도로 수납하여 집행하는 방안</li> </ul> <p>예산 집행의 자율성 보장 및 규정에 의한 통제</p> <p>② 학생 자치활동의 보장</p> <p>⇒ 형식적인 운영 지양</p> <p>☞ 학생 자치 능력에 대한 신뢰 필요</p> <p>현재 모의 법정, 모의 국회의 수준을 높여 학생 자치법정, 학생 의회 구성 시도 가능</p> <p>☞ 학생회 구성 시 민주시민 교육 차원에서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절차 이행</p>

### ④ 신체의 자유

<b>모욕적인 처우, 신체접촉, 강제노동과 동원, 기숙생활 등</b>
<p>&lt;쟁점&gt; 체벌, 강제이발, 모욕, 성희롱·성폭력, 기숙사·합숙소</p>
<p>&lt;생각해 볼 문제&gt;</p> <p>① 체벌의 정의</p> <p>⇒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교육개혁위원회, '97.6.2)</p> <p>※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체벌 외에 고통을 수반하는 다양한 형태의 벌에 대한 적정 한계도 논란이 되고 있음</p> <p>예) 운동장 20바퀴 또는 1바퀴 돌기, 1시간 또는 10분간 복도에 서있기, 1시간 또는 10분간 무릎 꿇기</p>

27) 대략적인 추정치로 시도실정에 따라 다름

28) 민주, 복지, 선진화 지향

⇒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체벌을 정당행위로 인정('04.6)

※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판결)

-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 행위
-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 모욕을 가하는 지도 행위
- 학생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 학생의 성별·연령·개인적 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

⇒ 군대에도, 교도소에도 없어진 체벌이 학교에 상존하고 있다.

☞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사회통념상 용인'의 수준은? 절대적 기준이 없으며, 정황에 따라 경중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음. 교사가 전문직인 것은 회초리 없이도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여야 함.

※ 체벌의 절차 : 잘못의 인정 → 규정에 의한 체벌 → 사후지도

## ② 기숙사, 합숙소

⇒ 운동선수 합숙소의 관행적 운영(선수 보호자간 갈등, 안전사고)

⇒ 기숙사 입소는 가족과의 단절! 공동체 생활 훈련인가?

☞ 무엇을 위한 합숙인가? 학교의 보육기능은?

미래학자들은 농경시대는 3000년, 산업시대는 200년 만에 지나갔고, 정보시대는 50년, 후기정보시대는 10년 만에 지나갈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학교는 어떠한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대표적인 기관의 변화 속도를 기업이나 사업체(100마일), 시민단체(90마일), 가정(60마일), 노동조합(30마일), 정부 관료조직과 규제기관(25마일), 학교(10 마일), 국제기구(5마일), 정치조직(3마일), 법률기관과 법(1마일)이라고 하였다. 학교도 변화가 쉽지 않은 기관인 것만큼은 동서양이 모두 비슷한 형편인 것 같다.

논의를 마치면서 학생인권 논의가 학교내 인권으로 논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줄탁동시(茁啄同時)'는 가장 이상적인 사제지간을 지칭하는 말이다.

닭이 알을 품었다가 달이 차면 알속의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찌는 것을 '줄(茁)'이라 하고, 반대로 어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마주 쪼아 껍질을 깨뜨려 주는 것을 '탁(啄)'이라고 한다. 줄과 탁은 동시(同時)에 일어나야만 온전한 병아리가 되고 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즉, 안과 밖의 두 힘이 함께 알 껍질에 작용될 때라야 비로소 병아리는 온전한 생명체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 [붙임 1] 유엔아동권리협약

### □ 채택 및 발효 경위

- 1989.11.20 : 유엔총회 콘센서스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
- 1990. 9. 2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발효
- 1991.11.20 : 우리나라 비준

### □ 주요 내용

- 국가가 아동을 보호할 책임 및 국제적 기준을 최초로 규정
  -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
- “무차별 원칙, 아동의 이익 최우선,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아동의 참여권” 제시
  - 무차별 원칙(Non-Discrimination)이란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동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
  -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
  -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1. 생존권(Survival Rights)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2. 보호권(Protection Rights)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권(Development Rights)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4.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 :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붙임 2] 각종 법령상 청소년의 명칭과 연령 한계

기준연령	해 당 법 령	법조항	관련내용
9세 미만	미아가출입업무처리규칙	2조1항	迷兒의 정의
9세 이상	미아가출입업무처리규칙	2조2항	가출청소년의 정의(9~20세미만), 가출성인(20세이상)
6세 미만	모자보건법	2조	'嬰幼兒(영유아)'의 정의(신생아 : 28일미만)
13세 미만	도로교통법	2조	'어린이'의 정의
	성폭력처벌법	8조의2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비친고죄)
	형법	305조	13세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친고죄 : 고소기간 1년)
14세 미만	형법	9조	형사미성년자
15세 미만	근로기준법	62조	취업금지(최저근로연령 : 15세)
16세 미만	소년원법	8조	분리(分離)수용(收容) 연령
	형법	274조	피보호·감독 16세미만자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사용(아동혹사)
	선원법	81조	선원의 사용금지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2조	'아동'의 정의
	생활보호법	3조	보호대상인 아동 : 부양의무자 없는 18세 미만 자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2조	입양대상자로서 아동
	소년법	62조	환형처분(노역장 유치)금지
		59조	사형·무기형을 15년 유기징역으로의 완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	2조	청소년의 정의
		32조	유통업자 관련 준수사항(청소년출입제한)
	근로기준법	32조	유해·위험한 사업 사용금지
		63조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사용금지
		64조	연소자증명서(호적증명서, 친권자/후견인동의서)사업장비치
		67조	15세이상 18세미만자 7시간/1일, 40시간/1주일 초과근로금지
		68조	야업(22:00~06:00)금지 및 휴일근로 제한 (노동부장관 인가시 예외)
		70조	깡내근로금지(필요한 일시적 근로는 제외)
	직업안정법	21조의3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업소 및 티켓다방 직업소개 금지
	경범죄처벌법	5조	범칙자로서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
	영화진흥법	21조	제한상영가 상영등급영화 청소년(고등학교 재학생 포함)입장금지
	공연법	2조	연소자의 정의(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5조	연소자 유해관람물의 관람금지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2조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2조	
식품위생법		31조	출입, 고용, 주류제공 금지
19세 이상	공직선거법	15조	선거권
20세 미만	민법	4조	미성년자
	소년법	2조	소년의 정의
23세 미만	소년법	63조	교도소내 분리수용
	소년원법	43조	수용 한도(23세 퇴원 대상)
25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3조	청소년의 정의 : 9~24세

# 「학생의 자유와 참여」 보장에 대한 방안

지정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중등정책연구국장)

## 1. 인권과 자유와 참여

오늘날 발달된 디지털 문화의 기반은 개인들 사이의 자유로운 소통과 대화를 용이하게 하여 집단지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특히 인터넷문화에 익숙한 우리 학생들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사회와 학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가 4·15 자율화 조치라는 것을 발표했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한다면 서 호히려 반드시 필요한 규제마저 철폐를 하여 학교의 서열화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으며, 사교육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학부모의 허리는 더더욱 휘어만 가고 있다. 학생의 자율이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기는커녕 학교와 학생을 실적과 성적이라는 무한 경쟁 체제로 내몰고 있을 뿐이다.

학생의 인권을 논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금기 사항이 된 작금의 현실에서, 그나마 초·교육법에 인권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은 어둠 속의 한줄기 빛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생 인권의 신장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교사를 비롯한 어른들이 얼마나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책 결정에 어느 정도의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즉, 학교 관리자나 교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가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의견을 수렴하고 꾸려나가는 학생회나 자치활동을 통해 학교 운영과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유가 보장되면 학생들은 스스로의 인권을 존중할 것이며, 자율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학생의 인권은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에 가깝다는 집단지성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학교에서부터 이루어낼 것이다.

## 2. 학생의 자유와 참여에 대한 현 실태

### 1) 자유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분야에서 자유와 인권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권위주의 시대에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교도소나 군대에서 볼 수 있었던 인권침해 사례가 학교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의 침해 사례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적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다.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각종 서약서와 반성문 및 각서의 작성을 강요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복장과 두발에 대한 제한, 교외 동아리 활동의 금지, 교지나 학교 신문의 사전 검열과 편집권의 교사 독점 및 표현물과 의견 조직의 금지, 교내·외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이밖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체벌을 들 수 있다. 교사의 견해와 다르다거나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 졸았다거나 지각을 했다는 이유, 머리가 길다는 등 각종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교사의 체벌은 일상화 되어 있다. 또한, 일탈 행동하는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학생징계행위,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는 행위, 이중 처벌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사회·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다.

일기장 검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열람하는 등의 사적기록물에 대한 침해, 휴대전화 금지나 사물함 검사 등의 개인 소지품과 공간에 대한 침해, 가정환경조사나 개인 성적과 건강정보의 공개 및 노출, 전자명찰이나 CCTV 등의 감시 장비의 설치에 따른 인권 침해, 친구 관계나 연애 관계의 일방적 금지 및 특정 반의 출입 금지와 강제 화해 등 관계와 소통규제를 예로 들 수 있다.

## 2) 참여권은 실현되고 있는가?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다. 국민의 참여가 보장될 때 국민의 자유도 보장받을 수 있듯이 학생의 참여가 보장된 학교에서만 학생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학생의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는 '학생에 의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즉 학생이 참 주인이 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일부 교장, 교감이나 교사들은 마치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의 주인은 자신들이라고 착각하고 학생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객군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권이 보장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고 교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 교육제도에서 학생의 참여와 자치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학생회 제도나 교과 선택제, 동아리 활동, 자치 적응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회의 예를 들면, 그 구성에서 아직도 간접 선거를 하여 학생회장단을 선출하고, 성적 등으로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며, 직선제에 의하여 학생회장단이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 및 결산권이나 회의 소집 등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참여권도 없다.

또한, 교과 선택제의 경우는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학생들의 참여권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설립과 가입 허가제를 두고 있고, 방송부 등 학교에서 필요한 동아리만 지원하며, 동아리의 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물론 예산 등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자치 적응 활동은 초등학교에서는 형식적이거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갈수록 대부분은 자습이나 대청소 등의 시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참여 기회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학생의 참여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토론 수업이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에서 토론 수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토론 능력은 떨어지고, 그들의 참여에 의한 학사일정의 협의나 교칙 개정 요구 등 학교 운영의 참여는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 3.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한 때 교육현장을 빗대어 “21세기의 학생들이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오늘날 학생들의 인권 현장이 바로 “21세기의 인권이 19세기의 제도에서 20세기의 어른(교사)들로부터 유린당하고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이후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수많은 우여 곡절 끝에 한층 성숙된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학교는 20세기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흐르는 물을 억지로 막으면 무너지거나 넘쳐흐를 수밖에 없다. 규율이나 질서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자유와 참여를 거부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내세워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우리 학교의 민주주의는 요원한 현실이 되고 말 것이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그들은 더 이상 관리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그들이 권리 의식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면서 학교생활을 영위한다면 굳이 준법과 질서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저절로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유권'이 보장되고 '참여권'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교육당국의 역할이다.

정부는 헌법이나 국제조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자유권이나 참여권 실현을 위해 각종 법이나 제도를 좀 더 구체화 하고, 강력한 시행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4항의 신설로 학교에서 관리자들이 학생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은 하였지만 자칫 선언적인 규정으로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왕에 법률을 만들었다면,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 '우리는 법을 만들어줬으니깐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떠넘기려 하지 말고 '학생생활 규정' 등 학교 자율에 맡길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은 표준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교과에서 인권교육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모든 교과에서 어렵다면, 최소한 사회교과나 도덕교과에서부터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편이 필요하다.

지역 교육청은 정부가 만든 시행령을 근거로 좀 더 세부적인 인권가이드를 마련함은 물론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 인권 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며, 학교 평가시 학생인권보장 내용을 필수 항목으로 삽입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의회를 통하여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할 것을 제안한다. 현 정부에서는 자율화라는 이름하에 지역교육청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 과거보다는 지역교육청의 권한과 역할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지역교육청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것인가 아니면 유린당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 못지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란다.

학교 관리자(학교장)는 무엇보다도 학생 인권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흔히들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그렇다. 과거보다 학생의 인권은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좋아진 것이지 현재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또한 체벌 등 인권과 관련된 상급기관의 지침을 다른 지침처럼 철저하게 지켜주길 바란다. 다른 지침들은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하면서

학생 인권과 관련된 지침들은 왜 애써 외면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과거에 만들어진 징계 규정 등 학생과 관련된 각종 규칙들을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새롭게 개정해야 함은 물론 교사들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 침해와 관련이 깊은 '생활지도부'를 '인권생활부'로 전환하여 학생의 자유권과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학교 문화를 형성해 주길 바란다.

둘째, 교사의 역할이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명목은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만) 매를 들고 욕을 하고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학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학생은 인도하고 안내해야 할 대상이며, 교사는 협력자이자 조력자라는 교육학의 기본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인권 의식이 미약했던 시절에 학창시절을 보냈다. 때문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신장시키는 일에 앞장서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 관련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교육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학생의 인권을 먼저 지켜 준다면 교사의 교육권은 저절로 지켜질 것이며, 잃었던 교사의 권위도 되찾을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학교라는 공간을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지역사회나 시민단체다. 제3자의 입장에서 학교를 바라보고, 학생인권 침해의 현장을 감시하며,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경우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현장을 많이 목격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계도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인권 단체들은 학생들의 인권 의식을 함양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교육기관에 제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 무산된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위하여 입법청원 등의 대대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부모의 역할이다.

가정은 사회화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곳이다. 어렸을 때 형성된 인권 의식은 아이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그 의식을 함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식을 통한 대리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아이에게 순종만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아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아이의 권리의식 함양을 위해 부모 스스로가 권리의식을 갖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다섯째, 학생의 역할이다.

자신이 삶의 주체라는 주인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다. 부모나 교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서의 생활이 필요한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 그동안의 학교생활을 통하여 체득된 피지배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아울러 나의 인권이 소중하듯이 남의 인권도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사의 부당한 체벌이나 요구에 과감하게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 의식도 필요하다. 학교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참여하지 않고 불만을 갖기 보다는 참여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다. 특히 학생회장단은 축제나 체육대회 등의 행사에서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주관해야 한다. 이름만 학생회장이고 부회장이어서는 안 된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학생회장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학교의 모든 행사에 주체가 되고 불편부당한 비교육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하는데 앞장서는 학생회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권 의식이 부족했던 시대를 살아온 기성세대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의식의 변화는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는 의식의 변화를 기다릴 것인가? 마냥 기다릴 수 많은 없다. 따라서 먼저 제도의 변화부터 모색해야 한다. 이제 그 제도 변화의 첫걸음이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4항'에 의해 내딛게 되었다. 불씨가 지펴진 것이다. 이러한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시급한 방법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교육 주체들끼리 '사회협약'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이미 중앙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지역교육청, 교원과 학부모 단체, 인권교육 단체들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이 협의체가 '인권가이드'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일종의 '사회협약' 같은 것을 체결하여 좀 더 인권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으면 한다.

중앙에서 시작한 사회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이러한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일선 학교에도 확산되어 학교에서부터 학생의 인권이 온전하게 보장받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각 시·도 교육청이 주관을 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그 밖의 이해 당사자나 관심을 가진 단체들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결의'를 하고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모두가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길 바란다.

# 학교 내 차별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

김순중(충남 봉황중학교 교사)

## I.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권리를 주장하는 의식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인권의식은 먼저 '자기 권리 찾기'로 부터 시작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 권리 존중하기'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학벌, 재산, 집안배경, 사고방식, 가치관, 종교 그리고 종족과 피부색이 다른 타인까지도 존중하는 태도는 인권의식의 확대에 필수적이라 할때 우리의 인권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써 '인간의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권리로 표현하는 말이며, 인간의 존엄성은 개개인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 줄 때 비로소 확고하게 보장된다. 인간의 권리가 성립하려면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하다는 관념이 자리잡아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기본적으로 나를 인정하듯이 남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내가 존중 받으려면 타인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권의 영역과 약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간다. 곧 노예, 소수민족, 원주민, 무국적자, 여성, 어린이, 어린이노동자, 고아, 빈곤아, 부랑아 등 약자보호의 권리를 늘려가는 쪽으로 인권은 발전하였다. 약자의 개념을 끊임없이 넓혀가는 것이 곧 인권의 영역이 넓혀지는 것이며, 남을 생각하는 정신도 깊어지는 것이다. 인간중심주의에서 비롯된 인권 사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에 머물지 않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되는 '자연권(right of nature) 또는 환경권으로 점차 넓혀지고 있다. 자연을 착취의 대상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연권은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해지면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새로운 권리로 대두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함양과 더불어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인권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다루는 범교과 학습에 대한 논의와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되면서 많이 확산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2008년 3월 1일 시행된 '학생인권보장의무조항'(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신설은 학교에서의 인권존중 풍토 조성의 의무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 내용을 구체화하여 학교현장에서 실현·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장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 본인에게 주어진 토론의 주제가 '학교

내 차별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라는 거창한 내용이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의 다양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에는 역량 부족을 느낀다.

다만 학교에서 차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권의식이 약하다는 의미이고 학교의 인권의식이 낮은 것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속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권의식이 약한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학교에서 나타나는 차별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과 프로그램들을 살펴봄으로써 학교 내에서의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고자 한다.

## II. 왜 우리 사회는 인권의식이 약한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인 전통을 고려할 때 인권의 수준은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사상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은 아니나 오랫동안 지속된 봉건주의적 체제는 인권사상이 성장할 토양이 되지 못했다. 서구의 인권사상이 자유민주주의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성숙한 인권사상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는 다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 1. 봉건주의 의식

비록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의식의 내면에는 아직도 봉건주의적 사고방식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나 경제제도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근대화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에서의 근대화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봉건주의 의식의 전형적인 예로는 첫째, 반론과 비판을 잘 허용하지 않는 배타적인 권위주의이다. 마치 반론을 제기하면 나에게 대한 도전으로 받아 들인다든지 아니면 나의 적이다 라는 의식같은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둘째, 학벌과 재산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계급 질서와 차별을 묵인하려는 태도이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말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매스컴에서도 그것을 수치화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셋째, 권력지향적인 관존민비 의식과, 학연혈연지연과 같은 연고주의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이다. 그리고 자식을 독립된 개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이나 대리만족의 도구로 보려는 태도 등은 모두 봉건주의 의식의 잔재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

## 2. 민주주의의 미성숙

서양에서의 인권 사상은 17세기 이후 개인주의·자유주의·민주주의 등의 이념들과 동시에 출현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인권의식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정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서양은 오랜 세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방식 속에서 민주주의가 탄생하였고 이러한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권의식의 발달을 가져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갑자기 독립과 함께 들어와 짧은 시간속에서 발달하였다. 또한 6.25 전쟁이후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정책은 '대(大)를 위해서 소(小)를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물론 이런 태도가 필요한 실천덕목이지만 지나치게 남용될 때 불공정, 부정의, 그리고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증가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의 의사결정방식이지만 소수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할 때 다수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희생이 요구되는 소(小)에 대한 고려는 다수 쪽에 속한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도덕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인권의식은 바로 소수에 대한 고려에서 출발한다.

## 3. 지나친 경쟁 사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경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17세기 초기 상업자본주의 시대로부터 오늘날의 고도화된 산업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체제는 항상 자유경쟁을 생존의 전략으로 삼아왔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평등의 이념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정당-예를 들면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민당 등-에게 정권을 맡겨 자본주의체제를 수정 보완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직 자본주의경제체제만을 유지해 왔고 이러한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우리 사회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경쟁은 언제나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 내며, 이런 경쟁사회에서는 평등이념과 인권존중사상이 설 자리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 4. 이데올로기 대립과 분단 상황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은 이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정치적 상황을 가져왔고 이러한 상황은 인권의식이 자라기에 좋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인권을 생각하기 보다는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게 간주되는 정치적 여건이 우리의

인권의식이 성장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인 통일은 인권적 상황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 5. 관용정신의 결핍

인권의식은 먼저 '자기 권리 찾기'로 부터 시작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 권리 존중하기'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즉 학벌·재산·집안배경·사고방식·가치관·종교 그리고 종족과 피부색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관용적 태도는 인권의식의 확대에 필수적이다. 관용은 바로 타자존중의 정신을 기르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정착문화이며 농경문화이다. 이런 문화들은 동일한 집단 의식을 강하게 만들지만 이질적인 것,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텃세주의를 동시에 갖게 만든다. 이런 배타적인 불관용은 나와 다른 것(difference)을 틀린 것(false)으로 보게 만들어 우리의 인권의식이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 Ⅲ. 학교 내에서 다양한 사유에 의한 차별

### 1. 일반적 사항 - 학교 내 인권 침해 구체적 사례

- 학생 가정의 경제적 수준, 성적, 가족형태, 성, 인종, 외모 등에 따라 시설 이용, 학생생활 지도나 징계, 포상 등에서 달리 대우하는 경우
- 학생회 임원 자격 규정에 성적, 징계 유무, 학년 구분, 성별, 종교 등의 차별 규정을 두는 경우
- 키 번호나 남학생 앞 번호 등 신체적 특성이나 특정 정체성을 근거로 번호를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경우
- 각종 대회 참가나 시상 등에 있어 구체적 능력이나 합리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인 차별적 제한을 두는 경우
- 특정 질환을 갖고 있는 학생, 채식을 하는 학생, 무슬림 학생 등 문화적, 종교적, 신체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식 식단을 짜는 경우
- 특정 정체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나 참고도서를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경우
- 학부모나 보호자의 잘못을 이유로 학생에게 부당한 제재를 가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경우

- 시설 개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특정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예) 학생은 중앙현관 출입 금지, 운동부가 아닌 일반 학생은 체육관 사용 금지 등의 규정을 두는 경우

## 2. 성적 차별의 구체적 사례

- 성적 우수자에게만 도서관 이용을 개방하는 경우
- 기숙사 입사 조건에 성적 제한 규정을 두거나 성적에 따라 기숙사 방을 배정하는 경우
- 신입생 반 편성고사에서 최고득점자에게 입학 선서를 시키는 등 성적우수자를 우대하는 경우
- 외부에서 들어온 학교지원금을 소수 성적 우수자들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3. 성별 차별의 구체적 사례

- 기숙사 통금 시간을 성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
- 여학생은 두발 길이 자유인 데 반해 남학생에게는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성에 불리한 규정을 달리 두는 경우
- 성별 구분 없는 의사 수렴이 오히려 여학생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
- 남학생에게는 짐을 옮기는 일, 여학생에게는 실내 장식이나 청소 일을 시키는 등 은연중에 전통적인 성별 분업을 재생산하는 경우
- 남학생만 참여 가능한 경기를 열고 여학생에게는 응원을 시키는 경우
- 상급학교 진학 상담 때 전통적인 성별 분업에 따라 진로를 유도하는 경우

## 4. 학년 또는 나이에 따른 차별의 구체적 사례

- 학생 의견을 수렴할 때 상급학년의 의견만 반영하는 경우
- 급식 순서를 정할 때 늘 고학년 먼저 먹도록 하는 경우
- 하급학년이 상급학년 교실 근처에서 떠든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주거나 혼내는 경우
- 학생 대표를 정할 때 동수의 표를 얻는 사람 가운데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당선자로 확정하는 경우
- 하급학년과 상급학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하급학년에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도하는 경우

## 5. 빈곤 학생에 대한 차별

- 빈곤가정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혼내거나 체벌하는 경우
- 빈곤가정의 학생이나 보호자를 무능력하거나 게으른 사람 혹은 문제 있는 집

단으로 매도하거나 묘사하는 경우.

- 학내 복지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시키는 경우
- 급식 지원 대상임을 공개하는 경우
- 수학여행, 수련회 등에서 가정의 경제 형편에 따라 장소나 교통편을 달리 정하는 경우
- 빈곤가정의 학생을 지원할 때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를 전혀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원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 교내 방송, 칠판에 이름 적기, 급식 바코드 설치, 담임의 호명 등 급식비 미납자를 함부로 공개시키는 경우
- 학생대표에게 학부모 찬조금을 낼 것을 은연중에 요구함으로써 빈곤가정의 학생은 대표 역할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경우

#### 6.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의 구체적 사례

- 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을 예비 문제아처럼 취급하거나 동정하는 경우
- 교과서나 교사의 교육 내용, 학교의 행사 내용 등에서 특정 가족형태만을 예시로 제시하는 경우  
: 예) 어버이날에 '엄마아빠 발 씻어드리기'와 같은 숙제를 내주는 경우
- 결손가정, 편부/편모 가정 등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편견이 깔린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가족형태를 함부로 공개하는 경우

#### 7. 가출학생에 대한 차별의 구체적 사례

- 가출 경험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면서 유경험자를 문제아로 취급하는 경우
-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 가출의 원인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내는 데 급급해 학생을 다시 위협에 몰아넣는 경우

#### 8. 소수 정체성에 대한 차별 - 여성

- 여학생에게 치마 교복만 허용하거나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역할 수행을 강요하는 등 여남 차별적인 교육이나 지도를 행하는 경우
- 남학생이나 남교사가 폭력적인 성경험이나 성매수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
- 화장실에 생리대 판매기가 미설치되어 있거나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

- 남학생과 함께 사용하는 보건실에 생리대 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여학생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 개수가 남학생 화장실에 설치된 대소변기 개수에 비해 적은 경우
- 보건실에 남학생과 여학생 이용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무리한 순결교육을 강요하거나 특정 성 경험을 여학생의 성 관념의 문제로 몰아 교육하는 경우
- 성교육 시간에 비혼 임신 여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임신이나 섹스 경험, 성폭력 피해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교육이 부재한 경우
- 생리 자체를 불결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검증 자료로 의사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생리 공결 처리에 까다로운 절차를 두어 이용률을 낮추는 경우.
- 여학생의 성 관련 문제행동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공개적으로 지도하거나 남교사가 여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 교사가 성희롱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예) “너는 엉덩이가 커서 애 잘 낳겠다”, “밤에 뭘 했길래 이렇게 좋아?”
- 비혼 임신 사실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임신을 이유로 퇴학 또는 전학을 강요하는 경우
- 임신을 여학생만의 잘못으로 간주하고 여학생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지도하는 경우

## 9. 소수 정체성에 대한 차별 - 장애

- 특수학급 미설치, 편의시설 부족, 교사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장애를 가진 학생의 입/전학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 거주지와 학교가 멀어 통학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 장애 유형과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 경사로,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아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예) 장애인 화장실이 한 층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 폭이 너무 좁아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학습 보조물이나 보조교사 등의 지원이 미비한 경우
- 예체능이나 과학 실험 등 활동이 많은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에게 학교에 상주하여 보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장애학생을 홀로 특수학습 반에 방치하는 경우

- 저시력 장애 등 경증 장애, 사회성 장애 등을 겪는 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필요한 교육적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장애학생이 생활과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원책을 찾아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운동회나 학예회 등 학교 전체 행사 때 특수학급 재학생에게 가정학습을 유도하는 경우
-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참가 포기를 유도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예) 학부모가 실비를 내고 참가할 경우에만 장애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보조 인력을 채용하는 데 드는 경비를 보호자에게 낼 것을 요구하는 경우
-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
-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장애학생이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나 따돌림, 위협 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 장애를 빗댄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상급학교 진로 상담 시나 생활지도 시 통합교육의 중단을 유도하는 경우
- 별다른 연수 없이 통합학급을 맡기거나 일상적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경우

#### 10. 소수 정체성에 대한 차별 - 이주민학생-인종적 소수자, 복출신 이주민

-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입/전학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 졸업장이 아니라 수료증만 발급하여 상급학교 진학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 한국어 교육 등 필요한 학습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이주민 학생만 따로 학급에 분리 배치하여 불필요한 격리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
- 생활이나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체계가 전무한 경우
- ‘공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어떤 민족은 게으르다’는 식의 고정관념을 갖고 대함으로써 이주민 학생의 자존감과 학습 동기를 낮추는 경우
- 교과서나 교사의 발언이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를 강조함으로써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는 경우
- 특정 대륙이나 국가는 미화하고, 다른 대륙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잘못된 편견을 유포하는 경우

- 타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교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 개인의 문제행동을 특정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로 일반화하여 비난하는 경우
- 학생이나 보호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체류자격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주변인에게 유출함으로써 보호자가 강제 출국되어 가족이 헤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
- 학생의 상황과 바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한국어 수준으로만 학년을 배치하여 또래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경우
- “사람 고기 먹어봤냐”는 등 상처를 헤집는 질문을 함부로 던지거나 “빨갱이”, “북한 놈”, “깜둥이” 등으로 모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신 국가나 지역을 함부로 공개, 노출시키는 경우

#### 11. 소수 정체성에 대한 차별 - 성소수자

- 성소수자를 희화화하거나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언어, 이성애만을 정상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유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예) “동성애자는 변태다”, 호모, 동성연애자 등
- 성소수자라는 낙인을 부여하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성정체성을 폭로하는 경우
- 특정 외모나 몸놀림, 생활양식 등을 규제하고 낙인을 부여하는 경우  
예) 짧은 커트머리는 레즈비언이다, 여자끼리 손잡고 다니면 레즈비언이다, 목소리가 저런 걸 보니 호모자식이다
-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징계를 주거나 부당한 감시를 하는 경우  
예) 소지품 검사, 전학이나 자퇴 종용, 선배와 인사 금지, 손잡고 다니기 금지 등 이른바 ‘이반검열’을 하는 경우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따돌림, 폭력 등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 자신의 성적 지향을 탐색하고 있는 학생에게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거나 문제아처럼 대우하는 경우

### IV.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노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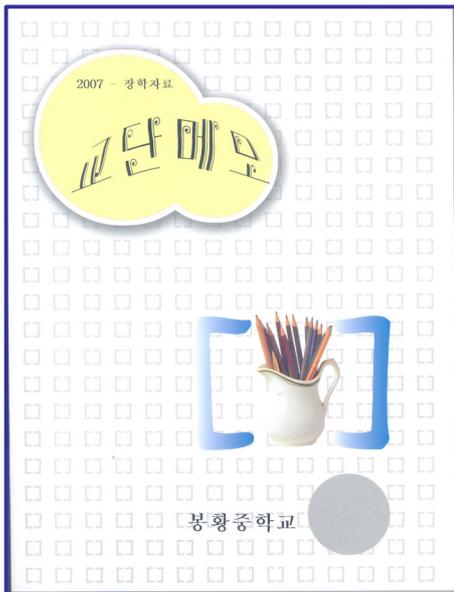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의 다양한 사례를 보면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고 소수의 학교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다. 또한 학교 급에 따라, 학교의 소재위치에 따라 다양한 차별 사례가 존재한다. 모든 학교에서 위의 사례가 나타난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의 변화를 의식이 따라가

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지 차별을 당연시 하는 인격을 가져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나타나는 각 유형별 사례의 해결은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학교장의 인권의식 함양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사례는 학교주체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법들이다.

### 1. 교사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단 메모와 함께 읽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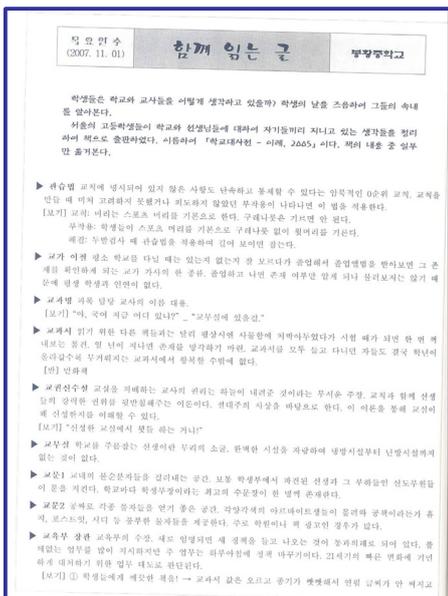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는 농촌형 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남자 중학교이다. 규모는 22개 학급(특수학급)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이다. 대부분의 남자 중학교의 경우는 교사들의 말투가 거칠고 체벌 등 학생들을 인권이 본의 아니게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 그런데 본교에 새로 부임해 온 교사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본교의 교사들이 다른 학교의 교사들에 비해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느낌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학생들을 친절하게 대하게 된다는 말씀을 종종 듣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를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그 힘은 바로 매주 월요일에 나누어 주는 ‘교단 메모’와 매주 목요일에 나누어 주는 ‘함께 읽는 글’이 아닐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동료 교사들도 학생들과 씨름(?)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 교장선생님께서 주신 ‘함께 읽는 글’을 읽고 마음을 가담고 학생을 지도했다는 고백을 자주 듣곤 한다. 학기 초에 책자로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매주 나누어 주면서 가볍게 읽으면서 점차 의식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며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지만 커다란 힘이 아닐까 생각하여 이 방법을 추천한다. 교단 메모에는 좋은 글귀, 교육학 관련 내용, 상담 관련 기법, 학생을 바라보는 태도, 시험의 의미, 기념일 등 너무나도 다양한 자료가 매주 교사들에게 전달된다. 하지만 교장선생님은 강요하지 않는다. 읽는지 버리는지, 다만 교사 자율에 맡긴다. 하지만 교사들은 꼭 챙겨 읽는다. ‘함께 읽는 글’은 분량이 A4 종이 1-2쪽, 때로는 4쪽 분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 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은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나누어주신 자료인데, 서울의 고등학생들이 학교와 선생님들에 대하여 자기들끼리 지니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출판한 『학교대사전』의 내용 중 일부를 옮겨 놓은 것과, ‘전부 무료’라는 내용 등은 교사들의 의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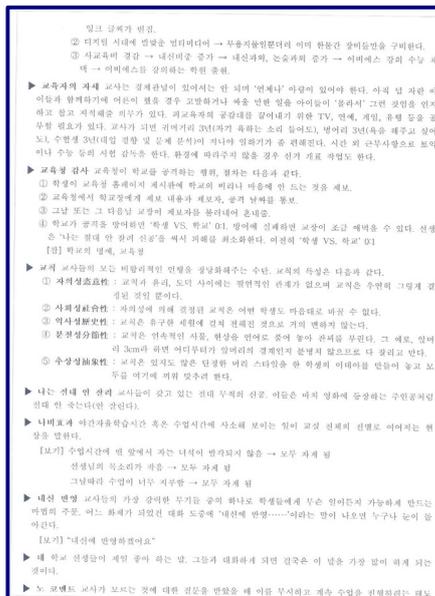
[교단메모 책으로 제본]

교 단 메 모		분류명	
연도	날짜	구분	구분
2007년	11월 24~30일	교과서	교과서
24일	이탈리아, 교통신전지	교과서	교과서
25일	이탈리아, 교통신전지	교과서	교과서
26일	이탈리아, 교통신전지	교과서	교과서
27일	이탈리아, 교통신전지	교과서	교과서
28일	이탈리아, 교통신전지	교과서	교과서
29일	이탈리아, 교통신전지	교과서	교과서
30일	이탈리아, 교통신전지	교과서	교과서

[교단 메모 예]



[함께 읽는 글 예시]



[함께 읽는 글 예시]

위의 차별의 사례 들 중에는 학교 규칙의 개정이나 제정으로 얼마든지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례들이다. 그런데 규칙의 개정이나 제정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식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나타나는 차별에 대한 대책의 기본은 인권 의식 함양이라 생각한다.

## 2. 학생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교실 환경 조성 - 키 높이 책상

본교는 2007학년도부터 학생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교실 환경 조성 일환으로 키 높이 책상을 제작하여 교실에 배치하였다. 목적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

해하거나 줄임으로 인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보통 학교에서는 벌을 주거나 체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교는 수업에 방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뒤에서 수업할 수 있는 키 높이 책상을 제작하여 배치함으로써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키 높이 책상은 교사가 지적하지 않아도 수업에 방해될 수 있는 유혹이 오면 스스로 키 높이 책상에 가서 수업을 받으므로 인하여 수업 시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차별 사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사실은 신문이나, 라디오, MBC의 생방송 화제 집중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 3. 인권교육 실시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사 연수에는 인권교육을 교양 과목으로 선택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동영상 강의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없지만 인권의식을 함양하는데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교직원 연수 뿐만 아니라 학부모 연수에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우리 사회와 학교의 인권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대나 사범대학의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의 이수를 필수로 할 필요가 있다. 예비교사들은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받지 않는 세대들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생시절의 분위기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 나와 학생들을 대할 수 있는데 바른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들은 현장에서 학생들과 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대나 사범대학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넣어 교사 양성의 과정에서부터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기성세대가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 인권 교육 역시 절실히 요구된다.

#### IV. 마치며

학교 현장에서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도 인권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오랫동안 교육적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신 선생님이 때로는 인권 침해의 당사자로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사들은 인권 침해의 사례로부터 벗어나고 학생들과 부딪치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열심히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 적어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방에 위치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나 지역사회, 학생, 동창회, 상급기관의 요구등으로 차별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제도의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교사의 인권의식 부재로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는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 제시된 학교 내 차별의 사례 중 많은 부분들은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과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제도의 개선으로, 예산편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지원으로, 교사의 의식 변화를 통해 이룰 수 있는 부분은 교사 연수를 통해, 더불어 학생들의 인권 의식 함양과 학부모들의 인권 의식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자신의 권리 주장은 많은 부분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자신의 권리 주장 만큼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인권 교육은 내 권리를 찾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존엄성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태도와 삶을 배워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 학교 내 차별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

## (차별 금지와 교육에 대한 권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기한(남대전고등학교 교사)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학교의 공교육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며 학생들은 학교보다 더 나은 학원이나 과외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학교 또한 학원과 마찬가지로 변하거나 그냥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 내 차별문제에 대한 문제는 교육단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의 차별문제뿐 아니라 학교 밖의 차별문제도 심각해지고, 입시제도의 혼란으로 학교의 교사와 학습자와 학부모들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제도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 단체 간의 이해가 첨예해 가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교육 당사자 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항은 학생인권 규정의 명문화 요구에 따라, 2007년 12월에 신설되었고 200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때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차별금지, 교육에 대한 권리, 학생 자치와 참여권,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접근권, 건강권, 안전권,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적 법 절차를 누릴 권리,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권리를 지킬 권리 등 15가지 권리항목이 선언되고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 중 차별 금지와 교육에 대한 권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 1. 교육사적으로의 교육의 변천(근·현대를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교육 문제를 살펴보면 17~19세기 서양의 교육은 17세기 실학주의로 실용성 있는 구체적인 지식과 실제적인 직업기술, 상업, 외교를 위한 실무위주의 지식과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갈릴레이·케플러의 천문학적 발견,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베이컨의 귀납법등이 있었고, 18세기의 계몽주의로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노예해방운동, 무산계급 해방운동, 서구의 개인주의 경향과 산업혁명, 자본주의 형성과 교육에 있어서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교육관의 형성하였고, 19세기 국가주의 및 신인문주의로 국가의 보존과 번영을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지상주의가 왕성했으며 신인문주의로 냉철한 이성과 지성만을 지나키게 강조했던 계몽사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성이나 지성으로 해명할

수 없는 인간과 사회의 측면을 감성적이고 심미적인 태도로 탐구하고자 하였고 프랑스의 계몽사상에 대항하는 독일의 민족적 자주적 사상운동이기도 하였다. 즉 17~19세기 서양 사회의 교육은 17세기 실학주의 교육은 현실세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학습을 중시하는 것으로 인문적 실학주의, 사회적 실학주의, 감각적 실학주의로 자연과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자연계의 현상을 이해하고, 자연 질서에 따르는 '합자연의 원리'에 의해 교육하였고 18세기 계몽주의교육은 보편적이고 천부적인 개인의 권리에 대한 신념에 기초로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을 중시하고 모든 사회활동에 있어 개인의 권리옹호는 우선시 되어야 함과 진보를 역사의 근본법칙으로 하였다.

19세기 국가주의와 신인문주의 교육으로 국가주의 교육은 국가가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공교육제도와 의무교육제도의 발달을 이루는데 영향을 주었고, 신인문주의 교육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중시하며, 심리학의 발달에 영향을 끼쳤으며,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신인문주의의 차이점은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라틴문화의 형식만을 모방하여 형식적인 언어주의와 키케로주의에 빠졌으나 신인문주의는 그리스문화의 정신과 내용 속에 깃들여 있는 세계관과 인생관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통해 참된 인간성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으로 영국의 교육의 실체는 빈민구제를 전제로 한 자선교육기관과 프랑스의 18세기부터 유아보육기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중요하며, 미국의 교육은 공립무상의 초등교육의 보급, 종교와 교육의 분리, 취학의 의무화로 근·현대 교육의 효시가 되었다. 특히 17~18세기 서양 교육사상은 실학주의 교육사상으로는 교육목적이 시민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층 육성이었다.

20세기 서양사회의 현대의 교육은 우선 교육정책은 19세기 도입된 의무교육제도의 확립을 통한 교육기회의 확대, 중등학교 교육의 확대, 고등전문교육의 발달, 교사양성제도의 정비, 특수교육의 진보를 통해, 20세기의 취학기회의 확대를 통한 교육의 기회균등과 의무교육의 확충, 단선형 학교제도의 도입과 남녀공학,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이었고, 특히 20세기 아동중심 교육사상의 기본원칙은 학습자의 인격과 자유를 보장하고 아동의 자율적 판단능력을 함양하여 성숙한 인간으로 육성하는데 있었다.

20세기 서양 교육사상은 어떤 진술이 진리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진술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해결에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느냐에 따라 진리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유용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진리의 기준을 추구하는 목적 실현의 유용성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도구주의라고도 하는 실용주의에 근거를 둔 진보주의 교육사상과, 본질주의는 인류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며, 학교교육을 통해 문화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전달할 것을 강조한 본질주의 교육사상, 아퀴나스에 의해 체계

화된 기독교적 실재론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 실재와 진리의 관념에 바탕을 둔 향존주의 교육사상, 전통문화와 기술 사회 간의 격차를 좁히고 새로운 문화를 재건하는 재건주의 교육사상, 인간의 존재와 주체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존주의로 구별할 수 있다. 특히 사상가로서 주목할 학자는 아동의 성장발달을 이끌어줄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준비하고 제공해 줌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는 몬테스리와 닐로 닐이 설립한 서머힐 학교의 기본 정신과 목표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용하며,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었다.

여기서 20세기교육은 취학기회의 확대를 통한 교육의 기회균등과 의무교육의 확충, 단선형 학교제도의 도입과 남녀공학,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이었고, 특히 20세기 아동중심 교육사상의 기본원칙은 학습자의 인격과 자유를 보장하고 아동의 자율적 판단능력을 함양하여 성숙한 인간으로 육성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교육이 목적이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자의 인격과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교육의 측면에서 목적과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 하다.

## 2. 차별금지

우선 인격과 자유를 보장하는 교육에서 살펴보면 차별 금지교육으로 첫째 차별 근절 조치는 성적, 성별, 학년 또는 나이, 빈곤 학생, 가족형태, 가출학생에 따른 (대한) 차별금지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로 여성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여성의 몸과 특성을 고려한 시설 제공, 여성인권교육의 실시, 비혼 임신 여성을 위한 지원, 여성 대표성의 강화, 생리 공결의 보장, 성 폭력 등 성 관련 경험에 대한 남성교사 관여 주의와 장애인에 대해 교육 접근권의 보장, 편의시설의 제공, 교육지원, 교육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통합을 위한 교육, 교사를 위한 지원과 이주민과 성소수자 학생에 대해 교육 접근권의 보장, 교육지원, 교육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통합을 위한 교육,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존중, 신상정보의 보호 그리고 성 소수자 학생에게는 교육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아웃 톱의 금지, 성적 정체성의 탐색 지원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 중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문제가 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학교 내 종교 차별에 대한 문제이다.

많은 종교 사학은 우리 교육의 발전에 많은 공로가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종교사학의 문제를 살펴보면 평등한 사회는 인류가 꿈꾸는 세상이다. 폭력적이거나 강제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에 부당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문명사회라고 할 수 없다. 못 살아도 다 같이 못살고 힘들어도 다 같이 힘들면 참을 수 있고 희망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면 서로간의 불신 때문에 세상은 평온할 수가 없다. 무엇이 '차별'인

가. 간단하다. 다르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즉, ‘차이=불편 또는 불이익’인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종, 지역, 신분, 성, 장애, 외모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종교로 인한 차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등권’이 공허한 법조문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은 왜일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능력과 무관하게 종교 등을 이유로 알게 모르게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교육현장’이라는 특수한 공공영역에서의 종교차별을 생각해 보자. 아직 종교사학에서의 특정종교 강요는 여전하고 더욱 교묘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강의석 군의 단식으로 얻어낸 개선 결과라면 대광고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차별 시정권고를 따라 ‘학생회 임원은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것이다. 모든 국민이 환영했던 참으로 다행스런 결정이었다. 일부 학교에서 선교부장 등의 특별한 간부직을 두는 곳이 있어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차별규정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종교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은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종교사학들이 교원 임용 시 자격조건을 특정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자기 문제나 국민의 권리 침해로 생각해 보지 않은 국민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설사 뭔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했다 해도 ‘사립학교’라는 불확실한 개념 때문에 ‘그 사람들 원래 그래?’ 하고 애써 잊어버리려 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저 관행으로 넘겨버리기엔 대표적인 종교차별이자 인권침해로 위헌 논란이 제기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며, 수십 년 동안 사회문제화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의아할 뿐이다.

공개적으로 특정종교 자격조건을 내걸지는 않는다 해도, 일부 종교사학은 ‘인사위 심의’도 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채용 공고’조차 내지 않는 등 공개전형 절차 자체를 밟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사립학교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비공개로 교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사회적 비난을 피하면서 특정종교인만을 편법으로 임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했는가를 검토해 보기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현황을 살펴보자. 2006년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립중학교 전체 예산 중 정부보조금, 학생 부담금, 법인전입금, 기타 기부금 등의 비율은 각각 81.7%, 15.7%, 1.4%, 1.2%로 나타났다.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는 50.6%, 45.8%, 1.9%, 1.7%이다. 재단전입금은 불과 2%도 채 안 되며, 특히 교사의 인건비는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무늬만 사립학교인 셈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종교사학들이 특정종교인만을 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지, 또 감독기

관인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왜 통제하지 않고 묵인·방조하고 있는지, 국고지원을 통한 특정종교 우대로 위헌적 정책이라는 지적에는 답을 할 수 없다.

두 번째가 성희롱문제이다. 학교 내 성희롱, 성희롱 실태와 예방을 살펴보면 남녀차별금지법안의 제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기존의 성폭력 특별법이나 형법상에서 처벌이 불가능하였던 성희롱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관행처럼 굳어져 온 직장 내 남성들의 성희롱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이 마련된 셈이다. 이제 기업은 경쟁력 차원에서나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나 성희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사회전반에 걸친 성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녀차별 없는 건강한 일터, 평등한 사회 지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의 규정안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규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 내 성희롱은 권력관계가 관철되는 학교 강사와 학생간의 경우에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유발되는 학생들 간의 성희롱과 외부인에 의한 것까지 그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고 실제 근래 들어 사회적 이슈로 간간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형법이나 특별법으로 규제방안이 명시적으로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금전적, 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성희롱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군다나 학교라는 폐쇄 집단에서 특히 가해자가 절대적인 권력의 우위에 있는 학교 당사일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와 장래를 걸고 그러한 문제를 공식화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1998년 2월, 5년간의 투쟁 끝에 승소로 끝난 서울대 우조교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사회통념상 일상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으로 인식되던 성희롱의 문제를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로 간주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지성의 전당으로서 우리사회의 도덕적 지표로 간주되는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내에서 암암리에 묵과되어 왔던 성희롱의 문제를 표면화시켰다는 점은 성희롱에 대한 leading case를 남겼다는 의미에 버금가는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몇몇 대학 내에서는 학생회차원에서 성폭력 실태에 관한 통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성폭력방지를 위한 규정안'이 마련되는 학교가 생겨났고 무엇보다 성희롱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셋째는 학교 내 여·남 차이에 대한 문제이다. 예전엔 선생님이 옛날에는 여자는 공부 못하고 집안 일만했다. 공부 너무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등 여성 차별적 발언이 많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많았다. 그런데 요즘은 남자차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녀 공학에서 선생님들이 남자가 떠들고 있으면 남자는 지적을 하지만 여성의 인권교육으로 교사는 여성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학교 교육에서도 폭력, 성폭력예방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학생으로 지켜야 할일만 있고 여학생으로서 지켜야 할일은 없다. 예를 들어 “집에서 단둘이 여학생과 있지 않는다.”란 글이 있는데 남자가 불렀는지, 여자가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는데 왜 남자만 문제인가? 여자도 문제지. 그리고 여성보호센터는 있으면 남성 보호센터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남 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여성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남성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려되어야 여남 평등이 이루어진 학교를 만들 수 있다.

네 번째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이다. 예전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던 시절에는 학습자는 교사를 존경하고 교사 또한 학습자들을 사랑하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달라졌겠지만, 현재는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신뢰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우선자기 교사로 자기반성을 하면 교사 중 일부는 자신의 돈을 벌 수단으로 즉 단지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 수업을 하던가! 때론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만의 교육관도 없이 그저 묵묵히 수업만 하시는 교사들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일부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학습자 또한 교사를 믿고 따라야 하지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등 도덕적인 관념의 부재로 교사를 존경하는 것도 없이 그저 학원의 강사들과 같이 보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각각의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논의되지 않을 때까지는 학교의 위기론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선 첫째 교사나 학교는 인권교육단체 측에서 주장하는 강제된 학습금지과 언어폭력 금지,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성적차별 금지 학년에 따른 차별 등 ‘차별금지’, 교육과정 수립 참여 등 ‘교육에 대한 권리’, 학교장 등과의 면담 권과 동아리 설립·가입 허가제 금지 등 ‘학생 자치와 참여’, 체벌 및 강제 이발 금지 등 ‘신체의 자유’, 양심에 반하는 서약 금지 등 ‘사상·양식·종교의 자유’, 두발 복장의 자유 및 매체활동 지원 등 ‘학생의 표현’, 일기장 검사의 대안마련 등 ‘사생활과 개인정보’, 열람권 등 정보접근, 적절한 학교시설과 물품 등 ‘건강’, 안전을 위한 설비 등 ‘안전’, 쉬는 시간 활용의 자율성 등 ‘쉽·놀이·문화’, 징계권 남용 금지 등 ‘사건조사와 징계’, 일시보호 등 구제조치 등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 이의 제기 및 불이익 금지 등 ‘권리를 지킬 권리’ 등에 좀 더 가슴을 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입시제도의 변화이다. “학교는 교도소”란 말이 있다, 어느 대담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한쪽에서는 학생인권문제는 입시 중심의 학교정책에서 생기는 문제이기에 학벌사회를 개혁하고 대학평준화 운동이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해, 나머지 운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가져오지 못할 거라 생각 한다”며 “또 한쪽에서는 학생인권의 침해가 심각한 학교현장의 고발을 통해, 인권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다. 며 “처음부터 그 고민들을 근본적으로 다

시 생각해 봐야 한다. 고 지적했다.

여섯째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이다.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학입시제도이며 또 하나는 대학수학능력별고사이다, 우선 대학 입시 제도를 살펴보면 국가가 주도하여 전국의 학생들과 전국의 대학과 학문을 서열화, 청소년들의 과도한 학습노동으로 인한 지적, 정서적, 신체적 성장 저해, 입시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개인적, 사회적 비용의 과다 지출,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불평등으로 계층 간의 위화감이 발생하여 사회 통합 저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초중등 교육의 교육활동을 왜곡, 입시에 대비한 단순 반복 암기식 학습으로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상실,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어 학력과 학벌을 통한 권력획득의 수단으로 변질, 고 부담 시험의 정답에 종속되는 사고로 교육의 창조성 상실,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교우관계 및 공동체적 가치관 무력화, 삶의 해방을 위한 지혜의 습득이 아니라 서열화의 도구로서 지식으로 가치전도 등이며 현행 대학수학능력고사의 문제는 국가가 주관하는 고 부담 서열화 평가, 학생뿐 아니라 전국의 대학과 학문을 서열화, 출제자 및 출제 내용에 있어 중등교육과정을 왜곡하는 평가, 사교육 시장을 확대를 조장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 5지선다형, 지식위주의 평가로 창의력, 종합적 사고능력 저하, 형식적인 내신실질반영비율이 학교의 무기력을 초래, 청소년의 미래를 서열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학문탐구욕 및 희망적 가치관 상실 등이다.

이 문제는 국가의 장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 주도하에 모든 이해 당사자(전 국민)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2. 교육에 대한 권리

대한 문제가 방영된 적이 있다, 단순히 옥천 인재숙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교육은 평등하게 교육 받아서 취업을 통해 인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교역사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도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현재는 이 평등의 권리가 도외시 되고 있다 우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공립학교의 문제이다, 둘째 특수목적고와 일반계 학교의 문제이다, 셋째는 학교 내에서의 서열의 문제이며 최종적으로 부의 불균형이 배울 권리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문제를 따져보자 사립이라도 교사의 급여는 나라가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비를 따져보면 공립의 70%만 사립학교에 지원하며 시설이 낙후되어도 개선 등이 공립학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교육청이나 정부가 주는 제공하는 돈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 되는 것인데 사립학교의 부모가 교육세의 70%만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동일하게 대접 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무시하고 있어 일

부 사립학교의 경우 낙후된 시설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특수 목적고와 일반학교의 문제를 살펴보자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운영 하는 곳이니 열외로 놓더라도 과학고와 외국어 고를 살펴보면 이런 특수학교에 일반학교보다 많은 재정지원을 한다. 이유는 특수 분야에 능력 있는 영재를 발굴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곳이 소위 일류대학가는 장소로 변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 후 국가의 발전과 인류의 발전에 공헌하기도 하지만 과외교사를 하는 등 개인의 발전과 영리를 추구한다면 국민의 세금을 들여 특수 목적고를 운영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런 교육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니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요구라는 명목으로 특수반, 우열반, 0교시 수업, 반 강제적 자율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이다 과외다, 경시대회반이다, 어학연수다 하면서 앞서가고 있어 부의 불균형이 교육받을 권리의 불균형으로 되고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고려 해 봐야 한다.

우리 교육 현장의 이중성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 하지 않는지 옥천 인재숙에 대한 고찰로 살펴보자,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정건희 관장의 글에 의하면 전라북도의회가 순창 옥천 인재숙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기숙형 학원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이번 도의회 회기에 제출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진통 끝에 미료 안건으로 처리했다. 이와 더불어 전북지역 16개 청소년기관·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반대 했었던 “학원교습 시간 연장에 관한 사항”도 함께 미료 안건이 되었다. 미료안건 처리란 당회 회기 내에는 이 사안을 거론하지 않지만 안건 자체는 살아 있으며 다음 회기로 논의를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숙학원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결정사항을 도의회에서 내어 놓은 논리는 간단했다. 상위법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위법이 결정되더라도 이러한 불법을 넘나드는 여러 일들을 지속해서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농촌지역이나 중소도시의 인구유출 및 경제침체의 다양한 문제점 중 교육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은 오래전이다. 교육계에서 뾰족한 대안이 없던 터에 정치적 이유이건 시민들의 욕구건 간에 지자체가 나서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시민들의 호응도 얻고 있다. 사교육을 공적 자원을 통하여 지원하는 양상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군산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거나 추진하는 정책이 되었다. 정치인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지역구의 시민들이 자녀들을 일류대에 합격시키기 위해 돈 들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지원한다고 하니 누구든 좋아하지 않으랴. 다만 정치적 목적의 홍보성 등 여러 이유로 대다수의 모든 이들에게

지원될 수 없다는 데에 한계가 있을 뿐이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교육이 언제부터인가 지역 발전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자체장의 정치적 논리가 가미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매일수록 교육의 주체라고 이야기는 교육당사자들이 정확한 자기 비전과 지역사회 교육의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지역 민간전문기관과 지자체 등과 주도적으로 연계하여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항이 거꾸로 간다. 민간 교육전문단체나 지자체에서 정책과 재원을 만들면 따라오며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이 언제까지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할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안은 도교육청의 이중적인 모습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공교육 파괴 운운하며 순창의 인재숙은 그렇게 반대하면서 역으로 학원교습시간 연장은 도교육청이 제안한 사항이다. 그것도 각개의 의사수렴을 했다는 논리를 들이대며 학원시간은 연장해 주어야 한다고 교육위원회 통과시키고 도의회까지 올라간 사안이 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이 원하는 것은 학교 이외의 공적 지원을 통한 무료교육은 허락할 수 없지만 사교육비를 가정에서 지출하며 공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것은 허락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현재에도 입시학원의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교습시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전국 고교생 2,838명 대상으로 지난 11월 1일 한국 사회조사 연구소에서 발표한 청소년심야학습 에 관한 인식 및 실태조사 분석 중 '평일에 학원에서 끝나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 학원에 다닌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73.1%(일반고 77.8%)가 밤 10시 넘어 끝나는 학원에 다니고, 12시가 넘어서 끝난다고 한 사람도 44.1%(일반고 47.8%)나 되었다. 심지어 밤 1시가 넘어서 끝난다고 답한 사람도 6.3%(일반고 6.9%)나 되어 학원의 심야교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한밤중에 길거리에 나와 있는지 실태가 잘 나타나 있다. 교육당국이 현재 불법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학원교습시간을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욱 공고히 지원 하지는 못할지라도 시간을 늘려 학원의 편의만을 봐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문제가 있건 없건 정부와 정당은 교육정책을 쏟아 낸다. 개인적으로 교육비를 몇 십억을 지원하건 특수목적고 몇 백 개를 짓건 평준화를 해제하건 비평준화를 밀고가건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와 개인적 다양성에 입각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있다. 엄밀히 말하면 평준화도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그 이상 최선의 정책이 있는가에 접근하면 평준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민주사회에서 가장 평등하게 지원되어야 할 교육이 가장 불평등한 기회가 되고 말았다. 오직하면 일류대에 입학할 때 부모님 재산을 공개하고 점수를 매겨 합격시키자는 이야기까지 나올까 마는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이 일류대 입학을

과 비례한다니 이런 말이 나올 만도 하겠다.

차라리 학교가 입시교육이냐 학원보다 낮게 했으면 좋겠다. 사교육비라도 덜 들지 않겠는가! 지역의 지자체 예산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예산을 쏟아 붓지 않더라도 우리 교육의 근본 목적(人間愛)이 아닌 최소한 입시교육의 목적이 공교육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학원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는가. 공교육 파괴 운운하며 학원시간 연장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설학원을 문제시 하는 이중적인 잣대 모두를 억누를 수 있는 길은 단순하다. 학교가 학원보다 입시교육을 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과연 그런가?

결론으로 말하면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뿐 아니라 교육당사자, 정부가 모여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국민의식이 변해야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는 창의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냥 제도만 탓 할 순 없다 보건 복지 가족부 문병호 아동청소년관리과 사무관은 ‘좋은 학교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교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사에게 최선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에 맞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며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경쟁에 의하여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 스스로가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현대 교육의 목적은 인격이 존중되며 교육의 평등을 이뤄 건전한 사회인 육성에 있다는 점을 명시 할 때 우리가 적극 적으로 참여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학생의 안전 건강 등 복지권 실현방안 모색

강명숙(배재대학교 교수)

## 1. 시작하며

- 몇 가지 에피소드
  - 『학교인권교육의 이해』의 작은 글씨
  - 선생도 학생으로부터 인권침해 당한다
  - 급식지도에서 남김없이 먹도록 하는 것이 인권 침해냐?
  - 교실밖(다른 반)으로 나가라
- 일상 지도의 모든 문제가 인권적 관점에서

## 2. 학생 건강과 안전의 사회 문제화

- 재개발 재건축 지역 학습권 및 건강과 안전
- 쇠고기 문제 : 급식 안전 문제
- 4·15조치 : 교육권, 건강과 안전권
- 학교구성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라기보다는 교육정책과 사회적 여건의 문제
- 타박보다는 즐거운 학교 만드는 길

## 3.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 아동권리협약
  -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가능한 한 최대한"이라는 의미에서 "발달"은 질적인 면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모두 의미함
- 교육기본법 27조
  - (보건 및 복지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 4.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15가지 권리

-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 차별금지
- 학생 자치와 참여권
- 신체의 자유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 정보접근권
- 적법절차를 누릴 권리
-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권리를 지킬 권리
- 교육에 대한 권리
- 건강권
- 안전권
-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5. 교육이란

- 모든 아동의 권리인 교육은 아동에게 삶의 기술을 제공하고 모든 범위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아동의 능력을 강화시키며, 적절한 인권 가치에 의해 고무된 문화를 진흥시키도록 고안된 것이다.
- 목적은 아동의 기술과 지식, 그리고 다른 능력, 인간의 존엄성, 자부심과 자신감을 진전시킴으로써 아동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
- 교육은 형식적인 취학을 넘어서서 광범위한 인생의 경험 및 개인적, 집단적으로 아동이 그들의 개성과 재능,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에서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유하도록 하는 학습과정을 아우르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 6. 교육에 대한 권리

-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경쟁적 교육풍토의 변화, 교육의 궤도를 벗어난 지도 중단, 외부 위탁교육에 대한 점검
- 교육과정 수립에 대한 참여, 학교의 운명 결정에 대한 참여,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
-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비정규 교육활동에서의 선택, 다양한 진로 탐색
- 학급당 학생 수 축소, 안정적인 학습 환경, 학습 지원 물품 제공, 학교운영지원비 원천징수 금지

- 학습권의 일시적 박탈 최소화, 수업 시간외 조사,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중도 탈락률 감소 조치, 탈학교 선택에 대한 존중
- 동등한 교육 접근, 경제적 부담의 축소, 입/전학·복학에 대한 개방
-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출전횟수와 훈련 제한, 합숙소의 폐지와 집중 관리, 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

## 7. 교육권 침해 사례1

- 교육목표를 벗어난 활동
  - 예체능 교육 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 0교시, 강제 야간학습, 과도한 자격증 시험 준비 등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는 경우
  - 경시대회, 일제고사 등으로 경쟁을 과열시키고 기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사소한 잘못에도 벌점을 자주 주거나 벌점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 8. 교육권 침해 사례2

- 부적절한 학습 환경
  - 학급당 학생수 축소: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높아 개별적인 관심과 수준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안정적인 학습환경: 학교 건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학생들이 열악한 임시 공간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경우
  - 기숙사 및 합숙소의 열악한 시설 상태나 생활 실태

## 9. 건강권이란

-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아동권리협약)

## 10. 건강권 내용

- 학교 시설과 물품, 위생 설비, 학교주변 환경
-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치유, 상담활동의 강화, 처벌이 아닌 치유
- 호소에 대한 존중, 최적화된 보건실
- 학교 급식의 질 확보, 급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학교 매점에 대한 감독

- 적절한 건강 검진, 사생활의 보장
- 운동시설, 체력의 등급화 제한, 보건교육의 실시
- 운동의 강요 금지, 전염병 관련 조치

## 11. 건강권 침해 사례1

- 학교환경
  - 학교시설과 물품
    - : 신체 치수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
    - : 시력을 저해하는 조도의 조명기구를 방치하거나 환풍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환경 검사와 정비가 불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 위생설비
    - : 화장실 위생 상태가 불결하거나 비누나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생리대 판매기가 미 설치 및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 교실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 : 기숙사 등 학생들이 다수 생활하는 공간의 위생 관리가 불철저하거나 너무 많은 수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
  - 학교주변환경
    - : 학교 주변의 공사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거나 분진과 소음으로 학습과 건강을 침해하는 경우

## 12. 건강권 침해 사례 2

- 좋은 먹거리에 대한 보장 미흡
  - 급식 지원 아동에 대한 공개나 낙인, 차별적인 시선 등으로 급식 지원 신청을 꺼리게 만드는 경우
  - 학교 외에 다른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
  -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 급식 식단을 짤 때 학생의 의견 및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 급식비 미납 학생을 공개하거나 공개적으로 독촉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영양 담당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영양을 고려한 식단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 급식 식단만 공개되고 원산지나 식재료, 식재료의 질 등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

- 위탁 운영 시, 급식업체 선정 과정이나 운영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 급식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전문 인력이나 장비 부족으로 위탁급식업체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
- 학교 매점에서 안전성이 검증 안 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급식 순서를 정할 때 늘 고학년 먼저 먹도록 하는 경우
- 식사시간의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는 경우
- 정신 건강에 대한 배려 부족
- 몸이 아픈 학생에 대한 배려 부족

### 13. 건강권 침해 사례 3

- 부적절한 건강 검진
  - 신체검사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나 학년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거나 문진 위주로 이루어지는 등 학생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부적절한 검사 장비로 건강 검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 체육관 등 공개적인 장소나 엿보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신체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 건강 검진 시 파악되는 정보가 함부로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경우
- 건강 촉진 활동의 부족
  - 체육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 비가 올 때 대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
  - 학생의 체형과 특성에 맞는 운동 기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장애학생, 여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나 체육 교육이 부재한 경우
- 강제 격리 조치
  - 체력 단련, 비만 치료 등을 명분으로 강제로 운동을 시키는 경우
  - 비만 특별 관리반을 두고 특정 학생을 포함시켜 낙인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우
  - 전염병 환자 발생시, 별다른 대책 없이 학생을 격리시키는 방식으로만 처리하는 경우

### 14. 안전권이란

-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3조

## 15. 안전권 내용

- 안전을 위한 설비
- 학교 밖 교육시설의 안전 점검, 사고에 대한 책임
- 통학로의 안전 확보, 통학수단 제재의 최소화
- 안전교육의 실시

## 16. 안전권 침해 유형1

- 학내 안전 사고 예방책 미비
- 학교 밖 교육시설 이용 시 안전시설 미확인 및 학생에게 책임 전가
- 안전교육 미흡
- 등하곳길 통학로 미확보 및 안전 대책 미비
  - 물리적 접근 어려운 경우
  - 통학로 안전 기준 미확보
- 적절한 통학수단 미확보

## 17.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쉬는 시간의 보장, 쉬는 시간의 자율성, 실외 휴게공간의 확보, 실내 휴게공간의 확보
- 문화 동아리의 지원, 문화 관람의 다양성, 문화 활동에 대한 제한 금지

## 18. 쉼 권리 침해 사례

- 쉬는 시간의 보장
  -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등교시간을 함부로 당기거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경우
- 쉬는 시간의 자율성
  -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향유하는 놀이의 유형이나 놀이 공간에 대해 부당한 통제를 가하는 경우
  - 쉬는 시간에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음악재생기를 통제하거나 빼앗는 경우
- 실내외 쉼 공간의 확보
  - 학교 운동장이나 교정에서 편히 쉬거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교 운동장을 학생 선수의 훈련 장소로만 전용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학생의 놀이 공간을 빼앗는 경우
  - 편히 쉴 수 있는 실내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19. 놀 권리 침해 사례

- 문화 활동을 하는 동아리의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문화 동아리의 활동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 동아리 활동 공간 및 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동아리실 열쇠를 교사가 갖고 있는 경우
- 소음 방지 설비를 갖추지는 않고 동아리가 연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경우
- 학교나 학급 차원에서 문화공연 관람을 결정할 때 학생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 값비싼 공연을 의무적으로 보게끔 하여 학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 학생이 가진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유형의 문화만 관람하는 경우
- 극장, 유원지 등 학생의 교외 놀이 활동에 대해서도 출입 금지 등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
- 운동부가 아닌 일반 학생은 체육관 사용 금지하는 경우

## 20. 위협하는 교육 노동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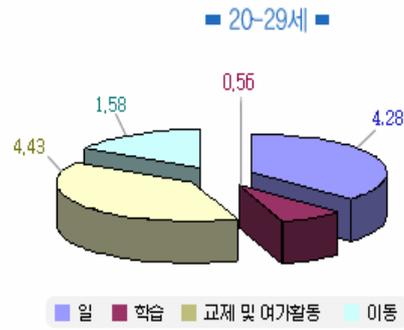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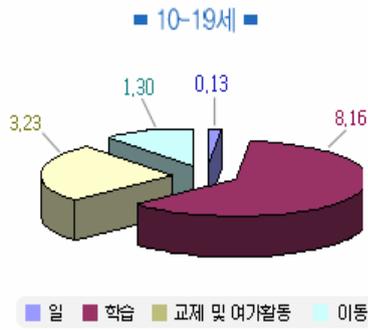
- 부모자식간의 대화 단절
-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하더라도 야식·인스턴트식품에 의존
- 누적된 수면부족, 만성피로
- 학습의욕 상실, 공교육 부실화
- 청소년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학습자의 기본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 아동 잠재력의 최대한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교육정책을 수립해야한다.

## 21. 공부하고 노는 시간

- 2004년 통계청 청소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 22. 1단계 학교자율화 조치

- 교육목적, 건강, 안전의 위협 우려
  -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 지도 지침
  - 학교 체육 기본 방향 추진 계획
  - 전문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 학교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 학교 안전교육 계획
- 각급학교 황사 피해 방지 종합 대책 알림

### 23. 2단계 학교자율화 조치(서울시교육청, 7/11)

- 생명존중 23. 의식 함양 교육 계획(향후폐지 2009년)
- 학생 수련교육·수학여행 실무지침(향후폐지 2009년)
- 청소년단체활동 실무지침(향후폐지 2009년)
- 급수시설 개선사업 음수대 설치관리 지침(즉시폐지)
- 학생 건강검진 실시 계획(유사지침으로 통합)
- 건강진단 및 전처리 농산물 관련지침(유사지침으로 통합)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관련 운영지침(유사지침으로 통합)
-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위생·안전점검 지침(유사지침으로 통합)
- 학교 및 기관 수영장 관리운영 지침(향후폐지 2009년)

### 23. 학생 건강과 안전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 시급

- 4·15조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 건강과 안전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과 '국가의 교육수요자의 권리 보호 역할 담당' 제시
- 그러나 '교육의 목적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기약없는 '향후 과제'로 제시
- 경쟁수단으로서의 교육, 경쟁에 실패한 자 위한 복지로서의 교육 아니라 '권리로서의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확산되어야
- 학생 인권 보장 종합 대책 즉각 마련 필요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학생인권보장의무 조항을 보다 내실있게 실행하도록 하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 촉구

## 24.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라는 외침에 귀 기울여야

감사합니다

\* 이 발표자료의 권리내용과 침해사례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복지 정책 방향

김영숙(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장)

##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짚어보며 학생인권의 복지는 어디까지인가 생각해본다. 국방의 의무와 교육의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보면 입영 통지서를 들고 군대를 가는 것과 취학 통지서를 들고 학교를 가는 행위가 거의 흡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군대에서도 밥은 준다. 학교의 급식처럼! 모두가 정부미를 먹고 있으며 안전에 대해서도 정부가 자산 관리 하듯이 이런저런 방책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군인과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면 꼭 막힌 곳도 흡사하지 않은가?

여기에 학부모의 목소리는 아이들이 미성년이라는 이유에서 법정 대리인으로써 권리를 주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겠다.

대전 충청지역의 상황이 다른 곳과 별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한 초등 기간제교사가 학급 여학생들을 거의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학교에서는 초기에 대응하기를 아이들을 예뻐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조사결과는 어처구니없었고 교사와 교장은 무릎 꿇고 사죄하였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식중독 사건이 있었으나 납품업체와 학교는 이동 중 부패한 것으로 주장하며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지만 학교 안전 공제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고 본인의 보험으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 다반사다.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 내용을 보면 학생들은 사문화된 글이라고 할 것이다. 스스로 인권이라는 부분보다는 족쇄처럼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 졸업 할 때까지는 말을 못한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생존의 기본권도 지키기 어려운데 인권은 배부른 자의 헛소리 정도 혹은 이상주의자들의 유토피아적인 상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에서 신설된 학생 인권보장은 이제라도 군대보다는 나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 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다만 이런 문제는 학생이 배경이 아니라 주 무대의 배우가 되어서 말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충분히 보장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정책에서 어떻게 실현 시키는 것이 타당할지 폭넓은 논의가 현실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다져지기를 이번 토론회에서 기대해 보며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학생의 급식과 관련한 건강 문제 - 친환경 농수산물 비싸기만 한가

지난 학교의 급식은 군대보다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인가.

국가가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자세는 어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인가가 분명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게 학교장에게 또 다시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부분을 짚어보고 1공화국 시절 국방비를 빼돌려 많은 군인들이 굶어 죽는 사태는 후진국인 과거의 일이라면 지금은 자본을 장악하고 식자재를 장악하는 기업이 식단도 움직이게 하는 상황일 것이다.

식자재가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 되는지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자치단체장들은 학교 급식지원 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고 있다. 각종 새로운 질병들은 먹거리를 통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유전적으로도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식약청, 농림부, 교육과학부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교과부가 좀 더 힘 있게 학교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본다면 책임지고 정책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책임지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학교마다 학교운영위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이들은 전문가가 아니며 임무 또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 학교급식의 계약자는 학교장이며 안전에 대한 책임도 학교장으로 명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장이 과연 그 책임을 질 수가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게 하고 급식실 환경 개선에 정책적 지원이 학생의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하게 되길 바라는 바다.

## 3. 보건, 상담 -보건교사 상담교사 따로 없는 학교는 ?

학교에는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지만 항상 안전에 대비할 보건, 상담교사가 부족하다. 정책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기는 하나 교사 수는 학생 수에 대비 부족하다. 학교에서 발생된 안전사고에 일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문제인데 보건교사가 없다면 체육교사가 수업 중에 출동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생활지도 교사는 업무분장에서 학생들을 일정한 규율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역할에만 몰두하고 생활지도를 위한 상담은 담임의 역할로 오게 된다. 담임에게 하기 어려운 문제는 교장에게 와서 말하라 라고 하지만 교장에게 말하면 문제만 불거져 교사가 질책 당하기 일쑤고 학교에서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에 발생된 갈등이나 고민을 해결 해줄 상담 교사가 절실하다. 일차적인 상담이 원할 해지면 많은 문제를 일차적 범위에서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회가 혼란해지고 학습과 환경에서 오는 부담이 커지는 학생들의 인권을 살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3. 안전공제회 - 안전 한가?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다친 일이 있어 병원에 갔는데 학교 담임이 찾아와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장난친 친구들을 말하면 상해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험은 개인 것으로 처리하면서 가해자를 찾아 치료비를 주도록 하는 것이 맞는가? 학교안전 공제회에 대해서는 일체 설명이 없다.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한 보험인데 처리할 일은 거의 없다. 특히나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괜히 사고 건수만 올라가니 혼자서 넘어진 것으로 하고 본인에게 부담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 미미한 사고라도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여 안전 예방에 힘쓰도록 하고 사고의 처리에 대해서는 처리 담당자를 두어 담임교사가 아닌 전담교사가 처리 하는 것이 맞다. 안전 공제회를 안전하게 보호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보호하는 공제회가 필요하다.

### 4. 학교 폭력 - 폭력으로 다스린다.

학교 폭력에 관한 인권 문제가 어느 때 보다도 커지고 있다. 사회가 학생교육을 책임 있게 바라본다면 이는 학교만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다. 학생들은 학교 폭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항상 나뉜다. 하지만 경찰도 부모도 그 후속 대안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한다. 학생들을 밖으로 내쫓아 사회에 내보내면 아이들은 더 방황하며 제2의 사고를 내기도 하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비용은 더 커지는 것이다. 사회가 함께 안고 해결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차적으로 학교 안에서 지도 되도록 애써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학생보다 학교가 더 폭력적으로 문제를 풀어 가면 안 된다. 폭력은 폭력으로 해결 되지 않기에 학생들을 좀 더 지켜주는 학교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 5. 맺은 말

국가가 학생을 미래의 보배로 본다면 인재육성 한다고 자립형사립고니 특수목적고니 하는 정책보다 우선하여 학생 인권을 지켜주고 자유롭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미래에 닥칠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이고 삶의 질

도 보장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인권이란 말이 당당하게 제기 될 수 있도록 인권위의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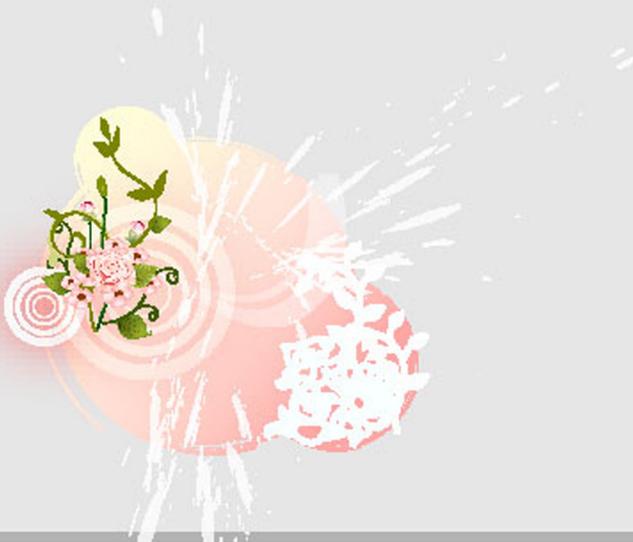
이에 긍정적인 정책에 대하여 학부모나 학생 , 교육 관계자들도 함께 노력하리라 생각하며 학생 인권이라는 정책이 책속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묻어나는 날을 기다린다.



#### **【참고자료4】**

### **부산·울산·경남권역(2008.7.18) 토론자료**

- Ⅰ 학생의 자유와 참여-소통-공감, 선택으로 함께 가야 할 소중한 가치  
이필우(마산합포고등학교 교사)
- Ⅰ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통한 친인권적 학교 만들기  
심성보(부산교육대학교 교수)
- Ⅰ 학생 인권을 위해 바깥의 힘이 필요하다  
박덕수(부산 연제고등학교 교사)
- Ⅰ 학교 내 차별문제  
최성룡(울산 청소년인권운동단체 '아수나로')
- Ⅰ 학생의 안전, 건강 등 복지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박대우(소파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
- Ⅰ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를 꿈꾸며  
고영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장)





## 학생의 자유와 참여-

# 소통-공감, 선택으로 함께 가야 할 소중한 가치

이필우(합포고 교사)

### 1. 소통 기회의 부족과 방법의 미숙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교사의 지나친 체벌, 언어폭력, 성추행 사건 등과 관련된 기사와 동영상들이 여론을 떠들썩하게 한다. 다른 한편에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만을 동영상으로 유포하기도 하고, 신고하여 경찰이 학교에 출동하기도 한다. 원인과 과정보다 결과만 두고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직접 해결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다. 모두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다.

또 하나,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언·폭행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교권침해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국교원단체에서 '교권보호법(안)'<sup>29)</sup>을 제시하고 제18대 국회에서 심의·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학부모들은 말한다. 학교 행사에 참석할 때와 달리 자녀 교육문제로 학교를 방문하면 부모 된 게 죄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대부분의 학교는 교무실 이외에는 학부모와 교사가 상담할 장소조차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 2. 성적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 낸 학생인권지수

이러한 상반된 시각과 현상들은 학벌, 성적지상주의에 대한 상반된 가치가 존재하고 과밀학급, 입시 위주의 교육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여 학교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높이고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시하고 성적에 따라 꿈이 재단되는 곳으로 비난받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학교 당국, 교사, 학부모, 학생, 청소년 전문가, 인권운동가 등의 입장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학생 인권에 대해 고민한 시간이

---

29) 한국교총이 제안한 “교권보호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권침해 예방 및 회복 조치 의무화, ▲교직원, 학생 외의 자(者), 학교규칙에 따라 학교 출입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교육과 무관한 자료제출 요구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의 교원 참여 요구 금지, ▲성격장애 등 정상적인 교육지도가 불가능한 학생의 위탁교육 실시, ▲학교 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의무 설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등의 이용, ▲교원에 대한 무고·폭언·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교권침해로 확인될 경우 시도교육감과 학교법인 법적 대응 의무화,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교원 대상 년 1회 교원법률연수 의무화, ▲사립교원의 교권보호 제도 마련, ▲교권침해사범의 가중처벌 등

많지 않은 가운데서, 누군가에게는 논의 자체가 불쾌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다른 상대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한쪽에서는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교육상 불가피하다거나 정당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학생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각하여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정이다.

일반 학생들은 학생인권침해의 바로미터가 두발규제부터라고 말한다. 이른바 특목고 학생 대부분은 두발 길이에서 자유롭다. (공부한다고)머리를 깎을 시간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땐 부러움이 자괴감으로 바뀐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획일적 제도권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안학교가 늘어나고 대안교육이 점차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모델들이 일반 학교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사례 소개나 대안 제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반 학교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인생에서 가장 집중된 교육을 받는 사회화의 현장이다. 때문에 학교는 인권이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척박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보다 나은 인권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로서 추구할 소중한 가치 중 으뜸일 것이다.

### **3. 인권은 모든 제도나 가치의 상위 개념**

우리 헌법에서는 천부인권의 성격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37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역설적이게도 제한요건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준이 된다. 세계인권선언(198)에 제시된 ‘인권(human rights)’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보편적 권리이며, 책임을 동반하며, 개인과 집단을 포괄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제도, 관습, 법률의 상위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적합하도록 사회가 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4. 인권교육 실시로 인해 단위 학교가 갖는 부담감**

학창시절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생소하거나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다. 또한 인권교육이 지금까지

권위주의의 과도한 입시교육 속에서 운영되어 오던 획일적이고 상명하달식 학교 운영의 틀을 무너뜨리는 힘-인권교육의 부작용-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염려하기도 한다. 물론 ‘참된 인간의 품성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인권교육과 인성교육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인성교육’이 개인의 책임을 중시한 교육, 한 사회가 수용하기를 요구하는 개인 품성에 대한 교육, 사회순응적인 인간상을 추구한다면, ‘인권교육’은 개인(사회)의 권리와 책임을 같이 요구하며, 한 사회에서 수용되기보다 ‘인권적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수구적 인간보다 사회변화지향적인 인간상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 5.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단위학교에 맞는 인권교육을 시작해야 할 때

학생인권교육은 학교라는 장에서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교육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첫째, 인권 사례 중심으로 실천적 관점에서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다.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강한 실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학생이나 교사에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목적에 맞는 사례 찾기의 어려움, 시간적·공간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고 인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인권의 보편적 개념과 역사 등을 공부하는 이론적 인권교육이다. 교사가 인권에 대한 개론 수준의 이론으로 인권 의식을 형성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것이 학생들에게 교육되어 생활 속에 펼쳐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즉 구체적 사례로부터 얻어지는 체험이 부족해서 실제 상황에서 실천적 행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학생인권교육은 양자가 모두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학생(초·중·고)인권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속에는 청소년이 학교에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써 ‘권위적이지 않고 폭력이 없으며, 교사와 학생이 인격적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서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참여 보장과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인권 규정의 명문화 요구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2007. 12.)되어 200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2009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도덕·사회·국어·영어 과목에서 통합교과 형태로 시작되는 인권교육은 초·중등 교과서에서 크게 강화될 전

망이다. 이제 단위 학교 현장은 신설된 학생의 인권 보장 규정을 널리 알리고, 구체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 6. 중 고등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중·고등학교의 인권교육은 학생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고 인권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케 하여, 학생들이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인식하고 보다 인권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인권교육은 자긍심(자기 존중-자기 표현) 갖기, 사회적 배려와 책임(타인존중하기, 다양성 인정, 양성평등, 다문화 삶 등) 익히기,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인간 존엄의 가치 찾기 등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는 인권교육의 다양한 체험활동 현장이라는 인식 아래 첫째, 학생 개개인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하고,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소통-공감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일회성, 전시성, 질서·예절교육 등 교원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실천적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인권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인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7. 학생인권교육의 실질적, 구체적 방안은 학생자치활동

아쉽게도 학생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고 인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보편화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지적(인권교육의 내용과 학습단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영역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중심적이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관점에서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 이것은 강한 실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어 학생이나 교사에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초중고 단위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 따라 '학생과 교원이 함께하는 적극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학교생활규정에 인권의식이 발현될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민주적, 계획적, 합리적, 창의적인 활동을 해 봄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역할 담당과 수행과정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의식변화를 유도하며, 자율성과 책임성을 키우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 8. 학생자치활동(학생회)은 인권교육의 제도적 장치

학생자치활동은 학급과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자율적이고 창의적 학생활동을 권장하여 학생 중심의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과 창의성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치조직이자 대표체인 학생회의 활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생인권교육은 인지적 영역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권교육의 목적은 학생 스스로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소중한 사람'임을 깨달아 타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데 있다. 학생인권은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규정에 학생자치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생들이 직접 스스로 민주적, 계획적, 합리적, 창의적인 활동을 해 봄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역할 담당과 수행과정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의식변화를 유도하며, 자율성과 책임성을 키우는 관계로 발전된다.

## 9. 학생인권 교육에서 본 학생자치 활동 실천 사례

- 급식문제를 개선, 명찰·교복·체육복 디자인 변경 등을 위한 활동
-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활동
- 학생자치활동(정기적 학생대의원회, 교내체육대회, 학교급식협의회, 학생축제 준비위원회, 동아리활동, 학생문화복지사업 등)
- 간부수련회 기획 및 이를 통한 연간 학생회 활동 확정
- 인권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학생회장단 선거 규정 및 활동
- 연말 신규 간부워크숍을 통한 부서업무 평가, 전달 및 소통
- 학생인권신장 활동

## 10. 학생자치활동의 결과

가.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 주도적인 갈등해결과 소통문화 조성은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와 공동체 의식 형성으로, 학생 스스로 소통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다.

나. 학생-교사(학교)가 수평적 관계에서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학생들의 갈등, 불만, 요구 등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은 물론 인성교육과 학생인권교육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 다.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학생 주도적인 참여문화를 체험해 봄으로써 개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보편적 가치가 형성되었다.
- 라. 인권친화적환경 조성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학생, 교사의 학생인권 의식이 함양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라.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에게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심리치료와 함께 예방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와 지역사회가 전문성과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해결하고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 11.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인권감수성 높이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인권교육은 인지적 영역의 활동과 인권친화적 환경을 마련해줌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삶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소중한 사람’임을 깨달아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수 있게 했다. 이것이 학생인권 의식의 함양이며, 높아진 인권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육 현실에서 아직은 교육자가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전달이 아닌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인권교육을 수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인권교육은 지금 우리 세대에 수행해야 할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일임은 분명하다.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 속에서 인권감수성을 높인다는 것은 내 마음 속 톨레랑스(Tolérance)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고 앵톨레랑스(Intolerance)의 영역을 줄여가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통한 친인권적 학교 만들기

심성보(부산교육대학교)

## 1. 민주주의 교육의 청사진이 없는 학교정책

민주화 이후 권위의 실종, 개인주의의 범람, 도구적 합리성과 함께 찾아온 해방된 자유가 방종이나 무책임 그리고 과도한 경쟁과 소아적 삶의 경향이 증대하고, 무한정의 불간섭주의가 팽배하고 있어 학교의 아노미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화 과정을 통하여 억압으로부터의 탈출하는 정치적으로 소극적 자유(권리의식, 개인의 자율성 등)는 어느 정도 획득하였지만 그 얻어진 자유의 공간에 적극적으로 자유를 실천하는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민주화의 비해 학교민주화는 별다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소극적 자유조차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은 성인과 달리 미성년이라는 이름아래 여전히 감시와 처벌의 규율을 통해 순종적 신민 상태로 길러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을 향한 기본적 자유를 찾아주어야 한다. 그 자유를 찾는 과정에서 강제나 간섭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강제가 사라진 그 빈자리에 스스로 자유를 구현하는 자치능력과 자율적 도덕율에 의한 삶의 태도를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를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권위를 만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권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다시 전체주의가 도태할 위험이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 우리의 학교현장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바탕한 사이버 자율화의 조치로 인해 학생들의 자유와 참여 능력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정황 속에서 학교 환경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초중등교육법]에 제18조 4항에 '학생의 인권보장' 조항(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신설되었다. 즉,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당국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반 조건과 실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친인권적 학교문화부터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선언하더라도 그 선언을 지킬 학교의 구성원들의 실천의지가 없다면 한갓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아동과 성인의 관계를 통해본 교육관의 쟁점을 살펴보면서 아동권리적 시각에서 본 아동의 역사 그리고 학생이 누려야 할 인권의 종류를 논의한 후 학생의 자유와 참여의 강화를 통한 교육개혁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 2. 아동권리적 관점에서 본 아동의 역사

교육적 과정에서 중심이 '아동'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배움이나 교육에 있어 아동의 필요성 논의는 별로 볼 수 없었다. 학습이란 학습자를 암시하며, 아동으로서의 학습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어떠한 교육의 이론은 아동에 대한 특수한 관점을 나타낸다. '아동'과 '아동기'는 거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며, 여러 분야의 사회구조에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장소가 바뀔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아동의 개념에 대한 것을 법적 규범의 속에서 논의하고, 또 논의를 할 때마다 지나치게 명백하게 규정되고는 하였다. 변하는 아동기의 개념에 대한 것과 아동기와 성인들(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적인 관점의 교육적 관념과 20세기 들어 점차 변해가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찾는 '아동'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 관점을 시작하는 18, 19세기의 저자인 칸트(Kant, 1964)와 헤르바르트(Herbart, 1965)는 성인과 아동간의 주요한 교육목적은 '아동의 성인화'에 있다. 아동에게 행사되는 어른의 영향은 그들 자신의 위엄 있는 삶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객관적으로 좋은 궁극적 화신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상되고 있는 성인은 그들이 이미 성인으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위치에 있다. 개인의 삶을 깨닫는 것의 책임은 '이성'에 의해서 지시되어진다. 성년기는 그 자신이 자신의 명령에 의해 행동함을 나타내며, 스스로 선택의 범칙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윤리와 실제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그것을 타인의 판단에 맞기지 않음을 뜻한다.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면 가치의 객관적 표준에 접근하면서 자신을 좀 더 높은 윤리적 규범의 영향 아래에 두는 것이다. 이것은 그 자신이 어른으로서 사회적 삶에 구성적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아동은 도덕적 의식이 무력하다. 그들은 무엇이 좋고 나쁜지 모르며, 그리고 아직 그들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다. 아이들은 생활지도를 받기 위해 큰 소리를 질러야 하고, 생활지도가 제공될 때에만, 어른, 즉 우선 부모, 그 다음은 교사가 자신들과 관계되는 필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들은 '성년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교육의 관점에 중심에서 있는 것은 교육자의 입장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활동을 교육적으로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교육자(교사)의 정당성은 어른이 되게 할 목적아래 그것에 기여하고, 젊은이의 자율성을 도와주는 교육에 있다. 교육자들은 위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동과 갖는 관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조작으로서 단순한 이유에 있지 않다. 어른은 아직 이성이 없는 아동을 위해서, 그리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려는 것이다. 아동으로 하여금 합리성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합리적 인간 존재가 되도록 성인은 아동의 잠재성을 일깨우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아동	성인
미성숙	성숙
비합리적	합리적
무능	유능
반사회적	친사회적
반문화적	문화적

성인과 아동사이의 관계에 대한 태도는 18세기부터 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독일의 계몽주의 전통에서 그 전형을 만들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정의롭고 질서정연한 사회의 개념에 속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정당화하는 시각은 오늘날 힘을 잃고 있다. 이런 계몽적 관점은 그 자체가 사실이나 정보에 대한 무비판적 주입으로 인식되는 너무 오래된 전통에 존재하는 훈육과 그 훈육을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현대적’ 반발을 불러왔다(Smeyers & Wringe, 2003: 312). 이후 대조적으로 계몽주의 전통은 비판적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여겨지는 생각과 이해의 형태로 학습자를 입문시키는 합리적이고, 심지어 자유주의적일 정도로 변화되어왔다. 여기에서 훈육은 우선 마음을 이러한 이해의 내재적 형태에 맞추는 것이다. 학습자는 공적 사고 유형에 입문시키는 것이며, 계속 아동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가장 강력한 구성에서 합리성의 규범은 안정되고, 모든 문화에 유효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독일식 전통 해석에서는 아동양육을 보다 넓게 포괄하는 교육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성인이 관심을 갖는 최초의 예는 부모됨에 있지만, 또한 좀 더 명시적으로 헤겔적 관점에서 보면 이성이 사회제도, 특히 국가에 구현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반드시 교육과 양육의 전송 모델을 함축하고 있다. 아동은 합리성과 문화의 수동적 수령자, 혹은 주형되거나 주입될 반항적 물체로 여겨진다. 그러기에 반드시 마치 성곽 밖의 야만인을 가치있는 지식과 감정의 저장소로, 그리고 문명적 삶의 내재적 가치가 있는 활동과 실천 속으로 아동을 유도하여 능숙하게 입문시켜야 한다.

이런 관점과는 대조적으로 루소(Rousseau, 1957)와 그를 따르는 많은 아동 중심 교육자들은 세속적 허영이 가득찬 천박함과 부패로 얼룩진 어른의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는 세상을 동경하였다. 진보주의 교육자들의 이야기는 교육과 양육을 내포함에 있어 매혹적인 아동기의 주요한 특성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런 아동은 자연의 산물로서 본질적으로 선하고, 모든 아동은 지식의 경험적 부분과 일치시켜 경험으로부터 알고자 하는 것을 배우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외양상 성인의 세계는 부모라기보다는 교사나 가정교사(tutor)로 대표되지만, 그들의 역할은 양육을 하는 사람이나 사악과 불건전한 영향으로부터 식물의 싹을 보호하고, 원예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완전하게 자랄 수 있는 씨가 함유한 이상적 형태와 같이 아동기에 이미

가지고 있는 성인의 완전성 발현을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아동들 나름의 발달단계(내생성)가 있으며 발달과업을 갖고 독립성을 갖고 있고, 순진함과 순결성을 갖고 있기에 단순히 성인의 삶을 복사하는 수동적 존재만은 아닌 것이며, 그들 자신의 흥미와 관심, 그들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에 성인의 세계를 위한 단순한 수단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아동세계와 성인세계의 관계에 대한 개념은 아동중심 교육관에서 잘 보여준다. 닐(Neil, 1962)이나 홀트(Holt, 1969), 듀앙(Duane, 1971) 등은 설사 철학자로서 볼 수 있는 의미는 아닐지라도, 아동의 개념을 성인과의 관계에서 철학적 언급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재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교사와 부모로 이루어진 성인세계간의 관계가 지적이고 감수성 있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좌절시키는 징벌을 좋아하는 부모의 우둔함과 잔혹함에 의해 아동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탈학교론자들deschooler”(Illich, 1971; Reimer, 1971; Goodman, 1971)은 아동에 대한 관점과 그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순박한 관점을 취한다. 그들에게 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세뇌’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탈학교론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억압자는 허물이 있거나 잔혹한 마음을 지닌 개인적 교사, 혹은 부모가 아니라, 위선적 사회 혹은 착취적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순종적이고 사회적으로 차별화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다루어진다.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생애주기의 한 독자적인 범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이다. 근대 이전에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의 ‘작은 어른’이었다. 미성년인 아동의 세상과 성년인 ‘성인’의 세상을 분리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근대국가의 출현에 따른 것이며, 아동의 인권 개념도 이 시점에서 출현하였다. 즉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면서 아동은 부모에게 삶의 의미와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안겨다 주는 존재이자 극진한 사랑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어린이는 근대의 고안물이다. 첫째, 어린이는 ‘보호’ 받아야 할 존재이다(홍성태, 2004: 245). 어린이는 육체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어리다는 사실에서 어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근대에 들어서 어린이의 보호가 사회적 책임으로 되었다. 그래서 어린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어린이를 ‘국가적 존재’로 격상시킴으로써 사회적 생물적 재생산을 보장하게 된다. 여기에서 국가주의와 과학주의 이데올로기가 등장한다. 국가가 어린이를 부모의 ‘소유물’이나 하찮은 생물이라는 차원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면, 과학은 이러한 국가의 활동을 합리화해 주었다. 둘째, 어린이의 근대화는 ‘어린이의 해방’의 성격을 갖는다(홍성태, 2004: 246). 부모의 독단과 폭력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의 고역 같은 노동으로부터 어린이는 해방되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라는 게 늘 그렇듯 좋

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 보호받기 위해 어린이는 국가가 강요하는 여러 규율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라는 이름아래 여러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어린이의 ‘국가적 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부모의 독단과 폭력도 사라지지 않았고, 아동의 노동도 마찬가지로 발생되었다.

아동들은 폭력과 강제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의 노동이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이때부터 아동의 인권 개념이 자리잡게 되었다. 아동의 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다뤄지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아동을 위한 ‘장난감’이 생겨나고, ‘아동복’이 따로 만들어지고, 행복한 유년기에 대한 기억이 인기있는 문학적 주제로 떠올랐다. 아동을 연구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육학적, 의학적 담론이 생겨났다. 천진난만하고 교화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이미지가 탄생하였고, 아동들은 학교라는 공간에 따로 분리하여 육성하게 되었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예비국민’으로서 훈련을 받게 된 것이다.

힘든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아동이 부모와 국가의 극진한 보호아래 ‘공부’만 하면 되는 시대가 온 것을 두고 역사의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아동이 고된 노동을 강요당하던 때와 비교하면 분명 상황은 나아졌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볼 때 그 변화는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진화의 과정이었을 뿐이고, 아동이 더 행복해졌다는 식의 판단을 내릴 성질이 아니다. 산업자본주의화가 진전되면서 ‘아동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동의 범주에 속해 있던 ‘십대들’에 의해서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구의 역사에서는 1968년 대학폭동 직후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최초로 이러한 관심은 아동의 잠재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관점에서 표현되었었다. 연설과 결사의 자유, 견해를 공표할 자유, 개인의 외양이나 지식에 접근할 자유, 학교운영에 있어 민주적인 요소를 첨가할 수 있는 권리, 어른과 같은 정도의 술과 담배 또는 다른 약물을 사용할 권리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범위의 성적인 활동에 관련된 권리 등이다. 비록 그들은 거의 권리에 대해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68년 사건 이후의 결과는 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학교규칙은’ 학생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일과 포부에서 상호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자문하는’ 관행은 요즘 학생 관리의 분야에서 좋은 실천의 이미지로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Smeyers & Wringe, 2003: 317). 다소 심각한 철학적 수준을 가진 다른 중요한 많은 이슈들 중의 일부분은 교육자의 일이 이미 학생 중심이 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표현되어졌다. 인권의 역사에서도, 흔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가장 뒤늦게 등장한 권리 주체 중 하나로 일컬어진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기결정의 주체’로, ‘복지 시혜의 대상’에서 ‘정의로움을 요구하는 주체’로 분명하게 규정하기 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에서야 채택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서구사회에서는 ‘사회전체의 청소년화’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조한혜정, 2000: 141). 그리고 청소년문화가 가진 ‘문명사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다. 후기산업사회로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에서도 자립보다는 공존이 강조되면서 ‘청소년기의 연장’이 진행되고 있다.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학교에 다니는 기간이 길어졌고, 아동기 역시 길어졌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경계는 ‘사춘기’로 불리는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달의 성숙도에 근거해서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경계는 학업종료와 직업세계로의 진입, 그리고 결혼을 통한 독립기구의 형성에 근거해서 구분되었다. 후기자본주의 사회로 가면서 개인은 십대에서 이십대에 이르는 10년이 넘는 시기를 성인이 아닌 ‘중간범주’로 살아가는 것이다. 특히 학업을 마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독립이 늦어지거나 독립을 해도 혼자 사는 ‘이십대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놓고 청소년기를 다시 둘로 나누자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십대 이전의 아동기에는 보호 중심의 ‘복지권’이, 십대 청소년기에는 ‘복지권’과 ‘자유권’이, 그리고 이십대 청년기에는 ‘자유권’이 강조되고 있다(조한혜정, 2000: 144-145).

그런데 청소년기를 성인이 되기 전에 잠시 거쳐가는 중간범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연장된 청소년기’를 생애주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재규정하고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청소년기는 한 사람의 지적, 정서적 토대를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한 사회의 중요한 ‘문화실험기’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청소년기를 단순하게 십대라든가 중고등학생으로 범주화하였는데 실제로 청소년기는 경제사회적으로 완전독립을 이루지 못한 전환기에 있는 생애의 한 시점이며, 변화하는 시대를 느끼면서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자유로운 문화실험’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최근에 들어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새로운 담론들이 등장하였다. 사회가 급격하게 분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아동과 어른의 생활권은 점점 더 분리되어 갔고, 이에 따라 ‘미성년’으로 범주화된 십대 아이들은 자기들 또래의 세상을 만들어갔다. 성인이 되어가는 기성세대의 엄격한 ‘보호’, ‘관리’, ‘선도’의 대상인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였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있거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모두 일방적으로 미성년자로 간주되면서 관리되었는데, 그들의 보호와 통제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아동들, 즉 ‘십대의 반란’이 생겨난다. 특히 소비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놀이공간이 늘어나고 라디오와 전축,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한 대중문화가 가정과 학교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게 된다. 십대들은 부모와 학교 외부에서 많은 정보와 자극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모와 학교가 반드시 옳거나 정당한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된다. 십대들은 기성세대의 규제를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자기들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갔다. 한

연령대가 스스로를 동일시하여 세대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촛불집회나 인터넷 운동도 중요한 사례가 된다.

청소년들은 아동과 자신들을 분리시키면서 독자적인 문화공간을 마련하게 되었고, 성인/아동, 성년/미성년의 경직된 이분법을 깨고 '준시민'으로서 입지를 굳혀갔다. '반문화운동'이라고 불린 서구 청소년들의 움직임은 기성세대와 스스로를 구분하면서 '근대성'의 새로운 가치를 심어가는 과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족 밖에서 상당한 발언권/참정권/시민권을 확보하였다. 학습권이나 학교활동, 그리고 아르바이트에 이르기까지 그 외국가와 시장이 마련한 시공간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실험하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지고,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늘어나며 대중매체문화가 다른 모든 전통적 통합의례나 세대간의 의사소통을 압도해 버리는 단계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는 상당 수준의 경제성장과 소비자본주의화가 된 시점을 말한다.

그런데 '보호에서 자율로'의 변화는 서구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인권운동의 성장이 낳은 열매이지만, 아직까지도 대다수 사회에서 지배적인 관점은 '보호주의'에 머물러 있다. 아직까지 학교에서 교사폭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정책이 성년/미성년의 이분법 속에서 '규제'와 '통제'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각별한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나, 인권의 주체로서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향한 관심은 이들이 자신의 운명과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건'을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가족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존재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할 존재로, 기존의 사회규범을 따라야 할 존재로 주어진 의무에 충실할 때에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비로운 성인'에 의한 보살핌을 받는다.

반대로 이러한 주어진 위치를 거부하는 '위험한 아이들'에겐 통제와 억압이 따라 붙는다. "그게 다 너희를 위해서야"라는 말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존엄성과 자율성 보장에 대한 욕구는 쉽게 묵살되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온전한 존재가 아닌 만큼, 그들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의 세계가 존재해야 하고, 그들에겐 주어져서는 안 될 경험이 존재하며, 그들이 드나들어서는 안 될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들과 국가가 허용한 공간', 주로 가족과 학교와 삶의 경험 아래 '유폐된 존재'가 되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권을 존중받고 공적 영역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당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유폐'는 그들의 무지와 무권력 상태를 강화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시키고, 다시금 그들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렇게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다수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포괄적으로 부정당한 채 학교에 속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학교라는 공간 하에서 학교당국과 학생,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는 청소년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권을 존중받는 경험이야말로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질료이지만, 학교는 오히려 폭력과 부조리와 권력에 굴종하는 순종적 삶의 태도를 '학생다움'으로 교육함으로써 반인권의 질서와 문화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합리성의 척도가 그들의 운동에 논리적 필수요소로 주어진다면 그동안 아동을 위한 아동에 의한 자유나 정치적 참여의 권리에 대한 다소 불쾌한 요구들을 무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무시의 이면에는 지역적 또는 종교적 또는 가치체계의 관점에서 '열린 미래'를 향한 아동의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을 양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동 입장에서 자격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그것은 자율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강화하고, 결국에는 아동들이 그들 스스로 가치있는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교육과 양육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해나 상해로부터 아동들의 권리, 즉 소극적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학대, 착취, 성적 또는 다른 형태를 통한 피해에 관한 틀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소한 아동들이 덜 이성적이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식의 목표는 만들어질 수 없다. 요즘 교사들은 학생들을 존엄성을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 대하며, 권위의 힘에 의해 지배하려 하기 보다는 교실기술을 이용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은 소위 '복지권'이라고 불리는 영역이었고, 이것은 명백한 필요에 의해서만 정당화되는 권리였다. 이러한 것들은 필요에서부터 안전, 보건, 그리고 생존할 수 있는 어린 시절에 대한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필요에서 발생되는 소홀에 대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기 전에 아동들이 그들의 안전과 삶의 기회들이 손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지침을 확고히 하기 위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무교육의 권리를 포함하는 '교육에 대한 권리'이다.

때때로 아동양육의 관점에서 특히, 사랑과 애정 그리고 상호간의 존경이 지배해야만 하는 가족생활의 맥락에서 이러한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 말은 사실이다. 만약 아동들이 그들의 부모가 자기들을 기분 나쁘게 할 때마다 그들의 권리를 거론한다면, 삶은 모든 관점에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똑같이 역시 진실인 것은 어른들이 아동을 다루는 데 있어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상황 또한 동의 할 수 없다. 권리는 계속 거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중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정중하고 문명된 관계의 표시이다. 어른과 아동 사이에 일어나는 의존과 애정이 잘못

결합되어 서로에게 필요한 중요한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정말 극악무도한 일이 될 것이다.

교육과 관련된 권리에서 아동의 입장만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부모의 이익에서 권리에 대한 요청은 크게 두 종류로 나타난다. 첫째, 광대한 공동체, 일반적으로 국가로 대표되는 것에 대한 부모의 요청이고, 둘째 아동 자체에 대한 부모의 요청, 즉 아동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려는 부모의 요청이다. 이 요청들은 어느 정도 부모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의 어떤 선택 방식에 의해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스스로의 요청이다. 여러 국가에서 교육과 종교 간의 밀접한 역사적 관련을 찾는다면 자유주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특히, 일부 국가(프랑스, 미국)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자식의 교육이 세속적이어야 함을 주장하지만, 그들 아동이 교육받을 학교를 정할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1948년 보편적 인권선언은 이 주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표출되었다. 26/2 조에서 "부모는 그들의 자식이 받을 어떠한 교육에 대한 최우선의 선택권을 가진다." 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또한 "교육은 충분한 인간 개인적인 환경에 의해 지도되어야 하며, 인간의 권리와 기초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선언에서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말로서 "교육은 국가간의, 지역, 종교간의 관용과 우정, 그리고 이해를 증진시키고,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UN)의 활동에서 나아간 것이다." 라고 하며 국가의 권리/의무를 주장하고, 혹은 심지어 세계공동체에서 아동의 이해는 물론이고 기타 공공의 이상을 위해 사태에 대해 간여하기도 한다. 선언은 또한 넓은 성인세계는 아동을 종교의 세뇌나, 미래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것이 결여될 수 있는 교육으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해 간여해야 함을 주장한다. 불확실한 변화무쌍한 가치를 가진 다원적 세계에서 부모, 기타 어른의 임시적 권한에 오직 종속되어 있는 선택하는 사람, 혹은 가능성을 지닌 선택자로서 아동의 개념은 사회화(기존사회의 신념, 가치 그리고 실제로의 유도)와 교육(개인의 자율성에 본질적인 비판적 통찰과 자기신뢰와 자기확신의 증진을 포함하는)에 의미있는 차이를 있음에 중점을 둔다.<sup>30)</sup>

그러한 고려들은 특별한 학교 등을 둘러싸고 자녀교육의 본질을 선택할 부모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는 사립학교와 국가체제 안에서 의 교육 선택을 옹호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영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 종합학교보다는 문법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요구하며, 나머지 부모들은 불가피하게 현대중등학교의 과정으로 분리하게 된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그런 정책을 구사하였다. 교육의 표준이 아동

30) 최초의 국제적 아동인권선언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제네바선언,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채택)의 전반적 기초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우선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아동관에 기초해 있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강력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아동권리 협약도 보호주의적 잔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에게 경쟁을 강요하거나, 혹은 가까이 직면하게 하는 '교육시장'은 학교 수용 인원의 범위를 줄어들게 하여 그들 자식의 학교를 선택할 부모의 권한은 협소해진 것이다.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도 이와 같은 흐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동안 아동은 이성이 결여된 존재로서의 어린이, 소박과 진실의 상징으로서의 어린이, 완결된 존재로서의 어린이 등으로 이미지화되어 왔다. 그리고 역사적 사회적 존재로서는 초기자본주의적 야만의 직접적 피해자로서의 어린이(마르크스), 규율과 순종 또는 사회적 권력에 편입된 어린이(푸코), 기호체계에 포획된 어린이 또는 다의성을 위한 투쟁을 하는 어린이(가타리), 해방된 경험의 전승자로서의 어린이 등으로 존재해 왔다(김경수, 2000). 그런데 대체로 아동은 어른이 보기에 미성숙하고, 비합리적이며, 무능하고, 반사회적으로 보았다. 이를 시대적으로 분류하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은 전쟁기계(1950년대), 노동기계(1960년대 이후), 투쟁기계(1980년대), 문화소비기계(1990년 이후), 입시기계(해방후 지금까지) 등으로 몸과 마음은 '사물화' 되었으며, '노예화' 되고 '주술화' 되어 '상품화' 되었다. 사회운동의 영역을 돌아보더라도 '어린이·청소년의 주변부적 위치'는 여전하다.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일반적 조건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채 타인에 의해 대변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며,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을 만큼 세력화되기 힘들다는 데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서 청소년들은 후기 산업사회의 수동적 구경꾼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소비자본은 급격하게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정체성을 부각시키면서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마구 흔들어 대고 있다. 다수 청소년들은 파행적 근대화가 낳은 '훈육공간'인 학교와 건강한 의사소통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정, 그리고 찰나적 쾌락을 공급하는 소비공간을 넘나들면서 분열되지 않는 삶을 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와 같은 한국 청소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유신시대이다. 유신체제는 한국의 근대화를 오로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모든 영역을 억압하였다. 즉, 청소년은 국가의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는 학생으로 규정하였다. 그러기에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만을 필요로 하였다. 경제발전을 위해 청소년들은 사라지고 '입시생'만 남게 되었다. 부모들 중에는 "공부는 때를 놓치면 안된다"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켜 주세요"라며 아이들을 학교에 장시간 잡아두려고만 했지 그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민 이외에 '시민'은 허용하지 않았기에 청소년(학생)의 인권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 압축 성장과 파행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이라든가 청소년의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방정환 선생이 제창한 이후 거론된 적이 없었다.

### 3. 아동권리의 종류<sup>31)</sup>

1) **법적 권리**: 교육, 보호, 복지를 위한 법적 장치는 어린이의 도덕적 권리를 정당화 한다. 권리와 도덕적 개념 사이에는 모종의 긴장이 존재해 왔다. 일례로 홉스는 “인간에게 권리는 으뜸가는 근본이며, 법이란 그저 우리의 안전과 잘살을 위해 모든 이가 받아들이기로 가정한 구속을 말한다”고 했다. 즉 권리가 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자연권’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반면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기본적인 도덕 개념이란 상호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용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비록 국가가 아동을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권리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물론 이러한 주장이 어린이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육, 보호, 복지를 위한 법적 장치는 나중에 아동들 자신이 법률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합의에 의한 권리로 부여되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쟁할 여지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은 아동이 적절하게 교육을 받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자유권**: (2-1) 소극적 자유권: 이 권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방해나 간섭, 해침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린이에 대한 체벌, 또는 다른 형태의 가혹한 취급, 어린이들의 사적인 생활에 대한 침해, 전쟁, 매춘 산업, 개인적 맥락에서의 학대, 산업 현장에서의 어린이 착취 같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힘의 차이는 도덕적인 정당성과는 무관한 것이며, 이에 따라 물리적 힘에서 나타나는 차이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고통이나 해악을 끼치는 것을 정당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자유권의 경우에는 ‘아동들의 불완전한 이성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논쟁할 여지가 있는 반면, 소극적 자유의 경우에는 그것을 침해할 그 어떤 사유도 합리적 인간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 맞을 짓은 없다.”거나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는 표어는 바로 위와 같은 관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이 학대나 상처를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이성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리는 분명히 애를 써서 확

31) 이 글은 다음의 두 논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본적인 틀로 삼아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① Colin Wrings, *An analytic approach in philosophy of education: the case of children's rights*.

② John White & Patricia White, *An analytical perspective on education and children's rights*. 이 두 논문은 다음 자료에 함께 실려 있다. Frieda Heyting, Dieter Lenzen and John White (ed.), *Methods in Philosophy of Education* (London: Routledge) 2001. 콜린 린지(Colin Wrings)는 “아동이 권리를 가지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권리’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다섯 가지 권리론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제창하고 있다.

보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극적 자유권과 소극적인 자유권의 경우에는 비록 우리가 그 권리를 갖기 위해 아무 것도 포기하거나 몰수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권리는 이미 개인으로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다. (2-2) 적극적 자유권: 이 권리는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어떤 일یدن 선택하여 행동할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는 도덕성과 법이 지배하는 사회 안에서 살면서 이러한 체제 안에서 상당한 정도의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애초부터 갖고 있던 도덕적 자유의 상당 부분을 내어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게 들리지 모르나, 아동은 부모에게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종의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파괴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관점(루소)에서 보자면, 어떤 경우라도 출생의 선후로 인한 세대간의 질서는 자의적인 것이기에 이러한 질서가 도덕적인 종속 관계의 수립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적극적 자유권의 실행에는 이성적 선택 능력을 수반한다. 이성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 어린이가 자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 또는 단지 어린이들이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행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아이들이 적극적 자유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무능력'하다는 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① 젊은 이들이 모든 문제에 관해 합리성을 성취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서든 개인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공식적인 연령이 16세 또는 18세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따져 묻는다. ② 어린이가 적극적 자유권을 가지는 한 어른들의 적극적 자유권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제한을 둘 수 있다. 그러므로 어른, 학부모, 교사들은 어린이의 입장에서 보자면 합의에 의한 권리, 혹은 지위와 관련된 권리만을 가지고 있다.

**3)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할 권리:** 아동이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발언한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니일의 서머힐)이 참여권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오늘날에도 이런 관점이 시민교육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권이 과연 권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이 경우에는 합리성에 대한 요구가 자유권에서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많은 학자들은 참여권에 대한 논의가 정치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학교는 독립된 주권국가가 아니라 성인 사회의 자원을 공급받고 있으며, 그 안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며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모두가 정당화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하다.

**4) 합의 또는 역할 관계로 창출되는 특수한 권리:** 우리의 적극적인 자유권은 우리가 사회에서 맺게 되는 합의(또는 계약) 관계에서 의해서도 제한받을 수 있다. 만약 신입 사원이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회사측과 동의를 했다

면, 그 고용계약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 특정한 역할 관계에 진입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거나 생겨나는 권리들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결혼 관계가 그렇다. 결혼을 한 남편이라면 주말을 가족들과 보낼 것이며, 다른 여성과 낭만적인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의무를 묵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합의가 만들어낸 권리의 핵심적 특징이다. 이러한 권리는 어른에 대한 어린이의 도덕적 지위를 이해하는데 특별한 연관성을 지닌다. 부모에 대한 자녀로서, 교사에 대한 학생으로서의 지위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간관계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만약 그들이 만들어내려는 권리가 유효하려면 아동과 어른 사이에는 (상대적인) 동등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아동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양도하길 기대한다면, 누가 보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동에게 이득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만큼 합리적이어야 한다. 일례로 의무교육에 관한 논쟁도 바로 이와 같은 종류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의무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아동의 권리에 대한 부정이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 의무교육이 포괄하고 있는 과업과 규율이 아동들의 행복한 삶에 진정으로 기여한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그렇게 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5) 복지권:** 전통적 철학자들은 힘이 없고 특권층이 아닌 자들을 위한 자원의 제공은 엄격한 의무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한 의지나 자선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관점은 다음과 같은 반론에 부딪힌다. 만약 어떤 사회가 아사(餓死), 또는 이와 유사한 피할 수 있는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구제책이 가까이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힘없는 자들을 비난한다면, 아무도 그 사회의 법을 준수 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홉스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보존에 필요한 것을 사회에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 상태에 있을 때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 놓이려고 이 사회로 진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 제공은 법률에 대한 우리의 복종에 따르는 대가이다. 마찬가지로 아동의 경우에도 복지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장차 어른이 되었을 때 기존 사회의 법률을 따를 것이라는 전제에 대한 대가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동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교육적인 사태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권리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논의는 '법적인 권리' 및 '소극적 자유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2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예방 센터>에 무려 2천9백여 건의 신고가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는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가 주요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학대를 받고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아동의 수를 약 44만여 명으로 집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시각을 학교현장으로 돌리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학교는 일상화된 신체적 폭력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사들은 의도적으로든 또는 무의식적으로든 학생들에 대해 인격 모독에 가까운 언어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4/15 교육자율화 조치 후 0교시 수업과 보충수업, 자율 학습 등으로 아동이 적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박탈하는 등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지속하고 있다. 의무교육 기간을 포함한 12년간의 초중등교육 현장에서의 생활 경험은 국민 누구나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시키는 중요한 교육의 마당이다. 또한 우리는 교육방법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목적이랄 할지라도 원래의 취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자각과 그들의 권리를 학교현장에서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는 아동 개인의 존중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틀을 다지는 중요한 교육실천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 4. 학생의 자유와 참여의 강화를 통한 친인권적 학교문화 만들기

그동안 성인(교사 등) 중심의 교육개혁이 한계에 부딪히자 공교육 개혁의 흐름이 관료 중심에서 교사 중심으로, 교사 중심에서 학부모 중심으로, 이제는 학부모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근대시대의 공교육 역사에서 ‘제 1의 물결’은 국가의 교육권과 관료들의 권한이 막강하였다. 이들은 단일민족국가의 건설과 빈곤 탈피를 위한 개발주의적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주의적 목표에 중심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초기 공교육 기획은 불평등과 관료주의(bureaucracy), 그리고 비민주적 방식으로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된다. 이 도전은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교사의 권리, 즉 교육권으로 나타나는 ‘제 2의 물결’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전문직적 권한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교사주의(teacherocracy)는 학생의 권리나 학부모의 권리를 주변에 머물게 하는 또 다른 소외를 낳았다. 그러자 참여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서 등장한 교육에 대한 주민 및 시민 통제라는 교육자치제도를 성립시키는 ‘제 3의 교육물결’ 시대를 맞이하였다. 교육개혁의 주요한 주체로 등장한 학습자인 학생과 그들을 학교에 위탁한 학부모의 참정권이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문가로서의 교사는 시민적 통제를 더욱 받게 된다. 그런데 요즘 서구에 있어서는 학부모의 교육참여 주장이 지나쳐 ‘학부모주의’(parentocracy)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의 경우도 학부모주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과잉된 학교참여는 없는 상황이고, 교사의 교권 또한 관료주의의 과잉팽창으로 위축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교사의 통제력이 학부모보다는 여전히 우월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성숙한 교육자치를 하기에는 교사의 통제권이 아직 미발달된 수준에 있다. 반면 학생들은 지극히 종속적 위치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 교육개혁의 주체로 내세워 학교를 변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교사의 목소리에서 학부모

의 목소리로, 나아가 학생의 목소리(studentcracy)로 이동하고 있다. 즉, '제 4의 물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어른들의 잔치였던 국가주도, 교사 주도의 배제와 소외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이제는 강요가 아닌 참여(포함)의 정치를 할 때이다.

이러한 흐름의 큰 원칙에 기반하여 친인권적 학교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을 권리의 담지자로서 시민으로 대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아동관을 넘어서야 한다. 즉, 아동은 부모의 자산이고 책임이며, 아동은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숙 상태이고, 정치의 세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아동은 무질서하고 파괴적이며, 아동을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보고, 그러한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을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데 두어야 하고, 이러한 교육목적 아래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 대우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일상세계(경험세계)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위기에 처한 학생들 지지하기, 주변부에 있는 위기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돕기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의 상승하는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을 도와줄 자격을 갖춘 성인(교사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업을 능동적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필요로 한다, 학생들을 지원할 때 낙인(비난, 오명)을 찍지 말아야 한다. 학생들은 숙련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

2) 아동은 배우는 능력을 타고 났지만 아동의 학습 능력은 손상되고 때로 파괴될 수 있다. 그러기에 아동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이루어지고, 배움과 학습자에 초점을 둔 학교문화, 교수방법 및 교과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로서의 아동의 성장 능력을 인정하고 장려하고 지지하는 아동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특별히 상층의 학생들만 우대하는 학교정책이 아니라, 모든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는 아동의 학습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학교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의 총체적 삶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동권리의 이행에는 아동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 교사, 부모, 지역사회, 민간단체 및 기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관련되는 곳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동이 학교체제 속에 들어오기 전의 상황과 교실을 떠난 후에 '가정, 지역사회, 일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유념하는 것이다. '마을'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3) 친인권적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해 ‘권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Howe & Covell, 2007). 권리에 대한 성찰은 권리에 대한 지식을 주입식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논의, 토론, 비판적 사고를 통한 학습, 비판적 사고를 통해 배운 문제해결기술은 일상생활의 경험에 적용하는 등이 포함된다. 권리존중의 가치에는 정의와 공정성 의식, 예절, 관용, 상호존중, 아동의 힘 기르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아동의 의미 있는 참여는 아동의 권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아동의 각 권리(소극적 자유권과 적극적 자유권, 참여권, 복지권 등)는 전체 맥락과 떨어져 있거나 분리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강화·보완·통합되는 것이기에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이 있는 학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어떤 권리, 가령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아동의 프라이버시 등 여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4) 학교가 더 이상 비민주와 비합리가 통하는 곳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로 가꾸어지는 민주적인 교육공동체이자, 참여와 결정을 학습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체험 장소로 변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친인권적 학교문화 만들기는 학교의 풍토, 분위기나 문화와 분리될 수 없다. 친인권적 학교의 풍토나 분위기는 민주주의 원리와 관련된 학생들의 태도 형성에 기여한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의 구성요소는 소속의식과 가치의 공유, 접근기회 능력과 참여 능력이 핵심이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는 개인과 구성원의 요구를 존중하고, 공정과 정의의 감각을 가짐으로서 가능하다. 이런 학교와 학급의 변화는 정의(옳고 그름, 시비지심)와 배려(보살핌, 돌봄, 측은지심)를 경험함으로써 민주적 시민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아동의 프라이버시 등 개인으로서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할 때, 아동은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와 책임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에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을 배우는 학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미성숙한 학생이 순식간에 곧바로 성인 또는 시민이 될 수는 없기에 아동은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삶의 기술을 학교생활에서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5) 친인권적 학교분위기 구성에 교장은 영향력 있는 힘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일선학교의 관리적 책임을 가진 교장은 인권친화적 민주적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학교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장의 지위를 민주적으로 행사한다면 인권친화적 학교풍토의 구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교사위에 군림하는 헤드십(headship)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통합적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권위주의적 학교와 교사가 아니라 대등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수평적 리더십(followship)을 가져야 한다. 교육의 물적 토대를 비롯해 교육환경을 고려치 않고 학생에 대한 인권존중을 교사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

지만, 교실의 교사는 인권에 기반한 학교시스템을 갖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자로서 어떤 능동적인 개혁도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됨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에 교사의 권한과 역량이 강화되고, 모든 단계의 교육체계에서 교사는 존중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6)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학교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주체들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현장의 가장 허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권능화'(empowering) 해야 한다. 학생의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있는 학생회의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회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자치문화의 형성없이는 민주주의의 생활화에 입문시키는 민주교육은 탁상공론이며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원초적으로 가로막게 된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가장 약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이다(Rubin & Silva, 2003: 1-2). 학교개혁의 최종실천의 장은 학생들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으므로 주변부에 머문 학생을 '중심부'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Matheson & Dillow, 2000). 학생들을 교육정책의 결정에 참여시켜 비판적 목소리를 내게 하여 학교를 변화시키는 주체능력을 키워야 한다. 학생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려면 교사 중심의 교육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기획, 탐구, 결정과정 등에 '학생들의 목소리'(student voice)를 내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용의복장, 교칙, 체벌, 차별, 축제와 공연, 체육대회 등의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은 창조성을 가로막기에 구성적 방식을 통해 공동으로 입헌하고 집행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지시적 훈육적 방식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적절한 생활지도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적 반응적 대화를 해야 한다. 이제 교사는 군림하는 억압자의 위치를 넘어서야 한다. 교육개혁뿐 아니라, 삶의 변화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이루어내야 하는 공동의 작업이다.

7) 친인권적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해 '협동학습'이 필요하다(Howe & Covell, 2007). 협동학습은 좋은 시민의 가치를 촉진, 민주적 가치의 학습과 실천에 필수적이다. 자신의 생각을 또래와 의사소통하고 그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능력, 갈등해결기술, 성취를 공유, 역할놀이 등을 포함한다. 학생참여를 통한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성인생활의 기회와 경험을 갖게 하여 많은 사람이 시민교육의 본질적 부분으로서 확실하게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책임의 영역을 확장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협동적으로 작업하는 집단활동을 해야 비로소 민주적 시민이 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참여를 통한 정치적 참여를 통해 자신의 책임 모델이 배우게 해야 한다. 학생을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고, 학생들을 지역사회와의 연결시켜야 한다. 강제적인 특별활동이나

봉사활동이 아니라 자발적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동들은 다양한 집단과 함께 어울려 지냄으로써 여러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경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

8) 친인권적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민주적 가르침'이 필요하다(Howe & Covell, 2007). 민주적 가르침은 타인의 권리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전달, 교사의 동 그 자체가 교육과정(학생과의 관계에 있어 민주적 교사의 요청),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기술, 인간상호 존중과 책임성의 개발, 민주적 교실 체험(의사결정의 참여, 이슈에 대한 견해를 자유롭게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교실 분위기,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지식의 사회적 의미와 봉사의 의미, 지식의 사유화가 아니라 공유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오랫동안 익숙한 전통적 방식의 길들이기 교육을 접고, 동봉동행하는 진리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주입식으로 전달받고 암기하는 수동적 학습이 아니라, 비판적 탐구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Akkari & Perez, 2000). 주입식학습은 창조성을 박탈하기에 발견식, 토론식, 명료화 등의 방식을 선호해야 한다. 교과과정을 통한 시간의 지나친 제약이 아니라, 학생의 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9) 학교는 아동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로 변화시켜야 한다. 어떤 아동도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아서 안 되며 차이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사의 말을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순응과 같음의 정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는 '다름의 정치'가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과 다른 존재적 위치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학생은 단순히 듣는 존재만은 아니라, 교사는 먼저 학생들에게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경청) 익숙해야 한다(McLaren, 2003). 학생들의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경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가로부터의 지나친 통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학교중도탈락자에 대한 지원이나 지지가 있어야 한다. 점수와 성적이 중심이 아니라, 민주적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왜곡된 교육체제와 교육과정(계층차별, 인종차별, 성차별 등) 등에서 소수자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학교가 사회정치적 측면을 반영하여야 하고, 교육에서의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민주적 가치를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10) 민주주의의 완성을 하도록 하는 교양있는 시민의 양성을 위해서는 인권교육<sup>32)</sup>과 평화교육<sup>33)</sup> 등 민주적 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sup>34)</sup> 아동 및 청소년이

32)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은 권리와 책임, 인간의 존엄성, 타인존중, 민주적 참여, 인권문해력, 정치적 문해력을 함양한다. 일상적으로 반인권적인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교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권문해능력'(human right literacy)을 고양하는데 큰 목표를 둔다. 인권교육(human right education)의 목표와 방향은 다음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1) 모든 아이들은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모든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나 학생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길목의 교육 역할을 하는 민주시민교육(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은 평화와 우애 속에서 살도록 하고, 이를 위해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능력, 정치적 문해력,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 민주시민의식과 시민적 덕목(신뢰와 협동, 타인존중) 함양, 참여적 능력, 봉사학습 등을 실시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공정성, 인권, 평화, 관용 등 민주적 가치를 중시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인권과 평화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심화시키는 것은 민주제도를 강화하고 재형성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민주시민교육은 인권교육과 평화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민주적 시민교육의 목표로서는 민주사회에서 비판적 탐구를 하고, 숙지된 결정을 내리고,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도록 도우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삶의 의사소통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과 교류하며 상호소통을 하는 학습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경험을 중시하며 그들을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이 민주적 시민교육이다. 민주적 시민교육은 학생의 열정, 상상력, 지성을 자극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시민적 용기를 표출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힘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용감한 시민적 삶의 방식은 호전적 영웅주의가 아니라 시민적 용기에서 나와야 한다. 지배적 편견에 '아니오'를 말할 수 있고, 지배적 여론을 거역할 수 있는 시민적 용기의 덕이 필요하다. 또 시민적 자질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관계의 자질과 신뢰의 미덕, 그리고 자기 존중감을 겸비하여야 한다.

## 5. 결론: 시민권과 시민성의 조화를 위해

그동안 우리의 초등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은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국민이나 공민을 양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제 노예나 신민 또는 국민이나 공민을 형성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율적 권리를 행사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닌 적극적 시민을 양성하는 '민주적 시민권'을 향유해야 한다. 미시민의 상태에 있는 학생을 공적 시민이 되게 하는 교육을 하고, 상업적 시민이 아닌 공공적 덕을 가진

---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3) 인권적 대화는 아이들의 자아존중감과 독립심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4) 인권적 대화는 교사와 아이들 사이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유대감을 형성해야 한다. (5) 교사도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 아이들 앞에서 존중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

33)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peace education)은 폭력(구조적 폭력, 심리적 폭력, 문화적 폭력, 생태적 폭력)을 극복하는 학교의 평화문화의 창조, 갈등과 폭력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생태적 폭력 극복 등 다차원적 평화문화(구조적 평화, 심리적 평화, 문화적 평화, 생태적 평화)의 창조에 있다.

34) 민주주의는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선을 위해 민주적으로 숙고하고 결정하는 공동의 삶의 양식으로서 공동선을 향해 함께 활동하도록 하면서 대안적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적극적 시민의 양성을 꾀려한다(Jaddaoui, 1996: 74-77).<sup>1)</sup> 민주적 시민교육은 아동을 단순히 미성숙자이기에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준성인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갖추는 준비교육으로서 위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교양있고 성숙된 정치감각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될 것이다. 그러기에 교실에서의 수업활동을 통해서 자주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민주적 소양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시민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을 해야 하고, 가족적 개인에서 공적 개인으로, 무정형의 개인에서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이 되게 하는 '민주적' 시민교육을 해야 한다. 민주적 시민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학습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앎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민주적 삶의 양식으로서 행사되어야 한다. 민주적 시민은 시민으로서 자격을 가진 시민적 권리와 시민으로서 예절과 행동양식 등 시민성을 체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동안 시민권없는 시민성 교육에 경도되어 왔다. 시민교육 이념에서 시민권을 더욱 강조할 경우 시민의 권리적 요소가 중시되며, 시민성을 강조할 경우 시민의 윤리적 요소가 중시된다. 권리적 요소는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방어적 요소를 포함하며, 윤리적 요소는 예절과 품위 등 도덕적 요소를 포함한다. 전자가 인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후자는 인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주로 권리의 외적 침해에 관심을 갖는 인권교육과 그것에 대해 참고 양보하는 수양을 강조하는 인격교육간에는 만나지 못할 이념적 침예함이 가로놓여 있다. 극단적인 경우 공정함이 지나치면 인정이 없고, 양보가 지나치면 정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 우리가 '시민권'을 강조할 경우 시민의 권리적 요소를 강조하게 되며, '시민성'(시민다움, 교양)을 강조할 경우 윤리적 요소를 강조하게 된다. 권리적 요소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타인을 보호하는 두 요소가 포함되고, 윤리적 요소는 예절과 품위 등 도덕적 요소가 더 강하다. 전자가 '인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후자는 '인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에 '인권'과 '인격'은 대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로 권리의 외적 침해에 관심을 갖는 인권교육과 그것에 대해 참고 양보하는 수양을 강조하는 인격교육간에는 만나지 못할 이념적 침예함이 가로놓여 있다. 극단적인 경우 공정함이 지나치면 인정이 없고, 양보가 지나치면 원칙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맥락과 상황에 따라 조화되어야 한다. 민주적 시민의 이상은 시민권과 시민성을 동시에 조화시켜야 한다. 인권교육의 내용을 침해받지 않을 방어적 차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관용과 차이의 존중 등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인격교육과는 만날 수 있다. 반대로 인격교육의 내용에 성실, 용서 등의 이타적 덕목뿐만 아니라 정의나 공정함 등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인권교육과 만날 수 있다.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인권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하는 인격의 요소에 포함될 때 충돌은 적을 것이다. 만약 인격의 요소에 권리적 요소를 빼버리면 공공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수양에만 관심을 갖는 소인이 되기가 쉬운 것이다. 시민의 구성요소에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시민권)와 시민다움의 윤리적 성질(시민성)을 융합한 의미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

지금처럼 우리의 학교가 민주화의 지체 상태에 있다면 학생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민주시민으로서 삶의 실천양식을 구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오늘의 기성세대가 보여주는 정치행태와 거의 동일한 반복을 보일 것이다.

이제 국가주도의 공민교육이나 국민교육으로 점철되어 온 민족국가 시대의 틀을 반성하면서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제 3의 공공 영역으로서의 '민주적' 시민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론 우리에게서 친인권적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한 절차적 제도적 시민권으로서 의사결정의 민주화,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를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동시에 교육주체의 시민적 덕목으로 신뢰하고 협력하고 부조하고 연대하는 친인권적 교사문화, 학생문화, 학교장문화, 학부모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제 친인권적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해 교사, 학생, 교장, 학부모 모두 인권문해력을 갖추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학교는 경쟁과 시기, 감시와 처벌의 사회가 아니라, 자유와 자율, 자발과 참여, 배움과 돌봄이 가득찬 공동체로 변화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경수(2000). '어린이의 시간과 공간: 순응인가 아니면 생성적 변화인가', [문화과학] 21, 문화과학사.
- 박성수(2000). 표면적 사유 또는 어린이 되기, [문화과학] 21, 문화과학사.
- 조한혜정.(2000) [학교를 찾는 아이, 아리를 찾는 사회].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조형근(2000). 어린이(기): 순수한 자기를 꿈꾸는 우리들의 초자아, [문화과학] 21. 서울: 문화과학사.
- 홍성태(2000). '지식사회와 어린이', [문화과학] 21. 서울: 문화과학사.
- (2004). 근대화 과정에서 어린이는 어떻게 자라왔는가: 한국사회에서의 어린이 담론의 변화. [당대비평] 봄 25.
- Akkari,A. & Perez,S.(2000). Education and Empowerment. C. Matheson & D. Matheson(eds.). *Educational Issues in the Learning Age*. London & New York: Continuum.
- Archard,D.(1993). *Children: Rights & Childhood*. London & New York: Routledge.
- Arie's,P. 문지영 역(2003). [아동의 탄생]. 서울: 새물결.
- Brown, L.M.(1998). *Raising their Voices: the politics of girls' ang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owe, R.B. & Covell, K.(2007). *Empowering Children: children's right education as pathway to citizenship*.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Jaddaoui, N.H.(1996). 'Building Bridges toward Democracy'. L.E. Beyor(ed.). *Creating Democratic Classrooms*: Teachers College Press.
- Lisman, C.D.(1998), *Toward a Civil Society: Civic Literacy and Service Learning*. Bergin & Garvey.
- Matheson & Dillow(2000). Education and Disempowerment. C. Matheson & D.

- Matheson(eds.). *Educational Issues in the Learning Age*. London & New York. Continuum.
- McLaren, P.(2003). *Life in Schools*. Boston. Allyn & Bacon.
- Olser & Starkey, 1994. Fundamental Issues in Teacher Education for Human Rights: a European Perspective.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23,No.3.
- Rubin, B.C. & Silva, E.M.(2003). *Critical Voices in School Reform: Students Living through Change*. RoutledgeFalmer.
- Smeryers,P. & Wringe, C.(2003). Adults and Children. N. Blake, P. Smeryers, R. Smith, & P. Standish(eds.). *The Blackwell Guide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Quicke,J.(1994), Individualism & Citizenship: Some problems and possibilities. *International Studies in Sociology of Education*, Vol.2,No.2.
- John White & Patricia White, *An analytical perspective on education and children's rights*. Frieda Heyting, Dieter Lenzen and John White (ed.), *Methods in Philosophy of Education*. London: Routledge.
- Wringe, Colin.(2001). An analytic approach in philosophy of education: the case of children's rights. Frieda Heyting, Dieter Lenzen and John White (ed.), *Methods in Philosophy of Education*. London: Routledge.

# 학생 인권을 위해 바깥의 힘이 필요하다

박덕수(연제고)

## 1. 들어가는 말

올해 들어 학생 생활에 변화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일이 몇 가지 있다. 우리 마을에 주민들의 노력으로 마을 도서관이 들어섰는데, 초등학교 진단평가로 도서관에 오던 학생 수가 3분의 1로 떨어졌다. 요즘 중학생들을 두고 '십오야'라는 자조적인 말들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곧 여름방학이다. 방학 중 보충수업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문젠데, 어느 고등학교는 1명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이 보충수업에 참여를 한다고 한다.

지난 7월 12, 13일 학생들과 함께 여름캠프를 열었다. 그날 중3 여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좋은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는 성형을 해야 한다.' 등등의 중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주제들을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학생들과 대화를 할 때 어김없이 나오는 화제로 옳아갔다. 두발 문제다. 강제 삭발이다. 여자중학교인 자기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의 머리를 자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했다. 교사들은 학생의 동의하에 자른다고 하면서 책임을 피해갔다. 교육청에 문제 제기를 해도 별 반응이 없었다. 경찰은 강제 삭발은 분명 '상해죄'라고 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더 하다. 체벌은 물론이고 '엎드려 뺨히기', '구타' 등도 공공연하다. 게다가 강제 삭발은 물론이고 강제보충, 강제야간자습 등을 전체 학생들에게 거의 예외 없이 강요하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사정이 있어서 보충, 야간자습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면 '전학을 가라'면서 폭언을 하기도 한다. 최근의 몇몇 사례들은 학생 인권 침해 정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7월 7일(월) 아침 부산의 N고 강제 삭발 사건,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을 체벌한 서울의 사건, 학생 인권에 관한 MBC 'PD수첩' 등은 현재 학생들이 처한 인권 실태를 잘 보여준다.

학생들이 처한 상황이 학교나 교사에게 맡겨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학교는 때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도 해서 해결이 더욱 어렵다. 학교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보다 이제는 바깥에서 힘을 넣어야 한다. 학생 인권 문제에 관해서라면 더욱 그렇다.

## 2. 학교에서 학생들이 처한 인권 실태

1) 학생들이 처한 학교에서 인권 실태는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책 제목이 잘 나타내고 있다. 일제 35년 동안 일본군국주의가 만든 학교는 칼을 찬 교장과 교사의 회초리로 통제되는 병영이었다. 21세기의 한국의 학교는 얼마나 변했을까. 아직도 당시의 모습과 목표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이미 몇 년 전에 군대는 '어떠한 폭력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병영 문화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관심과 소통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할 학교는 여전히 체벌과 구타, 폭언이 지배하고 있다.

제작년에 1년 동안 일본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한 선생님은 이렇게 전했다. 일본의 학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문지도가 없었다. 교장선생님이 교문에 나와서 아침인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경우는 많다고 한다. 한국 학교에 병영문화를 만든 일본은 이미 그 제도를 없앤 것이다. 대만도 몇 년 전에 두발 자유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발 제한은 이제 한반도에만 남았다는 우스개가 들릴 정도다.

2) 한국의 학교는 '성적' 하나면 만사가 끝난다. 모든 것이 '입시' 하나로 귀결되며, 면죄부를 부여받는다. 교사와 학교는 여전히 '인권이 밥 먹여주나', '인권은 배부른 소리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학생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도 학교라는 체제 속에서는 역부족이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만다. 강제적이라도 성적만 올리면 된다는 입신출세주의에 사로잡힌 학부모의 요구도 학생들의 인권 상태가 향상되지 않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때로 학교의 행태에 대해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다. 그러나 학생이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 3.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 인권에 관해서라면 이제는 외부에서 학교에 강한 압력을 넣어야 한다. 학교 자체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밖에서 강한 시대적인 요구로써 학생 인권을 위한 바람이 휘몰아치게 해야 한다. 이것을 가장 크게 전제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 제안한다.

- 1) 학교를 운영하는 당사자들은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학교장 및 교감으로 임용될 사람은 반드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학생부장과 학년부장은 당해 연도에 40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3) 학생들에게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매 년 인권강좌를 개설한다.
  
- 2) 교문지도는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예다. 아침에 교문에서 벌어지는 풍경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봐라. 교문지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인권위에서 적극 권장하고, 교육청에서도 교문지도를 폐지하고 다른 지도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부패지수처럼 시도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인권지수를 발표한다. 인권지수가 높은 학교는 널리 알린다.
  
- 4) 학교마다 학생, 교사 인권도우미를 둔다.  
 학생인권도우미를 둔다. 학년 당 1명씩 3명 정도로 하고 교사인권도우미도 둔다. 인권위 이름으로 임명을 한다.
  
- 5) 시범학교
  - (1) 시범학교에 가산점을 주지 않아야 한다. 꼴이 강을 건너면 탱자가 된다. 가산점이 없어야 점수에 연연하지 않는 뜻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 (2) 가능하다면 재정 지원을 하자. 인권 관련 강연, 강좌를 열어 학생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자.
  
- 6) 학생 체벌은 금지해야 한다.  
 체벌은 금지하고 그 대안들을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다. 교육청은 체벌금지를 무조건 선언하고 학교에 공문을 내려야 한다.
  
- 7) 보충수업, 야간자습 등에 강요가 따라서는 안 된다.  
 강제 보충수업, 강제 야간자습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된 보충, 자습이어야 한다. 당사자의 뜻에 따라 자율적인 보충과 자습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다면 바로 학생들에 대한 인권지수가 높아진 증거로 보아도 무방하다.

8) 민간조사관을 둔다.

인권 침해에 대한 정보를 널리 제공하고, 고발 창구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명예직인 민간인조사관을 임명해서 각 학교에서 사건이 생기면 즉각 파견하여 정황을 조사한다.

9) 학생인권을 위한 <지역500인 위원회>를 구성한다

(1)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 노동, 농민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해 상담, 조언, 행동도 한다.

(2) 참여를 원하는 사람을 선착순으로 뽑아 위원회를 구성해도 된다.

10) 학생들이 지역 별 대표를 뽑아 '학생의회'를 구성한다.

대표들이 두발 등 학생 수칙에 대해 교육감과 적극적인 의견을 나누는 제도를 마련한다.

#### 4. 결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써 자신도 언젠가 배려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닌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권리를 존중받으면서 성장한 사람만이 타인과 공동체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

과연 오늘날 학교는 어떠한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서는 미래를 희망할 수 없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학교는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학생 인권을 침해할 요인들은 늘 존재하고 있다. 강력한 힘이 작용해야 한다. 그것은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그리고 당사자인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겠다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학교에서 학생 자신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또 하나의 힘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학생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미래를 위해'라는 말을 한다. 현재에 학생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겠는가. 우리가 현재를 잘 보살핀다면 미래를 보살피는 것이 된다. 그래서 현재의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

## 학교 내 차별문제

최성용(울산 청소년인권운동단체 '아수나로')

다들 공감하다시피, 학교에서 학생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습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을 만큼, 그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더라도-에 있다는 것 역시 다들 동의를 하실거고요. 제가 맡은 주제는 '학교 내 차별문제에 대한 방안과 대안 모색'입니다.

나름 청소년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올해 졸업한 사람으로서, 이때까지 학교에서 경험했던 차별 및 인권침해와 그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나름의 대안들을 이야기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학교 내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위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차별이 발생합니다. 두발규제, 소지품 검사와 압수,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의 강제. 이러한 대표적인 문제들의 공통점은 그것을 '강제'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제 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들이 있으나-가장 큰 원인이 바로 교사와 학교의 권위입니다.

두발규제는 애매모호한 학칙에 근거하여, 교사의 호불호에 따라 두발규제를 당하는 빈도와 그 정도가 학생마다 다릅니다. 불량학생으로 낙인찍힌 학생들을 머리가 다른 평범한 학생들에 비해 짧음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하다(?)라는 이유로 두발규제를 강요받습니다.

소지품 검사와 압수 역시 학생이 너무나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을 학교는 그들의 권위를 앞세워 그 거부를 굴복시킵니다.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제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성적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유 아래 모든 학생들에게 강제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그것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조차 강요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부를 잘 하는 학생, 혹은 집안이 좀 있는(?) 학생에게는 그 거부권이 인정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힘의 논리로 학교 내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힘의 차이가 나게 되며, 교사와 학생 간에는 민주적 소통은 커녕 권위와 힘의 차이로 불평등 그 자체가 유지되고 정당화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감선생님과 한 판 말싸움을 벌였던 기억을 떠올려보자면, 그 때 제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지 않느냐, 라는 물음에 그는 화를 내며 말했었습니다.

“어째서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냐!”

그리고 자신의 말이 제대로 된 논리라는 것을 알기에 얼버무리며 이런 협박을 했었습니다.

“네가 마음에 안 들면 학교를 떠나라, 아니면 학교의 규율에 따라라.”

학교자율화 관련해서 야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우열반입니다. 이 예가 학교의 차별문제를 매우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일단 우열반으로 학생들을 편성할 경우, 말 그대로 시험점수의 차이에 따라 우열함과 열등함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 사이에서도 우열반과 열등반을 맡는 것이, 입시체제하의 교육능력의 우열함과 열등함을 재는 것이죠. 우열함과 열등함이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것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울산의 모학교 전교조 참교육 실천사례 발표 때를 갔었습니다. 그 때 발표하시던 선생님 한 분께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께서는 인적사항 평가란에 학생들에 대해 자기 진심으로-나쁜 내용이 들어간- 썼다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저 학생에 대해 나중에 보니 또 다른 면이 보이고, 원래 봤던 면이 변화 하더라- 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평가된 현재는 과거가 되고, 평가의 기준 역시 그 교사의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자, 한 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평가-인적사항-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은,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더욱 큰 문제는 교사와 학교 대 학생간의 관계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학습하고, 학생들 내부에서 그것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에 대한 인식, 대우의 차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공부방’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공부방에는 반에서 몇 등 이상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야자를 하는 학생과, 학교 교실에서 야자를 하는 학생- 그것은 우열반의 형태중 하나지요. 그러한 틀 속에서, 공부방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 내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라는 낙인이 찍혀있었고, 그 친구들이 거만하게 굴든 그렇지 않든-그런 경우를 못 봤지만-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낙오자’라고 낙인찍힌 학생들은 그들의 지위-계급(?))-를 높이기 위해 폭력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자신의 말을 잘 안 들어주는 친구에게 폭력을 사용하지요. 그것은 마치 교사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를 강제하기 위해 체벌을 사용하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교사는 이러한 학생간의 문제에 대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적으로

말하자면 귀찮거나 개입하기가 꺼려지는 까닭입니다. 누가 폭력을 사용하거나 한 학생에 대해 일명 따돌림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개입하기 꺼려하며,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만약 그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도- 거기에 관련된 모든 학생들-가해자들- 피해자들- 을 혼계하고 체벌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폭력과 권위를 학습하게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되려 정당화 시켜주는 최악의 해결책입니다.

교사는 학생을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학교의 규율, 권위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그것을 학습한 학생들은 학생들 내부에서도 그러한 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선 보통 두 가지 지점에서 변화를 꾀합니다. 바로 제도와 인식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학생인권 관련 조항이 딸랑 한 줄만 쓰여진 것도 아직은 제도를 변화시킬 만한 인식이 부족하다- 고 생각이 듭니다. 뭐 생긴 것만 해도 어디냐-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일단 학교 내의 교칙들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에 완전히 어긋나는 교칙들이 모든 학교에 존재하는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칙들을 제대로 바꾸어내는 것이지요. 교칙에는 두발의 길이 제한-애매모호하게도 귀를 덮어서는 안 된다, 눈썹에 닿아서 안 된다- 에 대한 조항부터, 체벌을 상당히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조항-이 조항은 소수의 학교임- 들까지. 인간 개개인의 개성과 표현의 자유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장 당사자인 학생들조차도 체벌을 하고 두발을 제한해야 한다, 라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육을 한 번 한다- 가 아닌,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 학교의 당사자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인식을 바꾸어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권위를 통한 소통에만 익숙해져 있는 교사와 학생들이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제도에 관해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현재의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이 제대로 제도를 바꾸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학교 내에서 차별의 기준은 '성적'에 그 기준을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적의 고하에 따라 인권 침해의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것을 다시 성적의 고하가 정당화 시켜주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차별의 메커니즘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선 학생을 성적으로 평가하는, 그리고 교사도 입시교육을 얼마나 잘 하나로 평가하는 것을 없애버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학교 성적으로 평가받고 그 성적으로 사람을 제단하고 나누는

입시체제 자체를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따로 한 가지 더 이야기 할 것은 성 소수자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중에도 없고, 별로 생각조차 되지 않는 성적 소수자의 문제입니다. 청소년 성 소수자들이 학교 내에서 느끼는 문제들은 그에 대한 감수성과 제대로 된 지식의 부재가 그 원인입니다. 그들은 학교라는 폭력적 공간 속에서 보아지는 다양한 칼날들에 상처받고- 나아가서 그 스스로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일단 대구경북 성 소수자 인권행동에서 만든 자료 중 일부를 마음대로 발췌하여 뒷장으로 올립니다. 말보다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5. 청소년 성 소수자의 도움 요청에 관하여

성인 성 소수자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들만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지만, 청소년 성 소수자들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대부분 더 억압받고 더 소외당한다.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학교라는 갖힌 공간, 십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미성숙한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성의 태도, 성 소수자에 대한 폭력적인 편견과 무지가 팽배한 사회 분위기, 턱없이 부족한 상담 여건 때문에 한국의 청소년 성 소수자들은 많은 경우 원하는 정보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이 막연하게 절망과 자학, 나아가 자살로 내몰린다.

섹슈얼리티란 사람 하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 문제이다. 그런 근본적인 괴로움을 겪는 이들에게 윤리적, 종교적, 관습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보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지극히 피상적인 비난일 수 밖에 없다. 같은 이유로, '사춘기라서 그렇다', '고칠 수 있다'고 '위로'하며 사회에서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 정체성으로 '교정'하려 드는 태도도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성인이 된 후에까지 두고두고 큰 상처로 남게 된다. 이는 인위적 교정이 가능한 문제가 아닌데다가, 성 정체성 확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고민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정하고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성에 관한 문제는 모조리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 혹은 '건전하지 않은 것'으로 몰아가 무조건 금지하고 은폐하고 죄책감을 불어넣으려는 기성세대의 태도는 그 청소년의 앞날에 큰 악영향을 미치며, 거의 모든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십대 시절 그로 인한 아픔을 겪는다. 혼란을 거치며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때, 성에 대한 지식이 가장 필요한 때는 바로 청소년기이다.

## Q.. 청소년 성 소수자가 교사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커밍아웃 했을 때

성 정체성을 갖는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긍정했다는 점을 축하해주고, 학생이 당신에게 커밍아웃할 정도로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맙다고 말해주십시오.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거나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좋아하는 연예인에 관해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비밀을 꼭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어색함 때문에 학생이 오히려 교사를 피하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거나 메일, 메신저, 편지 등을 통해서 먼저 연락하고, 여태까지 유지해 왔던 친근감을 계속 보여주면 학생은 자신의 커밍아웃으로 교사와의 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교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놔도 되겠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교사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 Q.. 청소년 성 소수자가 교사에게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해 올 때

청소년 성 소수자가 도움을 요청해 올 때에는 비난이나 성정체성의 여부에 대한 의심보다는 청소년 성 소수자의 고민이나 의견을 경청하고 지지해줍니다. 성 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교사가 학생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면, 학생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을 느껴, 자살시도를 하는 등의 극단적 방법을 택할 수 있기에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되도록 성 소수자와 관련한 용어(예, 이반 등)를 기억해두었다가 청소년 성 소수자들에게 익숙한 용어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순간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청소년 동성애자의 경우 정체성 혼란기→인식기→저항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교사의 작은 지지가 이 시기의 친구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생의 성 정체성 여부나 고민을 학생의 부모나 동료교사에게 선불리 알리는 것이 학생이 처한 상황을 오히려 큰 위협에 빠트릴 수 있으므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거나 당황스러운 경우엔 성 소수자 상담기관에 문의하여 의문점이나 대처방법을 카운슬링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라면 학생과 상담기관을 직접 연결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청소년기에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고 하여서 모두 성 소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Q.. 청소년 성 소수자가 대외적 커밍아웃을 하려고 할 때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소년 성 소수자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주변에서 인정해주시길 바라는 충동적인 욕구에 의해서 돌발적인 선언의 의미로 커밍아웃을 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커

밍아웃은 학생에게 많은 상처와 피해를 안겨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커밍아웃 이후에 일어날 주변의 반응들을 함께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상상해보고, 일어나는 일들에 학생 스스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하게 하고, 자신의 다름을 타인과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보는 것으로도 커밍아웃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생의 부모님이 학생을 충분히 어른스럽다고 느낄 때쯤이나 학생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한 뒤, 혹은 주변에서 커밍아웃 이후에 발생하는 안 좋은 반응들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가 된 후에 하는 것이 안전 할 것 같다고 조언해 주십시오. 학생이 부모에게 커밍아웃을 하려고 할 때, 선생님도 부모님을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지지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좋습니다.

[부록 1] 성 소수자들의 학교 생활 체험 사례(실명을 밝힐 수 없으므로 닉네임으로 표기합니다.)

### ■ 사례 1 : 진기(여성 동성애자, 18세)

5월 어느 수업시간의 일이었다. 수학에 영 썬병인 나였지만 유머감각이 넘치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수학선생님 덕분에 어느 때와는 달리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있었다. “하리수 장가간다며? 말세다 말세. 남자끼리 결혼하고 우웻.” 선생님이 수업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던지신 말에 아이들이 깔깔깔 웃어댔지만, 나는 가슴에 돌이 하나 쿵 내려앉은 듯 했다. 물론 하리수가 ‘남자’도 아니었지만, ‘남자’끼리 결혼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구역질을 할 일이란 말인가. 선생님의 농담은 계속됐다. “애는 입양한다며? 애만 불쌍하게 됐어. 나중에 지 엄마가 ‘난 니 애비다’ 그러면 어쩔꺼야? 학교에선 또 왕따 당하지 않겠냐? 정상적인 부모밑에서 자라야 되는거야. 엄마랑 아빠가 있는. 그런 정상적인 가정말이야. 진짜 서양에서 문물이 마구 쏟아져 들어온다지만 이렇게 될줄이야 상상했겠니. 전통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 ‘맞아요 맞아요’를 연발하며 아이들이 킬킬거렸다. 나는 홀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왠지 울음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고 이것이 내가 맞서야 되는 세상이라는 것이 원망스러웠다. 어째서 동성애가 서양의 문화인가, 저 아이들은 자기 친구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저 선생님은 홀로 웃지 못하고 울음을 참고있는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사실 그런 말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다. 중학교 때 가정시간엔 이런일도 있었다.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에 대해 배우고 있었는데 플라스틱 용기등에서 많이 검출되는 에스트로겐의 유해성에 대해 선생님이 경고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받은 산모가 출산한 아이 중에 남자아이의 경우 고환이 정상보다 작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게 참 문제란 말야 이런애들이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엄마, 제가 결혼할 남자예요.’ 하고 데려오면 어쩔거야.” 당시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나는 그만 멍해지고 말았다. ‘나는 그럼 뭐지? 나는 어떤 호르몬이 잘못된 거지? 이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거지?’ 물론 지금에서야 동성애가 이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이고, 이것에 원인이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선생님들의 ‘농담’ 한마디 한마디는 내 가슴에 와 비수가 되어 박혔었다. 반에 마흔명의 학생이 있으면 아무리 적어도 그중 3~4명은 자신의 성적체성에 혼란을 겪는 아이들이다. 그리고 그중 1~2명은 자신이 성 소수자라고 성 정체성을 확립한 상태이다. 비록 선생님에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우스갯소리였을지라도, 3명은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고, 나머지 37명의 친구들은 성 소수자들의 삶을 그저 ‘농담거리’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성 소수자는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낙인’은 없지만 차별을 받고 그에 따른 취업, 교우,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는 성 소수자의

정체성이 '사회적 장애'이기도 하다. 수업시간에 장애인이 다리가 없다는 이유로 놀림감이 되지 않는데 어째서 성 소수자의 삶은 한낱 농담으로 치부되어야 할까?

내가 중학교 때는 '이반킬러' 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계셨다. '이반'은 '異般', 즉 일반인과 다르다는 약간은 자조적인 뜻을 가진,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물론 우리 학교에도 이반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커플이 몇 있었고, 여중이라서 그런지 그런 분위기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은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다. 그렇지만 '이반킬러' 선생님에게 이들은 '징벌' 과 '변화'의 대상이었다. 여자인 애인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던 한 선배는 그 선생님께 편지가 들통나 부모님께 연락이 닿았고, 결국 학교를 퇴학당하시피 자퇴해야했다. '이반'들에 대한 체벌은 물론이고 옆 반의 한 아이는 선생님께 이반으로 찍혀서 일년 내내 교무실에 불러다니며 '동성애병'을 치료하기 위한 선생님의 설교를 들어야 했다. 자기 딸이 이반이어서 그렇게 이반에게 가혹했다던 선생님은, 사실상 동성애자를 징벌하신건 아니었다. 그분이 징벌 하신 건 '칼머리에 힙합바지 아이들'이었고 그분은 그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동성애자로 생각하셨다. 심지어 이런 사례도 있다. 2반으로 전학온지 얼마 되지 않은 내 친구는, 커트머리였다. 복도에서 그 친구를 발견한 '이반킬러' 선생님은 다짜고 짜 친구를 불러놓고 물으셨다. "너 이반이야, 일반이야? 이반맞지?" 이반킬러란 선생님의 명성도, 이반이란 단어도 모르던 친구는 순순히 대답했다. "네, 2반인데요." 그 순간 이반킬러 선생님은 가차없이 친구의 뺨을 날리셨다. 그 후로도 친구가 이반이란 오해를 풀기까지 몇 차례나 교무실을 들락날락 거려야 했다. '이반' 이기에 체벌을 당해야 했고, 학교까지 자퇴했다. 단순히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징벌'의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동성애자'들의 집단은 '칼머리에 힙합바지를 한 문제아집단'으로 일반화 되었다. 사실 동성애자는 겉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칼머리든 파마머리든 생머리든 그것은 자신의 취향일 뿐, 어떻게 성적 지향과 결부시킬 수가 있는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담배를 피든 안 피든 , 친구와 몰려다니며 흔히 '비행' 이라고 불리는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은 성적 지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동성애자들끼리도 동성애자를 겉모습 만으로 알아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안타깝지만' 동성애자들 사이의 공통점이라고는 같은 성을 좋아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없다. 사랑이 죄가 되는 학교에서, 이반들은 '비행청소년'으로 취급되어 정말로 꿈으로 비행(飛行)해야 될 청소년기를 끝끝내 접어버릴 수 밖에 없었다.

"친구간의 돈독한 정은 '우정' 이라하고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연정' 이라한다." 중학교 체육 교과서에 실려있는 말이다. 청소년 성 소수자로서 단언하건대, '아직도' 학교에 성 소수자는 없다.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지만, 이곳에서 진정 '성 소수자로서의 나 자신' 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은, 그리고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중학교 2학

년때 처음 나의 성적 지향성을 자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나는 비정상이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라는 생각으로 어느 날 밤엔가는 손목을 그었던 날 조차, 학교는, 선생님은, 친구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학교는 레즈비언이란 성 정체성을 가진 나에게 공포의 공간이었고 압박과 고민의 원천이었다. 특히나 생물시간과 기술·가정시간을 견뎌내는 것은 고역이었다. 아빠와 아내, 그리고 두 자녀- 그것이 단란하고 ‘정상적인’, ‘순조로운’ 가정생활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끌리는 것이 당연하고 성장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배우면서, 동성을 사랑하는 내가 ‘이성교제’ 라는 단원을 일주일에 4~5시간씩 배워 시험까지 쳐야했다. 도덕, 윤리 교과서에는 혼혈아동,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를 포용하자는 말은 있어도 그 소수자안에 ‘성 소수자’는 없다. 동성애라는 말조차 언급하기 두려워하는 교과서가 있고, 상담을 하면 “사춘기라서 그래”, “남자를 만나면 괜찮아질꺼야” 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있다. 엔터테인먼트프로그램에서 남자와 남자가 뽀뽀하는 것을 보며 깔깔거리고,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병인줄로만 아는 친구들이 있다. 그렇기에 나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숨기고 혼자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 민수와 철수가 아닌 철수와 영희가 나오는 교과서로, 단 한 번도 동성애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 없는 수업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틀린’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규정해야만했으니까. 그래, 정말로 아직도, 학교에 ‘성 소수자’는 없다.

## ■ 사례 2 : 까마종이(여성 동성애자, 20세)

윤리시간에 있었던 일. “(…)3번은 급진페미니즘입니다. 급진페미니즘은 성 해방론이라고도 하는데 젠더(gender)의 차이를 부정하는 페미니즘과는 다르게 ‘생물학적 성’(sex)의 차이까지도 부정하는 입장인데요. 예를 들자면 원조교제나 여성병역의무제, 성의 상품화, 동성애가 있겠지요.”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 언제부턴가 백일몽에 빠져있던 나는 흠칫 놀라 깨며 앞을 바라보았다. 내가 수업을 듣는지 마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 윤리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필기를 시키고 하던 말을 계속 한다.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남자가 임신을 한다거나- 누가 나오는 무슨 영화에서처럼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여학생들)은 청혼할 때 ‘내 아를 나도~’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런 일은 지금 있는 일이기도 한데 ‘느이 남편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뻐요. 저처럼 머리도 길고.’ ‘아니 남자가 무슨 머리를 기르는데?’ ‘아뇨, 제 남편, 아니 아내, 저 여자랑 결혼하거든요.’ 이런 거 말이죠.”

애들이 키득거린다. 내 얼굴을 책에 파묻게 만드는, 속을 불편하게 하는 웃음소

리들.

동성애가 '생물학적 성'(sex)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지 않나? 생각하며 교과서를 뒤적거리려 본다. 그러는 동안 선생님은 임신한 남자 사진 따위의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레즈비언의 어원에 대해 이야기해주겠다고 한다.

“레즈비언이란 말은 전통적으로 여자들만 사는 레즈비언이라는 섬 이름에서 유래된 건데, 이 여자들은 평소엔 자기들끼리 사랑을 나누다가 일년에 한 번씩 이웃 섬의 남자들과 관계를 가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거기로 보내고 여자아이는 자기들이 키웠다고 해요.”

‘아니, 그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 유래된 겁니까.’ 그렇구나 하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애들을 보자니, 뭐라고 반박은 하고 싶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냥 듣고 있을 수 밖에. 옆 분단을 보니 나처럼 또 한 아이가 책에 얼굴을 파묻고 있다.

난 윤리선생님께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야길 하려면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몇 백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좀 묘했다. 언제 한번 동성애에 대해 똑바로 알려드려야겠다.

### ■ 사례 3 : 푸른유리(남성 동성애자, 21세)

1996년, 저는 당시 10살이었습니다. 여성스러운 남자아이라 하여서, 친구들의 따돌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10살 때부터,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동성애자’ 라는 말이 있는지도 몰랐고,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17살의 형을 짝사랑하게 되었고, 우연히 그 형도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일과의 대부분을 함께 지내며, 그동안 혼란스러워서 감춰두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는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에겐 그를 사촌 형이라고 소개했었지만, 못내 씩씩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친구들에게 형을 소개하면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점심시간이 끝난 뒤에 바나나우유를 사와서 저에게 건네면서, “괴롭혀서 미안해, 사과의 뜻으로 받아주면 좋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사과의 뜻으로 생각했던 저는 의심 없이 우유를 마셨고, 체육수업 도중에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은 느낌과 구토증세가 보여 양호실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부축하던 친구가 그 친구들이 우유에 ‘황산구리II’를 넣는 걸 봤다는 말을 듣고 수돗가로 달려갔습니다. 과학실 수업시간에 황산구리를 실험재료로 썼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운 후, 급식소 앞에 배달된 소금 주머니를 뜯어서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약물에 중독되었을 때, 대처해야 할 방법을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교육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먹은 것을 모두 게워내고,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여전히 통증과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온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머리가 아파오고 온 세상이 하얗게 보이는 통에, 도와달라는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기어서 양호실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간단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이제 괜찮냐, 다행이다.” 라는 말을 하셨고, 방과 후에 선생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었지만, 선생님은 “다 나았고, 병원에서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했으니.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다. 선생님은 교장선생님도 하고 싶다. 네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 같은 아이’로 전교에 알려져, 술한 폭력과 언어적 폭력에 늘 시달리며 지내야 했습니다. 물론 교사들에 의한 보호 따위는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전학을 가게 되어서까지 그 꼬리표는 늘 따라 붙어 다녔고, 다니고 있던 성당에서도 ‘하느님을 모욕한다. 너는 악마다.’ 라는 폭언과 온갖 멸시와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도망쳐 나오다 싶게 쫓겨나야 했습니다. 저에겐 자연스러운 하나의 감정인데, 사람들은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사실에 부모님께 그간의 일을 말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나약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을러서’ 라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은 인식했습니다.

그 후 ‘동성애자’ 라는 성적 지향성을 정체화하고 자긍심을 느끼고, 커밍아웃하기까지 23번의 자살시도와 36번의 자해, 성정체성의 혼란과 선생님, 친구들에 의한 폭력으로 인한 우울증, 대인공포증,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6년간의 반복적인 정신과 출입으로 얼룩진 10대의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비슷한 아픔을 참으며 지내는 친구들을 만났지만, 일찌감치 자살에 ‘성공’해서 홀로 남게 되는 일은 더 빈번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이란 것을 말해주었다면, 아주 유명한 소크라테스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나이팅게일, 엘리노어 루즈벨트, 알렉산더, 셰익스피어 또한 나와 같은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말해주었다면. 그때 그것을 알았더라면, 고통스러움과 얼룩진 10대 시절을 보내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인데, 그 일을 계기로 나와 같은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지금은 인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 사례 4 : 우이(여성 동성애자, 26세)

제게는 1살 어린 학교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었지만,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한창 이반 붐이라는게 일어서, 누가 게이니 레즈비언이니, 더럽다느니 불쌍하다느니 그런 논쟁이 일던 그 때 그녀는 고3이었습니다. 어느날 그녀에서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그래도 다음 생에서는 꼭 이성애자로 태어나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전화를 끊고 며칠째 연

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은 그녀친구에게서 그녀의 학교 생활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레즈비언이라는게 밝혀진 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그게 학교 내에서 가능할까 하는 정도의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거기에 교사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당할때 교사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러지 마라. 그게 다였다고 하더군요. 그녀가 자살을 시도한 곳 역시 학교, 화장실이었습니다.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에, 학교에서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소문이 점점 불어나 학교에서 그녀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접고, 친구들도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면서 그녀를 정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하나, 아니 담임 선생님만이라고 그녀를 잡아줬다면 그녀를 학교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가 다닌 학교는 실업계입니다. 실업계는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나면 취업이 빨리 되면 바로 나갈수 있는 데, 그녀는 중간고사 시작 2주일을 앞두고 학교를 자퇴해버렸습니다.

고2때 사회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중 선생님께서 책을 덮고, 얘기를 나눠보라고 하셨습니다. 평소 사회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책속에 진리가 있는게 아니라 말씀하시며 경험을 통해서 세상속에서 부딪혀 살아가면서 진리를 깨우치는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학생들 대부분은 그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칠판에 역삼각형을 그리시더니, 한국의 계층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일 위층에는 재벌가, 그 다음 층에는 국회의원, 그 다음 칸에는 공무원, 그 다음으로 회사원,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쪽 쓰시더니, 맨 아래 칸에 호모, 변태라고 쓰시더군요. 호모가 뭐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선생님께서는 길거리에서 남자 둘이 손을 잡고 다니면 호모라고 하시며 그런 사람을 보거든 카메라로 얼굴이 나오게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라고 하시더군요. 반장이 그러면 여자들도 호모가 있냐고 하니, “여자도 있는데 여자는 쉽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찾기 어렵고 지나다 모텔에 여자 둘이 들어가면 그게 바로 호모다”라고 하시며, 한국에서 매장되어야 하는 계층이라시며 호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모르셨겠죠?! 자신이 수업을 하고 있는 이 교실에 당신이 없어야 할 존재라고 말하는 호모가 있다는 것일요. 저는 그 선생님의 말이 두려웠습니다. 과연 나는 사회에 필요없는 없어야 할 존재밖에 되지 못하나 하는 생각으로 말이죠.

### ■ 사례 5 : 파열(FtoM 트랜스젠더, 28세)

중3 때였다. 나는 특정한 계기 없이 당연한 일인 듯 내 성 정체성을 깨달았다. 그제서야 애매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아주 어렸을 적부터 겪어온 그 정체 불명의 어색함과 이질감이 무엇인지, 여자 아이들 틈에서 내가 왜 그토록 위화감을 느끼는지, 여학교에서 여학생으로서 교육을 받고 모든 곳에서 ‘여자’로 분류되며 왜 그토록 몸에 안 맞는 옷을 입듯 불편한지에 대해서

말이다. '트랜스젠더' 라는 말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그 시절, 나는 나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난 그 이름 붙일 수조차 없는 성향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는 늘 원인 모를 불편함을 자각하며 살던 나에게 최초로 자연스런 체험이었고, 난 오히려 탈출구가 생긴 듯한 기쁨까지 느꼈다. 나는 '여자'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다. 각성이 있는 후 곧 나는 부모님께 내 성향을 털어놓았으나,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그들에게 나의 성 정체성은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말썽거리였다.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고자 하셨지만 내 성향을 인정하지는 못했으며, 그 결과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부모님과 나 사이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있었다. 내 성향을 긍정함과 동시에 나를 둘러싼 환경은 점점 더 나를 억눌러 오기 시작했다. 고등학생 때 나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의 사내아이로 보였다. 도저히 나는 자신을 완전히 속이고 100% 여자아이로 가장할 수 없었다. 대놓고 긍정할 수는 없었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던 내 성향은 포화 상태의 박스에서 물건이 빠져나오듯 밖으로 새어나왔다. 그러한 나를 신기한 짐승인 양 쳐다보는 사람들, 여성성을 강요하는 사람들, '지금은 저래도 크면 괜찮아진다'는 사람들, 별의 별 구역질나는 소리들과 별종 보는 듯한 시선들 속에서 저항할 기회도 빼앗긴 채 나는 밑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른 많은 트랜스젠더들처럼 내게도 학교와 교복과 이분법적 성별 구분은 끔찍한 것이었다. 남자아이에게 여자옷을 입혀놓은 듯한 우스꽝스러운 꼴로 나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 까지 버텼다. 절망감과 낭패감 속에서 나는 그저 하루하루 견뎌내는데 온 에너지를 다 쏟는 피폐한 인간이 되어갔다. 매일을 참아내는 것 그 자체에 힘을 다 빼앗겨 공부나 대학, 진로나 적성 따위는 문제거리도 될 수 없었다. 나는 학교 아이들에게 남자도 여자도 아닌 듯한 이질감을 주었고, 교사들도 날 괴상하고 희한한 그 무엇으로 여기며 내 눈치를 보았다. 여자아이들이 많이 모인 곳 특유의 분위기는 나를 늘 어색하게 만들고 화나게 했으며, 내 말은 왜곡되고 오해받는 경우가 잦아 내 성향에 대한 언급은 커녕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힘든 지경이라, 차라리 투명인간이 되고 싶을 정도였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심해져 온 자폐 성향과 대인 공포증은 점점 극한으로 치달았고, 3학년이 되자 이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난 늘 자학하고 자해했으며, 자퇴와 자살을 생각했다. 하루종일 학교에 있으며 한 마디도 안 하는 날도 많았지만, 사실 난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고 싶은 욕구로 가득했다. 다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날 이해시켜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고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결국 내 몸 속에서 터지고 만다. 고3 때 대장염으로 건강이 심하게 나빠졌고, 20대 후반이 된 아직까지도 장이 안 좋다. 몇 번이나 자퇴나 휴학을 하려고 했으나 여의찮았다. 어머니는 나중에 내게 말하셨다. 고등학교 때 아침마다 도살장 끌려가듯

가방 메고 학교 가는 내 뒷모습을 보면 그 불행함에 견딜 수 없었으며, 차라리 나를 낳지 않는 편이 내게 더 나았을텐데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그 와중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 학교란 사회의 모순들 뿐이었다. 그나마 내가 학교에서 괴물 취급을 덜 받았던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내가 공부 안 하는 것 치곤 성적이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기 때문이었다. 단언하건대 이 땅의 중고등학교는 군대와 더불어 가장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공간, 소수자나 남다른 존재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돌아날 여지가 없고 어찌다 싹트려는 것마저 짓밟는 불모의 공간이다. 자신의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편견을 함부로 내뱉고, 기본적인 자기 제어도 없이 언어적 육체적 폭력을 일삼는 교사들과, 갇힌 교실 안에서 모든 욕구를 억압당한 채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무감각하고 거칠게, 본능만 남은 짐승처럼 되어가는 학생들. 비인간적 입시교육은 성적이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이 결국 평면적이고 개념없는 인간들만 수북하게 찍어낸다.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까지도 이 시스템 안에서 모두가 가해자이고 동시에 피해자이다. 물질적 안락함과 피상적 즐거움이 최고의 미덕인 이 사회에서, '불편한' 존재들을 진정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진 이들은 드물며, 부조리한 고정관념 안에서 안락하게 안심하려는 자들이 대부분이란 사실을 나는 고등학생 때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끝내 학교라는 동네와 친해질 수 없었다. 대학에 가서도 심한 대인공포증으로 인해 사람을 사귄 수 없었고, 졸업할 때까지 외톨이로 다녔다. 날 둘러싼 종교적 환경 때문에 순리에 어긋나는 성향을 가졌다는 무식한 소리들도 들었고, 정신병자라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으며, 이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치욕과 분노를 수도 없이 느꼈고, 여자를 좋아했던 경험들은 대부분 굴욕으로 막을 내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인간이 없는 곳에 홀로 칩거하고 싶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알던 사람들 중 지금까지 관계하고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나는 그 시절과 관련된 모든 것을 끊어내야 했다. 그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므로.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 시간이 약이란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는 종종 학교와 교실, 학생들과 선생들이 나오는 꿈을 꾸다. 그런 꿈은 백이면 백, 예외 없이 악몽이다. 하지만 괜찮다. 중고등학생 시절의 절망적인 기억들은, 그때처럼 그저 묵묵히 참고 살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현재의 나에게 강한 자극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 학생의 안전, 건강 등 복지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박대우(소파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

## I.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과연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UN은 제44차 총회(1989)에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Child)<sup>35)</sup>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았으며, 제 56차 UN 특별총회(2002)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World Fit for Children)’을 만들자고 결의하면서, 국가가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할 때 아동의 이익이 국가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모든 국가의 이행사항으로 할 것을 채택했다.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World Fit for Children)’이란 디즈니랜드와 같은 동화 속의 이상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어린이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인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어린이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선언서<sup>36)</sup>의 내용과 선언의 역사적 배경에서 오늘날 우리의 학교가 학생을 독립적인 인격의 주체로 보지 않고 잠재적으로 얼마나 비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입시 제도는 모든 교육력이 성적, 등수, 경쟁력 등에 매몰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등교해서 하교할 때 까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규칙에 따라 교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방과후에도 과외학원을 전전하는 생활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희망이다.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 시설과 놀이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 헌장은 이미 오래 전에 참 교육의 방향을 제시 했으며, 이는 본 주제의 해결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은 ‘즐겁고 유익한 놀이 공간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서 꿈을 키워나가는 학교.’가 아닐까?

본 주제를 논함에 있어 학교의 학생 안전과 복지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을 반성적 차원에서 추출하여 관련 법령과 연관 지어서 풀어보고자 한다.

35)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Child), 아동을 어른과 같이 노동 의무의 존재에서 보호의 존재로 세상의 시선이 변화 되다가 흑인의 인권에 이어서 뒤 늦게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

36) 인권선언서, 중고등학생 복지회(1998. 10. 3)

## II. 학생의 안전, 건강, 복지권의 실현

### 1. 학생의 안전권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 1) 학교 운동장에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지 않는가?

교직원이나 외부 내교자의 차량의 출입은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된다. 안전지대에 주차장이 설치되거나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안에서 필요한 조치) ① 자동차 출입금지 제한, 주정차금지

#### 2)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을 잘 지키는가?

대다수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m/h 제한 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다.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있다. 속도위반 운전자에게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을 잘 준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보호구역 지정) 학교의 출입문 중심으로 300M이내 도로 중 일정구간

제9조(보호구역안에서 필요한 조치) ① 자동차 출입금지 제한, ② 주정차금지

#### 3) 학교 운동장과 도로 사이에 완충시설이 있는가?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아이들은 공을 보고 달린다. 공이 교문 밖의 간선도로로 굴러갈 경우에도 공만 따라 가게 된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완충지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5조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학생 대피 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가?

학생안전을 위해서 대피 훈련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휴식시간에 학생 안전 요원이 있는가?

학교는 학부모 뿐만 아니라 불량자가 수시로 출입해도 경비나 안전요원이 없다.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일정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명예안전요원위촉) 학부모, 지역주민을 명예안전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학생의 건강권

[아동권리협약]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학교 환경이 학생의 건강에 적합한가?

학교 시설의 건축재료 및 운동시설의 자재가 친환경적이 아닌 경우 학생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조 잔디 운동장의 고무칩은 인체 유해하며 특히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이다. 인조 잔디 중에 고무칩이 포함되지 않는 인조 잔디를 선택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 학생의 스트레스, 불안 등에 대한 상담치료가 가능한가?

ADHD, 불안증 정신장애 등에 대한 상담치료가 안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증세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구해야 하고 그 정보는 보장되어야 한다. 의사의 간단한 검진과 약물치료도 자식을 정신병자로 취급한다고 반대하는 학부모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제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있게 마련이다. 그 정도에 따라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피해학생과 더불어 가해 학생의 인권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 가해학생의 타자인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타자인 가해 학생도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보호) 상담보호치료요양 학급교체 제17조(가해학생조치) 서면조사, 접촉금지, 학급·학교 교체, 사회봉사

## 4) 급식비 미납 학생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않는가?

급식비는 대다수의 생보자들에게는 면제 되고 있는 실정이나 학부모들의 무관심으로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미납급식비는 학생에게 독촉해서는 안된다.

[학교급식법]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5) 신체검사는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가?

체육관 등 공개적인 장소나 엿보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신체검사가 이루어질 경우, 신체검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검사장소나 방법 및 검사 결과에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학생의 복지권

[아동권리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1)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율학습을 강요하지 않는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은 학생들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다. 학생들의 즐거운 시간을 제재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2) 학교의 교정에 편히 쉬거나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

학교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놀 수 있는 시간은 학생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권리이다. 학교장은 놀이 시설의 배치에 학생들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②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 3) 학교 강당을 학생 선수의 훈련 장소로만 전용하지 않는가?

학교의 운동장이나 강당은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선수의 훈련 장소로만 전용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학생의 놀이 공간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4) 편히 쉴 수 있는 실내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학생들 중에는 운동장보다는 내부의 공간에서 쉬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다. 이들을 위해서 실내의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②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 5) 모든 학생은 부모로부터 행복하게 양육되고 있는가?

어린이는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의 문제로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신의 죽음에 자식을 동반하기도 한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학교나 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6조(가정의 책임) ① 가정은 1차 책임 유해매체 및 환경으로부터 보호 무관심, 방치, 억압 또는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

## Ⅲ. 호밀밭의 파수꾼

학교는 몇 십명에서 많게는 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학생들에게 안전과 건강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지만,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에 소홀하고 있는 편이다. 학교 주변의 일정 구역이 스쿨 존(School Zone)이 정해져 있지만, 규정대로 잘 준수되고 있지 않으며 학교가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학교 울타리 안에도 학생들에게 절대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에게 “운동장에 차량이 들어가도 되느냐?”고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특히, 아직 자기중심적이고 안전에 대한 주의력이나 방어능력이 없는 안전에 극히 취약한 유·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학생이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 **첫째, 교원의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교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 학부모로부터 학생 안전을 위임받은 것이다. 그러나 학생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법규보다 교원들의 학생의 인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교원은 교사양성기관이나 교원연수의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교원의 인권감수성은 인권친화적인 학교의 관건이 된다.

### **둘째, 학생의 자존감이 인권옹호 행동을 유발한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주장할 때 비로소 인권은 권리가 될 수 있다.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인권옹호 행동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은 학생의 자아존중감(Self-esteem)<sup>37)</sup>을 높여서 공감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인권옹호 행동을 유발시키는 데 있다. 즉,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발달해야만 나아가 타인(타민족, 타국가)과 사회전체를 배려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자존감은 인권지식의 이해에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나 부모에 의한 인권친화적인 경험이나 인권문제와 관련된 체험에서 학습된다.

### **셋째, 학교는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이어야 한다.**

학교의 모든 시설이나 교육활동이 즐겁고 안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정의 문제나 학습의 압박 또는 친구간의 갈등도 잊게 되며, 이곳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또 스스로 창의적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면서 인권감수성을 몸소 경험하고 실천하는 시·공간이 된다.

그러므로 학교의 모든 공간은 아동의 안전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감시하는 호밀밭의 파수꾼<sup>38)</sup>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하고 즐거운 놀이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37)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신념의 집합으로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으며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자존감은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지식의 이해가 아니라 인권친화적인 경험에서 스스로 습득되는 것이다.

38)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 호밀밭의 파수꾼(1951), 존 레논의 암살범 마크 체프먼의 탐독한 소설로서 암살 순간 그의 손에 이 책이 들려 있었다. 주인공 콜필드는 정신적으로 파괴되어 가지만 수천명의 아이들이 놓고 있는 호밀밭에 자신 밖에 없으며 “아득한 절벽 옆에 서있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불

특히, 초등학생의 과외활동은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정해진 과외활동시간 이외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정부 시책이나 법률로 정해야 한다.

### **넷째, 학교의 교육도 지역주민의 실천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학교시설의 다양성과 안전성 그리고 편의성은 아동이 즐거운 학교의 필수 요건으로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지만, 학교 주변의 환경도 학생의 안전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의 준수와 어린이 신체 및 정서 학대나 방임, 성폭력 등은 관련 법령이 있지만, 법령은 법령대로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술·혜진법을 만들어서 엄하게 다룬다고 해서 싸이코패스(Psychopath)<sup>39)</sup>들이 금방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디케의 저울<sup>40)</sup>은 법원과 경찰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곳곳에 표상되고 있지만 세상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거나 평등하지 않은 것이다.

학생들이 각자 자신들의 보건·안전 및 복지권을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학생 인권교육이 필요하지만, 학생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교사와 인권친화적인 학교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하며 가정과 지역주민이 함께 인권친화적일 때 성공할 수 있다.

UN이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결의하면서, 국가가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할 때 아동의 이익이 국가의 최우선이 되도록 하자고 했으며,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희망이다.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 시설과 놀이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즐겁고 유익한 인권친화적인 시·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이 두 이념을 근간으로 하여 인권교육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인권교육법에 의해서 인권교육이 실현되는 미래는 모든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아동의 안전, 건강, 복지가 우선적으로 실현되는 인권친화적인 세상으로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World Fit for Children)’이 될 것이다.

---

잡아 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각없이 마구 달리니까 말이야.”

39) 독일 심리학자 슈나이더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를 공감무능력자(Psychopath)라 명명하고 이들의 특징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평범한 시민이면서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없다. 다른 사람을 BTK(Bind Tautre Kill) 즉 묶고 고문하고 죽이고도 상대의 고통을 느낄 수 없으며 웃는 얼굴과 우는 얼굴조차도 잘 구분해 내지 못한다고 정의한다.

40) 디케의 저울, 그리스어로 ‘정의’ 또는 ‘정도(正道)’를 뜻한다. 디케는 정의의 여신으로서 인간들의 타락이 극에 달하자 하늘로 올라가 처녀자리가 되었다고 한다. 로마시대에는 유스티티아(Justitia)로 대체되었다. 오늘날 영어에서 정의를 뜻하는 ‘저스티스(justice)’는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디케는 미술 작품에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고, 유스티티아는 여기에 형평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저울이 더해졌다.

#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를 꿈꾸며

고영호(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장)

## 1. 들어가며

요즘에 초등학생 어머니로부터 교사의 체벌·왕따에 대한 상담을 자주 받는다. 학기 초도 아닌데 왜 이럴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보통 학기 초에 교사가 아이들 규율 잡는다고 체벌을 하는 사례가 자주 생긴다. 그러다가 한 학기가 다 지나는 이맘때면 교사의 뜻대로 아이들의 규율이 잡히든지, 학부모의 반발에 부딪혀 체벌을 중단하든지 좀 찾아든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다. 뭔가 예전과 다르다. 반 평균에 대한 교사의 강박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성적이 낮거나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학생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3월에 일제고사를 본 이후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고도 쪽지시험, 단원평가 등이 정규시험처럼 되어 시험 횟수가 확 늘었다. 진단평가 성적이 백분위로 공개된 5월부터는 성적을 아예 등수로 만들어서 공개하는 초등학교까지 생겼다. 물론 성적공개에 대한 학부모의 커진 요구 때문이기도 하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런 저런 제약 때문에 못하다가 세상이 바뀌었다고 본색을 드러내는 것인지, 학력향상이라는 교육청의 방침이 워낙 거세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다. 다만 내 아이의 교사와 이웃 학부모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청의 오도된 학력지상주의에 강요된 나머지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뿐이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과도하게 이해하다보니 참으로 답답하다.

그러던 중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학생인권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소식은 가뭇에 단비처럼 반갑다. 또 한편으로는 법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이제까지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공부하는 도구로 사육되어 온 대한민국 학생의 현실이 쉽게 바뀔까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학생의 인권이란 창으로 우리 교육 현실, 학교의 모습을 제대로 볼 기회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교육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되어 아이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길 희망한다.

## 2. 학생복지권의 창으로 본 학교의 모습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학생인권은 보편적 인간존재로서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① 자유권, ② 복지권, 그리고 자유권과 복지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③ 평등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학생복지권이라는 창으로 우리 학교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또한 제안된 주제에 맞춰 학생복지권 중 건강권과 안전권이라는 두 영역에서 학교의 모습을 본다.

### 1) 건강권의 문제

[UN 아동권리협약]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의 건강권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학교급식과 학교폭력문제이다.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급식 안전성 문제, 학부모 부담 급식비의 사용비율 문제 등이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교사에 의한 폭력 문제, 학생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문제, 상담실 운영 문제 등이 있다.

급식 안전성 문제는 예전부터 위탁급식의 직영화, 친환경 식자재 사용,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의 요구가 있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그러나 울산지역의 경우, 급식 안전을 시스템으로 보장하는 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은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고, 친환경 급식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예산도 전국 최저 수준이다. 시민단체 자체적으로 수입쇠고기 학교급식 실태조사를 하고 급식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건의했지만, 시청과 교육청은 서로 권한을 떠 넘겼다. 시의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우리 집도 한우는 비싸서 못 먹는데'이고, 교육청의 최고 직책에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친환경 급식은 자기 공약이 아니라서'라며 딴 데 가서 알아보라는 식이다.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에서 실제 식품 구입 비율은 70% 수준이고, 학교 운영비에서 부담해야 할 급식사무보조원의 인건비도 학부모 급식비에서 각출하는 게 현실이다.

교사의 체벌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의식을 가진 교육청과 학교의 관리자는 얼마나 될까? 학생 폭력은 폭력과 차별이 일상화된 학교에서 소외된 학생의 자기 방어라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언젠가 참여했던 교장 공모제 심사에서는 학생폭력은 가정교육의 문제라고 진단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학생폭력을 줄인다고 교육청에서 내놓은 해법은 2차례의 상담을 통해서도 재발하면 학교에서

내쫓겠다는 삼진아웃제란 방법이였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예방과 상담을 위해 설치했다는 교육청 학교폭력 상담전화는 울산지역 학생이 전화를 했음에도 서울지역교육청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학교 폭력은 제대로 된 원인진단과 해법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성적을 순위로 매기고 이를 교실에 붙여놓는 아이들의 영혼에 상처를 남기는 폭력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초중등교육법의 신설조항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다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의 현실을 반성하는 계기로라도 작용했으면 한다.

## 2) 안전권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울산에서 지난 4월 새벽 2시에 영어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고등학생들이 교통사고로 1명이 죽고, 3명은 크게 다친 일이 벌어졌다. 이 불행한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 새벽 귀가 길이 위험하다고 아이들을 자신의 승용차로 태워준 학원 강사에게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합당한가? 현재 울산에서는 심야학원 수업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오후 12시 이후 심야학원수업을 규제하자는 안을 놓고 교육위원회는 규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시의회는 판단 자료가 적절치 않다며 의결을 미루고 있다.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학원의 심야수업을 12시로 제한하자는 안을 만든 것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울산의 학원은 새벽 2시까지 불을 켜고 있다. 긴 여름해가 졌는데도 학원을 마치고 어둑해진 골목길을 걸어오는 초등학생이 있고, 밤 12시가 다되어서 학원차에서 내리는 중학생이 있고, 새벽 2시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고등학생이 있는 현실에서 학생의 생명권, 신체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은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이라는 영역에서만 해결할 수도 없다. 가령 학교 앞 교통안전구역문제만 하더라도 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동네 주민들이 다 뜻을 모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어른들 간의 다툼이 아이들의 안전하고 빠른 등하교길을 막고 위험한 길로 돌아가야 하는 일은 울산에서만 벌어지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아이를 보살피서 자라게 할 어른들 모두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렇다고 학교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학교 안팎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열심히 참여했지만 이를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시킨 책임은 학교관리자가 져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학교 앞 교통안전을 엄마들의 자원봉사로 지킬 것인가?

학생 인권 조항의 신설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 3.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를 꿈꾸며

학생 인권이라는 창으로 본 학교의 현실은 희망의 숨결보다는 절망의 한숨이 깊다. 하지만 몰랐던 현실도 아니고, 지금까지 절망의 학교를 희망의 학교로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학생인권 조항이라는 좋은 도구가 생겼으니 더욱 노력할 일이다.

어쩌면 강제교육으로 기본적인 자유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현실을 볼 때, 건강권과 안전권의 문제는 사치스러울지 모르겠다. 하지만 시험, 성적, 등수, 야자, 학원으로 이어지는 강제교육의 영킨 실타래는 한순간에 풀리지 않을 것이기에 그나마 개선 가능한 영역으로서 건강권과 안전권의 문제는 중요하다. 먼저 제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자. 학교는 시험만 보는 곳이 아니고, 아이들이 자라는 곳이다. 초중고 12년 동안 아이들은 집에서 못지않게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학교는 아이들이 자라는 곳이다. 그렇기에 아이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건강과 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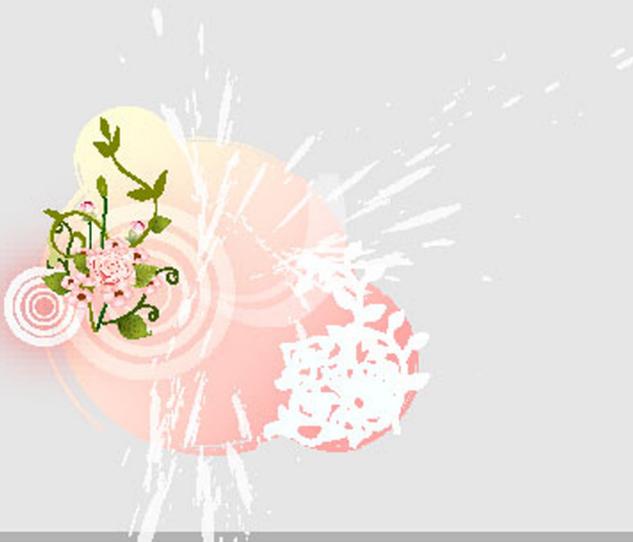
안전한 급식, 할 수 있고 하는 곳도 많다. 시와 교육청이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생산자, 소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안전한 급식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학생인권 조항을 신설한 취지에 맞춰 교육청의 진전된 모습을 기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 12시 전에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탄 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정 이전 귀가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아닌가? 사육하는 소도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재우지 않는가? 학력 신장도 좋은데,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체가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정말 학부모는 꿈꾼다. 우리 아이의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를. 신설된 학생인권 조항이 이 꿈을 실현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 【부 록】

- Ⅰ 세계인권선언(조효제 번역)
- Ⅰ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
- Ⅰ 학교(학생)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정]

전문(前文)

우리는 인류가족 모두에게 그들이 원래부터, 존엄성과 남들과 똑 같은 권리와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타고났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화적인 세상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최근에 일어났던 전쟁에서처럼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 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는 것이라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치게 되었다.

인간이 폭정과 탄압을 견디다 못해 최후의 수단으로 혁명적인 항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까지 극한상황에 몰리지 않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법치를 통해 인권을 보호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여러 나라들 사이의 선린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일도 참으로 긴요한 과제가 되었다.

유엔의 모든 인민들은 3년 전에 만들어진 〈유엔헌장〉 속에서 기본 인권에 대한 신념,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신념,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서로 다짐했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모두 함께 존중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한 바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온전히 실현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인지, 도대체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제 유엔총회는

사회의 모든 개인과 모든 조직이 본 선언을 언제나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면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도록 힘쓰며,

국내에서든 국제적으로든, 계속 향상되는 진보적 조치들을 통해, 이미 독립해 있는 유엔 회원국의 인민들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의 법적 관할 하

에 있는 식민지 영토의 피식민 인민들에게도,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정해주고 지켜주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다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적인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 을 선포하는 바이다.

###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권리는 모두 똑 같다. 사람에게는 이성과 양심이 있으므로 서로 상대방을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의 높낮음, 재산의 많고 적음, 혈통이나 가문, 그 밖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속한 나라 또는 영토가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외 어떤 주권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 곳의 정치적 지위나 사법관할권 상의 지위나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어느 곳에 사는 주민은 지위가 높고, 다른 곳에 사는 주민은 지위가 낮다는 식으로 구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그 어떤 형태로든, 그 명칭이 무엇이든, 자발적이든 아니든 간에, 일절 금지한다.

###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제6조

모든 사람은, 그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 같은 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배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러한 차별을 선동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남들과 똑 같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에 해당국가의 법원에 의해 효과적인 법률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어느 누구도 정당한 근거 없이 함부로 체포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해외로 추방당하지 않는다.

###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또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판별하고, 자신이 행한 행위가 과연 범죄인지 아닌지를 심판 받을 때에,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법정에서, 다른 모든 사람과 똑 같이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1조

1. 형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잘 갖춰져 있는 공개재판에서 재판을 받아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유죄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이, 그 때만 해도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범죄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와서 뒤늦게 그것을 유죄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당시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나중에 새로 부과해서도 안 된다.

### 제12조

어느 누구의 프라이버시, 가정, 자기 거처, 또는 통신에 대해서도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침해를 받았을 때에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3조

1.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안에서 어디에든 갈 수 있고, 어디에서든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자기나라를 포함한 그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기나라로 다시 돌아올 권리가 있다.

###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피난처를 찾고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그러나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때문에 제기된 법적 소추,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때문에 제기된 법적 소추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제15조

1. 모든 사람은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국민이 될 권리, 즉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정당한 근거 없이 함부로 자신의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또한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 제16조

1. 성인이 된 남성과 여성은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남성과 여성은 결혼해서 사는 동안 그리고 이혼하게 될 경우에, 혼인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 서로 똑 같은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다른 누구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구성단위이므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제17조

1. 모든 사람은 혼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권리에는 가르침, 실천, 예배,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을 뛰어넘어 정보와 사상을 모색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평화적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집단이나 단체에 소속될 것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직접 참여하든,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하든 간에, 자기나라의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똑 같이 주어져 있다.
3. 정치권력의 기본은 바로 인민의 의지이다. 인민의 의지는 사이비 선거가 아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진정한 선거를 통해서만 표출된다. 이러한 선거는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로 이루어지고, 비밀투표 또는 비밀투표에 해당하는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국가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나라가 조직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 또한 각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형편에 맞추어,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노동할 권리, 그리고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에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그 가족이 인간적으로 남부끄럽지 않게 품위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보수가 부족할 경우, 필요하다면 여타 사회보호 수단으로 부족한 보수를 메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24조

모든 사람은 휴식할 권리 그리고 여가를 즐길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에는, 너무 심한 노동을 하지 않게끔 노동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정기적인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웰빙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에는 먹거리, 입을 옷, 주거, 의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등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직업을 잃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를 당했거나,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그 밖에 자신의 힘으로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살길이 막막해진 모든 사람은 사회나 국가로부터 생계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자식이 딸린 어머니,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전체 사회로부터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 부모가 결혼한 상황에서 태어났든, 미혼인 상황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모두 똑 같이 사회적 보호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적어도 초등교육과 기초교육 단계에서는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

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큰 어려움 없이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은 다른 차별 없이 오직 학업 능력에만 입각하여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이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을 온전하게 발달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방향을 맞춰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집단 또는 종교집단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며 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제27조

1.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예술을 즐길 권리, 학문적 진보와 그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모든 학문, 문예, 예술의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 제29조

1.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따지고 보면 누구든지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온전하게 발전시킬 수 없지 않겠는가?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또한,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과 공중질서 그리고 사회전체의 복리를 위해 정당하게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유엔의 목적 및 원칙에 위배되는 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떤 내용도 다음과 같이 악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다거나, 그런 활동에 가담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이 선언을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번역: 조효제(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

전체 5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가운데 주요 조항만을 뽑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 제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제3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갈

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 **제11조**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된다.

####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제18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주어야 한다.

####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 제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 제22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 제30조

소수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 제31조

우리에게 쉼과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32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 제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 제35조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 제37조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38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 제39조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 제42조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 학교(학생)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2002. 5. 23. 02진차22 [나이를 이유로 한 대학신입생모집 과정의 차별]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연소자 우선원칙을 채택하여 연장자를 불합격처리한 것은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모집인원 유동제 등에 의한 합격처리 등의 구제조치를 이행하고 대학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개선할 것을 권고
  
- 2002. 9. 9.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의견]  
학교생활규정은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정부는 학교규율이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동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
  
- 2002. 10. 28.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내용관련 직권 수정 권고]  
교육부의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개정 내용 중 학생들의 인권존중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부 부분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 협의할 것을 권고
  
- 2003. 5. 12.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원인사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

□ 2003.5.21. 03진인26 결정 [학교내 장애인이동시설 미설치]

학교내 '장애인 등'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설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 및 '장애인등'에게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권고

□ 2003.9.15. 03진차127 결정 [사회적신분(비학생청소년)에 의한 차별]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의 할인에서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구별하는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정 또는 개선을 권고

□ 2003. 9. 25.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에 대한 구제권고]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위헌결정 당시 이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아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들에 대하여 조속히 구제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

□ 2004. 2. 16. 03진차27 [기타사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대학입학전형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장애종류 가운데 특정장애 종류에 대하여서만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한 것이 다른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이므로 특수교육대상자를 특별전형함에 있어서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의 시정을 권고

□ 2004. 5. 24.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권고]

교원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대학 시간강사는 전임교원과 비교하여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그 대우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

□ 2004. 10. 11.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및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정보인권의 충분한 보장을 위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 2005.3.14. 04진인3256 [○○중학교의 학교폭력관련 인권침해]

피해학생의 담임, 교감, 교장은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방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헌법 제 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하고, 학교장에게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해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과 등을 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2005. 3. 25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표명]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고 초등학교에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의견 표명

□ 2005. 6. 27. 05진차204외 2건 [두발제한관련 인권침해]

두발단속 시 규정을 어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강제이발을 한 것은 학생들의 인격권 침해이므로 해당 고등학교장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고, 중학교 여학생에 대하여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중학교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

□ 2005. 8. 31. 05진인1055, [학교급식관련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각급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이의 방지를 위해서 각급 학교에 대

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유사사례의 방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 조치할 것을 권고

□ 2005. 9. 28. 05진차517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부여하고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초등학교장에게 출석부 번호부여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 2005. 9. 28. 05진차250 [부당한 퇴학처분관련 인권침해]

고등학교 학생이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배포하였다고 하여 학칙위반으로 퇴학 처분하면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당해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을 재심의 하고, 학생징계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토록 학생선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 2005. 12. 26. 04진차84,286,287 [성별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종전 훈령 내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한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초중고 여학생 대상, 2006. 3.부터 시행)

□ 2006. 5. 29. 06진차37 [성별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차별]

신입생 모집시 성별에 따라 모집인원을 정하여 구분모집 하지 말 것을 목포해양대학에 권고

⇒ 여학생 입학생 비율을 매년 1%씩 증가시키기로 함(현재 10%모집)

□ 2006. 6. 28. 06진인1030 [부당 퇴학에 의한 인권침해]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향후 학생 징계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장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해당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허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2006. 8. 29, 04진차 386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등]**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화교들의 자기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화교학교 출신학생이 한국학교로의 전·입학이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시 학력을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 2006. 10. 9, 05진차100 등 5건 **[대학교의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가. 대학교 수시모집시 검정고시출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정규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검정고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정고시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임

나. 특히, 최근 수시모집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전체 대학선발과정의 50%에 해당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검정고시출신자로 하여금 지원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학입학과정에서의 실질적 응시기회의 박탈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다. 따라서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응시기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권고

⇒ 2008년도부터 개선조치 적용

□ 2006. 11. 28, 06진차449 **[성적을 이유로 한 학급회장 자격 제한]**

학업성적(80점 이상인 자)으로 학급회장 자격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

□ 2006. 12. 11, 06진차411 **[장애를 이유로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공립특수학교인 ○○학교가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장애학생들을 집 근처가 아닌 집에서 7~30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승하차시키는 것은, 비장애학생들과 달리 장애학생들은 독립적으로 해당 거리를 무사히 걸어서 귀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장애학생에게

비장애학생들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교육환경의 조건을 제공하는, 적절한 편의제공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함. 따라서 해당 도교육감에게, ○○학교에 등하교하는 장애학생들의 교육학습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도록 현재의 통학버스 운송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

□ 2006. 12. 22, 05진차1041 [대학입학 특별전형 응시자격 차별]

대학교 입학시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에 있어 응시자격을 졸업년도 기준으로 제한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

□ 2006. 12. 22, 06진차409 [방통대의 청각장애학생 학습권 차별]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은 비장애학생의 학습권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바, 방송통신대학교는 청각장애학생들이 출석수업에서 강의 내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지원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 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방송통신대학교 총장에게, 청각장애학생들의 출석수업에서 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 등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

□ 2007. 1. 15, 06진인3067 [부당 퇴학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고등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의 퇴학처분을 학생선도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는 2006. 9. 21. 학생선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에게 사회봉사 5일의 징계처분을 결정하면서 진정인의 퇴학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결재 상신한 바, 이는 진정인의 퇴학처분을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임. 따라서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의 퇴학처분을 재심의할 것과 향후 학생 퇴학처분시 학교생활규정에 정해진 적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

□ 2007. 1. 15. 06진인943 [학생간 폭행 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6학년 학교생활 동안 수시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특히 가해학생들이 경찰에 고소되어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 입원 및 4주 진단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학교측 및

지도·감독기관인 관할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임

□ 2007. 1. 31, 06진인2030 [집회의 자유 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학생 두발규제 등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과 근거가 없이 휴대폰을 수거, 열람하고 소지를 금지케한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국제인권협약 『아동의 권리』 제12조를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학교생활규정의 “휴대폰 소지금지” 규정을 개정·보완할 것을 권고

□ 2007. 2. 12, 05진차297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정치활동 제한]

국공립대학교 총장에게 대학생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학생 정치활동 제한 규정을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 2007. 3. 28, 06진차418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피진정인 ○○과학기술고등학교장 및 ○○○미디어고등학교장에게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시교육감에게 통합교육 및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2007. 4. 16, 06진인836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고등학교 교사가 수학여행 기간 중 지시사항(24시 이후 이동금지 등) 위반 학생들(5명)에 대해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20여회 실시하고, 동 학생들을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뺨을 구타하고, 학생부장선생이 만류하자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가 또 다시 뺨을 쥐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체벌을 하고 이후 동 사건 관련 회의중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욕설 등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

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31. 2007. 9. 7, 07진인898 [야구선수 이적동의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야구선수 이적 동의 불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의 '체육특기생의 진학 및 전·출입 제도 개선사항'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고, ○○도교육청의 2006년 '학교체육선수 관리지침' 뿐만 아니라 '도내 우수선수 타· 시도 진출 억제' 대상 선수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초등학교장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야구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권고

□ 2007. 10. 9. 07진차221 [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 이용 차별]

○○대학교 항공운항학과의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에 있어 병역미필자는 1987. 1. 1.(만 20세) 이후 출생자, 병역필자 및 병역면제자는 1983. 1. 1.(만 24세)이후 출생자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므로 신입생 모집이 나이에 의해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

□ 2007. 12. 14, 06진차475 [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서울시내 소재 국·공립 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열람실 및 자료실 입장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개방할 것을 권고

MEMO

---

---

MEMO

---

---